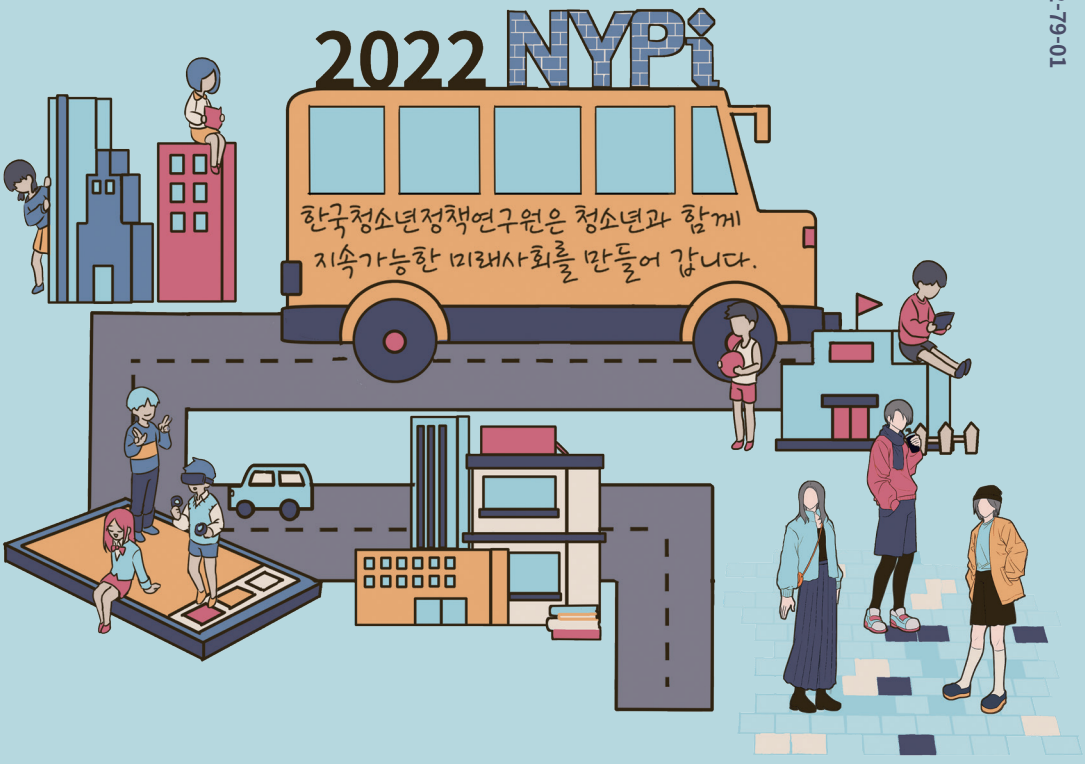
#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

## :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유민상 · 신동훈 · 신영규 · 박미희

연구보고 22-일반0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9-0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협동연구총서 22-79-01
연구보고22-일반07

#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저 자** **유민상, 신동훈. 신영규, 박미희**

연 구 진 연구책임자_유민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_신동훈(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_신영규(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_박미희(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연구보조원_조양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 연구보고서명 | 연구기관 |
|---|---|---|
| 22-79-01 |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2. 참여연구진

| 연구기관 | | 연구책임자 | 참여연구진 |
|---|---|---|---|
| 주관연구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민상 연구위원 (총괄책임자) | 신동훈(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br>조양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
| 협력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영규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 |
| 협력연구기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 박미희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 |

# 연구요약


## ■ 연구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개념을 정리하고, 양적·질적 연구를 통해 청년기 자립 정책의 방향과 구체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음.
-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이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transition)하면서 경제적 차원, 주거 차원, 관계적 차원, 주관적 차원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원, 역량,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임. 하지만 자립 정책은 자립이 가장 어려운 대상에게만 한정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보편적 청년을 위한 자립 정책 수립이 시급함.
- 이 연구는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음. 첫째, 청년정책에서 자립이란 무엇이며 사회정책에서 보편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자립 목표는 무엇인가? 둘째, 청년들의 성인 이행기 자립 상황은 어떠하며, 자립 상태의 격차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셋째, 보편적인 욕구로서 청년들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어떠한 지원을 해야 하는가?

## ■ 연구내용

- 자립의 개념, 영향요인 정리
- 청년 자립의 실태, 영향요인, 국내외 청년 자립 관련 법, 제도, 프로그램 분석
-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 도출

## ■ 연구방법

- 이 연구는 청년들의 자립실태, 경험과 인식, 영향요인, 관련 국내외 정책 등을 파악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문헌연구, 양적연구, 질적연구, 현장 및 학계 전문가 자문,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음. 전문적, 대중적 논의를 위하여 콜로키움과 포럼을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반영하였음.

## ■ 연구결과

### 주요 연구결과

● 문헌연구 결과

- 경제 선진국에서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이 길어지고 있으며, 이 시기를 새로운 성인기(emerging adulthood)로 정의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성인 이행기가 길어지고 있어 새로운 성인기의 특성이 나타남.
- 새로운 성인기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의해 더 지연되고 있으며 취약한 상황에 있는 청년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고 있음. 새로운 사회적 위험 혹은 사회적 욕구에 맞게 청년정책이 재구성되어야 하며 청년 자립 지원을 목표로 한 다차원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양적연구 결과

- 18세 이상 34세 이하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청년 2,059명에 대한 조사 결과, 청년들은 성인기 이후에도 스스로 성인으로 자각하지 못하는 시기가 폭넓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자립 인식의 차이를 경험하고 있음.

● 질적연구 결과

- 다양한 상황에 있는 청년들은 대부분 자립의 어려움을 토로하였으며, 스스로 자립하기 어려운 사회라 응답하였음. 청년은 단일한 집단이 아닌 다양한 특성과 이해관계로 구성된 집단이지만, 이들은 대체로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정책을 바라고 있었음.

● 정책분석 결과

- 생애전반기를 포괄하는 국내법에서 '자립'은 아주 상징적이거나 이념적인 수준에서만 강조될 뿐, 실제 자립 지원 정책은 취약청년에 한정하여 분절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지자체의 조례는 다차원적인 자립지원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다차원적인 자립 지원을 위한 민간의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음.

● 해외사례 분석 결과

- 핀란드 청년보장 정책은 청년 자립 지원을 보편·권리 측면에서 시행 중임.

## ■ 핵심 정책제언

### 핵심 정책제언

● 이 연구는 정부 정책 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연구과제로서 다음과 같은 비전, 원칙, 정책과제를 설정하였음.




**그림-i 본 연구의 비전, 원칙, 정책과제**

● 본 과제는 비전, 원칙, 정책과제 간 상호조율을 통해 정책을 정교화하였음. 비전은 '모든 청년이 권리로 누리는 자립 보장' 이며, 원칙은 ① 포용·개별화 원칙, ② 연결·독립성 원칙, ③ 역량증진·기회제공 원칙, ④ 생애주기·통합 원칙 등임.

● 본 과제는 6개 정책영역 23개 세부과제를 설정하였음. 6개 정책영역은 다음과 같음.
- ① 성인 이행기 청년 자립의 법제도적 근거 및 기반 마련, ② 성인 이행기 청년의 경제적 자립 지원, ③ 성인 이행기 청년의 주거 자립 지원, ④ 성인 이행기 청년의 관계 자립 지원, ⑤ 성인 이행기 청년의 기초자립역량 증진 지원, ⑥ 자립취약청년의 특별한 자립 욕구에 대한 대응

● 정책 제언의 핵심은 ① 청년 자립은 자립의 다차원적 조건, 역량, 기회의 조합이며, ② 다양한 자립 지원이 생애전반기에 걸쳐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및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고, ③ 자립취약청년을 포함한 모든 청년이 권리로서 자립 지원을 체계적·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 핵심 정책제언

● 다음의 그림은 과제의 비전, 원칙, 6개 정책영역, 24개 세부과제를 정리한 도식임.
- 각 24개 과제는 과제의 배경, 내용, 기대효과, 단기·중기·장기적 전략, 담당 부처, 신규과제 여부 등을 표기하였음.
- 각 과제들은 성인 이행기 청년들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자립의 어려움을 지원함과 동시에 특별한 욕구가 있는 자립취약 청년들을 위한 추가적 지원을 고안하였음
- 이 연구의 정책 제언은 비전, 원칙, 정책영역, 세부과제를 통하여 '모든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의 틀'을 구성한 것에 의의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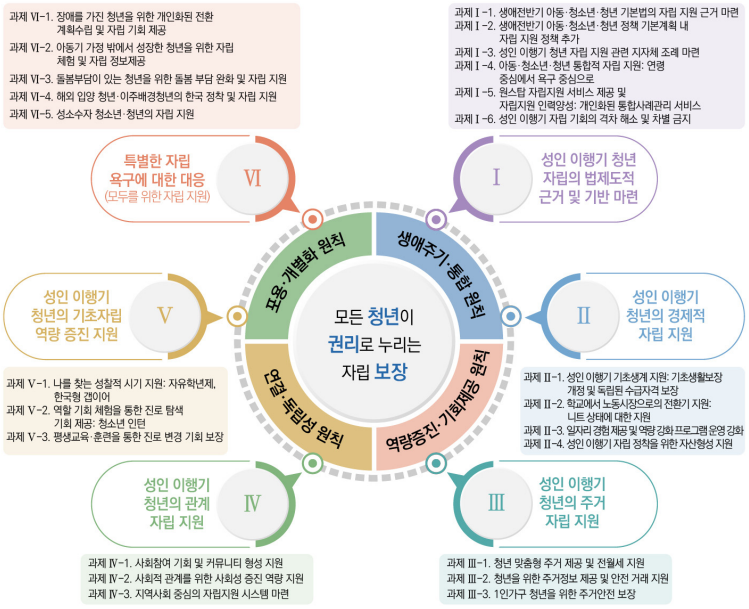



**그림-ii 본 연구의 비전, 원칙,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개념도**

- 후속 과제로서 권리로서의 성인 이행기 자립 지원의 개념 확립 및 법제화 연구, 그리고 자립에 필요한 기초자립역량을 기르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청년 사회 첫출발 교육」 혹은 「청년 사회 첫출발 오리엔테이션」 과정 도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차 례**

#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협동연구총서 22-79-01
연구보고22-일반07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추진체계 ····· 7
3. 연구내용 ····· 8
4. 연구방법 ····· 10

**Ⅱ. 이론적 배경**

1. 개요 ····· 19
2. 새로운 성인기의 출현과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현황 ····· 20
3. 성인 이행기 청년 자립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 29
4.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개념 및 정의에 관한 재검토 ····· 31
5. 요약 및 시사점 ····· 33

## Ⅲ.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현황과 실태

1. 개요 ····· 37
2. 조사방법 및 문항구성 ····· 37
3. 설문조사 주요결과 ····· 60
4.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특성: 자립 특성 및 인구사회학적 차이 ····· 95
5.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지원 효과 분석 ····· 109
6. 요약 및 시사점 ····· 125

## Ⅳ.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

1. 개요 ····· 129
2.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에 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 ·· 133
3. 요약 및 시사점 ····· 144

## Ⅴ.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관련 국내법 및 공공·민간 정책사례 분석

1. 개요 ····· 151
2. 청년 관련 법률에서의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 152
3. 청년 관련 정부정책에서의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 167
4.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관련 민간기관 활동 ····· 193
5. 요약 및 시사점 ····· 199

## Ⅵ.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지원 해외사례

1. 개요 ····· 205
2. 청년기 경제적 자립지원에서부터 사회참여 지원까지: 핀란드의 유럽청년보장제(European Youth Guarantee) 사례 ····· 206
3. 유럽의 갭이어(Gap year) 사례 ····· 218
4. 요약 및 시사점 ····· 227

## Ⅶ. 정책제언

1. 제언 도출 과정 ····· 233

2. 성인 이행기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 243
3. 성인 이행기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한 세부정책 ····· 245

**참고문헌 ····· 299**

**부 록 ····· 313**
1. 조사지 ····· 315

**표 목차**


표 Ⅰ-1 연구인력 및 역할분담 ····· 7
표 Ⅰ-2 설문조사 주요 내용 ····· 11
표 Ⅰ-3 설문조사 진행 세부 일정 ····· 11
표 Ⅰ-4 심층면접 주요 내용 ····· 13
표 Ⅰ-5 자문회의 진행 내용 ····· 14
표 Ⅰ-6 콜로키움 진행 결과 ····· 14
표 Ⅰ-7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결과 ····· 15

표 Ⅱ-1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34

표 Ⅲ-1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문항 구성 ····· 40
표 Ⅲ-2 자립에 대한 상징 문항(기존 문항 수정) ····· 41
표 Ⅲ-3 자립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신규) ····· 43
표 Ⅲ-4 자립 기회에 대한 인식(신규) ····· 45
표 Ⅲ-5 경제 자립 수준(일자리) 관련 문항(기존) ····· 46
표 Ⅲ-6 경제 자립 수준(일자리) 관련 문항(신규) ····· 47
표 Ⅲ-7 경제 자립 수준(경제적 독립) 관련 문항(신규) ····· 48
표 Ⅲ-8 경제 자립 수준(경제적 독립) 관련 문항(신규) ····· 49
표 Ⅲ-9 주거 자립 수준(집 소유 및 주거독립) 관련 문항(기존) ····· 50
표 Ⅲ-10 주거 자립 수준(주거독립) 관련 문항(신규) ····· 51
표 Ⅲ-11 관계 자립 수준(지원 및 연결망) 관련 문항(기존) ····· 52
표 Ⅲ-12 관계 자립 수준(관계성취) 관련 문항(신규) ····· 53
표 Ⅲ-13 주관적 자립 수준(현재가 갖는 의미) 관련 문항(신규) ····· 54
표 Ⅲ-14 주관적 자립 수준(독립성 인지) 관련 문항(신규) ····· 55
표 Ⅲ-15 주관적 자립 수준(독립성 인지) 관련 문항(신규) ····· 56
표 Ⅲ-16 주관적 자립 수준(성인 자각) 관련 문항(신규) ····· 57
표 Ⅲ-17 혼인 관련 문항(기존 문항 수정) ····· 58
표 Ⅲ-18 자녀 관련 문항(기존) ····· 59
표 Ⅲ-19 조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60

표 Ⅲ-20 성인으로서의 자립을 상징하는 것 ····· 62
표 Ⅲ-21 성인으로서의 자립에 중요한 요인(Ⅰ) ····· 63
표 Ⅲ-22 성인으로서의 자립에 중요한 요인(Ⅱ) ····· 65
표 Ⅲ-23 자립 기회의 공평에 대한 인식 ····· 68
표 Ⅲ-24 경제적 자립 수준(일자리) ····· 71
표 Ⅲ-25 경제적 자립 수준(일자리 성취수준) ····· 73
표 Ⅲ-26 경제적 자립 수준(경제적 독립) ····· 76
표 Ⅲ-27 주거 자립 수준(집 소유 및 주거독립) ····· 79
표 Ⅲ-28 주거 자립 성취 수준(주거독립 및 적정 주거 생활 유지) ··· 81
표 Ⅲ-29 주거 자립 성취 수준 비교(주거독립 및 적정 주거 생활 유지) ··· 82
표 Ⅲ-30 관계적 자립 수준(사회적 지원 및 연결망) ····· 83
표 Ⅲ-31 관계적 자립 수준(관계성취) ····· 85
표 Ⅲ-32 주관적 자립 수준(현재가 갖는 의미) ····· 87
표 Ⅲ-33 주관적 자립 수준(독립성 인지 및 성인 자각) ····· 90
표 Ⅲ-34 주관적 자립 수준(독립성 인지) ····· 92
표 Ⅲ-35 전환 사건 경험 여부(혼인 및 자녀) ····· 94
표 Ⅲ-36 주요 종속변수의 기초통계 ····· 106
표 Ⅲ-37 주요 독립변수의 기초통계 ····· 106
표 Ⅲ-38 청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취 차이 ····· 108
표 Ⅲ-39 조사 개요 ····· 110
표 Ⅲ-40 분석자료 현황 ····· 112
표 Ⅲ-41 조사대상 인구학적 특성 ····· 113
표 Ⅲ-42 분석대상자의 니트 상태 ····· 117
표 Ⅲ-43 심리적 자립역량의 변화 (이중차이분석) ····· 122
표 Ⅲ-44 활동상태의 변화 (이중차이분석) ····· 122
표 Ⅲ-45 니트 하위 유형별 상태변화 (이중차이분석) ····· 123
표 Ⅲ-46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현황 분석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126

표 Ⅳ-1 심층면접 개요 ····· 130
표 Ⅳ-2 청년 당사자의 자립 경험 관련 심층면접 질문 프레임 ····· 131
표 Ⅳ-3 청년 당사자 응답 특성 ····· 132
표 Ⅳ-4 청년 면담조사 분석결과 ····· 134
표 Ⅳ-5 성인되기와 자립하기 범주 및 하위범주 ····· 135
표 Ⅳ-6 자립조건과 격차 범주 및 하위범주 ····· 138
표 Ⅳ-7 자립을 실현하기 범주 및 하위범주 ····· 140
표 Ⅳ-8 자립 정책 욕구 범주 및 하위범주 ····· 141

표 Ⅳ-9 성인 이행기 자립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146

표 Ⅴ-1 생애전반기 자립 지원 법률 ····· 153
표 Ⅴ-2「청년기본법」내 자립 관련 조항 ····· 154
표 Ⅴ-3「아동복지법」내 자립 관련 조항 ····· 154
표 Ⅴ-4「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내 자립 관련 조항 ····· 155
표 Ⅴ-5「청소년복지지원법」내 자립 관련 조항 ····· 156
표 Ⅴ-6「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내 자립 관련 조항 ··· 156
표 Ⅴ-7「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내 자립 관련 조항 ····· 157
표 Ⅴ-8「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내 자립 관련 조항 ·· 157
표 Ⅴ-9「장애인복지법」내 자립 관련 조항 ····· 158
표 Ⅴ-10「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내 자립 관련 조항 ····· 159
표 Ⅴ-11「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내 자립 관련 조항 ····· 159
표 Ⅴ-1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내 자립 관련 조항 ····· 160
표 Ⅴ-13 생애전반기 자립 관련 법률의 주요 시사점 ····· 161
표 Ⅴ-14 광역자치단체 청년 기본 조례 (2022년 5월 31일 기준) ·· 162
표 Ⅴ-15「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내 자립 관련 조항 ····· 163
표 Ⅴ-16 청년 자립 지원 관련 조례 (가나다순 정렬) ····· 165
표 Ⅴ-17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청년 자립 관련 과제 (국정과제 90번) ····· 168
표 Ⅴ-18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청년 자립 관련 과제 (국정과제 91번) ····· 169
표 Ⅴ-19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청년 자립 관련 과제 (국정과제 92번) ····· 170
표 Ⅴ-20 중앙행정기관 청년 자립 관련 정책과제(주거 분야) ····· 171
표 Ⅴ-21 중앙행정기관 청년 자립 관련 정책과제(복지·문화 분야) ·· 173
표 Ⅴ-22 중앙행정기관 청년 자립 관련 정책과제(참여·권리 분야) ·· 175
표 Ⅴ-23「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내 '자립' 관련 계획 ····· 177
표 Ⅴ-2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 180
표 Ⅴ-25 청년전용 저리 대출상품 사업대상 및 지원내용 ····· 188
표 Ⅴ-26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 및 혜택 ····· 189

표 Ⅴ-27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관련 국내법 및 공공·민간 정책사례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200

표 Ⅵ-1 참여 대상별 갭이어의 참여 내용 ····· 219
표 Ⅵ-2 갭이어의 유형 ····· 221
표 Ⅵ-3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지원 해외사례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228

표 Ⅶ-1 세부 정책 과제 ····· 248
표 Ⅶ-2 성인 이행기 청년 자립의 법제도적 근거 및 기반 마련 영역의 주요 정책과제 ····· 249
표 Ⅶ-3 생애전반기 아동·청소년·청년 기본법의 자립 지원 근거 마련 과제의 추진사항 ····· 251
표 Ⅶ-4 생애전반기 아동·청소년·청년 정책 기본계획 내 자립 지원 정책 추가 과제의 추진사항 ····· 253
표 Ⅶ-5 성인 이행기 청년 자립 지원 관련 지자체 조례 마련 과제의 추진사항 ····· 254
표 Ⅶ-6 아동·청소년·청년 자립 통합적 지원: 연령 중심에서 욕구 중심으로 과제의 추진사항 ····· 256
표 Ⅶ-7「청년기본법」내 청년정책전달체계 추가(안) ····· 258
표 Ⅶ-8 원스탑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및 자립지원 인력양성 과제의 추진사항 ····· 258
표 Ⅶ-9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권인숙 의원 등 17인, 제2112330호(2021. 8. 31.)) ····· 260
표 Ⅶ-10 성인 이행기 자립 기회의 격차 해소 및 차별 금지 과제의 추진사항 ····· 260
표 Ⅶ-11 성인 이행기 청년의 경제적 자립 지원 영역의 주요 정책과제 ····· 261
표 Ⅶ-1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내 개별가구 규정 변경(안) ····· 263
표 Ⅶ-13 성인 이행기 기초생계 지원: 기초생활보장 개정 및 수급자격 보장 과제의 추진사항 ····· 263
표 Ⅶ-14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전환기 지원: 니트 상태에 대한 지원 과제의 추진사항 ····· 265
표 Ⅶ-15 1인가구 청년을 위한 주거안전 보장 과제의 추진사항 ····· 266
표 Ⅶ-16 성인 이행기 자립 정착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과제의 추진사항 ····· 268

표 Ⅶ-17 성인 이행기 청년의 주거 자립 지원 영역의 주요 정책과제 ····· 269
표 Ⅶ-18 청년매입임대주택 소득자산 기준 및 임대조건 개정(안) ··· 271
표 Ⅶ-19 청년 맞춤형 주거 제공 및 전월세 지원 과제의 추진사항 ·· 271
표 Ⅶ-20 지자체 청년 주거 관련 조례 예시(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 272
표 Ⅶ-21 청년을 위한 주거정보 제공 및 안전 거래 지원 과제의 추진사항 ····· 273
표 Ⅶ-22 1인가구 청년을 위한 주거안전 보장 과제의 추진사항 ····· 274
표 Ⅶ-23 성인 이행기 청년의 관계 자립 지원 영역의 주요 정책과제 ····· 275
표 Ⅶ-24 사회참여 기회 및 커뮤니티 형성 지원 과제의 추진사항 ··· 276
표 Ⅶ-25 사회적 관계를 위한 사회성 증진 역량 지원 과제의 추진사항 ····· 278
표 Ⅶ-26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지원 시스템 마련 과제의 추진사항 ·· 279
표 Ⅶ-27 성인 이행기 청년의 기초자립역량 증진 지원 영역의 주요 정책과제 ····· 280
표 Ⅶ-28 해당 과제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 282
표 Ⅶ-29 나를 찾는 성찰적 시기 지원: 자유학년제, 한국형 갭이어 과제의 추진사항 ····· 282
표 Ⅶ-30 역할 기회 체험을 통한 진로 탐색 기회 제공: 청소년 인턴 과제의 추진사항 ····· 283
표 Ⅶ-31 해당 과제 실현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안) ····· 285
표 Ⅶ-32 해당 과제 실현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안) (계속) ····· 285
표 Ⅶ-33 해당 과제 실현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안) (계속) ····· 286
표 Ⅶ-34 평생교육·훈련을 통한 진로 변경 기회 보장 과제의 추진사항 ····· 286
표 Ⅶ-35 자립취약청년의 특별한 자립 욕구에 대한 대응 (모두를 위한 자립 지원) 영역의 주요 정책과제 ····· 287
표 Ⅶ-36「청년기본법」개정(안) ····· 290
표 Ⅶ-37 장애를 가진 청년을 위한 개인화된 전환 계획수립 및 자립 기회 제공 과제의 추진사항 ····· 290
표 Ⅶ-38「아동복지법 시행령」자립지원 기간 조항 변경(안) ····· 292

표 Ⅷ-39 아동기 가정 밖에서 성장한 청년을 위한 자립 체험 및 자립 정보제공 과제의 추진사항 ····· 292
표 Ⅷ-40 「청소년복지지원법」 내 청소년 부모 지원조항 신설(안) ··· 294
표 Ⅷ-41 돌봄부담이 있는 청년을 위한 돌봄 부담 완화 및 자립 지원 과제의 추진사항 ····· 294
표 Ⅷ-42 해외 입양 청년·이주배경청년의 한국 정착 및 자립 지원의 추진사항 ····· 296
표 Ⅷ-43 성소수자 청소년·청년의 자립 지원의 추진사항 ····· 297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구추진체계 ····· 7
그림 Ⅰ-2 정책추진 방안과 과제 도출 ····· 9
그림 Ⅰ-3 연구 내용 및 방법 흐름도 ····· 16

그림 Ⅱ-1 성인 인식의 주요 요인(연령별 비교, 미국샘플) ····· 21
그림 Ⅱ-2 성인 인식 연령간 차이(미국샘플) ····· 22
그림 Ⅱ-3 고등교육 진학률 추이(1980~2021) ····· 25
그림 Ⅱ-4 남성과 여성의 초혼연령 추이(1990~2021) ····· 25
그림 Ⅱ-5 출산 연령 추이(첫 아이 기준, 2001~2021) ····· 26
그림 Ⅱ-6 주관적 성인 인식 결과(출생연도별) ····· 27
그림 Ⅱ-7 우리나라의 니트 청년 발생 추이(2003~2020) ····· 28
그림 Ⅱ-8 OECD 국가들의 니트 비율(교육수준별 니트 비율 포함) ··· 28
그림 Ⅱ-9 국내 KCI 등재지에서 “청년”과 “자립”을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 나타난 문헌 제목의 주요 단어 빈도의 Word Cloud ····· 31
그림 Ⅱ-10 자립 프레임워크: 조건과 역량 중심 접근의 예 ····· 32

그림 Ⅲ-1 성인으로서의 자립을 상징하는 것 - 전체 ····· 62
그림 Ⅲ-2 성인으로서의 자립에 중요한 요인(Ⅰ) - 전체 ····· 64
그림 Ⅲ-3 성인으로서의 자립에 중요한 요인(Ⅱ) - 전체 ····· 66
그림 Ⅲ-4 성인으로서의 자립에 중요한 요인(Ⅱ) - 연령 ····· 66
그림 Ⅲ-5 성인으로서의 자립에 중요한 요인(Ⅱ) - 일자리형태 ····· 67
그림 Ⅲ-6 성인으로서의 자립에 중요한 요인(Ⅱ) - 혼인상태 ····· 68
그림 Ⅲ-7 자립 기회에 대한 인식 - 전체, 성별, 도시규모, 학력, 부모소득수준 ····· 69
그림 Ⅲ-8 경제적 자립 수준(일자리) - 학력 ····· 72
그림 Ⅲ-9 경제적 자립 수준(일자리) - 부모소득수준 ····· 72
그림 Ⅲ-10 경제적 자립 수준(일자리 성취수준) - 학력 ····· 74
그림 Ⅲ-11 경제적 자립 수준(일자리 성취수준) - 일자리 형태 ····· 75
그림 Ⅲ-12 경제적 자립 수준(일자리 성취수준) - 혼인상태 ····· 75

그림 Ⅲ-13 경제적 자립 수준(경제적 독립) - 부모소득수준 ····· 77
그림 Ⅲ-14 경제적 자립 수준(경제적 독립) - 일자리 형태 ····· 77
그림 Ⅲ-15 주거 자립 수준(집 소유 및 주거독립) - 부모소득수준 ··· 80
그림 Ⅲ-16 주거 자립 수준(집 소유 및 주거독립) - 일자리 형태 ···· 80
그림 Ⅲ-17 관계적 자립 수준(사회적 지원 및 연결망) - 도시규모 ··· 84
그림 Ⅲ-18 관계적 자립 수준(사회적 지원 및 연결망) - 학력 ····· 84
그림 Ⅲ-19 관계적 자립 수준(관계성취) - 일자리형태 ····· 86
그림 Ⅲ-20 주관적 자립 수준(현재가 갖는 의미) - 전체 ····· 88
그림 Ⅲ-21 주관적 자립 수준(현재가 갖는 의미) - 연령 ····· 88
그림 Ⅲ-22 주관적 자립 수준(현재가 갖는 의미) - 부모소득수준 ···· 89
그림 Ⅲ-23 주관적 자립 수준(현재가 갖는 의미) - 혼인상태 ····· 89
그림 Ⅲ-24 주관적 자립 수준(독립성 인지 및 성인 자각) - 일자리형태 · 91
그림 Ⅲ-25 주관적 자립 수준(독립성 인지 및 성인 자각) - 혼인상태 ·· 91
그림 Ⅲ-26 주관적 자립 수준(독립성 인지) - 일자리형태 ····· 93
그림 Ⅲ-27 주관적 자립 수준(독립성 인지) - 혼인상태 ····· 93
그림 Ⅲ-28 전환 사건 경험 여부(혼인 및 자녀) - 부모소득수준 ····· 93
그림 Ⅲ-29 주관적 성인 인식 결과(출생연도별) ····· 95
그림 Ⅲ-30 주관적 성인 인식과 생애주기 과업 성취 간의 상관관계 결과 ····· 96
그림 Ⅲ-31 성인기 지표별 중요성과 성취 정도 비교 ····· 98
그림 Ⅲ-32 출생연도별 성인기 지표(Markers of Adulthood)의 중요성 인식과 성취여부 : ① 부모(양육자)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하게 되는 것 ····· 98
그림 Ⅲ-33 출생연도별 성인기 지표(Markers of Adulthood)의 중요성 인식과 성취여부 : ②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게 되는 것 ····· 99
그림 Ⅲ-34 출생연도별 성인기 지표(Markers of Adulthood)의 중요성 인식과 성취여부 : ③ 부모님(양육자) 집에서 살지 않게 되는 것 ····· 100
그림 Ⅲ-35 출생연도별 성인기 지표(Markers of Adulthood)의 중요성 인식과 성취여부 : ④ 부모님(양육자)으로부터 떨어져 적정한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 ····· 101
그림 Ⅲ-36 출생연도별 성인기 지표(Markers of Adulthood)의 중요성 인식과 성취여부 : ⑤ 다른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것 ····· 102

그림 Ⅲ-37 출생연도별 성인기 지표(Markers of Adulthood)의 중요성 인식과 성취여부 : ⑥ 사람들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 ····· 102
그림 Ⅲ-38 출생연도별 성인기 지표(Markers of Adulthood)의 중요성 인식과 성취여부 : ⑦ 부모와 성인으로서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 103
그림 Ⅲ-39 출생연도별 성인기 지표(Markers of Adulthood)의 중요성 인식과 성취여부 : ⑧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 ····· 104
그림 Ⅲ-40 출생연도별 성인기 지표(Markers of Adulthood)의 중요성 인식과 성취여부 : ⑨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게 되는 것 ····· 104
그림 Ⅲ-41 희망플랜의 사업내용 ····· 109
그림 Ⅲ-42 심리적 자립역량의 변화 (패널의 연도별 평균값 추이) ··· 116
그림 Ⅲ-43 니트상태내에서의 활동변화 (패널의 연도별 평균값 추이) ····· 118
그림 Ⅲ-44 니트상태내에서의 활동변화 (패널의 연도별 평균값 추이) ····· 119

그림 Ⅴ-1 지자체 청년 자립 지원 조례 중 '자립' 관련 Word Tree ·· 166
그림 Ⅴ-2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 179
그림 Ⅴ-3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별 흐름도 ····· 181
그림 Ⅴ-4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방식 ····· 183
그림 Ⅴ-5 청년희망적금 효과(예시) ····· 184
그림 Ⅴ-6 니트 컴퍼니 참여자들이 좋았던 프로그램으로 응답한 결과 ····· 196

그림 Ⅵ-1 핀란드 TE오피스 인터넷 홈페이지 ····· 211
그림 Ⅵ-2 코로나19 상황에서 헬싱키 원스톱안내센터 주간 (2020년 5월 5-11일) 프로그램 안내 ····· 215
그림 Ⅵ-3 헬싱키 원스톱안내센터 전경 ····· 216
그림 Ⅵ-4 헬싱키 원스톱안내센터 상담 모습 ····· 216
그림 Ⅵ-5 갭이어 참여 학생 진로 경로 ····· 220
그림 Ⅵ-6 갭이어 활동 선택 유형 ····· 221
그림 Ⅵ-7 갭이어의 개인적 효과 ····· 222
그림 Ⅵ-8 갭이어의 사회적 효과 ····· 224

그림 Ⅷ-1 제언 도출 과정 ····· 233
그림 Ⅷ-2 연구의 비전, 원칙, 정책 도출 간의 상호 보완적 순환 관계 ·· 234
그림 Ⅷ-3 본 연구의 비전, 원칙, 정책과제 ····· 243
그림 Ⅷ-4 본 연구의 비전, 원칙,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개념도 ····· 246
그림 Ⅷ-5 주관적 성인 인식 결과(출생연도별) ····· 255
그림 Ⅷ-6 니트 청년을 위한 단계적 프로그램 설계(안) ····· 265

#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추진체계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 1 서 론[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自立)의 개념을 정리하고, 양적·질적 연구를 통해 청년기 자립 정책의 틀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 방안 연구」는 3개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연구로, 이번 연구는 3개년 중 2차년도에 해당하는 연구이다. 이 보고서는 '청년의 첫 출발'을 대주제로 하여 1차년도 일자리, 2차년도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3차년도 시민권을 소주제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는 3개년 연구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개별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2)]

성인 이행기가 점차 길어지고 있다. 성인 이행기(transition to adulthood)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transition)되는 시기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이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졌으나 현대사회에서는 경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 시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늘어난 기간으로 인해 새로운 인생 단계로서 아동과 성인 사이의 과도기(transition period)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Arnett, 2000).

성인 이행기의 지연은 선진사회가 경험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시기를 Arnett(2000)는 Emerging Adulthood라 지칭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성인 이행기라 지칭하기도 하고, 신흥 성인기, 성인 도래기 등 다양한 용어로 번역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 습득해야 하는 정보와 기술의 복잡성으로 인해 교육기간이 길어지고, 피임기술의 발달로 혼인 전 연애와 성적 관계(sexual relationship)가 자유로워지며, 이로 인해 결혼연령과 출산연령도 점차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1) 이 장은 유민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신동훈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다.
2) 3개년도 중 1차년도 연구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 김기헌, 배정희, 김창환, 성재민(202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일자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성인으로의 이행 지연이 포착되고 있다. 경제적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한국사회에서 성인 이행기가 길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필연적인 현상이다. 노동시장과 사회구조의 변화가 고등교육 또는 그 이상 수준의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것을 선택에서 필수의 영역으로 이동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민법상 성인 연령인 19세가 지나서도 교육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 되었다. 반드시 대학 교육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에 필요한 자격과 역량을 갖추기 위해 준비하거나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처럼 자립을 위한 준비단계가 요구되면서 자립하지 못하고 의존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만약 자립의 지연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면 이러한 흐름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이행 지연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욕구들에 기능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성인 이행기 지연 정도는 개인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청년의 자립은 사회경제적 불안정성과 함께 누군가에게는 더 어려운 과업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자립 지연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니트(NEETs: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청년 비율은 21%로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특히 대학을 나온 청년들의 니트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사회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곧바로 취업 하지 못하고 니트 상태에 머무는 청년과 취업을 했더라도 이직을 위해 대기하는 청년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점차적으로 청년들이 사회에 나오기 위해 대학을 휴학하고, 졸업을 유예하고, 졸업 후 취업준비(취준)를 하는 등 사회에 진입하는 기간이 지연되고 있으며, 개인이나 집단이 가진 취약성에 의해 지연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성인으로의 첫출발에 대한 지원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성인으로 이행이 지연되면서 전통적으로 가족이 지원해주는 시기로 인식되었던 청년층의 자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것이다. 과거에는 없던 청년수당이나 청년배당 등의 정책은 청년의 자립이 개인이나 가족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제도화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반발도 있다. 단순하게 보면 연령으로서는 성인이 되었는데, 아직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이들을 의존적인 청년으로 묘사하기도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시기의 의존은 자립의 역량을 위해 필수적인 시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 성인 이행기에 대한 지원은 걸음마 수준이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자립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청년의 자립 지원은 소수 청년에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방향은 제시되어 있으나 뚜렷한 방안과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은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자립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 오늘날 성인 이행기 청년들의 자립 조건과 기회는 모두에게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동안 자립 정책은 가장 취약한 사람만을 위한 정책이었다. 자립이란 용어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자립이 어려웠던 대상들, 그래서 가장 사회적 의존성(dependency)이 높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소수집단, 특수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어 나타난 측면이 있다. 자립 정책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주로 빈민, 장애인, 보호대상아동, 위기청소년 등으로 사회적 보호를 벗어나는 과정을 지원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 자립정책의 의미도 빈민의 경우 탈빈곤, 장애인의 경우 탈시설,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보호종료, 위기청소년의 경우 퇴소라는 사건에 대응하는 지원 정책으로써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청년정책이 등장하면서 자립은 청년정책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으로 표현되었으나 아직 제대로 정책이 발전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의 목적(제1조)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이다. 또한, 2021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청년금융생활 지원(제22조)에서만 “청년의 경제적 자립”만 제시하고 있으나, 같은 해 발표된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은 추진방향으로 보편성 확대를 설명하며 “이행 전주기에 걸쳐 모든 청년의 기본적 권리와 기회를 충실히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이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1b: p.6).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은 국가와 사회가 사회 정책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할 영역 혹은 과업이 된 것이다. 하지만 실제 청년정책에 대한 분석에서 자립은 하나의 상징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실제 정책들은 자립이 가장 어려운 청년들에 대한 지원에 머물러 있다. 청년정책에서 자립은 다차원적 영역으로 설계되고, 자립지원이 더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발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청년 자립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양한 상황에 있는 청년 당사자들의 자립 상황을 실증 데이터로 분석하고, 이들의 인식과 경험을 청취하여 분석하고 제시함으로써 자립 정책이 실효성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새로운 전환점에 놓여 있는 청년정책이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세 가지이다. 첫째,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이란 무엇이며 청년 정책에서 보편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개인이 자립을 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지만, 개인에게 자립을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현대사회의 발달로 생애주기와 발달단계는 점차 변화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고정된 틀로서 자립을 설계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되어버릴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정책으로서의 청년정책이 지향해야 할 자립의 개념과 목표를 분명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들의 성인 이행기 자립 상황은 어떠하며, 자립 상태의 격차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현대사회에서 자립의 지연은 사회경제적 발전이 일어난 많은 국가들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며, 이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새로운 단계(emerging adulthood)로 설명된다(Arnett, 2007). 하지만 자립의 지연은 개인이 가진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차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나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의 차이에 기인하기도 한다. 우리사회 역시 가족의 배경에 따른 청년들의 첫출발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더 불안정하고 취약한 계층(precariat)은 자립하기에 더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다양한 청년들의 자립 지연 이유와 개인 간 차이(격차)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청년들의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위한 지원은 누구에게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기존의 자립정책은 주로 비자발적 상황으로 인해 의존성을 벗어난 사람들 혹은 벗어나야 하는 사람들에게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 왔다. 만약 자립의 대상과 욕구가 보편적이라면 청년정책에서는 청년들이 자립을 준비하고, 자립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편적인 자립지원의 틀 안에서 특수한 욕구가 있는 대상들을 위한 심층적인 설계 역시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일종의 자립지원 패키지로서 경제,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차원을 아우르는 자립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청년기 자립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둘째, 청년 자립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및 2차데이터 분석을 시행하며, 셋째, 다양한 상황에 있는 청년들을 면담함으로써 자립 경험과 어려움을 들어보고, 넷째, 국내외 청년 자립 관련 정책들을 검토하며, 다섯째, 청년 자립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제안하였다.

## 2. 연구추진체계

이 연구는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을 연구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양적연구, 질적연구, 정책분석, 해외 사례 조사 등을 시행하였다. 이 연구는 연구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2차 데이터 분석 및 해외 사례 분석에 외부 공동연구원과 집필진을 섭외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I-1 연구인력 및 역할분담**

| 연구진(역할) | 소속 | 담당업무 |
|---|---|---|
| 유민상(연구책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총괄, 설문구성 및 심화 분석, 질적 연구, 정책분석, 정책제언 |
| 신동훈(공동연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적연구 수행 및 분석, 정책분석, 해외 사례 기획, 정책제언 |
| 신영규(공동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해외 자립 지원 사례 |
| 박미희(공동연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이행기 특성 및 자립 요인 심화분석 |
| 김나라(외부집필)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해외 자립 지원 사례 |
| 조양진(연구보조)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자료정리, 행정보조 |

이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과제로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협동연구기관으로 설정하였다. 협동연구기관은 해외사례조사뿐만 아니라 정책연구협의 등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였다.




**그림 I-1 연구추진체계**

## 3. 연구내용

이 연구의 내용은 연구문제에 따라 청년기 자립의 개념을 정리하고, 양적·질적 연구와 국내 법제도 및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청년기 자립 정책의 틀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 1) 연구문제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이란 무엇이며 청년 정책에서 보편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둘째, 청년들의 성인 이행기 자립 상황은 어떠하며, 자립 상태의 격차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셋째, 청년들의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위한 지원은 누구에게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 2) 선행연구 정리를 통한 자립의 개념, 영향요인 정리

이 연구는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에 주목하는 연구로서 자립의 개념과 영향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립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립이 왜 어려워졌는지, 자립의 의미와 양태가 시대별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자립지원이 사회적으로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하였다. 국내 연구는 '자립'과 '독립'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해외 연구는 'independence'를 검색하여 정리하였다.

### 3) 청년 자립의 실태, 변화궤적, 영향요인, 자립 지원 효과 분석

이 연구는 자립의 개념을 측정 수준까지 구체화하고,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통해 청년 자립의 실태, 변화궤적, 영향요인, 욕구수준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양적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자립실태 및 변화궤적, 개인특성별 차이를 보여주고, 질적연구를 통해 자립의 어려움과 욕구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또한 심층분석으로 자립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의 자립 효과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4) 국내외 청년 자립 관련 법, 제도, 프로그램 분석

국내에서 자립 관련 정책은 특별한 욕구가 있는 대상 집단을 중심으로 제도화되어 왔고, 청년정책에서는 경제적 자립에 한정되어 자립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의 법률(조례), 정책들을 분석하여 그동안 자립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분석하고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또한, 해외의 자립 정책인 유럽 청년보장제, 해외의 갭이어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해당 정책이 가지고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 5) 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도출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내용과 시사점을 토대로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청년 자립을 위한 종합적 정책을 설계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정책이 지향해야 할 비전, 원칙, 정책영역, 세부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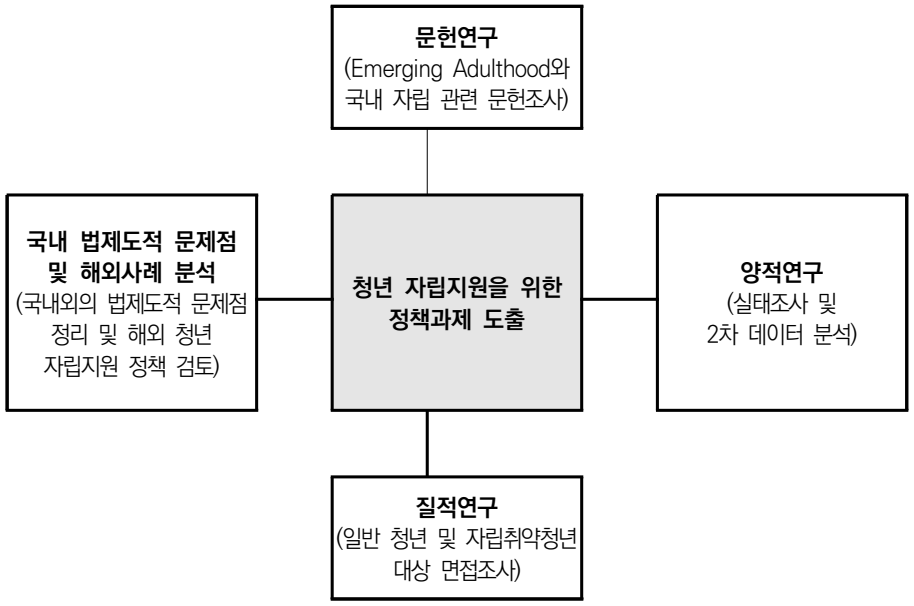



**그림 I-2 정책추진 방안과 과제 도출**

## 4. 연구방법

이 연구는 청년들의 자립실태, 경험과 인식, 영향요인, 관련 국내외 정책 등을 파악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제시하기 위해 문헌연구, 양적연구, 질적연구를 포함한 다음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 1) 문헌연구

문헌연구에서는 청년들의 자립과 관련한 문헌들을 정리하고, 그동안 청년 자립 관련 논의가 이루어진 방향이 무엇이었는지,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하였다. 또한, 국내외에서 청년 자립과 관련해 추진되는 청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 담론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단어의 사용빈도와 관계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 2) 양적 연구

양적 연구에서는 청년의 자립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청년의 사회·경제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과 함께 자립에 대한 인식, 경제, 주거, 관계, 정서 등의 자립 수준, 자립을 위한 영향요인 등을 이해하기 위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조사대상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본틀로 인구주택총조사 집계구를 활용하고 다단계층화집락표집방법이 적용되었으며, 전국 17개 시도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청년 최종 2,059명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가구 개별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성년은 만 18세로 개정되어 시계열 유지를 위해 만 19세가 아닌 만 18세부터 조사를 진행하였고,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가중치를 적용해 분석하였다.

**표 I-2 설문조사 주요 내용**

| 주요 요소 | 내용 |
|---|---|
| 모집단 | 전국의 18세 이상 34세 이하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청년 |
| 표집틀 | 2021년 기준 인구주택총조사(집계구) |
| 조사방법 | Tablet PC를 활용한 개별방문면접조사 |
| 표본수 | 2,059명 |
| 표집방법 | 다단계층화집락표집방법 |
| 조사시기 | 2022년 6월~9월(기준일은 6월 1일) |
| 연구윤리 | NYPI IRB 심의 완료(202206-HR-고유-014) |

구체적인 설문조사 진행 일정은 다음과 같다. 청년의 자립과 관련한 설문 문항 개발 및 기존 문항 조정과정을 거쳤고, 6월 초 약 3주간의 예비조사를 거쳐 조사를 보완하였다. 본조사는 7월 초부터 9월 초까지 약 두 달간 이루어졌다. 9월 이후 가중치를 부여하고 데이터를 클리닝하는 등의 작업을 거쳐 10월 초 설문 데이터 구축이 완료되었다.

**표 I-3 설문조사 진행 세부 일정**

| 내용 | | 일정 |
|---|---|---|
| 설문문항 개발 및 기존문항 수정 | | 3월 ~ 5월 |
| 조사업체 입찰 및 계약 | | 3월 ~ 4월 |
| NYPI IRB 심의 | | 4월 중 |
| 설문조사기간 | 예비조사 | 6월 초 |
| | NYPI IRB 변경 심의 | 6월 말 ~ 7월 초 |
| | 본조사 | 7월 초 ~ 9월 초 |
| 데이터 클리닝 및 가중치 부여 | | 9월 중 |
| 설문 데이터 구축 완료 | | 10월 초 |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유사 청년과제들과 통합조사 형태로 진행되었다. 본 조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정망 체계 구축 방안 연구Ⅱ」 및 「청년종합연구Ⅰ: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과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대표성 있는 사례 수를 확보하고자 했다. 특히 「청년종합연구Ⅰ: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은 일부 문항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각 연구의 특징에 맞는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 3) 심화분석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 자료분석, 패널자료분석)

심화분석은 청년들의 자립 특성과 자립취약청년들의 이행기 변화궤적을 살펴보았다. 이는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분석은 청년기 자립 특성 분석으로 본 연구의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직접적으로 객관적, 주관적 자립 특성을 조사한 결과를 통해 어떤 이행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자립 인식이 높은지, 자립에 대한 욕구가 큰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두 번째 분석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의 「희망플랜」 연구 결과를 통해 니트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청년들이 관련 지원을 받았을 때 긍정적 영향을 받아 변화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직접적인 자립에 대한 분석이라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첫출발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실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첫출발 격차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필요한 자립정책지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4) 면접조사

면접조사의 주요 질문은 “청년들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자립의 어려움은 무엇이고, 지원 욕구는 무엇인가?”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에 자립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는 청년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면담하였다. 면접조사에서는 일반 청년뿐만 아니라 니트 청년, 아동양육시설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자립준비청년, 우울증을 경험한 청년, 장애를 가진 청년 등 24명의 청년들을 면담하였다. 참여자 모집은 연구자의 개인 네트워크 및 청년 관련 지원기관의 소개를 통한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통해 진행하고, 일반 청년 10인 이내 개별면접 및 FGI, 특수한 욕구를 가진 대상 집단별 2~3명씩 10인 이내를 섭외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일부 참여자의 경우 2회기 이상 면접을 통해 라포(rapport) 형성한 후 면담하였다.

이러한 면접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상황 속에 있는 청년들의 공통의 자립 경험을 파악하고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욕구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통하여 “모든 청년을 위한 자립 정책”이라는 것이 구성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표 I-4 심층면접 주요 내용**

| 주요 요소 | 내 용 |
|---|---|
| 면담참여자 수 | • 19~34세 청년 24명<br>• 자립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는 청년 10명 (청년 현장활동가 포함)<br>• 자립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는 특수한 욕구가 있는 청년 14명 (니트 청년, 아동기 양육시설에서 자라난 자립준비청년, 장애가 있는 청년 등) |
| 면담방식<br>(공식성 정도, 구조화 정도, 개별 혹은 집단면담) | • 반구조화된 면접방식<br>• 개별면담 & 초점집단면접 |
| 면담 시간 및 횟수 | • 개별면접 1인당 90분씩 진행 1~2회 진행<br>• 초점집단면접 1그룹 당 90분씩 1회 진행 |
| 면담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 • 면접 시 녹음하여 전사 |
| 참여자 모집 방법 | • 연구자의 개인 네트워크 활용<br>• 청년 자립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의 소개 통해 눈덩이 표집으로 모집<br>•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면접수당 지급 |
| 면담자 및 분석 | • 연구진 |
| 연구윤리 | • NYPI IRB 심의 완료(202206-HR-고유-014) |

### 5) 전문가 자문

이 연구는 청년 자립이라는 주제에 관한 전문가 자문,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에 대한 전문가 자문, 정책과제 도출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시행하였다. ① 청년 자립이라는 주제에 대한 자문은 성인 진입기(emerging adulthood) 논의에서부터 출발하므로 인간발달(human development)학, 사회학, 경제학,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시행하였다. ②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는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의 측정도구 관련 자문을 시행하고, 질적연구의 방법뿐만 아니라 특별한 욕구를 가진 대상과 관련한 학문적 배경 및 면접 방법에 대한 자문을 함께 시행하였다. ③ 정책과제 도출의 타당성과 관련한 전문가 자문은 현재의 청년정책의 맥락에서 자립지원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 I-5 자문회의 진행 내용**

| 횟수 | 자문영역 | 자문진 |
|---|---|---|
| 2 | • 청년 자립의 개념과 이론 관련 자문 | ○ 학계 6명<br>○ 현장전문가 및 활동가 4명 |
| 3 | • (양적 연구)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 측정도구 개발 관련 자문<br>• (질적 연구) 질적연구의 분석, 특수한 욕구를 가진 청년에 대한 이해 및 면접 관련 자문 | |
| 2 | • 정책과제 도출의 타당성 관련 자문 | |

### 6) 콜로키움 개최

자립에 관한 논의는 매우 철학적인 부분에서부터 사업적인 면까지 연결되어 있다. 이 연구는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두 번의 콜로키움(colloquium)을 진행하였다. 콜로키움은 자립 관련 활동을 하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자립의 의미와 필요성, 자립 지원 사례 등에 대해 들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표 I-6 콜로키움 진행 결과**

| 차수 | 콜로키움 주제 | 발표자 | 비고 |
|---|---|---|---|
| 1 |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지원 1: 니트컴퍼니의 사례 | 니트 생활자<br>박은미, 전성신 대표 | 웨비나 |
| 2 |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지원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플랜의 사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박미희 박사 | 웨비나 |

### 7) 포럼 개최

포럼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공동주최로 제14차, 제17차 청년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청년 자립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 포럼은 '니트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Ⅰ, Ⅱ' 라는 주제로 개최되어, 성인 이행기 청년의 경제적 자립 지원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정책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 8)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이 연구는 통합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연구내용이 정책적으로 실현 가능한지에 관해 논의하였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담당자들과 업무협의를 하여 정책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특히 여성가족부와는 2022년 하반기 발표될 후기청소년 지원 대책에 본 연구의 정책제언 일부를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여 정책 기여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고용노동부와는 8월 정책연구실무협의회에 이어 10월에 2차 협의회를 개최하여 2023년 개편될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표 I-7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결과**

| 차수 | 주요내용 | 관련 부처 | 개최시기 |
|---|---|---|---|
| 1차 | 경제적 자립 지원 방안 논의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2022.8 |
| 2차 | 주거 자립 지원 방안 논의 | 국토교통부 | 2022.8 |
| 3차 | 후기 청소년 자립 지원 정책 마련 논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2022.9 |
| 4차 | 경제적 자립 지원 방안 논의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2022.10 |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 내용 및 방법을 흐름도로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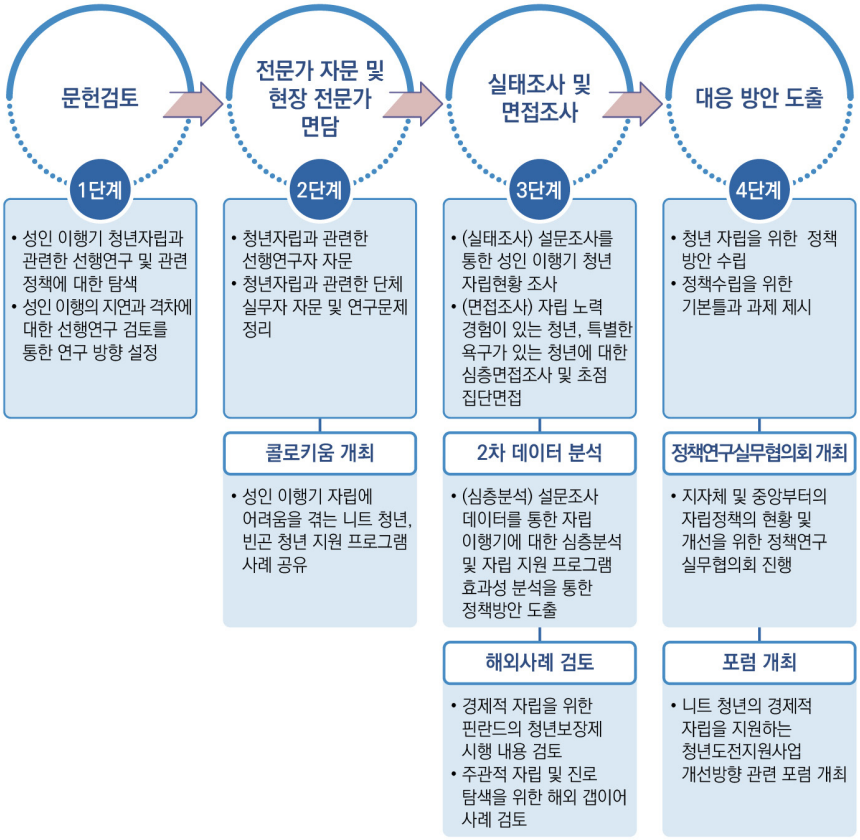



**그림 I-3 연구 내용 및 방법 흐름도**

다음 장부터는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소개하고,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결과를 보고할 것이다. 또한 국내의 관련법과 정책 현황, 민간 사례, 해외 사례 등에 대해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이후 종합적으로 성인 이행기 청년의 상황에 기반하여 성인 이행기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제언한다.

# 제2장 이론적 배경

1. 개요
2. 새로운 성인기의 출현과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현황
3. 성인 이행기 청년 자립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4.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개념 및 정의에 관한 재검토
5. 요약 및 시사점

# 2 이론적 배경[3)]

## 1. 개요

우리 사회에서 "성인 연령이 되었지만 성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성인이라는 자각을 완전히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누군가를 이를 사회문제로 보고 의존적인 청년들에 대한 우려를 늘어놓지만, 이러한 현상은 선진사회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로서 안정적인 직업을 위해 오랜 교육을 받고 직업생활을 해야하는 고도화된 현대사회의 특성 중 하나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교육기간이 늘어나고, 취업 연령도 늦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연령도 과거에 비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과거 '성인기'라 불렀던 시기는 온전한 성인기로 부르기 어렵게 되었다. Arnett(2000)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새로운 단계가 출현했다고 보았고 이를 새로운 성인기 혹은 성인 진입기(emerging adulthood)라 불렀다.[4)]

새로운 성인기의 출현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transition)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이행기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기 혹은 과도기를 의미하는데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면서 아동기의 의존적인 특성과 성인기의 독립적인 특성이 비교적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출생을 기점으로 달력상 나이를 세는 역연령(chronological age)은 한 개인이 법적으로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것만으로 이 사람이 실제 성인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지는 못한다. 달력상의 나이는 하나의 시작시점만 보여줄 뿐, 과업을 달성하는 시기는 개인마다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성인 이행기 혹은 생애과정의 탈표준화(남춘호, 남궁명희, 2012) 혹은 다양화(이상직,

3) 이 장은 유민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다.

4) Emerging Adulthood는 연구자에 따라 신흥성인기, 성인도래기, 성인도래청년기, 성인진입기, 성인발현기, 발현성인기, 성인 이행기, 성인모색기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된다. 이 연구는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Emerging Adulthood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새로운 성인기 혹은 성인 진입기(emerging adulthood)'라고 표기하였다.

2022)가 나타난 것이다.

성인 이행기가 길어지면서 사회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새로운 성인기의 탄생과 성인 이행기의 지연이 현상적으로 관찰되면서 실제 청년들의 성인 이행기 욕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법과 제도들이 성인 이행기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점은 성인기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지원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분석하기 위해 '자립'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자립이라는 개념은 우리말로 '스스로 서기' 혹은 '홀로서기'라 할 수 있는데, 성인기 이행의 어려움은 이러한 자립의 어려움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우리는 성인 이행기에 있는 청년의 자립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성인 이행기의 지연을 지원해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새로운 성인기(emerging adulthood)의 개념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에 적용해보고, 성인 이행기에 관찰되는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에서 청년기 자립을 연구한 문헌을 체계적 문헌 고찰(systematic literature review) 방식을 통해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자립 관련 문헌들의 함의와 시사점에 대해 정리하였다.

## 2. 새로운 성인기의 출현과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현황

### 1) 새로운 성인기 혹은 성인 진입기(emerging adulthood)

성인 이행기(transition period to adulthood)란 청소년에서 성인으로의 전환 시기를 의미한다. Arnett(2000)는 이 시기를 새로운 성인기 혹은 성인 진입기(emerging adulthood)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이 시기는 과거에 비해 10대 청소년에서 20대 성인으로의 전환이 늦어지면서 새롭게 출현한 발달 단계를 의미한다. 이 시기는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와는 구분되는 특성이 있으며, 사회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Arnett, 2000). 그에 따르면 새로운 성인기 혹은 성인 진입기(emerging adulthood)는 교육 기간의 증가, 혼인 연령의 증가, 부모가 되는 시기의 증가 등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줄 수 있는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 하에서 존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면서 교육을 받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고, 결혼 시기와 출산 시기가 함께 늦춰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청년기를 성인 이행기로 표현한다.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전환되는

시기(transition period)와 발달단계로서의 시기(emerging adulthood)를 모두 "성인 이행기"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행(移行)은 '다른 상태로 옮아감'을 의미하는 한자어로 유의어로는 변천, 변화, 움직임 등이 있다. 이행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transition)된다는 의미에서, 발달단계로서 아동기와 성인기 중간에서 변화되는 시기라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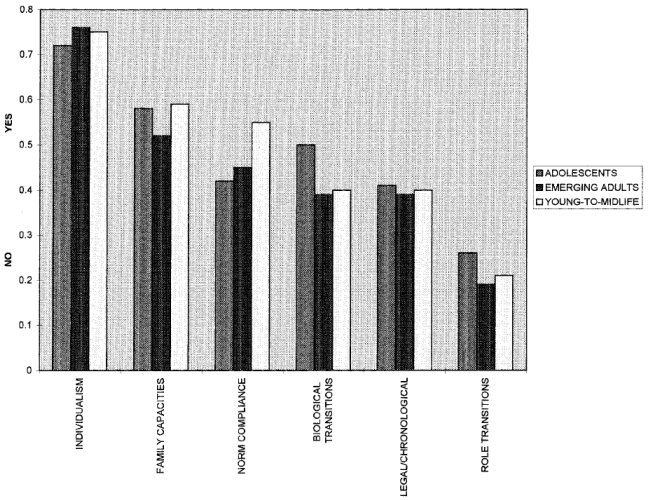



**그림 II-1 성인 인식의 주요 요인(연령별 비교, 미국샘플)**

* 출처: Arnett, J. J. (2001). Conceptions of the transition to adulthood: Perspectives from adolescence through midlife.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8(2), 133-143.

이 시기는 새로운 단계로 표현할 정도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연령이나 전환사건(결혼, 출산 등)을 통해 성인이 되었다고 보았다면 현재는 꼭 그렇지도 않다. 개인이 달력상의 연령이 성년에 도달했다고 하여 성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Arnett(2001)의 미국 청소년, 청년, 중년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이 성인의 특성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 성인 인식 요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책임성을 가지고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역할전환(role transition)이 성인 인식에 가장 작은 영향을 미쳤고, 이는 청소년, 청년, 성인 모두 동일했다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개인의 내적 특성 혹은 주관적인 인식이 성인기로의 변화

(transition to adulthood)에 더 핵심적이며, 전통적인 연령 도달이나 역할 변화는 주변적인 지위로 물러나고 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개인의 '성인됨(being an adult)'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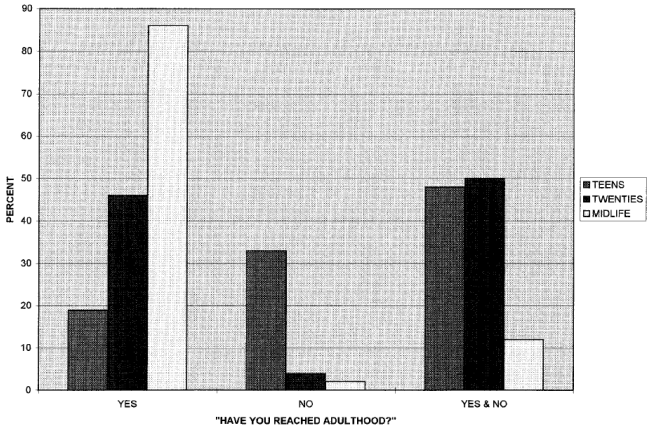



Fig. 2. Responses to question, "Do you feel that you have reached adulthood?"

**그림 II-2 성인 인식 연령간 차이(미국샘플)**

* 출처: Arnett, J. J. (2001). Conceptions of the transition to adulthood: Perspectives from adolescence through midlife.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8(2), 133-143.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일 수 있지만, 청년 개인에게는 성인됨을 하나의 기준으로만 확실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되고 있다. Arnett(2001)의 샘플을 보면 성인이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10대(13~19세)는 20% 내외, 20대(20~29세)는 45% 내외, 30대 이상(30~55세)은 85% 내외로 응답한 것을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결과는 새로운 성인기 혹은 성인 진입기(emerging adulthood)에 있는 20대는 누군가는 성인기에 도달했다고 이야기했지만, 누군가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아니라고 응답한 사람이 30대 이상과 엇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나이 대는 자신이 성인인지 묻는 질문에 혼란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어찌보면 이러한 혼란은 매우 정상적인 혼란상태일지도 모른다.

### 2) 새로운 성인기 혹은 성인 진입기(emerging adulthood)의 자립 지원

이 연구에서 성인 이행기는 성인으로의 전환 시기(transition period to adulthood)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기를 청년기로 보아 「청년기본법」에서 법적으로 19세부터 34세까지로 규정하였으나, 현대 사회에서의 개인의 삶의 점차적으로 탈표준화 되고 있으므로 성인 이행기는 이 시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특정 연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청년정책의 출발 역시 성인 진입기의 출현과 관련이 있다. 과거에 비해 노동시장 진입과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불안정하고 의존적인 시기가 길어지게 되었고, 가정의 배경에 따라 이 의존적인 시기의 투자와 그로 인한 성과가 달라졌다. 이와 함께 직업을 갖기 어려워진 청년들이 니트 상태에 머무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청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사회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회문제화 된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주로 가족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안정한 청년들은 가족 배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서 이런 불안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성인 이행기의 청년정책은 다양한 차원에서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으나, 아직은 지원의 시기(timing)와 영역(domain)이 매우 제한적이며 체계적이지 않다. 특히 보편적 권리로서의 청년의 자립 지원은 상징적인 어구로만 남아 있다. 청년정책의 출발을 성인 진입기의 지연과 불안정에 대한 대처로 본다면, 청년정책의 초점 역시 청년들의 자립 역량을 증진시키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성인 이행기 청년에 대한 자립 지원은 가족의 역할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의 경우 이는 애초부터 사회 정책의 영역에 안에 있었으며 청년을 독립된 개인으로 다루고 있다. Chevalier(2016)는 복지국가별로 청년정책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복지국가 체제(regime)별로 청년정책이 다르게 설계되어 있었다. 이는 비단 청년정책의 제도 혹은 프로그램 수준의 논의라기보다는 복지국가 체제(regime)에 따른 논의일 수 있다. 즉, 청년 개인을 지원하는 것은 노동시장정책, 교육정책, 주거정책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제도 수급권 등을 통해서도 발현된다. 따라서 청년이 개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가는 한 사회에서 가족, 시장, 국가가 상호 교차적으로 제공하는 복지 공급(welfare provision)의 양상을 통해 나타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요컨대 청소년에서 성인으로서의 전환 시기의 성인 진입기는 교육 기간, 결혼 연령,

자녀를 갖게 되는 연령이 늦춰지면서 발생하는 문화적 영향을 받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불안정하고 의존적인 시기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의 지원을 통해 성장하는 시기이나 가족 배경에 따른 삶의 질과 성과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정책적 지원 욕구가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청년정책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이미 유럽의 일부 복지 체제에서는 청년을 가정에서의 의존적인 대상이 아닌 독립적인 개인으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가족에서의 지원에서 더 나아가 시장과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을 보편적이고 포용적으로 지원해주는 변화가 필요하다.

### 3) 우리나라 성인 이행기 청년 관련 사회 지표: 새로운 성인기의 출현[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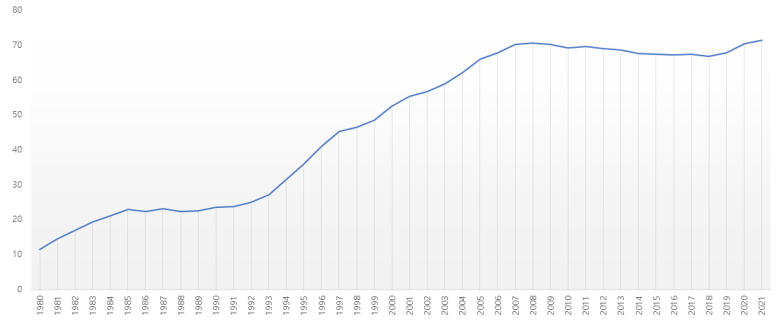
Arnett(2000)는 새로운 성인기 혹은 성인 진입기(emerging adulthood)는 교육 기간의 증가, 혼인 연령의 증가, 부모가 되는 시기가 늦어지는 것 등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줄 수 있는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 하에서 존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회지표를 검토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성인기 혹은 성인 진입기(emerging adulthood)가 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진학률, 혼인 연령(초혼 연령), 출산 연령(첫 아이 출산 연령) 등을 살펴보고 과거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Artnett(2000)는 새로운 성인기 혹은 성인 진입기(emerging adulthood)의 특성으로 성인 인식의 혼란을 보여주는데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이와 유사한 패턴이 나오고 있음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성인 이행기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회경제적 상황의 악화로 인해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길어진 성인 이행기의 자립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정책적 논의를 진행한다.

성인 이행기가 더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지표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교육 진학률을 보면 1980년대에 비해 6배 이상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 진학률은 2000년대 중후반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 과반 이상의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고, 교육기간이 증가하면서 20대 중반까지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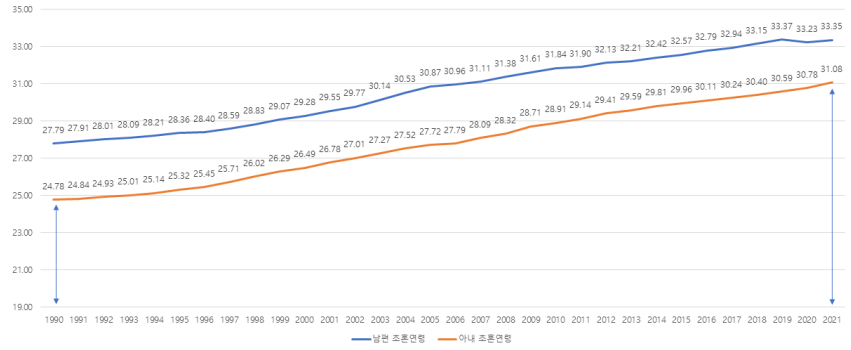
5) 이 자료는 2022년 9월 23일 개최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 비전수립을 위한 제4차 전문가 포럼에서 연구책임자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해당 발표는 본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고 해당 정보를 사사표기 하였다. 해당 발표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유민상(2022). "성인 이행기 청년들의 삶에 대한 인식 변화: Emerging Adulthood의 출현과 자립 지연의 시각에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 비전 수립을 위한 제4차 전문가 포럼 발표자료.

세계로 나가지 않고 교육 및 직업훈련을 받는 것이 보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그림 II-3 고등교육 진학률 추이(198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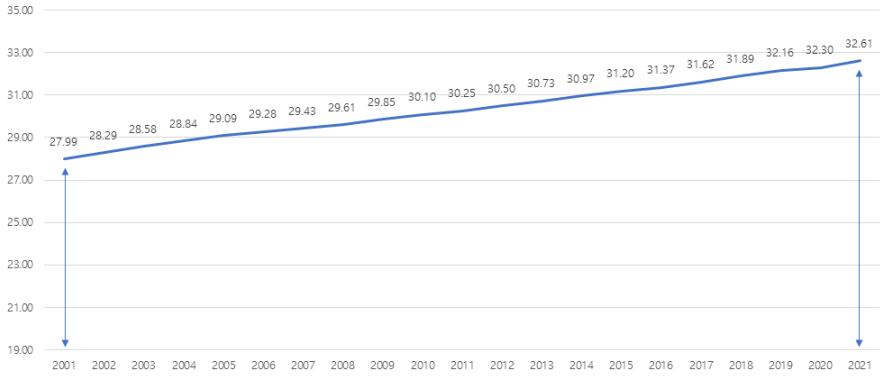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그림 II-4 남성과 여성의 초혼연령 추이(1990~2021)**

교육기간이 늘어나면서 결혼을 하는 시기도 늦어지고 있다. 1990년만 해도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20%대에 불과하였고, 여성들은 평균 24.78세에 결혼하였다. 2021년에는 31세에야 결혼을 한다. 30년 동안에 남성과 여성의 혼인 연령이 각각 6세씩 늘어났다. 과거에 비해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시기가 6년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것은 과거와 비교할수록 더 길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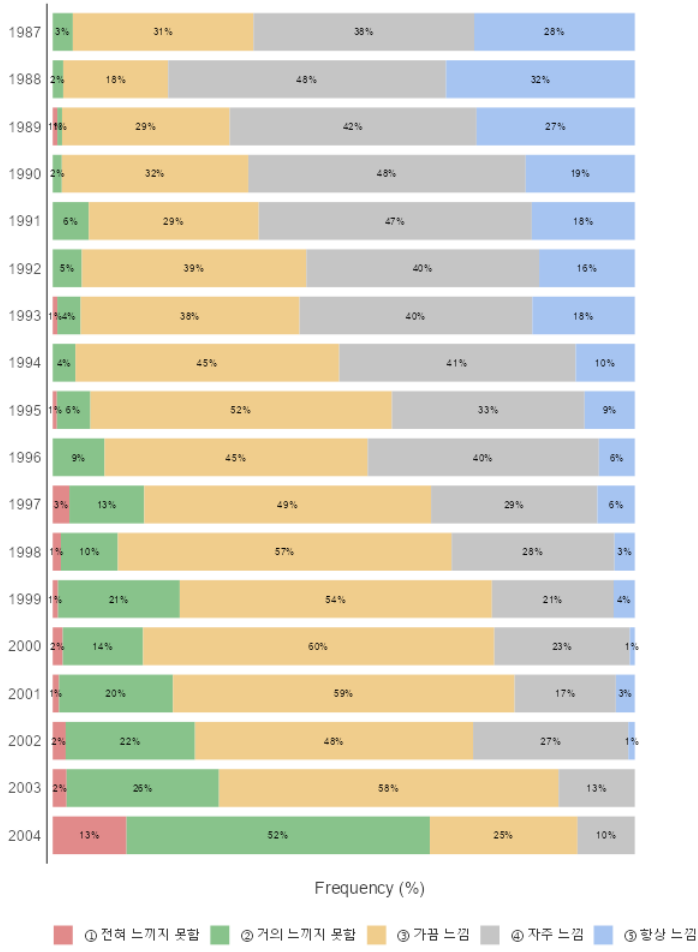
평균 출산 연령은 2001년에 27.99세였으나 2021년에는 32.61세로 4년 이상 늘어났다. 평균 혼인 연령이 31.08세인 것을 감안하면 출산까지 1년 반 정도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것이 첫 아이의 출생인 점을 감안하면 산모의 연령이 후속 출산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 출처: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향조사.

**그림 II-5 출산 연령 추이(첫 아이 기준, 2001~2021)**

이러한 생애기간의 변화는 개인의 주관적 성인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개인들이 일부의 부분에서는 자신이 성인이라 느끼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성인이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성인 연령이 되었지만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는 청년들,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일부 생활상의 도움을 받는 청년들은 자신이 완전히 성인이 되었다는 느낌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반대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만 자신의 의존적이었던 과거에 비해 부모에 대한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관계의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성인이 되었다고 인식할 수도 있다. 이런 단순하지 않은 이유로, 새로운 성인기 혹은 성인 진입기의 청년들은 자신들이 성인이 되었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응답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비교적 명료한 형태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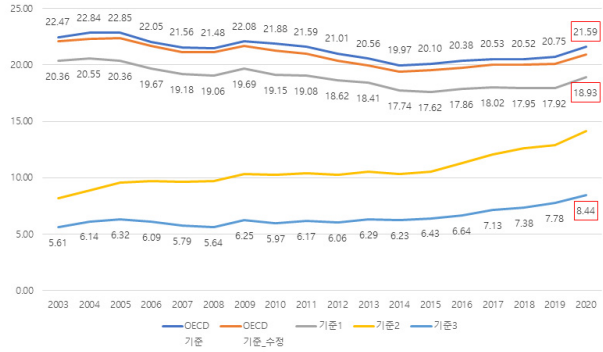

* 출처: 저자작성
* 비고: 3장 심화분석의 연구결과로 본 연구의 원데이터를 분석하였음

**그림 II-6 주관적 성인 인식 결과(출생연도별)**

지금까지 길어진 성인 이행기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교육기간 연장으로 인해 길어진 성인 이행기의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사회진출의 지연의 현상이 동시에 발견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청년들이 니트 상태(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에 머무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바로 취업을 하기보다 취업준비 기간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으로 굳어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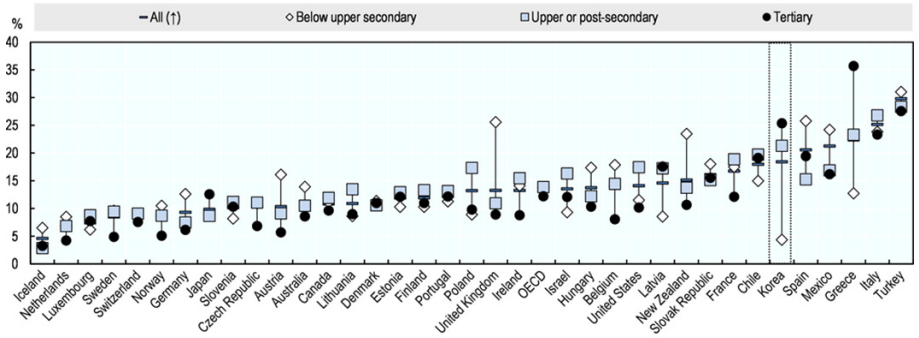
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청년들은 대학에서 졸업유예 제도라는 것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졸업 후의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졸업을 할 수 있음에도 졸업을 하지 않고 취업준비를 하는 것이다. 사회로 진출하는 기간이 지연되면서 대학교육으로 인한 사회진출의 지연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 졸업유예로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만 사실상 니트 상태인 청년들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 | OECD 기준 | OECD 기준 수정 | 한국의 맥락을 반영한 기준 | | |
|---|---|---|---|---|---|
| | | | 기준1 | 기준2 | 기준3 |
| 경제활동인구 | | | | | |
| -실업자 | ○ | ○ | ○ | ○ | ○ |
| 비경제활동인구 | | | | | |
| -정규 교육기관 통학 | ○ | x | x | x | x |
| -임시학원 통학 | ○ | ○ | x | x | x |
|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 | ○ | ○ | x | x | x |
| -육아 | ○ | ○ | ○ | x | x |
| -가사 | ○ | ○ | ○ | x | x |
| -취업 준비 | ○ | ○ | ○ | ○ | x |
| -진학 준비 | ○ | ○ | ○ | ○ | x |
| -군입대 대기 | ○ | ○ | ○ | ○ | x |
| -심신 장애 | ○ | ○ | ○ | ○ | x |
| -쉬었음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출처: 김기헌 외(2021). 니트 등 비경제활동 청년층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세종: 고용노동부

**그림 II-7 우리나라의 니트 청년 발생 추이(2003~2020)**




* 출처: OECD(2019b). Investing in Youth: Korea. Figure 1.5.

**그림 II-8 OECD 국가들의 니트 비율(교육수준별 니트 비율 포함)**

이러한 특성은 우리나라 니트 비율을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높은 대학 진학률로 인하여 대학생의 니트 비율이 다른 교육수준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대학을 졸업한 후 니트 상태를 한 번쯤 거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단기로 니트 상태를 흘려보내는 청년과 장기로 니트 상태에 고정되는 청년들이 있을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새로운 성인기 혹은 성인 진입기(emerging adulthood)가 한국에서도 출현하였음을 보여주는 사회 지표가 있다. 오늘날 청년들이 오랜 교육을 받으며 삶의 일부 영역에서만 성인이 되었다고 느끼며 조금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아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일 수 있다. 또한 길어진 성인 이행기는 좋지 않은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추가적인 지연을 가져다주고 있다. 문제는 이 시기를 개인의 힘이나 가정의 힘으로만 버티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청년기에 새로운 사회적 위험(social risks)과 욕구(needs)가 등장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인 이행기 청년에 대한 지원 욕구, 즉 성인 이행기 자립 지원의 욕구이다. 다음 절들에서는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 3. 성인 이행기 청년 자립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여기서는 국내에서 '청년'과 '자립'이라는 키워드로 발간된 문헌들을 검색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이는 체계적 문헌 고찰(systematic literature review)의 일환으로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되었다. 먼저 2022년 2월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운영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에서 문헌을 검색하였다. 1단계는 상세검색을 통해 KCI 등재지에 수록된 아티클 중 '청년'과 '자립'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검색된 105개를 기록하였고, 2단계는 이 중 연구자가 본 연구 주제와 관련 있는 55개 문헌을 선정하였다. 체계적 문헌 고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 청년의 자립과 관련한 초기 연구는 청년기 자녀의 독립에 대해 분석한 차승은, 한경혜(1999)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청년기 자녀의 경제적 자립도(financial self-reliance)와 분거 경험이 독립성(independence)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보편적인 청년들이 경험하는 자립의 특성에 대해 분석한 특징이 있다.

이후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지 않았으나 2010년대 들어서는 특수한 욕구를 가진 대상들

의 자립에 관한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이를 대상 특성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에 관한 연구가 있다. 정선욱(2015)의 연구는 대학에 진학한 시설 퇴소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고, 안희란, 이용교(2020)는 시설퇴소 청년들의 자립지원교육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정책적으로 '자립준비청년'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향후 이러한 연구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장애를 가진 청년들의 자립 연구가 있다. 이은미, 백은령(2010)의 연구는 지적장애 자녀에 초점을 맞춰 이들의 생애주기별 가족경험 및 지원 욕구에 관해 분석하였고, 오지현(2011)은 청년기 지체 장애 여성의 홀로서기에 대해 연구하면서 일자리 찾기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최윤(2020)은 질적연구방법 중 하나인 포토보이스를 활용하여 중증뇌병변장애 청년의 자립의 의미에 대해 연구하였다. 셋째, 빈곤이나 니트상태 등 취약한 상태의 청년들의 자립에 관한 연구가 있다. 김원정, 류진석(2017)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수급자의 가구분리 결정에 관해 연구하였고, 노현주, 김윤태(2019)는 한국 청년 니트의 특성과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주제별로는 경제적 자립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윤주영, 조민효(2015)는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 경향에 관해 연구하였고, 이준석, 김현주(2016)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제적 자립 전망과 직업가치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조성호(2018)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이성교제에 대한 한일비교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외에도 일본의 니트 관련 정책을 소개하면서 청년과 자립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한 연구들도 있다(김미숙, 2009; 장지은 2010). 이와 같은 연구들을 제목들의 단어 빈도를 보면, 경제적이라는 단어의 활용이 가장 빈번하고, 이를 중심으로 특수한 욕구가 있는 대상들(발달장애 청년, 북한이탈청년, 퇴소청년, 아동양육시설)과 관련한 키워드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외에 자립과 유사한 독립을 주제로 한 연구도 소수 있었다. 이들 연구는 심리적 독립과 관련된 연구(강부자, 최연실, 2016; 전예지, 이재림, 2014)와 주거 독립과 관련한 연구(김진영, 이현정, 2020; 고원식, 김대일, 2019; 노민지, 2022; 김현영, 김태연, 2021)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요컨대 국내 연구들의 청년 자립과 관련된 동향을 보았을 때, 주제로는 경제적 자립, 주요 대상으로는 특수한 욕구를 지닌 청년들에 관한 자립 연구가 주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 출처: 저자작성
* 비고: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CO.KR)의 상세분석에서 KCI 등재지에 수록된 아티클 중 "청년"과 "자립"을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 106개 결과가 검색되었고, 이 중 연구자가 본 주제와 관련이 있는 55개 아티클을 선정하여 NVIVO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의 제목 리스트를 투입하여 작성하였음.

**그림 II-9 국내 KCI 등재지에서 "청년"과 "자립"을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 나타난 문헌 제목의 주요 단어 빈도의 Word Clou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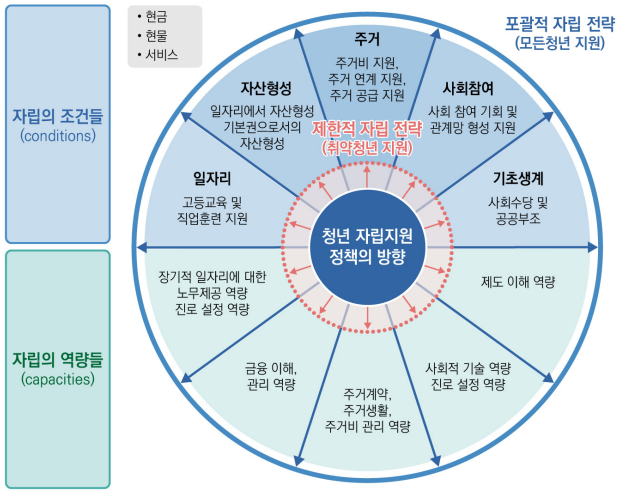
## 4.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개념 및 정의에 관한 재검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성인기로의 전환 지원은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independence)을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청년들의 자립을 종합적으로 보기보다는 특정한 영역(경제영역, 주거영역)에 한정해서 살펴보았거나, 특수한 대상(자립준비청년, 장애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다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인 이행기가 길어지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기의 출현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이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이런 대응은 개인 스스로 혹은 가족의 힘으로 극복하는데 그쳤고, 일부 청년정책들을 통해

대응하고자 했다면 앞으로는 보편적인 시각에서 사회정책적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정책 청년의 자립은 경제상황, 주거상황, 관계특성, 주관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해보면, 청년의 자립을 위해서는 일자리·자산형성 등의 경제적 자립지원, 주택·주거비경감과 같은 주거 지원, 부모로부터의 독립·커뮤니티 형성과 같은 관계 자립 지원, 진로 탐색을 통한 성인 인식·독립성 같은 주관적 자립 지원 등을 고안할 수 있다. 이런 자립 영역들이 전체 청년정책 내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출처: 저자작성

**그림 II-10 자립 프레임워크: 조건과 역량 중심 접근의 예**

중요한 것은 자립지원은 단순히 물질적 조건(material condition)을 배분해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립은 개인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며, 개인의 역량은 생애전반기에 걸쳐 축적되고 증진된다. 이런 역량은 적절한 사회적 기회를 통해 발현될 수 있다(Nussbaum, 2009). 따라서 자립지원은 아동·청소년기부터의 역량 증진에서부터 출발해야 하고 교육적 기회와 환경도 포괄해야 한다. 자립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 5. 요약 및 시사점

지금까지 성인 이행기 청년과 관련한 새로운 성인기 혹은 성인 진입기(emerging adulthood) 관련 내용과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관련 지표의 검토를 통해 한국 성인 이행기 청년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인기 혹은 성인 진입기(emerging adulthood)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 아동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이 짧게 일어났으나 교육기간의 증가, 결혼연령의 지연으로 인해 새로운 시기가 출현하고 있다. 성인 이행기의 지연은 현대 경제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이러한 사회변화를 인식하고 새로운 성인기 혹은 성인 진입기(emerging adulthood)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응하고, 관련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교육, 결혼, 출산 지표들과 주관적 인식 지표들도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인생단계가 생겨났다는 시각을 지지해주고 있다. 성인기로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니트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이행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성인 단계로의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들의 자립 지원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년 자립 관련 연구들은 그동안 어느 정도 축적되었으나 대상과 연구 범위가 한정적인 특성이 있다. 연구 대상별로는 취약청년 대상의 연구(자립준비청년, 장애청년, 빈곤청년, 니트상태 청년), 연구 영역별로는 경제적 자립, 주거 자립, 심리적 자립 등의 연구들이 있었다. 그동안 청년 연구와 정책에서 자립이라는 용어가 매우 한정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정책 개발을 위하여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우산개념으로 확장하고, 세부 영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성인기로의 전환 지원은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independence)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청년의 자립은 경제상황, 주거상황, 관계특성, 주관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청년의 자립을 위해서는 일자리·자산형성 등의 경제적 자립지원, 주택·주거비경감과 같은 주거지원, 부모로부터의 독립·커뮤니티 형성과 같은 관계 자립 지원, 진로 탐색을 통한 성인인식·독립성 같은 주관적 자립 지원 등으로 분류하고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I-1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주요 내용 | | 시사점 |
|---|---|---|
| 새로운 성인기의 출현 | 경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인기 혹은 성인 진입기(emerging adulthood)가 나타나고 있음. 과거 아동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이 짧게 일어났으나 교육기간의 증가, 결혼연령의 지연으로 인해 새로운 시기가 출현하고 있음 | 성인 이행기의 지연은 현대 경제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이러한 사회변화를 인식하고 새로운 성인기 혹은 성인 진입기(emerging adulthood)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 우리나라의 교육, 결혼, 출산 지표들과 주관적 인식 지표들도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인생 단계가 생겨났다는 시각을 지지해주고 있음. | 성인 단계로의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들의 자립 지원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관련 선행연구 검토 | 대상별로는 취약청년 대상의 연구(자립준비청년, 장애청년, 빈곤청년, 니트상태 청년), 영역별로는 경제적 자립, 주거 자립, 심리적 자립 등의 연구들이 있었음 | 그동안 청년 연구와 정책에서 자립이라는 용어가 매우 한정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우산개념으로 확장하고, 세부 영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 청년기 자립의 개념에 대한 정리 | 성인기로의 전환 지원은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independence)을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청년의 자립은 경제상황, 주거상황, 관계특성, 주관적 특성과 관련이 있음. 따라서 청년의 자립을 위해서는 일자리·자산 형성 등의 경제적 자립지원, 주택·주거비경감과 같은 주거 지원, 부모로부터의 독립·커뮤니티 형성과 같은 관계 자립 지원, 진로탐색을 통한 성인 인식·독립성 같은 주관적 자립 지원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은 경제, 주거, 관계면에서 접근할 수 있고, 주관적으로 자립에 대한 인식을 하거나 독립성 인식을 하는 것도 포괄적으로 자립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음. 다만, 개념을 확장하는 과정에서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이론적, 정책적 방향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개념을 정리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 제3장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현황과 실태

1. 개요
2. 조사방법 및 문항구성
3. 설문조사 주요결과
4.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특성: 자립 특성 및 인구사회학적 차이
5.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지원 효과 분석
6. 요약 및 시사점

# 3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현황과 실태[6)]

## 1. 개요

이 연구의 설문조사는 청년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성인기 이행이 지연됨에 따른 문제 양상을 진단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조사 내용으로 인구와 가족, 교육 및 훈련, 경제와 고용, 건강, 가치관, 관계 및 참여 등의 영역에 걸쳐 청년 세대의 이행기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 추진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현재 청년들의 생활실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조사를 수행하고자, 전국 17개 시·도 집계구 리스트에서 추출된 290개 표본 집계구 내 청년층이 있는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각 표본 집계구별로 7명의 청년층을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표본 집계구 내 추출 가구 수를 결정하여 지역적 편향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고려하였다.

## 2. 조사방법 및 문항구성

### 1) 조사개요 및 대상

본 연구는 청년층의 성인 이행기 자립 실태 및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기존 국가승인통계(국가통계 승인번호 402004호)로 실시되던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설문조사에 부가문

6) 이 장은 신동훈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절, 2절, 3절), 유민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절), 박미희 연구위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5절)이 작성하였다.

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획되었다.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대표성 있는 표본의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의미 있는 통계자료를 생산했다(김기헌, 배정희, 김창환, 성재민, 2021). 그러나 청년기본법에 근거한 '청년 삶 실태조사'의 시행에 따른 문항 중복 가능성이 제기되어 이번 2022년에는 국가승인통계가 아닌 형태로 조사를 변경(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해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표본 설계의 변동(조사구 → 집계구)이 있었으나, 객관적이고 대표성 있는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전국 단위 2,000여명 청년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로 진행하였다.

### 2) 조사 절차 및 방법

이번 실태조사는 예비조사 이후 수정·보완을 거쳐 본 조사로 이어졌다. 예비조사는 설문조사에 대한 IRB 심의 이후인 2022년 6월 중순부터 2주간 진행되었다.[7] 총 51부를 조사 대상의 특성(성, 연령, 경활 상태, 혼인여부 등)을 고려해 배포하고 설문조사 소요시간, 문항 난이도, 문항 이동 로직, 개선점 등 조사 전반에 걸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설문자체에 대한 불편함은 크지 않았으나, 소요시간에 대한 부담과 일부 문항 중 용어가 난해하거나 의미와 응답 기준이 불확실해 응답이 어려운 문항이 확인되었다. 이에 해당 문항의 표현을 일부 수정하고 부가적인 설명을 추가하였으며, 관련된 질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면접원 교육(2022년 7월 5일~7월 8일, 13일, 15일)을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7월 13일부터 9월 7일까지 총 10주간 실시되었다. Tablet PC를 활용한 1:1 가구방문 개별면접(face-to-face interview)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유치조사를 병행하였다. 개별방문면접은 조사 목표 가구를 면접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 대상자를 대면 면접하면서 설문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문항 오류를 줄이고 응답의 성실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 가구원 중 만 18~34세에 해당하는 가구원 전체를 조사하기 위해 4~5회 가구 방문 조사 실시.
- 추출된 집계구 내의 전 가구에 대해 접촉현황(contact history)을 기록하고 분석 단계에서 가구 무응답 및 추출률 등을 고려해 산출한 가중치를

7) 이 연구의 양적연구와 질적 연구는 NYPI IRB의 심의를 거쳐 승인 완료하였음 (202206-HR-고유-014)

적용.

- 부득이한 경우 유치조사를 실시하되 회수 시 1차 육안으로 확인 후 곧바로 수정하고, 추후 조사내용 입력 시 발견한 오류는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수정.

### 3) 표본 설계

이번 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청년기본법의 연령기준(19세 이상~34세 이하)을 기본으로 하되 선거 가능 연령(만 18세 이상)을 고려해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일반 국민으로 설정했다. 다만, 조사 여건 상 어려움이 큰 환경에 있는 가구 등을 제외한 일반가구를 조사모집단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에 해당하는 표본 추출 표집틀로 설문조사 계획 단계에서 가용했던 가장 최신의 자료인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집계구 리스트를 활용하였다.

표본크기는 청년층(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2,000명(개인조사)이다. 가구당 평균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성인 수(약 0.53명)와 지역별 평균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성인 수(동부: 0.56명, 읍면부: 0.40명)를 고려하여 각 동부의 표본 집계구에서는 13가구, 읍면부의 표본 집계구에서는 17가구의 표본가구를 추출하도록 설계하였다.

층화 방식은 총 두 단계의 층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행정구역에 따라 서울 및 광역시(7개 지역)와 9개 도 지역을 동 지역 및 읍면 지역(18개)으로 1차 층화(단, 분석 시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두 권역으로 구분하여 통계 작성) 했으며, 세부적으로 서울 및 광역시(7개 지역)와 9개 도 지역의 동 지역에 대해서는 집계구 특성(아파트, 일반집계구)에 따라 세부 층화하였다.

표본배분 방법 역시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각 권역(수도권과 비수도권)별 조사대상 인구 기준의 제곱근비례배분법을 적용하여 290개 표본 집계구를 배분하고, 두 번째로 각 권역에서 세부 층(시도, 동지역, 읍면지역)의 조사대상 인구에 비례하는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여 배분하였다.

표본의 1차 추출단위는 집계구로, 추출은 각 층에서 집계구 내 가구 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으로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2차 추출단위는 가구로, 추출은 각 표본 집계구에서 정해진 표본크기만큼의 가구를 계통추출법으로 추출(지역별 포함할 표본 가구 수는 서로 다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추출된 표본가구

내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가구원 전원을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 4) 설문문항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에 대한 사회인식과 영역별 자립 수준을 측정함으로써 성인기 이행 청년의 자립 현황 및 실태를 이해하고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문항을 수정·보완하고 청년 자립 관련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문항을 국내 정서에 맞도록 재구성해 신규문항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설문을 구성했다.

**표 Ⅲ-1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문항 구성**

| 구분 | 영역 | 하위영역 | 지표 | 출처 | 비고 |
|---|---|---|---|---|---|
| 청년 자립에 대한 사회 인식 | 자립에 대한 상징 | | 성인으로서의 자립을 상징하는 것 |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사회 첫 출발을 상징하는 것'을 묻는 문항을 수정 | 기존 문항 수정·보완 |
| | 사회문화적 인식 | | 성인으로서의 자립에 중요한 요인 | Faas et al.(2020)이 사용한 MoA(Markers of Adulthood) 척도를 번역하고 일부 문항을 국내 정서에 맞게 연구진이 수정·보완 | 신규 |
| | 자립 기회 인식 | | 우리나라 청년들의 자립 기회의 균등에 대한 인식 | 연구진 개발 | 자체 개발 |
| 영역별 자립 수준 | 경제 | 일자리 | 일자리 여부 |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기존문항 | 기존 |
| | | |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 여부 | Faas et al.(2020) MoA(Markers of Adulthood) 척도의 일부 문항 | 신규 |
| | | 경제적 독립 |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지원(금전적 지원) 여부 및 지원 수준 | Manzoni(2016)이 사용한 문항을 연구진이 번역하고 수정·보완 | 신규 |
| | | | 부모님으로부터 재정적 자립 여부 | Faas et al.(2020) MoA(Markers of Adulthood) 척도의 일부 문항 | 신규 |
| | 주거 | 집소유 | 본인 명의의 집 소유 |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기존문항 | 기존 |
| | | 주거독립 | 부모(또는 보호자)와 동거 여부 |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기존문항 | 기존 |
| | | | 부모님 집에서 살지 않게 되었는지 | Faas et al.(2020) MoA(Markers of Adulthood) 척도의 일부 문항 | 신규 |
| | 관계 | 지원 | 사회적 지지 혹은 지원(social support)의 3가지 차원 통합(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정보적 지원) |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기존문항 | 기존 |
| | | 연결망 | 어려울 때 도와줄 친구(가족, 지인) 수 |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기존문항 | 기존 |
| | | 관계성취 | 장기적인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 Faas et al.(2020) MoA(Markers of Adulthood) 척도의 일부 문항 | 신규 |

| 구분 | 영역 | 하위영역 | 지표 | 출처 | 비고 |
|---|---|---|---|---|---|
| | 주관적(정신적) | 성인 이행기가 자신에게 갖는 의미 | 자신에게 현재가 갖는 의미 | Faas et al.(2020)이 사용한 IDEA(Inventory of the Dimensions of Emerging Adulthood)-8 문항을 번역하고 일부 문항을 국내 정서에 맞게 연구진이 수정·보완 | 신규 |
| | | 독립성 인지 | 성인으로서 독립적 수준에 대한 인식 | Manzoni(2016)이 사용한 문항을 연구진이 번역하고 수정·보완 | 신규 |
| | | |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 Faas et al.(2020) MoA(Markers of Adulthood) 척도의 일부 문항 | |
| | | 성인 자각 | 스스로 성인으로 인식하는 정도 | Manzoni(2016)이 사용한 문항을 연구진이 번역하고 수정·보완 | 신규 |
| | 전환 사건 | 혼인 | 혼인여부 및 향후 결혼 계획 |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기존문항을 연구진이 수정·보완 | 기존 문항 수정·보완 |
| | | 자녀 | 자녀여부 및 향후 자녀 계획 |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기존문항 | 기존 |

* 출처: 연구진 자체 작성

(1) 청년 자립에 대한 사회 인식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립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마다 다르고 그 수준도 매우 협소한 것으로부터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것까지 다양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청년 자립에 대한 상징과 자립의 요건으로 중요한 과업에 관해 조사함으로써 청년층에서는 자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먼저 자립을 상징하는 생애사적 사건을 묻는 문항은 기존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사회 첫 출발"의 상징을 확인하는 문항을 수정하여 활용했다. 구체적으로 성인으로서의 자립을 상징하는 생애사적 사건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 또는 직접 작성하도록 했다.

**표 Ⅲ-2 자립에 대한 상징 문항(기존 문항 수정)**

| 구분 | 문항 |
|---|---|
| **원안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문5) 귀하는 성인으로서의 첫 출발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상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1가지만 선택 해 주십시오)<br>① 학교를 졸업하는 것<br>② 첫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br>③ 부모와 타인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br>④ 부모(보호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것<br>⑤ 결혼하는 것<br>⑥ 자녀를 출산하는 것<br>⑦ 주택을 구입하는 것<br>⑧ 성인으로서 권리를 갖게 되는 것 (선거권, 운전면허 등)<br>⑨ 기타(적을 것 : _____) |

| 구분 | 문항 |
|---|---|
| 수정안 | 문5) 귀하는 성인으로서의 자립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상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1가지만 선택 해 주십시오)<br>① 학교를 졸업하는 것<br>② 첫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br>③ 부모와 타인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br>④ 부모(보호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것<br>⑤ 결혼하는 것<br>⑥ 자녀를 출산하는 것<br>⑦ 주택을 구입하는 것<br>⑧ 성인으로서 권리를 갖게 되는 것 (선거권, 운전면허 등)<br>⑨ 기타(적을 것 : _____) |

* 출처: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기존문항.

다음으로 자립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은 성인기 이행과 관련한 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Markers of Adulthood(MoA) 척도를 번역하고 일부 문항을 국내 정서에 맞게 연구진이 수정·보완해 측정하였다. MoA 척도는 성인기 이행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Arnett(1994)가 혼인, 자녀 출산, 주거 독립 등의 생애사건을 중심으로 인구·심리·사회적 요인 38가지로 구성한 이래 여러 학자들에 의해 검증받고 재구성 되었다(Norman, Grahe, & Lee, 2021). 재구성된 척도는 대체로 성인으로 인정받는 데 주요하고 대표적인 능력, 사건, 행동양식 등을 포함하며, 문항 역시 38-40개 정도로 개인, 가족, 규범, 법적·생물학적·생애사적 변화 등의 영역을 망라한다.

이 연구에서는 Arnett(2001)가 제안한 MoA 척도에서 20개 문항을 선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Faas et al.(2018)의 문항을 바탕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이 중 경제, 주거, 관계, 주관적 자립 영역을 대표하는 몇 가지의 문항은 국내의 정서를 반영해서 번역했고, 각각에 대한 달성 수준을 함께 조사하여 객관적 상황과 주관적 인식 간의 괴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외 다른 문항 역시 국내의 정서를 반영하되 최대한 MoA 본 문항에서 의도한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과 방향으로 번역해 조사하였다. 각 문항은 대략 네 가지 영역(관계적 성숙, 역할 전환, 규범 준수, 독립성)으로 구분되며, 설문 결과를 통해 개인의 배경에 따른 자립에 대한 인식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 표 Ⅲ-3 자립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신규)

**구분: 원안**

**문항**

Q) Degree this is an important milestone in achieving adulthood

| 항목 | not | slightly | quite | very |
|---|---|---|---|---|
| (1) Financially independent | ① | ② | ③ | ④ |
| (2) No longer living in parents' house | ① | ② | ③ | ④ |
| (3) Finished with education | ① | ② | ③ | ④ |
| (4) Married | ① | ② | ③ | ④ |
| (5) Have at least one child | ① | ② | ③ | ④ |
| (6) Settled into a long-term career | ① | ② | ③ | ④ |
| (7) Avoid becoming drunk | ① | ② | ③ | ④ |
| (8) Avoid illegal drugs | ① | ② | ③ | ④ |
| (9) Use contraception if sexually active and not trying to conceive a child | ① | ② | ③ | ④ |
| (10) Committed to long-term love relationship | ① | ② | ③ | ④ |
| (11) Make independent decisions | ① | ② | ③ | ④ |
| (12) Become capable of supporting a family financially | ① | ② | ③ | ④ |
| (13) Become capable of caring for children | ① | ② | ③ | ④ |
| (14) Accept responsibility for your actions | ① | ② | ③ | ④ |
| (15) Be employed full time | ① | ② | ③ | ④ |
| (16) Avoid drunk driving | ① | ② | ③ | ④ |
| (17) Establish a relationship with parents as an equal adult | ① | ② | ③ | ④ |
| (18) Learn always to have good control of your emotions | ① | ② | ③ | ④ |
| (19) Become less self-oriented, develop greater consideration for others | ① | ② | ③ | ④ |
| (20) Capable of supporting parents financially | ① | ② | ③ | ④ |

**구분: 수정안**

문95) 귀하는 성인이 되는 이정표로서, 다음의 사항들이 각각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귀하께서는 해당 사항을 얼마나 성취하셨습니까?

| 항목 | 중요도 | | | | 성취수준 | | | |
|---|---|---|---|---|---|---|---|---|
| | 전혀 중요하지 않음 | 별로 중요하지 않음 | 약간 중요함 | 매우 중요함 | 전혀 성취하지 못함 | 거의 성취하지 못함 | 어느 정도 성취함 | 완벽히 성취함 |
| (1) 부모(양육자)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하게 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2)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게 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3) 부모님(양육자) 집에서 살지 않게 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4) 부모님(양육자)으로부터 떨어져 적정한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5) 다른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6) 사람들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7) 부모와 성인으로서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8)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9)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게 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구분 | 문항 |
|---|---|

문96) 귀하는 성인이 되는 이정표로서, 다음의 사항들이 각각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항목 | 중요도 | | | |
|---|---|---|---|---|
| | 전혀 중요하지 않음 | 별로 중요하지 않음 | 약간 중요함 | 매우 중요함 |
| (1) 교육을 끝마치는 것(학교졸업 등) | ① | ② | ③ | ④ |
| (2) 결혼을 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 (3) 한 명 이상의 자녀를 갖는 것 | ① | ② | ③ | ④ |
| (4)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직업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서는 것 | ① | ② | ③ | ④ |
| (5) 술에 만취하는 것을 자제할 수 있게 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 (6) 불법적 약물사용(마약 등)을 하지 않는 것 | ① | ② | ③ | ④ |
| (7) 성관계 시 피임을 하는 것 (일부러 자녀를 가지려 하지 않을 경우) | ① | ② | ③ | ④ |
| (8) 오랜 기간 연인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 (9)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능력을 갖추는 것 | ① | ② | ③ | ④ |
| (10)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 ① | ② | ③ | ④ |
| (11) 정규 일자리를 갖는 것 (전일제 혹은 풀타임 근로) | ① | ② | ③ | ④ |
| (12)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 | ① | ② | ③ | ④ |
| (13) 스스로의 감정에 대해 언제나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 | ① | ② | ③ | ④ |
| (14) 자기중심적 사고를 덜 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키우는 것 | ① | ② | ③ | ④ |
| (15) 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 ① | ② | ③ | ④ |

* 출처: Faas et al (2018). Emerging adulthood MoA/IDEA-8 scale characteristics from multiple institutions. *Emerging Adulthood, 8*(4), 259-269.

마지막으로 연구진이 개발한 문항으로 자립 기회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측정하였다. 성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지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물어봄으로써 청년층 내 자립 기회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인식의 차이는 무엇으로 설명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Ⅲ-4 자립 기회에 대한 인식(신규)**

<table>
<tr><th>구분</th><th>문항</th></tr>
<tr><td>소속감</td><td>
문6)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에게 성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br>(여기서 자립이란 성인으로서 독립적으로 본인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br>
① 전혀 그렇지 않다 ┐<br>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문6-1로 이동<br>
③ 그런 편이다 ┐<br>
④ 매우 그렇다 ┘ ➡ 문7로 이동<br><br>
문6-1) (자립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다음 요인들이 자립기회의 차이를 만드는데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table>
<tr><th>문 항</th><th>전혀 중요하지 않음</th><th>거의 중요하지 않은 편임</th><th>보통임</th><th>약간 중요한 편임</th><th>매우 중요함</th></tr>
<tr><td>(1) 운(luck)</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2) 성별</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3) 사는 지역(대도시, 수도권, 농어촌 등)</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4) 학력</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5) 부모의 소득과 자산 (재력, 부동산 등)</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6) 부모의 권력과 사회적 지위 (직업, 명성 등)</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able>
</td></tr>
</table>

* 출처: 연구진 자체개발.

(2) 영역별 자립 수준

이 연구에서는 청년의 자립을 경제, 주거, 관계, 주관적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객관적·주관적 상태를 분석함으로써 자립의 다차원적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생애사적 관점에서 성인기 주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혼인 여부와 자녀 유무를 파악해 자립과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했다. 영역별 자립 수준과 생애사건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문항을 활용하거나, 선행연구의 문항을 수정·보완해 설문에 포함하였다.

① 경제 자립

경제 자립은 세부적으로 크게 일자리와 경제적 독립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지난 한 주간)경제활동 여부를 묻는 문항을 비롯해 일자리에서의 종사상 지위, 고용형태, 근로시간 유형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조사하였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일자리와 관련한 문항을 유지함으로써 청년들의 객관적인 경제 자립 상태를 측정했다.

**표 Ⅲ-5 경제 자립 수준(일자리) 관련 문항(기존)**

| 구분 | 문항 |
|---|---|
| 원안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문45) 귀하는 지난 주(2022년 5월25일~5월31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셨습니까?<br>☞ 돈을 받지 않고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 한 경우도'일을 하였음'입니다.<br>① 일을 하였음 ② 휴가 및 일시 휴직 ➡ 문45-1로 이동<br>③ 일을 하지 않았음 ➡ 문46로 이동<br>문49-1) (문49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귀하는 지난주에 총 몇 개의 일자리에서 일을 하였거나 휴가·일시휴직 상태였습니까? (투잡, 쓰리잡 등 동시에 갖고 있는 일자리의 개수를 의미함)<br>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이상<br>※ 현재 일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일자리가 있는 경우 (문45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 응답해 주십시오.<br>문50) 다음은 지난주(2022년 5월25일~5월31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 상태였던 현재 일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br>☞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지난주에 가장 많은 시간동안 일을 한 일자리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동일한 경우 임금이 많은 일자리, 시간과 임금이 동일한 경우 최근에 시작한 일자리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br>☞ 사업체란 기업체보다 작은 단위의 개념으로 조사대상자가 직접 일하고 있는 직장을 의미함. 예) ○○은행 △△동 지점에 근무하는 경우, 기업체인 ○○은행 전 사원 수 15,000명 기준이 아닌 △△동 지점의 인원 수 20명을 기준으로 응답 |

| 구분 | 내용 | |
|---|---|---|
| (3) 종사상 지위 | ① 임금 근로자 | ② 비임금 근로자 |
| (4) 고용형태 | ① 정규직<br>② 비정규직 | 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br>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br>③ 무급가족종사자 |
| (5) 근로시간 유형 | ① 전일제 ② 시간제 | |

※ 표의 간명성을 위해 인접 문항 제시 생략

* 출처: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기존문항.

안정적인 일자리는 경제적인 자립의 달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경제 자립과 직결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를 파악하고자 여기서는 자립 관련 핵심 요건 달성 수준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Faas et al.(2018)이 활용한 MoA 문항 중 일부를 재구성하여 영역별 성취 수준을 물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게 되었는지 묻고 성취수준을 응답하도록 구성했다.

**표 Ⅲ-6 경제 자립 수준(일자리) 관련 문항(신규)**

**원안**

Q) Degree this is an important milestone in achieving adulthood

| 항목 | not | slightly | quite | very |
|---|---|---|---|---|
| (1) Financially independent | ① | ② | ③ | ④ |
| (2) No longer living in parents' house | ① | ② | ③ | ④ |
| (6) Settled into a long-term career | ① | ② | ③ | ④ |
| (10) Committed to long-term love relationship | ① | ② | ③ | ④ |
| (11) Make independent decisions | ① | ② | ③ | ④ |
| (14) Accept responsibility for your actions | ① | ② | ③ | ④ |
| (15) Be employed full time | ① | ② | ③ | ④ |
| (17) Establish a relationship with parents as an equal adult | ① | ② | ③ | ④ |

**수정안**

문95) 귀하는 성인이 되는 이정표로서, 다음의 사항들이 각각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귀하께서는 해당 사항을 얼마나 성취하셨습니까?

| 항목 | 중요도 | | | | 성취수준 | | | |
|---|---|---|---|---|---|---|---|---|
| | 전혀 중요하지 않음 | 별로 중요하지 않음 | 약간 중요함 | 매우 중요함 | 전혀 성취하지 못함 | 거의 성취하지 못함 | 어느 정도 성취함 | 완벽히 성취함 |
| (1) 부모(양육자)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하게 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2)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게 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3) 부모님(양육자) 집에서 살지 않게 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4) 부모님(양육자)으로부터 떨어져 적정한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5) 다른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6) 사람들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7) 부모와 성인으로서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8)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9)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게 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출처: Faas et al. (2018). Emerging adulthood MoA/IDEA-8 scale characteristics from multiple institutions. *Emerging Adulthood, 8*(4), 259-269.

다음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지원을 받는지, 지원을 받는다면 그 규모가 얼마만큼 되는지에 따라 경제적 독립 상태를 진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성인기 이행의 유형화를 시도한 Manzoni(2016)가 활용한 th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to Adult Health (Add Health) 자료의 몇 가지 척도를 번역해 조사에 포함했다. 미국 청소년의 성인기 이행에 초점을 맞춘 Add Health는 7학년~12학년에 해당하는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해 1994-1995년 처음 시행된 종단연구 자료이다. 이 가운데 연구 참여자가 성인기에 진입할 무렵인 2001-2002년에 실시된 설문은 여러 차원의 독립성에 대한 객관적·주관적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하는 경제 자립 관련해서는 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지난 1년간 경제적(금전적)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와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면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통해 측정했다.

**표 Ⅲ-7 경제 자립 수준(경제적 독립) 관련 문항(신규)**

<table>
<tr><th>구분</th><th>문항</th></tr>
<tr><td>원안</td><td>[Financial standing: ratio between financial support and earnings]<br>Financial Support: Has [parent] given you any money or paid for anything significant for you during the past 12 months?<br>Earnings: In [2000/2001], how much income did you receive from earnings – that is, wages or salaries, including tips, bonuses, and overtime pay, and income from self-employment?</td></tr>
<tr><td>수정안</td><td>문35)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지원(금전적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br>☞ 경제적 지원(금전적 지원)에는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의 생활비(문34)를 포함하며<br>주택 관련 전/월세 보증금 및 주택 구입 시 대금 지원과 일시적으로 받은 용돈, 축하금도 포함됩니다.<br>대학교 등록금 지원을 받은 것과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대한 증여도 경제적 지원에 포함됩니다.<br>현재 혼인 상태이신 경우 본인의 부모님과 더불어 배우자의 부모(처가, 시댁)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우 경제적 지원 경험을'②있다'로 응답 해 주십시오.<br>① 없다 ➡ 문36로 이동 ② 있다 ➡ 문35-1로 이동<br>문35-1) 지난 1년 간 귀하의 전체 소득(세후 기준)과 부모님(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은 얼마나 되십니까?
<table>
<tr><th>문항</th><th>비용(만원)</th></tr>
<tr><td>1. 지난 1년간 전체 소득<br>(근로소득, 금융소득 등을 포함한 세후 기준)</td><td>연간 (　　)만원</td></tr>
<tr><td>2. 지난 1년간 부모님으로부터 지원 받은 액수</td><td>연간 (　　)만원</td></tr>
</table>
</td></tr>
</table>

* 출처: Manzoni (2016).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youth independence multidimensionally in the United States. *Acta Sociologica, 59*(4), 362-377.

경제적 독립 수준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은 앞서서 행했던 방식과 같이 Faas et al.(2018)의 MoA 문항 중 일부를 재구성해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부모 또는 양육자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했는지 묻고 그 성취 수준에 대해 응답하도록 했다.

**표 Ⅲ-8 경제 자립 수준(경제적 독립) 관련 문항(신규)**

<table>
<tr><th>구분</th><th>문항</th></tr>
<tr><td>원안</td><td>Q) Degree this is an important milestone in achieving adulthood
<table>
<tr><th>항목</th><th>not</th><th>slightly</th><th>quite</th><th>very</th></tr>
<tr><td>(1) Financially independent</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2) No longer living in parents' house</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6) Settled into a long-term career</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10) Committed to long-term love relationship</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11) Make independent decisions</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14) Accept responsibility for your actions</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15) Be employed full time</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17) Establish a relationship with parents as an equal adult</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td></tr>
<tr><td>수정안</td><td>문95) 귀하는 성인이 되는 이정표로서, 다음의 사항들이 각각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귀하께서는 해당 사항을 얼마나 성취하셨습니까?
<table>
<tr><th rowspan="2">항목</th><th colspan="4">중요도</th><th colspan="4">성취수준</th></tr>
<tr><th>전혀 중요하지 않음</th><th>별로 중요하지 않음</th><th>약간 중요함</th><th>매우 중요함</th><th>전혀 성취하지 못함</th><th>거의 성취하지 못함</th><th>어느 정도 성취함</th><th>완벽히 성취함</th></tr>
<tr><td>(1) 부모(양육자)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하게 되는 것</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2)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게 되는 것</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3) 부모님(양육자) 집에서 살지 않게 되는 것</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4) 부모님(양육자)으로부터 떨어져 적정한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5) 다른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것</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6) 사람들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7) 부모와 성인으로서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8)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9)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게 되는 것</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td></tr>
</table>

* 출처: Faas et al (2018). Emerging adulthood MoA/IDEA-8 scale characteristics from multiple institutions. *Emerging Adulthood, 8*(4), 259-269.

② 주거 자립

주거 자립은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기존 문항을 활용해 측정했다.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시기에 관한 질문과 부모님과 동거여부를 묻는 질문을 통해 집 소유 여부와 주거 독립 여부를 파악했다.

**표 Ⅲ-9 주거 자립 수준(집 소유 및 주거독립) 관련 문항(기존)**

| 구분 | 문항 |
|---|---|
| **원안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문64) 귀하는 본인 명의의 집을 언제쯤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br>① 이미 소유하고 있다 ② 향후 1년 이내<br>③ 향후 1년 이상 3년 미만 ④ 향후 3년 이상 5년 미만<br>⑤ 향후 5년 이상 7년 미만 ⑥ 향후 7년 이상 10년 미만<br>⑦ 향후 10년 이상 20년 미만 ⑧ 향후 20년 이후<br>⑨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 |
| | 문75)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br>① [동거] 현재 같이 살고 있다<br>② [비동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학업, 군복무, 직장 등의 이유로 떨어져 지내는 경우)<br>③ [독립]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독립한 상태이다(결혼, 장성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

* 출처: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기존문항.

본인 명의 집을 가지고 있거나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또는 본인 명의 집이 없거나 부모와 동거하고 있더라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주거에 대해 인식하는 자립 수준은 각기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부모님 집으로부터 독립했는지를 성취 수준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고자 했다. 나아가 단순히 부모님(양육자)의 집에서 살지 않게 되는 차원을 넘어 적정한 주거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추가로 물어 주거 자립 내에서도 차원을 구분하고자 했다.

**표 Ⅲ-10 주거 자립 수준(주거독립) 관련 문항(신규)**

**원안**

Q) Degree this is an important milestone in achieving adulthood

| 항목 | not | slightly | quite | very |
|---|---|---|---|---|
| (1) Financially independent | ① | ② | ③ | ④ |
| (2) No longer living in parents' house | ① | ② | ③ | ④ |
| (6) Settled into a long-term career | ① | ② | ③ | ④ |
| (10) Committed to long-term love relationship | ① | ② | ③ | ④ |
| (11) Make independent decisions | ① | ② | ③ | ④ |
| (14) Accept responsibility for your actions | ① | ② | ③ | ④ |
| (15) Be employed full time | ① | ② | ③ | ④ |
| (17) Establish a relationship with parents as an equal adult | ① | ② | ③ | ④ |

**수정안**

문95) 귀하는 성인이 되는 이정표로서, 다음의 사항들이 각각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귀하께서는 해당 사항을 얼마나 성취하셨습니까?

| 항목 | 중요도 | | | | 성취수준 | | | |
|---|---|---|---|---|---|---|---|---|
| | 전혀 중요하지 않음 | 별로 중요하지 않음 | 약간 중요함 | 매우 중요함 | 전혀 성취하지 못함 | 거의 성취하지 못함 | 어느 정도 성취함 | 완벽히 성취함 |
| (1) 부모(양육자)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하게 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2)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게 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3) 부모님(양육자) 집에서 살지 않게 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4) 부모님(양육자)으로부터 떨어져 적정한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5) 다른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6) 사람들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7) 부모와 성인으로서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8)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9)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게 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출처: Faas et al. (2018). Emerging adulthood MoA/IDEA-8 scale characteristics from multiple institutions. *Emerging Adulthood, 8*(4), 259-269.

③ 관계 자립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지위나 상태를 획득하는 것을 넘어서 주변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거나 상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적절하게 형성하고 있거나 할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관계적 차원의 자립 상태는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 포함된 사회적 지원과 연결망의 크기를 측정하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사회적 지원은 정서적, 도구적, 정보적 차원으로 구성되며, 각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유무로 측정하였다. 연결망의 경우 서로 기댈 수 있고 어렵고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의 수로 측정되며 이는 사회적 지원의 자원 다양성과는 다른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Ⅲ-11 관계 자립 수준(지원 및 연결망) 관련 문항(기존)**

<table>
<tr><th>구분</th><th>문항</th></tr>
<tr><td>원안<br>(2021<br>청년사회·경<br>제실태조사)</td><td>
문98)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이 있으십니까?
<table>
<tr><th>문 항</th><th>없다</th><th>있다</th></tr>
<tr><td>(1) 취업이나 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td><td>①</td><td>②</td></tr>
<tr><td>(2)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td><td>①</td><td>②</td></tr>
<tr><td>(3)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td><td>①</td><td>②</td></tr>
<tr><td>(4)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td><td>①</td><td>②</td></tr>
<tr><td>(5)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큰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td><td>①</td><td>②</td></tr>
<tr><td>(6)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td><td>①</td><td>②</td></tr>
<tr><td>(7) 내가 갑자기 연락 두절되었을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td><td>①</td><td>②</td></tr>
</table>
문102)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본인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령, 성별 등에 상관없이 가족 및 친지, 지인,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이 포함됩니다)<br>
① 없다 ② 있다 (□□명)
</td></tr>
</table>

* 출처: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기존문항.

관계 자립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측정하기 위해 Faas et al.(2018)의 MoA 문항 중 일부를 수정하여 주관적인 성취 수준을 물었다. 구체적으로는 성인으로서 부모님과 동등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사람들과 관계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지, 나아가 단순한 관계를 넘어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을 추가해 관계 자립 내에서도 여러 차원을 이해하고자 했다.

**표 Ⅲ-12 관계 자립 수준(관계성취) 관련 문항(신규)**

**원안**

Q) Degree this is an important milestone in achieving adulthood

| 항목 | not | slightly | quite | very |
|---|---|---|---|---|
| (1) Financially independent | ① | ② | ③ | ④ |
| (2) No longer living in parents' house | ① | ② | ③ | ④ |
| (6) Settled into a long-term career | ① | ② | ③ | ④ |
| (10) Committed to long-term love relationship | ① | ② | ③ | ④ |
| (11) Make independent decisions | ① | ② | ③ | ④ |
| (14) Accept responsibility for your actions | ① | ② | ③ | ④ |
| (15) Be employed full time | ① | ② | ③ | ④ |
| (17) Establish a relationship with parents as an equal adult | ① | ② | ③ | ④ |

**수정안**

문95) 귀하는 성인이 되는 이정표로서, 다음의 사항들이 각각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귀하께서는 해당 사항을 얼마나 성취하셨습니까?

| 항목 | 중요도 | | | | 성취수준 | | | |
|---|---|---|---|---|---|---|---|---|
| | 전혀 중요하지 않음 | 별로 중요하지 않음 | 약간 중요함 | 매우 중요함 | 전혀 성취하지 못함 | 거의 성취하지 못함 | 어느 정도 성취함 | 완벽히 성취함 |
| (1) 부모(양육자)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하게 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2)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게 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3) 부모님(양육자) 집에서 살지 않게 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4) 부모님(양육자)으로부터 떨어져 적정한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5) 다른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6) 사람들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7) 부모와 성인으로서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8)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9)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게 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출처: Faas et al. (2018). Emerging adulthood MoA/IDEA-8 scale characteristics from multiple institutions. *Emerging Adulthood, 8*(4), 259-269.

④ 주관적 자립

심리적으로 누군가에 의존하지 않고 주체성과 독립성을 갖추는 것은 성인으로 자립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건일 수 있다. 경제, 주거, 관계 등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삶을 헤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지속성이 있는 자립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각기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른 청년들의 주관적 자립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청년들에게 현재의 삶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시기인지 파악할 수 있다면 각자가 자립에 어느 정도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여기서는 Inventory of the Dimensions of Emerging Adulthood(IDEA) 문항 중 8개의 핵심 문항을 추린 IDEA-8을 활용했다. 본래 IDEA는 성인기 이행과정에 있는 청년의

심리정서적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제안된 도구로, 청소년과 성인 사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 주목한다(Reifman, Arnett, & Colwell, 2007). 이 연구에서 원척도를 활용하기에는 문항수가 다소 많아 8개의 문항으로 축소한 척도(Baggio, Iglesias, Studer, & Gmel, 2015)를 연구진이 번역하여 설문에 추가했다.

**표 Ⅲ-13 주관적 자립 수준(현재가 갖는 의미) 관련 문항(신규)**

<table>
<tr><th>구분</th><th>문항</th></tr>
<tr><td>원안</td><td>Q) Think of this time in your life. By “time in your life” we refer to the present time, plus the last few years that have gone by, and the next few years to come, as you see them. In short, think of a roughly 5-year period, with the present in the middle. Is this period of your life a time of ...?
<table>
<tr><th>Is this period of your life a time of ...?</th><th>strongly disagree</th><th></th><th></th><th>strongly agree</th></tr>
<tr><td>(1) Many possibilities</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2) Exploration</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3) Feeling stressed out</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4) High pressure</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5) Defining yourself</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6) Deciding your own beliefs and values</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7) Feeling adult in some ways but not others</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8) Gradually becoming an adult</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td></tr>
<tr><td>수정안</td><td>문94)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귀하에게 현재의 삶은 어떤 의미를 지닌 시기입니까?
<table>
<tr><th>현재의 삶은 나에게...</th><th>전혀 동의하지 않음</th><th>거의 동의하지 않음</th><th>약간 동의함</th><th>매우 동의함</th></tr>
<tr><td>(1) 가능성이 많은 시기</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2) 탐색하고 탐험하는 시기</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3)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4) 압박을 많이 받는 시기</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5) 나를 정의하고 규정하는 시기</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6)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결정하는 시기</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7) 한편으로는 성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시기</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r><td>(8) 조금씩 성인이 되어가는 시기</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r>
</table></td></tr>
</table>

* 출처: Baggio, S., Iglesias, K., Studer, J., & Gmel, G. (2015). An 8-item short form of the Inventory of Dimensions of Emerging Adulthood (IDEA) among young Swiss men. *Evaluation & the Health Professions, 38*(2), 246-254.

이 연구는 또한 청년들이 스스로 얼마만큼 독립적이라고 생각하는지와 얼마만큼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먼저, 미국의 Add Health 자료를 활용해 청년의 자립 유형을 구분한 Manzoni(2016)의 연구에 근거하여 관련 문항을 국내의 정서에 맞게 번역하여 투입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성인 자각 수준을 측정하고자 했다.

**표 Ⅲ-14 주관적 자립 수준(독립성 인지) 관련 문항(신규)**

| 구분 | 문항 |
|---|---|
| 원안 | [Self-perceived independence] How independent are you?<br>① not at all ② slightly ③ moderately ④ very |
| 수정안 | 문92) 귀하는 성인으로서 자신이 얼마나 독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여기서 독립적이란 부모나 타인에게 의존적이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br>① 전혀 독립적이지 않음<br>② 약간 독립적임<br>③ 상당히 독립적임<br>④ 완전히 독립적임 |

* 출처: Manzoni (2016).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youth independence multidimensionally in the United States. *Acta Sociologica, 59*(4), 362-377.

다음으로, MoA 척도의 일부를 통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과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게 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성취했는지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했다.

**표 Ⅲ-15 주관적 자립 수준(독립성 인지) 관련 문항(신규)**

**원안**

Q) Degree this is an important milestone in achieving adulthood

| 항목 | not | slightly | quite | very |
|---|---|---|---|---|
| (1) Financially independent | ① | ② | ③ | ④ |
| (2) No longer living in parents' house | ① | ② | ③ | ④ |
| (6) Settled into a long-term career | ① | ② | ③ | ④ |
| (10) Committed to long-term love relationship | ① | ② | ③ | ④ |
| (11) Make independent decisions | ① | ② | ③ | ④ |
| (14) Accept responsibility for your actions | ① | ② | ③ | ④ |
| (15) Be employed full time | ① | ② | ③ | ④ |
| (17) Establish a relationship with parents as an equal adult | ① | ② | ③ | ④ |

**수정안**

문95) 귀하는 성인이 되는 이정표로서, 다음의 사항들이 각각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귀하께서는 해당 사항을 얼마나 성취하셨습니까?

| 항목 | 중요도 | | | | 성취수준 | | | |
|---|---|---|---|---|---|---|---|---|
| | 전혀 중요하지 않음 | 별로 중요하지 않음 | 약간 중요함 | 매우 중요함 | 전혀 성취하지 못함 | 거의 성취하지 못함 | 어느 정도 성취함 | 완벽히 성취함 |
| (1) 부모(양육자)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하게 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2)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게 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3) 부모님(양육자) 집에서 살지 않게 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4) 부모님(양육자)으로부터 떨어져 적정한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5) 다른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6) 사람들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7) 부모와 성인으로서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8)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9)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게 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출처: Faas et al (2018). Emerging adulthood MoA/IDEA-8 scale characteristics from multiple institutions. *Emerging Adulthood, 8*(4), 259-269.

마지막으로 성인 이행기 청년은 학교 졸업, 취업, 결혼, 자녀 출산 등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하거나 경험해야 할 것 같은 사회적 시선을 받는다. 그 과정에서 청년들은 각자의 상황에 대해 각기 다르게 평가한다. 특히, 스스로 성인됨을 인식하는 수준은 일자리나 경제·주거 자립 수준이나 생애사건 등과 관계없이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주관적인 자립 수준을 드러내기에 적합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Add Health 자료에서 성인기 이행 수준 및 독립성 등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문항을 번역해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표 Ⅲ-16 주관적 자립 수준(성인 자각) 관련 문항(신규)**

| 구분 | 문항 |
|---|---|
| 원안 | [Sense of being an adult] How often do you think of yourself as an adult?<br>① never ② seldom ③ sometimes ④ most of the times ⑤ always |
| 수정안 | 문93) 귀하는 얼마나 자주 스스로 성인이 되었다고 느끼십니까?<br>① 전혀 느끼지 못함<br>② 거의 느끼지 못함<br>③ 가끔 느낌<br>④ 자주 느낌<br>⑤ 항상 느낌 |

* 출처: Manzoni (2016).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youth independence multidimensionally in the United States. *Acta Sociologica, 59*(4), 362-377.

⑤ 전환 사건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은 혼인이나 자녀 출산과 같은 여러 생애사적 사건을 경험하며, 그것들은 일종의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혼인에 대한 경험과 인식, 그리고 자녀 유무와 계획 등에 대해 확인함으로써 청년층이 이를 자립과 어떻게 연결 짓는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혼인과 관련해서는 기존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결혼 유무를 묻는 문항에 바탕을 두었다. 설문참여자는 "배우자 있음, 사별·이혼, 결혼하지 않음" 세 가지 중 하나로 응답하고, 이 가운데 "결혼하지 않음"으로 응답한 경우 추가로 결혼 생각과 향후 계획을 조사하여 현 상황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표 Ⅲ-17 혼인 관련 문항(기존 문항 수정)**

| 구분 | 문항 |
|---|---|
| **원안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문7) (2021년 6월 1일 기준) 귀하는 결혼하셨습니까? 사실혼의 경우에는 "①배우자 있음"으로 응답해 주십시오.<br>① 배우자 있음<br>② 사별 · 이혼<br>③ 결혼하지 않음 |
| **수정안** | 문8) (2022년 6월 1일 기준) 귀하는 결혼하셨습니까? 사실혼의 경우에는 "①배우자 있음"으로 응답해 주십시오.<br>① 배우자 있음 ➡ **문10로 이동**<br>② 사별·이혼 ➡ **문11로 이동**<br>③ 결혼하지 않음 ➡ **문9로 이동**<br><br>문9) (2022년 6월 1일 기준) 귀하는 향후 결혼을 할 생각이 있습니까?<br>① 있다 ➡ **문9-1로 이동** ② 없다 ➡ **문9-3로 이동**<br><br>문9-1) 향후 몇 년 내로 결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br>① 향후 ( )년 이내<br>② 정확한 계획은 아직 없음 ➡ **응답 후 문11로 이동**<br><br>문9-2) 이와 같이 기간을 설정하신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br>① 결혼비용 때문에(주택마련, 혼수비용) ② 직장 때문에<br>③ 적당한 결혼상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④ 자유로운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br>⑤ 아직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⑥ 출산 혹은 양육에 대한 고민 때문에<br>⑦ 가족(부모, 형제 등)을 부양해야 해서 ⑧ 기타( )<br>➡ **응답 후 문11로 이동**<br><br>문9-3) 결혼을 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br>① 결혼비용 때문에(주택마련, 혼수비용) ② 직장 때문에<br>③ 적당한 결혼 상대를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 ④ 자유로운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br>⑤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⑥ 출산 혹은 양육에 대한 고민 때문에<br>⑦ 가족(부모, 형제 등)을 부양해야 해서 ⑧ 기타( )<br>➡ **응답 후 문11로 이동** |

* 출처: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기존문항.

자녀 유무와 향후 계획은 기존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문항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현재 자녀의 유무와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에 대해 응답하게 되며, 자녀 계획이 없는 경우 그 이유를 선택하도록 구성하였다.

**표 Ⅲ-18 자녀 관련 문항(기존)**

| 구분 | 문항 |
|---|---|
| **원안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문11) (2022년 6월 1일 기준) 귀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br>☞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br>① 예(있다면 자녀가 몇 명입니까? [ ][ ]명) ② 아니오<br>문12) 귀하는 자녀를 가지실 의향이 있습니까?<br>☞ 이미 자녀가 있으신 경우, 향후에 추가로 자녀를 가지실 의향 여부를 응답해 주십시오.<br>① 예 ➡ **문13으로 이동** ② 아니오<br>문12-1) 위 문11)에서 ②아니오라고 답하신 경우, 자녀를 가지실 의향이 없는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br>① 이미 계획한 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br>② 불임, 난임 등 임신의 어려움 때문에<br>③ 맞벌이로 인한 자녀 양육의 어려움 때문에<br>④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br>⑤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때문에<br>⑥ 자녀가 살아가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br>⑦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br>⑧ 기타 ( ) |

* 출처: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기존문항.

## 3. 설문조사 주요결과

이 절에서는 조사에 참여한 총 2,059명의 청년이 성인기 이행과 자립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년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가 1,092명(53.0%), 여자가 967명(47.0%)이었고, 연령별로는 만18-19세 191명(9.3%), 만20-24세 578명(28.1%), 만25-29세 686명(33.3%), 만30-34세 604명(29.3%)이었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553명(26.9%),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이 462명(22.4%), 대졸 이상인 경우 1,044명(50.7%)이 조사에 참여했다. 부모소득 수준은 10점 척도로 측정한 변수를 낮은 편(1-3점), 중간(4-7점), 높은 편(8-10점)으로 분류했는데, 각각 92명(4.5%), 1,654명(80.3%), 그리고 313명(15.2%)이었다. 도시규모별로는 대도시 거주자 937명(45.5%), 중소도시 거주자 794명(38.6%), 농어촌 거주자 328명(15.9%)이었다.

일자리형태에 따라서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사례가 727명(35.3%),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312명(15.2%), 정규직 임금근로자 883명(42.9%), 그리고 비임금근로자 137명(6.7%)이었다. 비임금근로자는 대부분 자영업자(125명)였고 일부 무급가족종사자(12명)로 구성되어 있었다. 주거 형태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지 여부에 따라 동거, 비동거(경제적으로는 비독립), 독립(비동거 및 경제적으로도 독립)으로 구분했고, 각각 1,269명(61.6%), 110명(5.3%), 680명(33.0%)이었다. 마지막으로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현재 배우자가 없는 사례가 1,707명(82.9%), 현재 배우자가 있는 사례가 352명(17.1%)이었다. 이후에 이루어진 이 절의 분석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로 사례 수에 따른 비율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 Ⅲ-19 조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 구분 | | 사례 수 | % |
|---|---|---|---|
| 전체 | | 2,059 | 100.0 |
| 성별 | 남자 | 1,092 | 53.0 |
| | 여자 | 967 | 47.0 |
| 연령 | 만18~19세 | 191 | 9.3 |
| | 만20~24세 | 578 | 28.1 |
| | 만25~29세 | 686 | 33.3 |

| 구분 | | 사례 수 | % |
|---|---|---|---|
| | 만30~34세 | 604 | 29.3 |
| 학력 | 고졸 이하 | 553 | 26.9 |
| | 대학/대학원 재학 | 462 | 22.4 |
| | 대졸이상 | 1,044 | 50.7 |
| 부모소득수준 | 낮은 편 | 92 | 4.5 |
| | 중간 | 1,654 | 80.3 |
| | 높은 편 | 313 | 15.2 |
| 도시규모 | 대도시 | 937 | 45.5 |
| | 중소도시 | 794 | 38.6 |
| | 농어촌 | 328 | 15.9 |
| 일자리 형태 | 일자리없음 | 727 | 35.3 |
| | 임금근로자-비정규직 | 312 | 15.2 |
| | 임금근로자-정규직 | 883 | 42.9 |
| | 비임금근로자 | 137 | 6.7 |
| 주거 형태 | 동거 | 1,269 | 61.6 |
| | 비동거 | 110 | 5.3 |
| | 독립 | 680 | 33.0 |
| 혼인상태 | 배우자없음 | 1,707 | 82.9 |
| | 배우자있음 | 352 | 17.1 |

(1) 청년 자립에 대한 사회 인식

성인으로서의 자립을 상징하는 것에 대해 청년들은 '부모와 타인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선택했고, '첫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을 두 번째로 꼽았다. 두 문항은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이는데, 두 응답 값을 더할 경우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이는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성인으로서의 자립을 상징하는 이벤트로 청년들에게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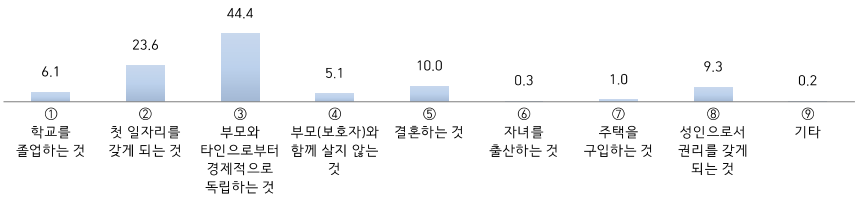
## 표 Ⅲ-20 성인으로서의 자립을 상징하는 것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자립에 대한 상징 | | | | |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전체 | | (2,059) | 6.1 | 23.6 | 44.4 | 5.1 | 10.0 | 0.3 | 1.0 | 9.3 | 0.2 |
| 성별 | 남자 | (1,092) | 6.1 | 23.7 | 43.2 | 5.5 | 9.5 | 0.2 | 1.2 | 10.4 | 0.3 |
| | 여자 | (967) | 6.1 | 23.4 | 45.8 | 4.8 | 10.6 | 0.4 | 0.7 | 8.0 | 0.2 |
| 연령 | 만 18~19세 | (191) | 11.1 | 21.9 | 39.6 | 7.2 | 9.6 | 0.0 | 0.0 | 10.1 | 0.5 |
| | 만 20~24세 | (578) | 5.4 | 27.2 | 45.3 | 5.2 | 6.0 | 0.2 | 0.4 | 10.1 | 0.3 |
| | 만 25~29세 | (686) | 7.3 | 22.5 | 45.3 | 3.9 | 11.5 | 0.3 | 1.0 | 7.9 | 0.1 |
| | 만 30~34세 | (604) | 4.0 | 21.9 | 44.0 | 5.8 | 12.3 | 0.3 | 1.8 | 9.7 | 0.2 |
| 학력 | 고졸이하 | (553) | 7.7 | 20.8 | 43.1 | 6.1 | 10.8 | 0.5 | 1.2 | 9.3 | 0.5 |
| | 대학/대학원 재학 | (462) | 6.7 | 25.6 | 46.1 | 5.7 | 5.6 | 0.0 | 0.4 | 9.9 | 0.0 |
| | 대졸이상 | (1,044) | 4.9 | 24.2 | 44.4 | 4.4 | 11.6 | 0.3 | 1.1 | 8.9 | 0.2 |
| 부모 소득 수준 | 낮은편 | (92) | 2.8 | 30.6 | 45.0 | 1.7 | 9.2 | 0.0 | 0.8 | 8.8 | 1.1 |
| | 중간 | (1,654) | 5.9 | 22.9 | 45.3 | 5.0 | 9.8 | 0.3 | 1.0 | 9.5 | 0.2 |
| | 높은편 | (313) | 7.9 | 25.0 | 39.5 | 6.7 | 11.7 | 0.2 | 1.0 | 7.9 | 0.0 |
| 도시 규모 | 대도시 | (937) | 6.9 | 23.5 | 40.7 | 5.4 | 12.7 | 0.3 | 0.6 | 9.6 | 0.2 |
| | 중소도시 | (794) | 4.7 | 21.7 | 49.9 | 5.7 | 8.2 | 0.2 | 1.3 | 7.9 | 0.4 |
| | 농어촌 | (328) | 7.1 | 28.2 | 41.2 | 3.2 | 7.4 | 0.3 | 1.2 | 11.4 | 0.0 |
| 일자리 형태 | 일자리 없음 | (727) | 6.7 | 24.8 | 44.3 | 4.9 | 8.2 | 0.2 | 1.1 | 9.7 | 0.0 |
| | 임금근로자-비정규직 | (312) | 6.0 | 22.4 | 46.3 | 4.5 | 9.8 | 0.6 | 1.3 | 8.7 | 0.3 |
| | 임금근로자-정규직 | (883) | 5.9 | 24.0 | 44.1 | 4.9 | 10.8 | 0.1 | 0.7 | 9.0 | 0.4 |
| | 비임금근로자 | (137) | 4.2 | 17.0 | 42.4 | 9.0 | 15.4 | 0.7 | 1.6 | 9.7 | 0.0 |
| 주거 형태 | 동거 | (1,269) | 6.8 | 25.0 | 43.4 | 4.9 | 9.3 | 0.2 | 1.0 | 9.2 | 0.2 |
| | 비동거 | (110) | 2.0 | 27.4 | 50.1 | 6.2 | 4.4 | 0.0 | 0.3 | 9.7 | 0.0 |
| | 독립 | (680) | 5.5 | 20.5 | 45.3 | 5.4 | 12.3 | 0.4 | 1.1 | 9.3 | 0.3 |
| 혼인 상태 | 배우자 없음 | (1,707) | 6.3 | 24.2 | 44.9 | 5.4 | 8.2 | 0.2 | 0.9 | 9.6 | 0.3 |
| | 배우자 있음 | (352) | 5.0 | 20.5 | 42.2 | 4.1 | 18.3 | 0.7 | 1.4 | 7.7 | 0.0 |

① 학교를 졸업하는 것 ② 첫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 ③ 부모와 타인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 ④ 부모(보호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것 ⑤ 결혼하는 것 ⑥ 자녀를 출산하는 것 ⑦ 주택을 구입하는 것 ⑧ 성인으로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선거권, 운전면허 등) ⑨ 기타

(단위: %)




## 그림 Ⅲ-1 성인으로서의 자립을 상징하는 것 - 전체

청년들에게 세 번째로 많은 선택을 받은 것은 '결혼을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상대적으로 많고, 부모소득이 높은 청년, 그리고 일자리가 안정적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청년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졌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어느 정도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일련의 생애사건을 청년들이 경험하면서 각각의 단계에서 성인으로서의 역할이나 책임감에 대해 새롭게 느끼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자립의 의미를 재정립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Ⅲ-21 성인으로서의 자립에 중요한 요인(Ⅰ)**

(단위: 명, 점)

| 구분 | | 사례수 | 자립에 중요한 요인 | | | | |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전체 | | (2,059) | 3.3 | 3.5 | 2.9 | 3.1 | 3.2 | 3.3 | 3.1 | 3.4 | 3.4 |
| 성별 | 남자 | (1,092) | 3.3 | 3.5 | 2.9 | 3.1 | 3.2 | 3.3 | 3.1 | 3.4 | 3.5 |
| | 여자 | (967) | 3.3 | 3.6 | 2.9 | 3.1 | 3.2 | 3.3 | 3.1 | 3.4 | 3.4 |
| 연령 | 만18~19세 | (191) | 3.2 | 3.4 | 2.9 | 3.0 | 3.1 | 3.2 | 3.2 | 3.3 | 3.5 |
| | 만20~24세 | (578) | 3.2 | 3.5 | 2.9 | 3.1 | 3.2 | 3.3 | 3.1 | 3.4 | 3.4 |
| | 만25~29세 | (686) | 3.3 | 3.5 | 2.9 | 3.0 | 3.2 | 3.3 | 3.1 | 3.4 | 3.4 |
| | 만30~34세 | (604) | 3.3 | 3.6 | 3.0 | 3.2 | 3.2 | 3.3 | 3.1 | 3.3 | 3.5 |
| 학력 | 고졸이하 | (553) | 3.2 | 3.5 | 2.9 | 3.1 | 3.2 | 3.3 | 3.1 | 3.3 | 3.4 |
| | 대학/대학원 재학 | (462) | 3.2 | 3.5 | 2.9 | 3.1 | 3.2 | 3.3 | 3.1 | 3.4 | 3.5 |
| | 대졸이상 | (1,044) | 3.3 | 3.6 | 2.9 | 3.1 | 3.2 | 3.3 | 3.1 | 3.4 | 3.5 |
| 부모 소득 수준 | 낮은 편 | (92) | 3.3 | 3.6 | 3.0 | 3.2 | 3.2 | 3.3 | 3.0 | 3.4 | 3.5 |
| | 중간 | (1,654) | 3.3 | 3.6 | 2.9 | 3.1 | 3.2 | 3.3 | 3.1 | 3.4 | 3.5 |
| | 높은 편 | (313) | 3.3 | 3.4 | 3.0 | 3.1 | 3.2 | 3.2 | 3.2 | 3.4 | 3.4 |
| 도시 규모 | 대도시 | (937) | 3.3 | 3.5 | 2.9 | 3.0 | 3.1 | 3.3 | 3.1 | 3.3 | 3.4 |
| | 중소도시 | (794) | 3.3 | 3.5 | 3.0 | 3.1 | 3.2 | 3.3 | 3.2 | 3.4 | 3.5 |
| | 농어촌 | (328) | 3.3 | 3.5 | 2.8 | 3.0 | 3.1 | 3.2 | 3.0 | 3.3 | 3.4 |
| 일자리 형태 | 일자리 없음 | (727) | 3.3 | 3.5 | 2.9 | 3.0 | 3.1 | 3.3 | 3.1 | 3.3 | 3.4 |
| | 임금근로자-비정규직 | (312) | 3.1 | 3.5 | 2.9 | 3.1 | 3.2 | 3.2 | 3.1 | 3.4 | 3.5 |
| | 임금근로자-정규직 | (883) | 3.3 | 3.5 | 2.9 | 3.1 | 3.2 | 3.3 | 3.1 | 3.3 | 3.4 |
| | 비임금근로자 | (137) | 3.4 | 3.7 | 3.1 | 3.2 | 3.2 | 3.3 | 3.2 | 3.5 | 3.5 |
| 주거 형태 | 동거 | (1,269) | 3.2 | 3.5 | 2.8 | 3.0 | 3.2 | 3.3 | 3.1 | 3.3 | 3.4 |
| | 비동거 | (110) | 3.4 | 3.6 | 3.0 | 3.1 | 3.2 | 3.2 | 3.1 | 3.4 | 3.5 |
| | 독립 | (680) | 3.4 | 3.6 | 3.1 | 3.2 | 3.2 | 3.3 | 3.2 | 3.4 | 3.5 |
| 혼인 상태 | 배우자 없음 | (1,707) | 3.2 | 3.5 | 2.9 | 3.0 | 3.2 | 3.3 | 3.1 | 3.4 | 3.4 |
| | 배우자 있음 | (352) | 3.5 | 3.6 | 3.1 | 3.2 | 3.2 | 3.3 | 3.2 | 3.4 | 3.5 |

① 부모(양육자)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하게 되는 것 ②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게 되는 것 ③ 부모님(양육자) 집에서 살지 않게 되는 것 ④ 부모님(양육자)으로부터 떨어져 적정한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 ⑤ 다른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것 ⑥ 사람들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 ⑦ 부모와 성인으로서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⑧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 ⑨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게 되는 것

다음으로 성인이 되는 이정표로서 각각에 대한 중요도는 4점 척도로 측정된 해당 문항의 평균값으로 제시했다. 앞서 '성인으로서의 자립을 상징하는 것'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게 청년들은 '부모로부터의 재정적 독립'(3.3점)과 '생계유지를 위한 일자리'(3.5점)를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다만,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3.4점)과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게 되는 것'(3.4점)과 같이 주관적 자립 역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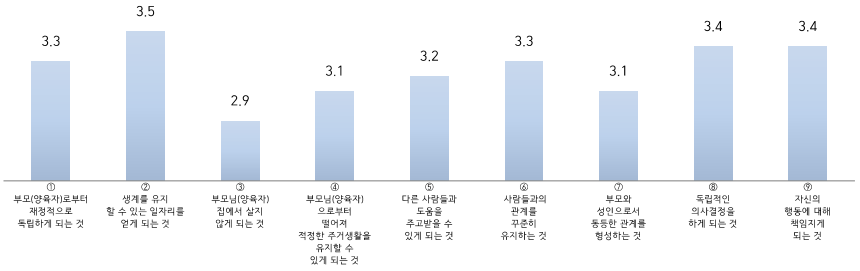



**그림 Ⅲ-2 성인으로서의 자립에 중요한 요인(Ⅰ) - 전체**

한편, '부모님(양육자) 집에서 살지 않게 되는 것'은 유일하게 평균값이 2점대였다. 각 요인별 점수차가 최대 0.6점으로 크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부모로부터 단순히 주거 공간을 분리한 형태로 독립한 것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표 Ⅲ-22 성인으로서의 자립에 중요한 요인(II)**

(단위: 명, 점)

| 구분 | | 사례수 | 자립에 중요한 요인 | | | | | | | | | | |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 ⑮ |
| 전체 | | (2,059) | 3.1 | 2.9 | 2.8 | 3.2 | 3.2 | 3.3 | 3.1 | 2.9 | 3.3 | 3.3 | 3.4 | 3.3 | 3.4 | 3.3 | 3.2 |
| 성별 | 남자 | (1,092) | 3.1 | 3.0 | 2.8 | 3.2 | 3.2 | 3.3 | 3.1 | 2.9 | 3.4 | 3.3 | 3.4 | 3.3 | 3.4 | 3.3 | 3.3 |
| | 여자 | (967) | 3.2 | 2.9 | 2.7 | 3.2 | 3.2 | 3.3 | 3.2 | 2.9 | 3.3 | 3.3 | 3.4 | 3.3 | 3.4 | 3.3 | 3.2 |
| 연령 | 만18~19세 | (191) | 3.2 | 2.8 | 2.6 | 3.1 | 3.2 | 3.3 | 3.2 | 2.8 | 3.2 | 3.2 | 3.3 | 3.4 | 3.4 | 3.2 | 3.2 |
| | 만20~24세 | (578) | 3.1 | 2.9 | 2.7 | 3.3 | 3.2 | 3.3 | 3.1 | 2.9 | 3.3 | 3.3 | 3.4 | 3.3 | 3.5 | 3.3 | 3.2 |
| | 만25~29세 | (686) | 3.1 | 2.9 | 2.8 | 3.2 | 3.1 | 3.3 | 3.1 | 2.9 | 3.3 | 3.3 | 3.4 | 3.3 | 3.4 | 3.3 | 3.3 |
| | 만30~34세 | (604) | 3.1 | 3.0 | 2.9 | 3.2 | 3.2 | 3.3 | 3.1 | 2.9 | 3.4 | 3.4 | 3.4 | 3.3 | 3.4 | 3.3 | 3.2 |
| 학력 | 고졸이하 | (553) | 3.0 | 2.9 | 2.8 | 3.1 | 3.2 | 3.3 | 3.1 | 2.9 | 3.3 | 3.3 | 3.3 | 3.3 | 3.4 | 3.3 | 3.2 |
| | 대학/대학원 재학 | (462) | 3.3 | 2.9 | 2.7 | 3.3 | 3.2 | 3.3 | 3.1 | 2.8 | 3.3 | 3.3 | 3.4 | 3.3 | 3.4 | 3.3 | 3.3 |
| | 대졸이상 | (1,044) | 3.2 | 3.0 | 2.8 | 3.2 | 3.2 | 3.3 | 3.1 | 2.9 | 3.3 | 3.3 | 3.4 | 3.3 | 3.4 | 3.3 | 3.2 |
| 부모 소득 수준 | 낮은편 | (92) | 2.9 | 2.8 | 2.7 | 3.3 | 3.1 | 3.2 | 3.3 | 2.8 | 3.3 | 3.3 | 3.4 | 3.5 | 3.6 | 3.4 | 3.4 |
| | 중간 | (1,654) | 3.1 | 2.9 | 2.8 | 3.2 | 3.2 | 3.3 | 3.1 | 2.9 | 3.3 | 3.3 | 3.4 | 3.3 | 3.4 | 3.3 | 3.2 |
| | 높은편 | (313) | 3.2 | 3.0 | 2.8 | 3.2 | 3.2 | 3.3 | 3.2 | 3.0 | 3.3 | 3.2 | 3.4 | 3.3 | 3.4 | 3.3 | 3.3 |
| 도시 규모 | 대도시 | (937) | 3.2 | 2.9 | 2.8 | 3.2 | 3.1 | 3.2 | 3.0 | 2.9 | 3.3 | 3.2 | 3.3 | 3.2 | 3.3 | 3.3 | 3.2 |
| | 중소도시 | (794) | 3.2 | 3.0 | 2.8 | 3.3 | 3.2 | 3.4 | 3.1 | 2.9 | 3.4 | 3.3 | 3.4 | 3.4 | 3.5 | 3.4 | 3.3 |
| | 농어촌 | (328) | 3.0 | 2.9 | 2.7 | 3.2 | 3.3 | 3.4 | 3.2 | 2.9 | 3.3 | 3.4 | 3.3 | 3.4 | 3.4 | 3.2 | 3.2 |
| 일자리 형태 | 일자리 없음 | (727) | 3.2 | 2.9 | 2.7 | 3.2 | 3.2 | 3.3 | 3.1 | 2.8 | 3.3 | 3.3 | 3.4 | 3.3 | 3.4 | 3.3 | 3.2 |
| | 임금근로자-비정규직 | (312) | 3.1 | 2.8 | 2.7 | 3.2 | 3.2 | 3.3 | 3.1 | 2.9 | 3.3 | 3.3 | 3.3 | 3.4 | 3.4 | 3.3 | 3.2 |
| | 임금근로자-정규직 | (883) | 3.1 | 3.0 | 2.9 | 3.2 | 3.2 | 3.3 | 3.1 | 2.9 | 3.4 | 3.3 | 3.4 | 3.3 | 3.4 | 3.3 | 3.2 |
| | 비임금근로자 | (137) | 3.0 | 3.1 | 3.0 | 3.3 | 3.1 | 3.3 | 3.0 | 2.9 | 3.4 | 3.4 | 3.3 | 3.2 | 3.5 | 3.3 | 3.3 |
| 주거 형태 | 동거 | (1,269) | 3.1 | 2.9 | 2.7 | 3.2 | 3.2 | 3.3 | 3.1 | 2.9 | 3.3 | 3.3 | 3.4 | 3.3 | 3.4 | 3.3 | 3.2 |
| | 비동거 | (110) | 3.1 | 2.7 | 2.6 | 3.3 | 3.3 | 3.4 | 3.2 | 2.8 | 3.3 | 3.2 | 3.4 | 3.4 | 3.5 | 3.2 | 3.3 |
| | 독립 | (680) | 3.1 | 3.1 | 3.0 | 3.3 | 3.2 | 3.3 | 3.1 | 3.0 | 3.4 | 3.4 | 3.4 | 3.3 | 3.4 | 3.3 | 3.2 |
| 혼인 상태 | 배우자 없음 | (1,707) | 3.1 | 2.9 | 2.7 | 3.2 | 3.2 | 3.3 | 3.1 | 2.9 | 3.3 | 3.3 | 3.4 | 3.3 | 3.4 | 3.3 | 3.2 |
| | 배우자 있음 | (352) | 3.1 | 3.2 | 3.1 | 3.3 | 3.2 | 3.4 | 3.1 | 3.0 | 3.5 | 3.5 | 3.4 | 3.4 | 3.4 | 3.3 | 3.2 |

① 교육을 끝마치는 것(학교졸업 등) ② 결혼을 하는 것 ③ 한 명 이상의 자녀를 갖는 것 ④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직업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서는 것 ⑤ 술에 만취하는 것을 자제할 수 있게 되는 것 ⑥ 불법적 약물사용(마약 등)을 하지 않는 것 ⑦ 성관계 시 피임을 하는 것 (일부러 자녀를 가지려 하지 않을 경우) ⑧ 오랜 기간 연인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 ⑨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능력을 갖추는 것 ⑩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⑪ 정규 일자리를 갖는 것 (전일제 혹은 풀타임 근로) ⑫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 ⑬ 스스로의 감정에 대해 언제나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 ⑭ 자기중심적 사고를 덜 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키우는 것 ⑮ 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앞서 '성인으로서의 자립에 중요한 요인(Ⅰ)'이 경제, 주거, 관계, 주관적 자립에 관한 내용을 다룬 것과 대조적으로 '성인으로서의 자립에 중요한 요인(Ⅱ)'에서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성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나 가치관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결혼을 하는 것'(2.9점), '한 명 이상의 자녀를 갖는 것'(2.8점), '오랜 기간 연인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2.9점)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문항은

결혼, 자녀, 연인관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연애, 결혼, 자녀 출산과 같이 가족생애와 관련된 내용으로 최근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가족생애적 관점에서 원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부여하던 중요성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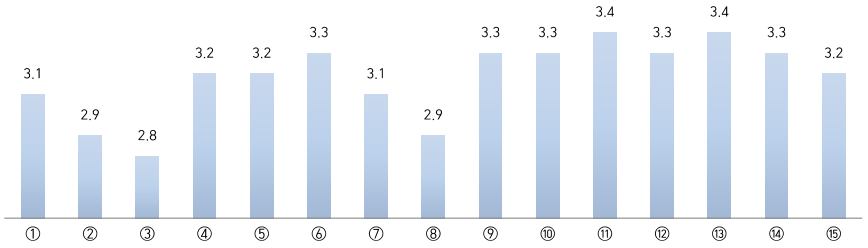



**그림 Ⅲ-3 성인으로서의 자립에 중요한 요인(II) - 전체**

이와 같은 특징은 연령에 따라서도 드러난다. 결혼, 자녀, 가족부양, 자녀 양육과 같은 내용에 대해 그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은 아니나, 전반적인 경향성이 낮은 연령대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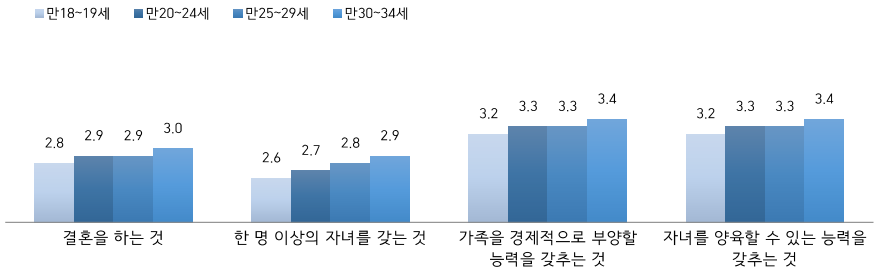



**그림 Ⅲ-4 성인으로서의 자립에 중요한 요인(II) - 연령**

‘결혼을 하는 것’과 ‘한 명 이상의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일자리 형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 특히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경우 결혼이나 자녀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응답한 결과는 불안정한 지위가 지향하는 자립의 형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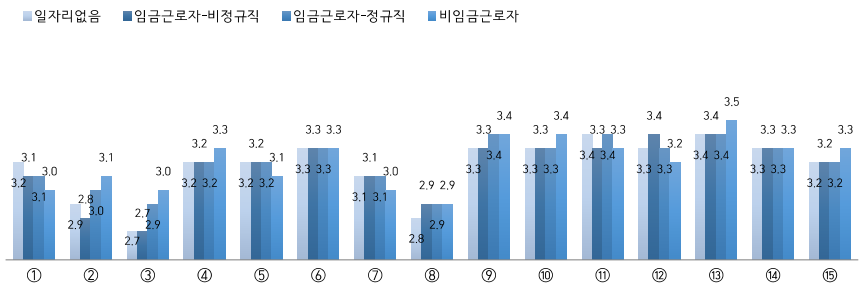



**그림 Ⅲ-5 성인으로서의 자립에 중요한 요인(Ⅱ) - 일자리형태**

혼인상태에 따라 살펴보면, ‘결혼을 하는 것’, ‘한 명 이상의 자녀를 갖는 것’,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능력을 갖추는 것’,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에서 혼인상태에 따른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다. ‘결혼을 하는 것’, ‘한 명 이상의 자녀를 갖는 것’에서의 차이가 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결혼과 자녀에 높은 가치를 두는 청년이 혼인을 더 많이 해서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과, 결혼의 결과로 결혼과 자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공존하므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다만,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능력을 갖추는 것’과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혼인을 더 많이 했다고 해석하는 것에 무리가 있으므로, 결혼과 자녀와 관련한 결과도 두 가지 가능성 중 후자의 경우에 속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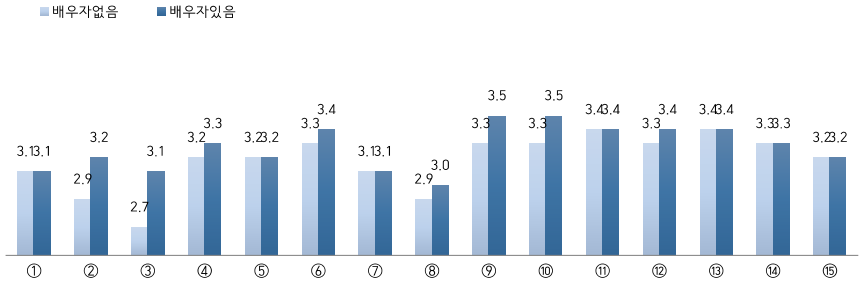



그림 Ⅲ-6 성인으로서의 자립에 중요한 요인(Ⅱ) - 혼인상태

표 Ⅲ-23 자립 기회의 공평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자립 기회의 공평에 대한 인식 |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부정적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긍정적 |
| 전체 | | (2,059) | 4.4 | 44.1 | 48.5 | 47.2 | 4.3 | 51.5 |
| 성별 | 남자 | (1,092) | 4.0 | 43.8 | 47.8 | 47.3 | 4.9 | 52.2 |
| | 여자 | (967) | 4.9 | 44.4 | 49.3 | 47.0 | 3.6 | 50.6 |
| 연령 | 만 18~19세 | (191) | 3.6 | 37.2 | 40.8 | 52.5 | 6.7 | 59.2 |
| | 만 20~24세 | (578) | 5.6 | 41.2 | 46.8 | 49.0 | 4.2 | 53.2 |
| | 만 25~29세 | (686) | 4.0 | 45.7 | 49.7 | 46.3 | 4.1 | 50.4 |
| | 만 30~34세 | (604) | 4.1 | 47.0 | 51.1 | 45.0 | 3.9 | 48.9 |
| 학력 | 고졸이하 | (553) | 4.3 | 40.5 | 44.8 | 50.5 | 4.8 | 55.3 |
| | 대학/대학원 재학 | (462) | 5.8 | 42.1 | 47.9 | 47.7 | 4.4 | 52.1 |
| | 대졸이상 | (1,044) | 3.9 | 47.0 | 50.9 | 45.2 | 4.0 | 49.2 |
| 부모 소득 수준 | 낮은편 | (92) | 10.4 | 41.3 | 51.7 | 39.2 | 9.1 | 48.3 |
| | 중간 | (1,654) | 4.5 | 45.9 | 50.4 | 45.7 | 4.0 | 49.7 |
| | 높은편 | (313) | 2.4 | 35.9 | 38.3 | 57.4 | 4.3 | 61.7 |
| 도시 규모 | 대도시 | (937) | 4.0 | 39.5 | 43.5 | 51.6 | 4.9 | 56.5 |
| | 중소도시 | (794) | 4.9 | 49.3 | 54.2 | 42.6 | 3.2 | 45.8 |
| | 농어촌 | (328) | 4.6 | 43.9 | 48.5 | 46.3 | 5.2 | 51.5 |
| 일자리 형태 | 일자리 없음 | (727) | 5.0 | 39.3 | 44.3 | 51.2 | 4.5 | 55.7 |
| | 임금근로자-비정규직 | (312) | 5.5 | 49.9 | 55.4 | 41.3 | 3.3 | 44.6 |
| | 임금근로자-정규직 | (883) | 3.9 | 44.4 | 48.3 | 47.3 | 4.4 | 51.7 |
| | 비임금근로자 | (137) | 2.5 | 53.8 | 56.3 | 38.9 | 4.8 | 43.7 |
| 주거 형태 | 동거 | (1,269) | 4.3 | 42.5 | 46.8 | 48.9 | 4.3 | 53.2 |
| | 비동거 | (110) | 6.8 | 38.5 | 45.3 | 49.1 | 5.6 | 54.7 |
| | 독립 | (680) | 4.3 | 47.9 | 52.2 | 43.8 | 4.1 | 47.9 |
| 혼인 상태 | 배우자 없음 | (1,707) | 4.3 | 43.9 | 48.2 | 47.7 | 4.1 | 51.8 |
| | 배우자 있음 | (352) | 5.1 | 44.9 | 50.0 | 44.9 | 5.1 | 50.0 |

자립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지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은 대략 반으로 나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4.4%) 또는 '그렇지 않은 편'(44.1%)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48.5%에 해당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청년(51.5%)이 조금 더 많았다. 자립 기회의 공평성에 대한 부정적 응답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라 일정한 경향성이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여성일수록(여: 49.3%, 남: 47.8%), 연령대가 올라갈수록(만 30-34세: 51.1%, 만 25-29세: 49.7%, 만 20-24세: 46.8%, 만 18-19세: 40.8%), 학력이 높을수록(대졸이상: 50.9%, 대학/대학원 재학: 47.9%, 고졸이하: 44.8%), 부모소득이 낮을수록(낮은 편: 51.7%, 중간: 50.4%, 높은 편: 38.3%) 부정적인 응답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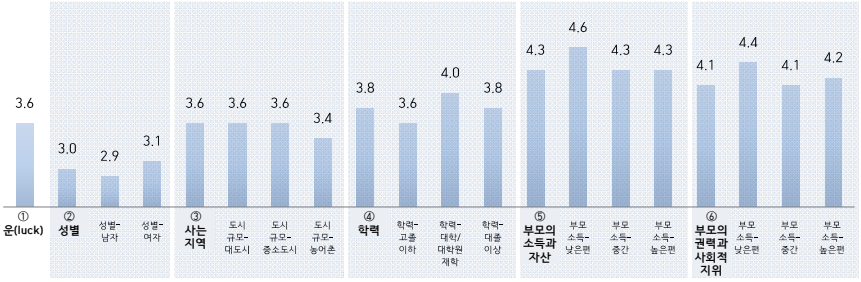



**그림 Ⅲ-7 자립 기회에 대한 인식 - 전체, 성별, 도시규모, 학력, 부모소득수준**

자립 기회의 공평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청년들은 추가적으로 그러한 불공평을 낳는 요인에 대해 응답했다. 여러 요인 가운데 청년들이 불평등한 자립 기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것은 '부모의 소득과 자산'(4.3점)과 '부모의 권력과 사회적 지위'(4.1점) 순서로 모두 부모배경 관련 변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자립 기회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났던 경향성은 자립 기회의 불평등이 어떠한 요인으로부터 비롯되는지 조사한 결과에서도 재확인되었다. 영향요인에 해당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여성 청년일수록 성별(여: 3.1점, 남: 2.9점)이 자립기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동의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부모 소득이 낮을수록 부모의 소득과 자산(저소득: 4.6점, 고소득: 4.3점) 또는 부모의 권력과 사회적 지위(저소득: 4.4점, 고소득: 4.2점)가 자립

기회의 격차를 만드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았다. 학력별로는 대체로 고등교육기관 재학생(4.0점)과 졸업생(3.8점)이 고졸이하 청년(3.6점)에 비해 학력이 자립 기회 불공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욱 중요하게 인지하였다.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이 졸업생에 비해 학력에 따른 자립 기회 격차를 더욱 크게 인식하는 것은 노동시장 불안정으로 인해 졸업생의 경우 노동시장 진출과정에서 학력과 관계없이 다양한 좌절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자립 기회의 공평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청년만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

(2) 영역별 자립 수준

영역별 자립 수준은 경제, 주거, 관계, 주관적 자립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상태를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또한, 혼인이나 자녀 출산 같은 전환 사건 관련 상태를 확인하였다.

① 경제 자립

성인 이행기 청년의 경제 자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일자리와 경제적 독립 상태를 살펴보고 각각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는 성취수준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청년들 중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64.9%였고,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청년은 35.1%였다. 이는 연령적 특성으로 인해 재학생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을 하는 청년 가운데 임금근로자는 89.2%였는데, 이 중 정규직 근로자는 74.2%에 해당되었다. 즉, 설문에 참여한 청년 중 약 43.0%가 정규직 임금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4 경제적 자립 수준(일자리)**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일 여부 | | 종사상 지위 | | 고용형태 | | | | |
|---|---|---|---|---|---|---|---|---|---|---|---|
| | | | | | | | 임금 근로자 | | 비임금 근로자 | | |
| | | | 예 | 아니오 | 임금 근로자 | 비임금 근로자 | 정규직 | 비정규직 | ① | ② | ③ |
| 전체 | | (2,059) | 64.9 | 35.1 | 89.2 | 10.8 | 74.2 | 25.8 | 23.9 | 67.3 | 8.8 |
| 성별 | 남자 | (1,092) | 66.0 | 34.1 | 88.1 | 11.9 | 76.4 | 23.6 | 30.5 | 63.5 | 6.0 |
| | 여자 | (967) | 63.8 | 36.3 | 90.4 | 9.6 | 71.7 | 28.3 | 14.4 | 72.7 | 12.9 |
| 연령 | 만 18~19세 | (191) | 19.0 | 81.0 | 95.2 | 4.8 | 23.6 | 76.4 | 0.0 | 47.1 | 52.9 |
| | 만 20~24세 | (578) | 48.0 | 52.0 | 94.6 | 5.4 | 43.8 | 56.2 | 32.7 | 52.8 | 14.5 |
| | 만 25~29세 | (686) | 75.9 | 24.1 | 91.6 | 8.4 | 81.5 | 18.5 | 24.3 | 60.4 | 15.2 |
| | 만 30~34세 | (604) | 81.6 | 18.4 | 83.4 | 16.6 | 88.6 | 11.4 | 22.5 | 73.6 | 3.8 |
| 학력 | 고졸이하 | (553) | 69.3 | 30.7 | 84.1 | 15.9 | 71.8 | 28.2 | 26.5 | 63.5 | 10.0 |
| | 대학/대학원 재학 | (462) | 29.1 | 70.9 | 95.3 | 4.7 | 20.3 | 79.7 | 15.3 | 52.5 | 32.2 |
| | 대졸이상 | (1,044) | 78.2 | 21.8 | 90.6 | 9.4 | 84.5 | 15.5 | 22.4 | 71.6 | 6.0 |
| 부모 소득 수준 | 낮은 편 | (92) | 63.8 | 36.3 | 89.5 | 10.5 | 72.0 | 28.0 | 0.0 | 100.0 | 0.0 |
| | 중간 | (1,654) | 66.7 | 33.3 | 89.8 | 10.2 | 73.3 | 26.7 | 22.5 | 67.8 | 9.7 |
| | 높은 편 | (313) | 56.0 | 44.0 | 84.9 | 15.1 | 80.5 | 19.5 | 35.5 | 57.0 | 7.4 |
| 도시 규모 | 대도시 | (937) | 64.9 | 35.1 | 89.2 | 10.8 | 77.2 | 22.8 | 23.9 | 71.6 | 4.5 |
| | 중소도시 | (794) | 62.8 | 37.2 | 90.8 | 9.2 | 70.5 | 29.5 | 12.8 | 76.4 | 10.8 |
| | 농어촌 | (328) | 69.9 | 30.1 | 85.7 | 14.3 | 74.9 | 25.1 | 39.2 | 46.6 | 14.2 |
| 일자리 형태 | 일자리 없음 | (727) | 0.0 | 100.0 | - | - | - | - | - | - | - |
| | 임금근로자-비정규직 | (312) | 100.0 | 0.0 | 100.0 | 0.0 | 0.0 | 100.0 | - | - | - |
| | 임금근로자-정규직 | (883) | 100.0 | 0.0 | 100.0 | 0.0 | 100.0 | 0.0 | - | - | - |
| | 비임금근로자 | (137) | 100.0 | 0.0 | 0.0 | 100.0 | - | - | 23.9 | 67.3 | 8.8 |
| 주거 형태 | 동거 | (1,269) | 58.3 | 41.7 | 92.1 | 7.9 | 67.9 | 32.1 | 32.8 | 58.4 | 8.8 |
| | 비동거 | (110) | 49.3 | 50.8 | 92.5 | 7.6 | 52.9 | 47.2 | 0.0 | 78.8 | 21.2 |
| | 독립 | (680) | 79.3 | 20.7 | 85.0 | 15.0 | 85.4 | 14.6 | 18.8 | 73.0 | 8.3 |
| 혼인 상태 | 배우자 없음 | (1,707) | 63.6 | 36.4 | 92.2 | 7.8 | 71.3 | 28.7 | 22.3 | 70.6 | 7.1 |
| | 배우자 있음 | (352) | 70.7 | 29.4 | 76.9 | 23.1 | 88.4 | 11.6 | 26.0 | 62.7 | 11.2 |

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③ 무급가족종사자

집단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고졸이하 학력과 대졸이상 학력 청년 간 경제활동 상태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대졸이상 청년의 78.2%가 일을 하고 있는 반면, 고졸이하 청년은 69.3%가 일을 하고 있었다. 고졸이하 청년은 일을 하고 있더라도 종사상 지위에서 84.1%가 임금근로자였는데, 이는 대졸이상 청년 90.6%가 임금근로자인 것과 대비되었다. 고졸이하 청년은 또한 임금근로자라 하더라도 28.2%가 비정규직인(대졸이상 청년, 15.5%)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고졸이하 학력의 청년은 41.8%만이 정규직 임금근로자로 일하고 있고, 대조적으로 대졸이상 청년은 59.9%가 정규직 임금근로자로 일하고 있어

경제적 자립의 핵심 조건일 수 있는 일자리 상태에서 두 집단 간 격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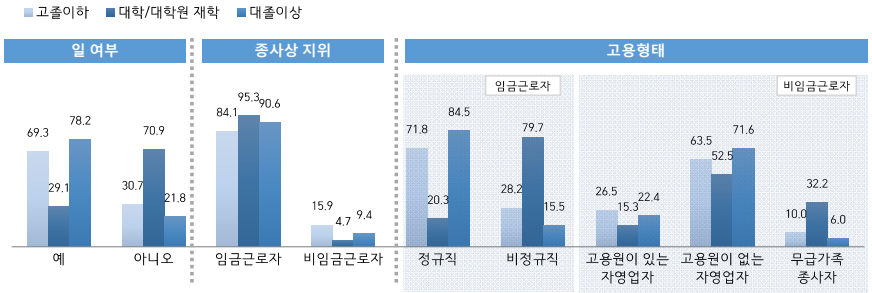



**그림 Ⅲ-8 경제적 자립 수준(일자리) - 학력**

부모소득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 소득이 낮은 편에 속하는 청년들(63.8%)이 부모 소득이 높은 청년들(56.0%)에 비해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이 더 높았고, 종사상 지위에서도 차이(저소득배경: 89.5% / 고소득배경: 84.9%)가 있었다. 그런데 고소득배경 청년은 임금근로자로 일할 때 80.5%가 정규직이었던 반면, 저소득배경 청년은 72.0%로 고소득배경 청년에 비해 8.5%p 더 낮았다. 또한, 고소득배경 청년은 비임금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사례가 35.5%에 달했는데, 저소득배경 청년은 여기에 해당하는 인원은 없었고, 고용원 없이 자영업을 하는 경우만 관찰되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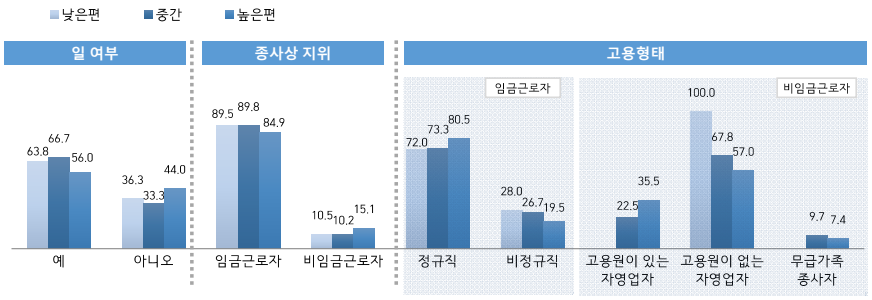



**그림 Ⅲ-9 경제적 자립 수준(일자리) - 부모소득수준**

이와 같은 결과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 학력에 따른 체계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부모소득에 따라 노동시장의 진입 형태가 달라질 수 있음을 드러낸다. 고소득배경의 청년들은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더라도 안정적인 출발을 위해 그 기간을 버텨낼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한 반면, 저소득배경의 청년들은 비경제활동 기간을 줄이기 위해 불안정한 형태라 하더라도 일을 시작해야하는 상황이 이러한 차이를 유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Ⅲ-25 경제적 자립 수준(일자리 성취수준)**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 성취수준 | | | |
|---|---|---|---|---|---|---|
| | | | 전혀 성취하지 못함 | 거의 성취하지 못함 | 어느정도 성취함 | 완벽히 성취함 |
| 전체 | | (2,059) | 15.5 | 20.4 | 37.2 | 26.9 |
| 성별 | 남자 | (1,092) | 17.2 | 21.4 | 37.2 | 24.1 |
| | 여자 | (967) | 13.6 | 19.3 | 37.1 | 30.0 |
| 연령 | 만18~19세 | (191) | 48.3 | 22.9 | 20.5 | 8.4 |
| | 만20~24세 | (578) | 26.7 | 29.9 | 27.6 | 15.7 |
| | 만25~29세 | (686) | 9.4 | 17.2 | 45.3 | 28.1 |
| | 만30~34세 | (604) | 2.5 | 14.5 | 41.9 | 41.0 |
| 학력 | 고졸이하 | (553) | 12.9 | 19.1 | 40.4 | 27.7 |
| | 대학/대학원 재학 | (462) | 41.4 | 30.6 | 17.1 | 10.8 |
| | 대졸이상 | (1,044) | 5.5 | 16.7 | 44.3 | 33.5 |
| 부모 소득 수준 | 낮은편 | (92) | 20.5 | 19.0 | 32.5 | 28.1 |
| | 중간 | (1,654) | 14.4 | 20.9 | 37.9 | 26.9 |
| | 높은편 | (313) | 19.8 | 18.7 | 35.0 | 26.6 |
| 도시 규모 | 대도시 | (937) | 15.1 | 19.4 | 38.3 | 27.1 |
| | 중소도시 | (794) | 17.5 | 20.0 | 34.3 | 28.2 |
| | 농어촌 | (328) | 11.9 | 24.2 | 41.0 | 22.9 |
| 일자리 형태 | 일자리 없음 | (727) | 36.6 | 29.2 | 19.7 | 14.6 |
| | 임금근로자-비정규직 | (312) | 10.7 | 32.0 | 43.9 | 13.4 |
| | 임금근로자-정규직 | (883) | 2.2 | 10.7 | 48.2 | 38.9 |
| | 비임금근로자 | (137) | 1.9 | 11.8 | 42.9 | 43.4 |
| 주거 형태 | 동거 | (1,269) | 22.4 | 23.2 | 34.7 | 19.7 |
| | 비동거 | (110) | 26.3 | 32.1 | 28.4 | 13.2 |
| | 독립 | (680) | 1.4 | 13.6 | 43.0 | 41.9 |
| 혼인 상태 | 배우자 없음 | (1,707) | 18.6 | 22.1 | 36.4 | 22.9 |
| | 배우자 있음 | (352) | 1.7 | 12.8 | 40.7 | 44.8 |

청년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경제 자립 수준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 성취수준'을 조사한 결과, '어느정도 성취함'이라고 응답한 청년이 37.2%, '완벽히 성취함'이라고 응답한 청년은 26.9%로 나타났다. 즉, 64.1%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이상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앞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64.9%)과 매우 유사한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학력에 따라서 나타나는 양상은 앞서 일자리 형태에서 드러난 결과와 비슷하다. 대졸이상 학력(어느정도 성취함: 44.3% / 완벽히 성취함: 33.5%)에 비해 고졸이하 학력 청년(어느정도 성취함: 40.4% / 완벽히 성취함: 27.7%)은 스스로의 일자리 성취 수준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고졸이하 학력 청년 중 다수가 안정적인 형태의 일자리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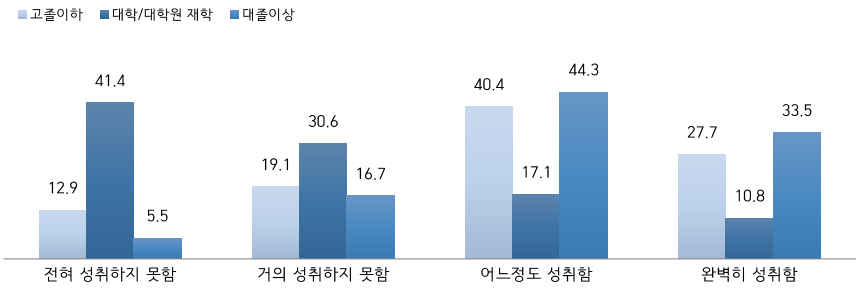



**그림 Ⅲ-10 경제적 자립 수준(일자리 성취수준) - 학력**

일자리 형태에 따른 생계유지 일자리 달성 수준의 차이는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일자리 없음 -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 정규직 임금근로자 - 비임금근로자 순서로 스스로에 대한 성취수준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경우 경제적 자립을 완벽히 성취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노동시장을 비롯한 사회 변화 속에서 높아진 이직률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상태는 청년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결과이다. 한편,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청년 가운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를 완벽하게 성취했다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설문에서 '지난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했는지'로 물었기 때문일 수 있으며, 또한 기타 발생할 수 있는 불로소득 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포함하지 않아 관찰되는 사례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 보충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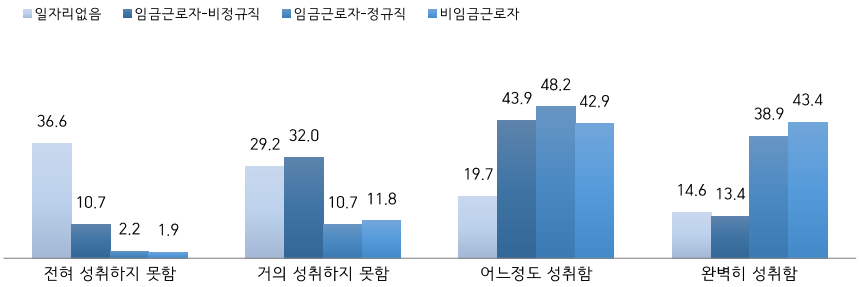



**그림 Ⅲ-11 경제적 자립 수준(일자리 성취수준) - 일자리 형태**

마지막으로 혼인상태에 따른 일자리 성취수준 결과를 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성취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긍정적인 응답값을 합산할 경우 85.5%에 달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된 이후 결혼을 결정하는 사례가 많은 현상을 드러낸다. 경제적 자립에도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른 체계적인 차이가 있다는 앞선 분석결과와 통합했을 때, 결혼을 희망함에도 경제적 상황으로 결혼을 유예하고 있는 취약배경 청년의 사례가 다수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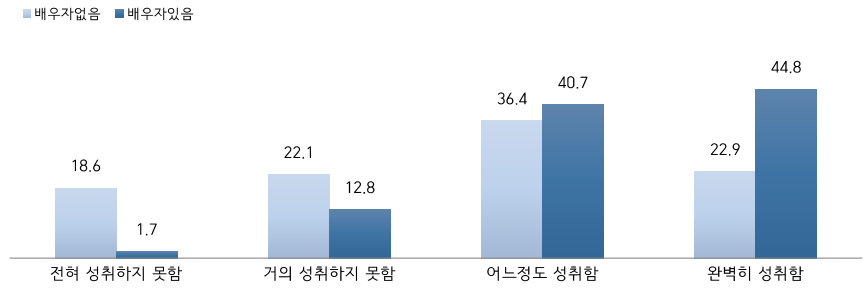



**그림 Ⅲ-12 경제적 자립 수준(일자리 성취수준) - 혼인상태**

**표 Ⅲ-26 경제적 자립 수준(경제적 독립)**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 | | 재정적 독립 성취수준 | | | |
|---|---|---|---|---|---|---|---|---|
| | | | 받은 적 있음 | 지원비율 (경제적지원/ 전체소득+ 경제적지원) | 전혀 성취하지 못함 | 거의 성취하지 못함 | 어느정도 성취함 | 완벽히 성취함 |
| 전체 | | (2,059) | 37.5 | 64.2 | 16.2 | 22.0 | 46.2 | 15.7 |
| 성별 | 남자 | (1,092) | 38.9 | 66.4 | 17.7 | 23.4 | 45.1 | 13.8 |
| | 여자 | (967) | 35.8 | 61.4 | 14.5 | 20.5 | 47.4 | 17.7 |
| 연령 | 만18~19세 | (191) | 89.5 | 80.1 | 44.6 | 26.2 | 26.9 | 2.3 |
| | 만20~24세 | (578) | 67.2 | 65.6 | 26.4 | 30.0 | 37.3 | 6.3 |
| | 만25~29세 | (686) | 23.8 | 57.3 | 11.2 | 22.1 | 53.3 | 13.5 |
| | 만30~34세 | (604) | 10.1 | 32.9 | 4.1 | 13.5 | 52.1 | 30.4 |
| 학력 | 고졸이하 | (553) | 29.4 | 65.4 | 14.1 | 22.1 | 48.0 | 15.8 |
| | 대학/대학원 재학 | (462) | 88.8 | 71.3 | 38.1 | 29.0 | 28.2 | 4.8 |
| | 대졸이상 | (1,044) | 19.3 | 48.7 | 7.7 | 18.9 | 53.1 | 20.4 |
| 부모 소득 수준 | 낮은편 | (92) | 27.7 | 65.6 | 17.9 | 17.3 | 43.3 | 21.5 |
| | 중간 | (1,654) | 36.1 | 61.6 | 15.5 | 22.8 | 45.8 | 15.9 |
| | 높은편 | (313) | 47.4 | 74.0 | 19.2 | 19.3 | 49.1 | 12.4 |
| 도시 규모 | 대도시 | (937) | 37.5 | 63.7 | 15.5 | 20.7 | 47.9 | 15.9 |
| | 중소도시 | (794) | 39.7 | 64.9 | 17.8 | 22.0 | 43.8 | 16.4 |
| | 농어촌 | (328) | 32.3 | 63.5 | 14.0 | 25.6 | 47.1 | 13.3 |
| 일자리 형태 | 일자리 없음 | (727) | 75.0 | 77.7 | 33.3 | 25.8 | 32.7 | 8.2 |
| | 임금근로자-비정규직 | (312) | 37.6 | 40.0 | 14.0 | 33.4 | 44.3 | 8.3 |
| | 임금근로자-정규직 | (883) | 10.6 | 20.3 | 5.4 | 15.6 | 56.7 | 22.4 |
| | 비임금근로자 | (137) | 14.0 | 41.0 | 1.3 | 18.1 | 53.2 | 27.4 |
| 주거 형태 | 동거 | (1,269) | 49.6 | 67.5 | 24.0 | 29.4 | 40.5 | 6.0 |
| | 비동거 | (110) | 75.6 | 61.7 | 23.2 | 29.9 | 43.4 | 3.5 |
| | 독립 | (680) | 9.7 | 35.8 | 0.9 | 7.4 | 56.8 | 34.9 |
| 혼인 상태 | 배우자 없음 | (1,707) | 44.2 | 65.4 | 19.6 | 25.7 | 45.0 | 9.7 |
| | 배우자 있음 | (352) | 7.3 | 30.6 | 0.5 | 5.6 | 51.4 | 42.5 |

청년들의 자립이 지연되면서 부모가 자녀를 지원하는 기간 역시 연장되고 있다. 청년들이 어느 정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수준의 일자리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또는 혼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모로부터 금전적 지원이 계속되기도 한다.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 수준과 재정적 독립 성취수준에 대한 청년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37.5%의 청년이 지난 1년간 경제적 지원을 받은 바 있고, 이때 평균적인 지원 수준은 1년간 전체 소득과 지원받은 액수를 합산한 값의 64.2%로, 소득이상의 경제적 지원을 부모로부터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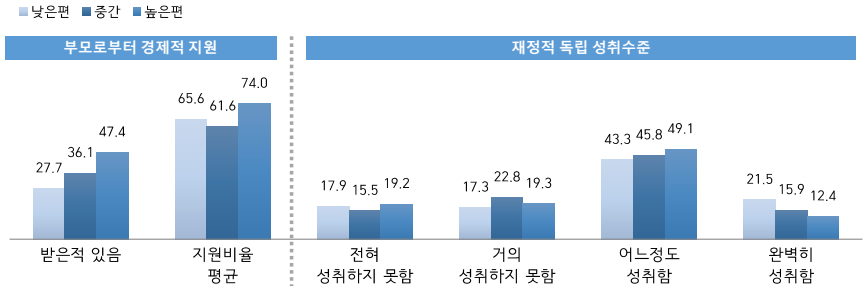



**그림 Ⅲ-13 경제적 자립 수준(경제적 독립) - 부모소득수준**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적 지원은 더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에 따라 청년들의 재정적 독립에 대한 인식은 부모의 소득수준과 반비례했다. 즉,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청년들이 재정적으로 독립했다는 인식은 낮아졌다(부모소득 낮은 편: 21.5% / 중간: 15.9% / 높은 편: 12.4%). 그러나 완벽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성취했다는 인식에 도달하는 데는 부모의 소득과 정비례했다(부모소득 낮은 편: 43.3% / 중간: 45.8% / 높은 편: 49.1%). 그 결과 재정적 독립을 일정수준 이상(어느 정도 성취함 및 완벽히 성취함) 달성했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율에서의 부모소득에 따른 차이(부모소득 낮은 편: 64.8% / 중간: 61.7% / 높은 편: 61.5%)는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았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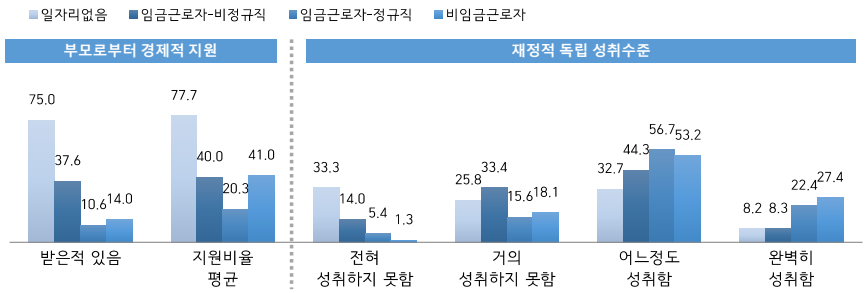



**그림 Ⅲ-14 경제적 자립 수준(경제적 독립) - 일자리 형태**

일자리가 안정될수록 청년들은 부모의 지원으로부터 멀어졌으며, 재정적 독립 상태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특징적으로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지원을 받는 경우 그 비율이 41%로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정도 수준으로 낮지 않았다.

한편, 경제적 독립이나 재정적 독립에 대한 인식에서 혼인상태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사례의 비율이 7.3%로 매우 낮고, 지원을 받더라도 배우자가 없는 청년과 지원규모의 차이가 컸다. 또한, 이들 중 93.9%는 어느 정도 수준이상 재정적으로 독립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② 주거 자립

성인 이행기 청년의 주거 자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집 소유 및 주거독립 여부를 살펴보고 스스로 생각하는 주거 독립 및 적정 주거 생활 유지와 관련한 성취수준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청년들은 본인 명의 집 소유 여부 및 전망에 대해 '이미 소유하고 있다'(7.3%), '향후 5년 미만'(4.4%), '향후 5년 이상 10년 미만'(18.7%), '향후 10년 이상 20년 미만'(31.1%), '향후 20년 이상 또는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38.5%)로 응답했다. 부모 동거 여부에 대해서는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청년이 60.9%, 동거하고 있지 않지만 경제적으로는 의존하고 있다는 경우가 5.3%, 그리고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했다고 응답한 청년이 33.8%였다.

**표 Ⅲ-27 주거 자립 수준(집 소유 및 주거독립)**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본인 명의 집 소유 | | | | | 부모 동거 여부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동거 | 비동거 | 독립 |
| 전체 | | (2,059) | 7.3 | 4.4 | 18.7 | 31.1 | 38.5 | 60.9 | 5.3 | 33.8 |
| 성별 | 남자 | (1,092) | 6.2 | 4.5 | 19.9 | 33.1 | 36.3 | 62.7 | 5.3 | 32.0 |
| | 여자 | (967) | 8.5 | 4.3 | 17.5 | 28.8 | 40.9 | 58.9 | 5.4 | 35.7 |
| 연령 | 만 18~19세 | (191) | 0.0 | 0.9 | 9.1 | 27.7 | 62.3 | 91.9 | 4.9 | 3.2 |
| | 만 20~24세 | (578) | 1.0 | 1.9 | 14.5 | 31.7 | 51.0 | 80.8 | 9.5 | 9.7 |
| | 만 25~29세 | (686) | 5.3 | 4.6 | 19.5 | 32.0 | 38.6 | 62.7 | 5.0 | 32.3 |
| | 만 30~34세 | (604) | 17.3 | 7.5 | 24.5 | 30.5 | 20.1 | 31.9 | 2.0 | 66.1 |
| 학력 | 고졸이하 | (553) | 8.2 | 5.0 | 17.0 | 26.3 | 43.4 | 54.5 | 2.8 | 42.7 |
| | 대학/대학원 재학 | (462) | 0.2 | 1.2 | 13.1 | 34.0 | 51.4 | 82.4 | 13.0 | 4.7 |
| | 대졸이상 | (1,044) | 10.0 | 5.4 | 22.2 | 32.4 | 30.1 | 54.9 | 3.3 | 41.7 |
| 부모 소득 수준 | 낮은편 | (92) | 9.1 | 6.8 | 17.7 | 23.1 | 43.2 | 53.6 | 5.0 | 41.3 |
| | 중간 | (1,654) | 7.3 | 4.2 | 18.5 | 31.3 | 38.6 | 59.4 | 5.1 | 35.5 |
| | 높은편 | (313) | 7.0 | 4.2 | 20.3 | 32.1 | 36.4 | 71.0 | 6.6 | 22.5 |
| 도시 규모 | 대도시 | (937) | 5.4 | 3.8 | 17.0 | 33.1 | 40.8 | 63.4 | 4.6 | 31.9 |
| | 중소도시 | (794) | 9.3 | 4.0 | 18.8 | 28.2 | 39.6 | 59.9 | 5.1 | 35.1 |
| | 농어촌 | (328) | 7.8 | 6.9 | 23.0 | 32.7 | 29.7 | 56.6 | 7.9 | 35.6 |
| 일자리 형태 | 일자리 없음 | (727) | 4.8 | 3.1 | 14.6 | 28.5 | 49.1 | 72.4 | 7.7 | 19.9 |
| | 임금근로자-비정규직 | (312) | 3.8 | 3.1 | 14.0 | 27.4 | 51.8 | 70.1 | 7.7 | 22.2 |
| | 임금근로자-정규직 | (883) | 8.0 | 4.6 | 22.3 | 36.4 | 28.7 | 51.7 | 3.0 | 45.4 |
| | 비임금근로자 | (137) | 23.7 | 12.3 | 27.6 | 19.5 | 17.0 | 40.1 | 2.8 | 57.1 |
| 주거 형태 | 동거 | (1,269) | 1.2 | 2.6 | 15.7 | 34.1 | 46.4 | 100.0 | 0.0 | 0.0 |
| | 비동거 | (110) | 1.3 | 4.7 | 17.5 | 30.4 | 46.1 | 0.0 | 100.0 | 0.0 |
| | 독립 | (680) | 19.3 | 7.7 | 24.3 | 25.8 | 23.0 | 0.0 | 0.0 | 100.0 |
| 혼인 상태 | 배우자 없음 | (1,707) | 1.8 | 3.1 | 17.3 | 33.9 | 43.9 | 73.9 | 6.4 | 19.7 |
| | 배우자 있음 | (352) | 32.0 | 10.3 | 25.3 | 18.4 | 14.0 | 2.2 | 0.4 | 97.4 |

① 이미 소유하고 있다 ② 향후 5년 미만 ③ 향후 5년 이상 10년 미만 ④ 향후 10년 이상 20년 미만 ⑤ 향후 20년 이상 또는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

본인 명의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청년들은 30대가 많았고, 20대 후반 청년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학력에 따라서 살펴보면, 고졸이하 청년 중 집을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43.4%로 대졸이상 청년(30.1%)에 비해 그 차이가 크다. 또한, 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청년의 51.4%는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는데, 이들이 당장 큰 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근 급격하게 높아진 집값이 이와 같은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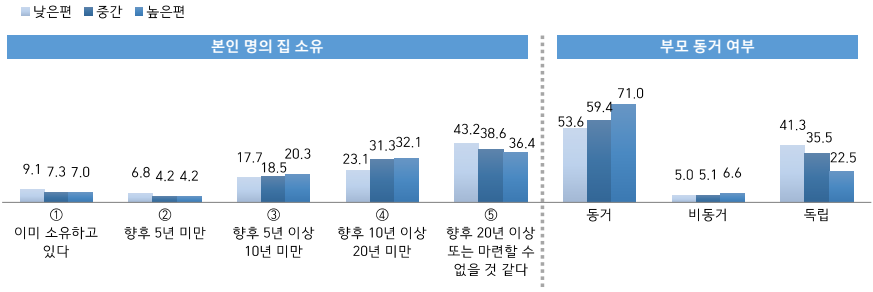



**그림 Ⅲ-15 주거 자립 수준(집 소유 및 주거독립) - 부모소득수준**

부모소득에 따라서는 흥미로운 양상이 나타나는데, 고소득배경 청년의 경우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단기간 내 소유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고, 20년 이상 또는 마련하지 못할 것 같다고 예상하는 사례 또한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한 고소득배경 청년은 다른 소득배경 집단보다 많고, 독립한 청년은 다른 소득배경 집단보다 적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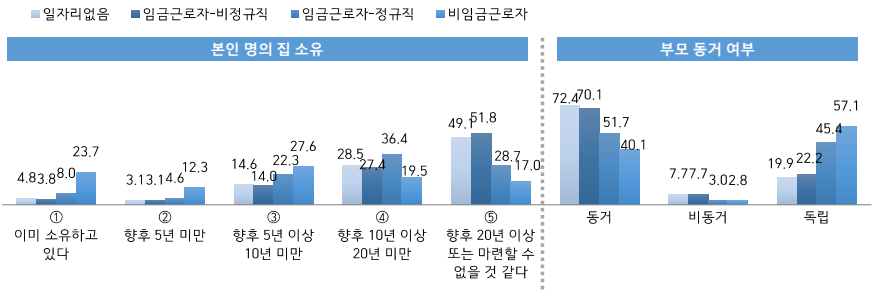



**그림 Ⅲ-16 주거 자립 수준(집 소유 및 주거독립) - 일자리 형태**

한편, 전체 청년 중 집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7.3%이지만, 비임금근로자의 23.7%는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혀 청년 내 격차를 보여준다. 또한, 비임금근로자는 많은 경우 부모로부터 독립해 살고 있으며,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상대적으로 단기간 내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비임금근로자의 다수가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인 점, 그리고 청년기에 그러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고소득배경 청년은 주로 부모와 동거하면서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단기간 내 경제 자립과 주거 자립을 일거에 달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자립 과정에서 부모의 지원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표 Ⅲ-28 주거 자립 성취 수준(주거독립 및 적정 주거 생활 유지)**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주거독립 | | | | 적정 주거 생활 유지 | | | |
|---|---|---|---|---|---|---|---|---|---|---|
| | | | 전혀 성취하지 못함 | 거의 성취하지 못함 | 어느정도 성취함 | 완벽히 성취함 | 전혀 성취하지 못함 | 거의 성취하지 못함 | 어느정도 성취함 | 완벽히 성취함 |
| 전체 | | (2,059) | 24.6 | 26.4 | 29.6 | 19.4 | 21.2 | 28.0 | 33.5 | 17.3 |
| 성별 | 남자 | (1,092) | 25.5 | 26.5 | 30.0 | 18.1 | 21.2 | 29.1 | 33.5 | 16.1 |
| | 여자 | (967) | 23.7 | 26.3 | 29.1 | 20.9 | 21.2 | 26.6 | 33.5 | 18.6 |
| 연령 | 만18~19세 | (191) | 53.1 | 23.1 | 19.8 | 4.0 | 49.5 | 23.7 | 21.9 | 4.9 |
| | 만20~24세 | (578) | 34.6 | 33.8 | 23.3 | 8.4 | 30.2 | 34.3 | 26.1 | 9.4 |
| | 만25~29세 | (686) | 24.2 | 26.6 | 31.7 | 17.5 | 18.6 | 32.2 | 33.6 | 15.6 |
| | 만30~34세 | (604) | 7.9 | 20.3 | 35.8 | 36.0 | 7.8 | 18.9 | 43.5 | 29.9 |
| 학력 | 고졸이하 | (553) | 22.0 | 23.3 | 32.5 | 22.2 | 18.7 | 24.2 | 37.1 | 20.0 |
| | 대학/대학원 재학 | (462) | 43.3 | 29.9 | 20.0 | 6.9 | 38.3 | 32.2 | 22.5 | 6.9 |
| | 대졸이상 | (1,044) | 17.9 | 26.5 | 32.2 | 23.4 | 15.1 | 28.1 | 36.4 | 20.4 |
| 부모 소득 수준 | 낮은편 | (92) | 32.5 | 21.4 | 20.2 | 25.9 | 28.7 | 25.5 | 23.4 | 22.4 |
| | 중간 | (1,654) | 23.3 | 27.4 | 29.4 | 19.8 | 20.4 | 28.3 | 34.0 | 17.2 |
| | 높은편 | (313) | 28.9 | 22.6 | 33.1 | 15.3 | 23.1 | 26.9 | 34.0 | 16.1 |
| 도시 규모 | 대도시 | (937) | 24.5 | 27.5 | 29.3 | 18.7 | 21.6 | 27.8 | 34.7 | 15.8 |
| | 중소도시 | (794) | 26.0 | 24.4 | 29.0 | 20.7 | 23.1 | 27.0 | 31.1 | 18.8 |
| | 농어촌 | (328) | 21.8 | 28.3 | 31.7 | 18.1 | 15.7 | 30.5 | 36.2 | 17.7 |
| 일자리 형태 | 일자리없음 | (727) | 38.3 | 24.7 | 23.8 | 13.1 | 35.5 | 27.0 | 27.0 | 10.5 |
| | 임금근로자-비정규직 | (312) | 24.8 | 34.8 | 27.9 | 12.5 | 20.7 | 36.1 | 32.5 | 10.7 |
| | 임금근로자-정규직 | (883) | 16.0 | 25.5 | 33.7 | 24.9 | 12.4 | 26.9 | 37.6 | 23.1 |
| | 비임금근로자 | (137) | 8.7 | 22.2 | 36.9 | 32.3 | 4.8 | 22.0 | 42.9 | 30.3 |
| 주거 형태 | 동거 | (1,269) | 38.8 | 35.6 | 21.3 | 4.4 | 33.3 | 37.9 | 22.6 | 6.3 |
| | 비동거 | (110) | 11.7 | 27.1 | 46.0 | 15.2 | 10.1 | 22.8 | 53.4 | 13.6 |
| | 독립 | (680) | 1.1 | 9.7 | 42.0 | 47.2 | 1.2 | 10.9 | 50.1 | 37.8 |
| 혼인 상태 | 배우자없음 | (1,707) | 30.0 | 30.2 | 27.8 | 12.0 | 25.8 | 32.1 | 30.3 | 11.8 |
| | 배우자있음 | (352) | 0.5 | 9.2 | 37.6 | 52.7 | 0.7 | 9.1 | 47.8 | 42.4 |

부모 또는 양육자의 주거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주거 자립의 선제적 조건일 수 있으나, 그러한 분리가 주거와 관련한 기본 역량과 동반되었을 때 주거 자립에 보다 근접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지만 청년들의 응답에서 단순히 부모 집에서 살지 않게 되는 것과 적정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 사이에 괴리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주거 독립 성취 수준 및 적정 주거 생활 유지 성취 수준의 응답값을 비교하면, 부모로부터 물리적으로 독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주거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종합하면 전체 청년 가운데 13.4%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주거 관련 적정한 수준의 기초생활 역량을 갖추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놓인 청년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청년층은 사회 경험이 많지 않고, 1인가구인 경우 지원망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 전세사기에 특히 취약하다는 점에서 주거와 관련한 기본 역량 함양을 통해 둘 간의 간극을 메울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Ⅲ-29 주거 자립 성취 수준 비교(주거독립 및 적정 주거 생활 유지)**

(단위: %, 명)

| | |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 적정한 주거생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 | | | | 사례수 | % |
|---|---|---|---|---|---|---|---|
| | | 전혀 성취하지 못함 | 거의 성취하지 못함 | 약간 성취함 | 완전히 성취함 | | |
| 부모님 집에서 살지 않게 되는 것 | 전혀 성취하지 못함 | 78.3 | 18.4 | 3.0 | 0.4 | 507 | 24.6 |
| | 거의 성취하지 못함 | 6.7 | 63.8 | 27.6 | 1.9 | 554 | 26.9 |
| | 약간 성취함 | 0.6 | 20.7 | 63.8 | 15.0 | 596 | 28.9 |
| | 완전히 성취함 | 0.0 | 2.5 | 34.2 | 63.3 | 402 | 19.5 |
| 사례수 | | 439 | 582 | 677 | 361 | 2,059 | |
| % | | 21.22 | 27.96 | 33.5 | 17.31 | | 100 |

*주: 비율은 가중치 적용 결과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값임.

③ 관계 자립

성인 이행기 청년의 관계 자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 및 연결망 수준을 살펴보고 관계적 자립 성취 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사회적 지원과 연결망에 대한 정보는 성인 이행기 청년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위나 상태를 획득하는 것을 넘어서

주변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거나 상호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적절하게 형성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표 Ⅲ-30 관계적 자립 수준(사회적 지원 및 연결망)**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사회적 지원 | | | 연결망 | | |
|---|---|---|---|---|---|---|---|---|
| | | | 정보적 지원 | 도구적 지원 | 정서적 지원 | 0명 | 1~2명 | 3명 이상 |
| 전체 | | (2,059) | 12.8 | 5.1 | 4.5 | 10.4 | 20.7 | 69.0 |
| 성별 | 남자 | (1,092) | 11.8 | 5.0 | 4.3 | 10.6 | 20.5 | 68.9 |
| | 여자 | (967) | 13.8 | 5.2 | 4.7 | 10.1 | 20.8 | 69.1 |
| 연령 | 만18~19세 | (191) | 15.7 | 4.9 | 5.4 | 10.2 | 17.7 | 72.1 |
| | 만20~24세 | (578) | 12.7 | 7.0 | 4.8 | 10.8 | 19.2 | 70.0 |
| | 만25~29세 | (686) | 10.7 | 4.1 | 3.6 | 10.4 | 19.4 | 70.3 |
| | 만30~34세 | (604) | 14.3 | 4.4 | 4.9 | 10.1 | 24.2 | 65.7 |
| 학력 | 고졸이하 | (553) | 16.4 | 7.0 | 4.1 | 12.5 | 26.5 | 61.0 |
| | 대학/대학원 재학 | (462) | 10.6 | 6.2 | 5.4 | 9.8 | 16.7 | 73.5 |
| | 대졸이상 | (1,044) | 11.8 | 3.5 | 4.3 | 9.5 | 19.2 | 71.3 |
| 부모 소득 수준 | 낮은편 | (92) | 17.7 | 12.5 | 4.4 | 13.9 | 26.6 | 59.5 |
| | 중간 | (1,654) | 12.0 | 4.3 | 3.8 | 9.8 | 20.1 | 70.1 |
| | 높은편 | (313) | 15.0 | 6.5 | 8.1 | 12.1 | 21.7 | 66.2 |
| 도시 규모 | 대도시 | (937) | 9.2 | 3.2 | 3.3 | 9.7 | 21.0 | 69.3 |
| | 중소도시 | (794) | 14.6 | 5.7 | 4.5 | 11.5 | 20.6 | 67.9 |
| | 농어촌 | (328) | 17.9 | 8.4 | 7.8 | 9.4 | 19.8 | 70.8 |
| 일자리 형태 | 일자리 없음 | (727) | 11.5 | 5.2 | 4.1 | 10.8 | 21.1 | 68.1 |
| | 임금근로자-비정규직 | (312) | 18.1 | 4.6 | 6.0 | 13.3 | 21.5 | 65.2 |
| | 임금근로자-정규직 | (883) | 11.1 | 4.9 | 4.3 | 9.5 | 20.4 | 70.1 |
| | 비임금근로자 | (137) | 18.2 | 6.3 | 4.5 | 7.5 | 18.2 | 74.3 |
| 주거 형태 | 동거 | (1,269) | 13.5 | 4.2 | 4.4 | 10.8 | 19.5 | 69.7 |
| | 비동거 | (110) | 8.7 | 7.4 | 8.3 | 12.4 | 17.8 | 69.8 |
| | 독립 | (680) | 12.2 | 6.3 | 4.1 | 9.3 | 23.2 | 67.5 |
| 혼인 상태 | 배우자 없음 | (1,707) | 12.7 | 5.4 | 4.7 | 10.7 | 19.4 | 69.9 |
| | 배우자 있음 | (352) | 12.9 | 3.7 | 3.8 | 8.8 | 26.4 | 64.9 |

*주: 사회적 지원(정보적 지원, 도구적 지원, 정서적 지원)에 제시된 값은 해당 영역에 대해 도움 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을 의미함

분석 결과, 정보적 지원이 없는 청년 12.8%, 도구적 지원이 없는 청년 5.1%, 그리고 정서적 지원이 없는 청년 4.5%로 나타났으며, 어려울 때 도와줄 주변사람이나 친구가 한명도 없다고 응답한 사례가 10.4%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적 측면에서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청년이 다수 있음을 시사한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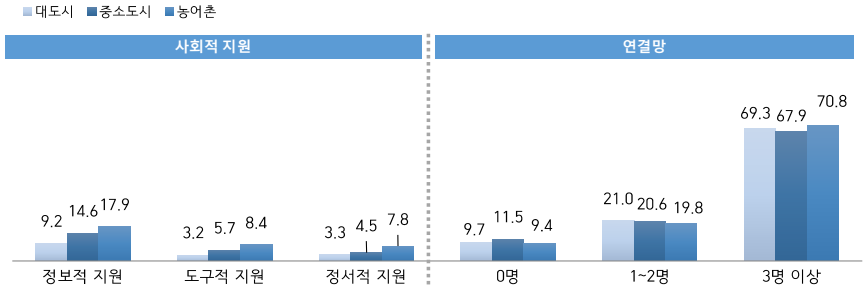



**그림 Ⅲ-17 관계적 자립 수준(사회적 지원 및 연결망) - 도시규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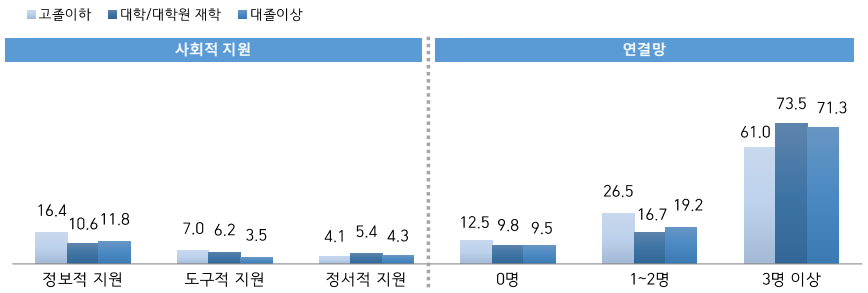



**그림 Ⅲ-18 관계적 자립 수준(사회적 지원 및 연결망) - 학력**

특히, 도시규모나 학력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 점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있는 청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표 Ⅲ-31 관계적 자립 수준(관계성취)**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부모와 성인으로서 동등한 관계 형성 | | | | 상호호혜적 관계 형성 | | | |
|---|---|---|---|---|---|---|---|---|---|---|
| | | | 전혀 성취하지 못함 | 거의 성취하지 못함 | 어느정도 성취함 | 완벽히 성취함 | 전혀 성취하지 못함 | 거의 성취하지 못함 | 어느정도 성취함 | 완벽히 성취함 |
| 전체 | | (2,059) | 4.8 | 27.1 | 53.0 | 15.1 | 3.6 | 23.8 | 56.6 | 15.9 |
| 성별 | 남자 | (1,092) | 5.7 | 27.0 | 53.3 | 14.0 | 4.6 | 25.5 | 55.1 | 14.8 |
| | 여자 | (967) | 3.8 | 27.3 | 52.6 | 16.4 | 2.5 | 21.9 | 58.3 | 17.3 |
| 연령 | 만18~19세 | (191) | 20.7 | 36.5 | 33.3 | 9.5 | 15.6 | 34.9 | 44.3 | 5.2 |
| | 만20~24세 | (578) | 7.1 | 34.6 | 49.3 | 9.1 | 4.9 | 33.9 | 52.1 | 9.1 |
| | 만25~29세 | (686) | 2.5 | 26.6 | 56.3 | 14.6 | 2.4 | 21.3 | 60.9 | 15.4 |
| | 만30~34세 | (604) | 0.6 | 18.3 | 58.4 | 22.8 | 0.4 | 14.1 | 59.7 | 25.8 |
| 학력 | 고졸이하 | (553) | 7.3 | 25.4 | 49.8 | 17.5 | 5.7 | 22.6 | 55.3 | 16.5 |
| | 대학/대학원 재학 | (462) | 9.2 | 37.8 | 44.4 | 8.6 | 6.9 | 36.8 | 47.2 | 9.1 |
| | 대졸이상 | (1,044) | 1.5 | 23.4 | 58.4 | 16.7 | 1.1 | 18.7 | 61.5 | 18.6 |
| 부모 소득 수준 | 낮은편 | (92) | 3.4 | 31.5 | 49.3 | 15.8 | 5.6 | 21.7 | 53.5 | 19.2 |
| | 중간 | (1,654) | 4.9 | 27.4 | 52.8 | 14.9 | 3.3 | 24.2 | 57.3 | 15.2 |
| | 높은편 | (313) | 4.4 | 24.5 | 54.9 | 16.1 | 4.8 | 22.5 | 53.9 | 18.7 |
| 도시 규모 | 대도시 | (937) | 3.4 | 26.6 | 57.1 | 12.9 | 3.2 | 23.1 | 60.4 | 13.3 |
| | 중소도시 | (794) | 6.4 | 26.4 | 49.1 | 18.1 | 4.6 | 22.7 | 55.3 | 17.4 |
| | 농어촌 | (328) | 4.7 | 30.3 | 51.2 | 13.9 | 2.2 | 28.4 | 49.7 | 19.7 |
| 일자리 형태 | 일자리 없음 | (727) | 10.5 | 32.7 | 46.1 | 10.7 | 7.9 | 33.9 | 47.1 | 11.1 |
| | 임금근로자-비정규직 | (312) | 4.2 | 34.6 | 52.3 | 8.9 | 2.1 | 27.1 | 59.7 | 11.0 |
| | 임금근로자-정규직 | (883) | 1.1 | 21.6 | 58.2 | 19.1 | 1.1 | 16.2 | 63.4 | 19.3 |
| | 비임금근로자 | (137) | 0.0 | 16.8 | 56.6 | 26.6 | 0.8 | 12.6 | 56.5 | 30.1 |
| 주거 형태 | 동거 | (1,269) | 6.5 | 32.7 | 51.5 | 9.3 | 5.3 | 28.4 | 58.4 | 7.9 |
| | 비동거 | (110) | 9.1 | 36.0 | 44.4 | 10.5 | 5.2 | 34.1 | 44.6 | 16.2 |
| | 독립 | (680) | 0.9 | 15.8 | 56.8 | 26.4 | 0.3 | 14.0 | 55.4 | 30.4 |
| 혼인 상태 | 배우자 없음 | (1,707) | 5.7 | 30.2 | 52.5 | 11.6 | 4.3 | 26.9 | 57.1 | 11.6 |
| | 배우자 있음 | (352) | 0.8 | 13.2 | 54.8 | 31.2 | 0.3 | 9.7 | 54.5 | 35.5 |

부모와 성인으로서 동등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일종의 자립 조건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타인과 상호호혜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때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계적 자립의 조건과 역량에 대해 각각 청년들의 68.1%(어느 정도 성취함: 53.0% / 완벽히 성취함: 15.1%)와 72.5%(어느 정도 성취함: 56.6% / 완벽히 성취함: 15.9%)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자립을 완벽하게 성취했다고 응답한 사례와 어느 정도 성취했다고 응답한 사례 간 차이가 다른 자립 영역에 비해 크고, 전혀 성취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낮았던 점은 특징적이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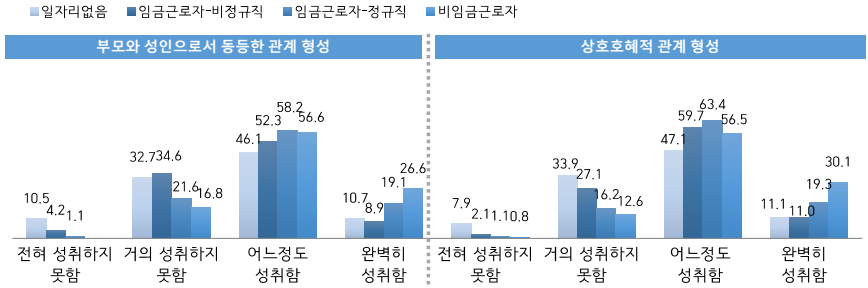



**그림 Ⅲ-19 관계적 자립 수준(관계성취) - 일자리형태**

다른 한편으로는 안정된 일자리가 갖춰졌을 때 관계적 자립도 달성되었다고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경우 여러 어려움을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시사한다.

④ 주관적 자립

청년들의 주관적 자립 실태는 현재가 갖는 의미, 독립성 인지, 성인 자각, 사회적 지원 및 연결망 수준을 살펴보고 관계적 자립 성취 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표 Ⅲ-32 주관적 자립 수준(현재가 갖는 의미)**

(단위: 명, 점)

| 구분 | | 사례수 | 현재가 갖는 의미 | | | |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 전체 | | (2,059) | 3.0 | 2.9 | 2.9 | 2.8 | 2.9 | 3.0 | 2.8 | 3.0 |
| 성별 | 남자 | (1,092) | 3.0 | 3.0 | 2.9 | 2.8 | 2.9 | 3.0 | 2.8 | 3.0 |
| | 여자 | (967) | 3.0 | 2.9 | 2.9 | 2.8 | 2.9 | 3.0 | 2.8 | 3.0 |
| 연령 | 만18~19세 | (191) | 3.1 | 3.1 | 2.9 | 2.8 | 3.0 | 3.0 | 2.9 | 3.1 |
| | 만20~24세 | (578) | 3.1 | 3.1 | 2.9 | 2.8 | 3.0 | 3.1 | 2.9 | 3.1 |
| | 만25~29세 | (686) | 3.0 | 2.9 | 3.0 | 2.8 | 2.9 | 3.0 | 2.8 | 2.9 |
| | 만30~34세 | (604) | 2.8 | 2.7 | 2.9 | 2.8 | 2.9 | 3.0 | 2.7 | 2.8 |
| 학력 | 고졸이하 | (553) | 2.9 | 2.8 | 3.0 | 2.8 | 2.9 | 3.0 | 2.8 | 3.0 |
| | 대학/대학원 재학 | (462) | 3.2 | 3.2 | 2.9 | 2.8 | 3.0 | 3.1 | 3.0 | 3.1 |
| | 대졸이상 | (1,044) | 2.9 | 2.8 | 2.9 | 2.8 | 2.9 | 3.0 | 2.8 | 2.9 |
| 부모 소득 수준 | 낮은편 | (92) | 2.8 | 2.6 | 3.0 | 2.9 | 2.8 | 2.9 | 2.8 | 2.8 |
| | 중간 | (1,654) | 3.0 | 2.9 | 2.9 | 2.8 | 2.9 | 3.0 | 2.8 | 3.0 |
| | 높은편 | (313) | 3.1 | 3.1 | 2.9 | 2.8 | 3.0 | 3.1 | 2.9 | 3.1 |
| 도시 규모 | 대도시 | (937) | 3.0 | 3.0 | 2.9 | 2.8 | 3.0 | 3.1 | 2.8 | 3.0 |
| | 중소도시 | (794) | 3.0 | 2.9 | 2.9 | 2.8 | 2.9 | 3.0 | 2.8 | 2.9 |
| | 농어촌 | (328) | 2.9 | 2.9 | 2.9 | 2.7 | 2.8 | 2.9 | 2.8 | 2.9 |
| 일자리 형태 | 일자리 없음 | (727) | 3.0 | 3.0 | 2.9 | 2.8 | 2.9 | 3.0 | 2.9 | 3.0 |
| | 임금근로자-비정규직 | (312) | 3.0 | 3.0 | 2.9 | 2.8 | 3.0 | 3.1 | 2.9 | 3.0 |
| | 임금근로자-정규직 | (883) | 2.9 | 2.8 | 2.9 | 2.7 | 2.9 | 3.0 | 2.8 | 2.9 |
| | 비임금근로자 | (137) | 3.0 | 2.8 | 3.1 | 2.9 | 3.0 | 3.1 | 2.8 | 2.9 |
| 주거 형태 | 동거 | (1,269) | 3.0 | 3.0 | 2.9 | 2.8 | 2.9 | 3.0 | 2.9 | 3.0 |
| | 비동거 | (110) | 3.2 | 3.1 | 3.1 | 2.9 | 3.0 | 3.1 | 3.0 | 3.0 |
| | 독립 | (680) | 2.9 | 2.8 | 2.9 | 2.8 | 2.9 | 3.0 | 2.7 | 2.9 |
| 혼인 상태 | 배우자 없음 | (1,707) | 3.0 | 3.0 | 2.9 | 2.8 | 2.9 | 3.0 | 2.9 | 3.0 |
| | 배우자 있음 | (352) | 2.8 | 2.6 | 2.9 | 2.7 | 2.8 | 2.9 | 2.7 | 2.7 |

① 가능성이 많은 시기 ② 탐색하고 탐험하는 시기 ③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 ④ 압박을 많이 받는 시기 ⑤ 나를 정의하고 규정하는 시기 ⑥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결정하는 시기 ⑦ 한편으로는 성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시기 ⑧ 조금씩 성인이 되어가는 시기

청년들에게 현재가 갖는 의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압박을 많이 받는 시기', '한편으로는 성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시기'에 대한 공감이 가장 낮았으며(2.8점), '가능성이 많은 시기',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결정하는 시기', '조금씩 성인이 되어가는 시기'(3.0점)에 대한 공감이 가장 많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각 의미 간 응답값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이는 청년들이 받아들이는 현재의 의미가 각각 다르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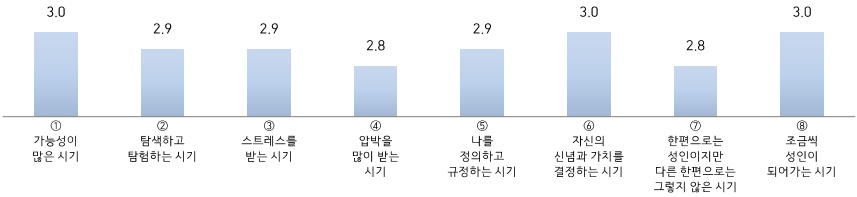



**그림 Ⅲ-20 주관적 자립 수준(현재가 갖는 의미) - 전체**

한편, 연령에 따라 현재의 의미에 대해 다소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큰 틀에서 가능성, 탐색, 이중적 상황에 대한 공감은 10대와 20대 초반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그러한 의미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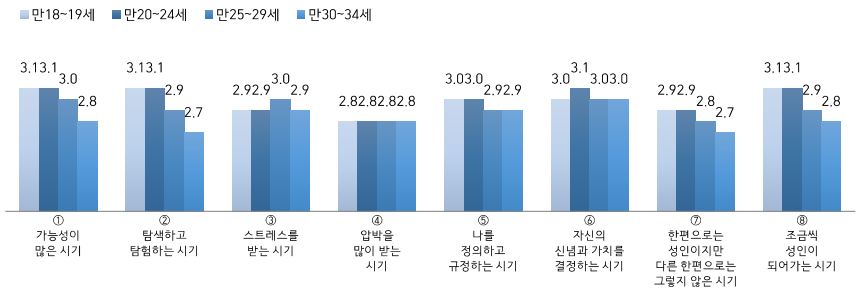



**그림 Ⅲ-21 주관적 자립 수준(현재가 갖는 의미) - 연령**

부모 소득에 따른 경향성은 연령과 대비된다. 부모소득이 높을수록 가능성, 탐색, 이중적 상황에 대한 공감이 두드러졌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결정하는 시기'로 정의하기도 했다. 다른 영역의 자립 지표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드러났듯, 이와 같은 결과는 가정환경배경이 청년들로 하여금 서둘러 사회에 진출하도록 독촉하거나, 반대로 자신에 대해 탐색하고 미래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도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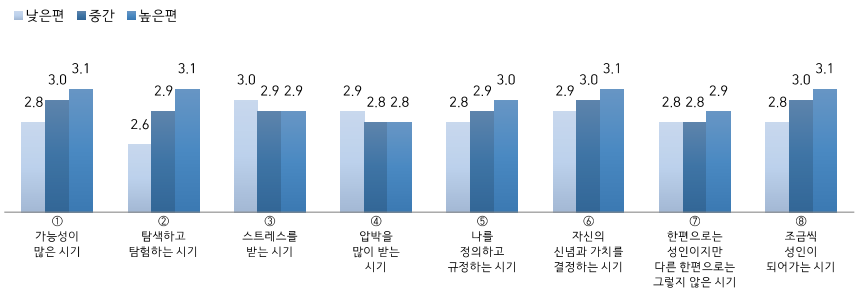



**그림 Ⅲ-22 주관적 자립 수준(현재가 갖는 의미) - 부모소득수준**

혼인 상태인 청년의 경우 대부분의 지표에서 공감하는 수준이 낮았다. 이는 혼인이 일종의 전환기와 같은 기능을 여전히 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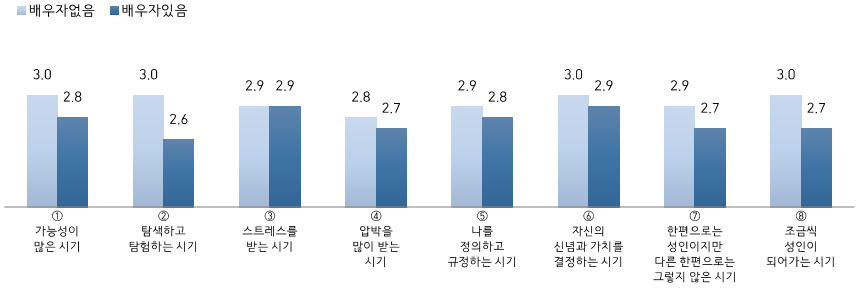



**그림 Ⅲ-23 주관적 자립 수준(현재가 갖는 의미) - 혼인상태**

**표 Ⅲ-33 주관적 자립 수준(독립성 인지 및 성인 자각)**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독립 수준에 대한 인지 | | | | 성인 자각 | | | | |
|---|---|---|---|---|---|---|---|---|---|---|---|
| | | | 전혀 독립적이지 않음 | 약간 독립적임 | 상당히 독립적임 | 완전히 독립적임 | 전혀 느끼지 못함 | 거의 느끼지 못함 | 가끔 느낌 | 자주 느낌 | 항상 느낌 |
| 전체 | | (2,059) | 13.9 | 37.3 | 37.2 | 11.6 | 1.3 | 10.6 | 43.4 | 33.3 | 11.4 |
| 성별 | 남자 | (1,092) | 14.5 | 38.0 | 35.7 | 11.8 | 1.2 | 11.0 | 44.6 | 31.5 | 11.6 |
| | 여자 | (967) | 13.3 | 36.6 | 38.8 | 11.4 | 1.4 | 10.1 | 42.0 | 35.3 | 11.2 |
| 연령 | 만18~19세 | (191) | 40.6 | 37.5 | 21.3 | 0.5 | 7.2 | 34.7 | 43.4 | 14.2 | 0.5 |
| | 만20~24세 | (578) | 24.2 | 45.4 | 27.6 | 2.8 | 1.5 | 16.1 | 56.0 | 23.4 | 2.9 |
| | 만25~29세 | (686) | 8.4 | 42.2 | 39.8 | 9.6 | 0.7 | 6.9 | 45.3 | 36.7 | 10.4 |
| | 만30~34세 | (604) | 2.9 | 24.6 | 47.6 | 24.9 | 0.2 | 2.6 | 29.6 | 44.1 | 23.4 |
| 학력 | 고졸이하 | (553) | 12.7 | 33.3 | 39.4 | 14.6 | 2.5 | 12.4 | 36.7 | 36.5 | 11.9 |
| | 대학/대학원 재학 | (462) | 31.6 | 45.9 | 20.6 | 1.8 | 1.8 | 20.8 | 56.3 | 19.2 | 2.0 |
| | 대졸이상 | (1,044) | 6.7 | 35.8 | 43.2 | 14.3 | 0.5 | 5.0 | 41.3 | 37.8 | 15.4 |
| 부모 소득 수준 | 낮은편 | (92) | 9.0 | 36.6 | 32.7 | 21.7 | 4.0 | 8.6 | 39.2 | 28.5 | 19.7 |
| | 중간 | (1,654) | 13.0 | 37.9 | 37.7 | 11.3 | 1.2 | 10.5 | 44.1 | 32.7 | 11.5 |
| | 높은편 | (313) | 19.9 | 34.7 | 35.7 | 9.7 | 1.2 | 11.7 | 40.6 | 37.9 | 8.6 |
| 도시 규모 | 대도시 | (937) | 14.2 | 37.6 | 37.3 | 10.8 | 1.5 | 9.8 | 44.0 | 34.8 | 9.9 |
| | 중소도시 | (794) | 15.4 | 36.2 | 37.4 | 11.0 | 0.9 | 11.6 | 43.8 | 31.8 | 11.9 |
| | 농어촌 | (328) | 9.5 | 39.4 | 36.1 | 15.0 | 1.9 | 10.3 | 40.5 | 32.8 | 14.5 |
| 일자리 형태 | 일자리 없음 | (727) | 29.7 | 40.6 | 24.3 | 5.3 | 2.6 | 19.7 | 48.8 | 23.0 | 5.8 |
| | 임금근로자-비정규직 | (312) | 11.0 | 46.5 | 37.2 | 5.4 | 1.0 | 11.7 | 52.8 | 29.5 | 5.0 |
| | 임금근로자-정규직 | (883) | 3.6 | 33.4 | 46.7 | 16.3 | 0.5 | 3.6 | 38.5 | 41.6 | 15.8 |
| | 비임금근로자 | (137) | 4.3 | 25.7 | 42.5 | 27.5 | 0.6 | 4.5 | 26.0 | 42.1 | 26.9 |
| 주거 형태 | 동거 | (1,269) | 21.0 | 47.2 | 29.7 | 2.2 | 1.7 | 14.5 | 52.5 | 27.5 | 3.7 |
| | 비동거 | (110) | 14.9 | 47.4 | 33.7 | 4.0 | 2.1 | 15.5 | 51.6 | 28.7 | 2.2 |
| | 독립 | (680) | 1.0 | 18.0 | 51.2 | 29.8 | 0.5 | 2.7 | 25.6 | 44.5 | 26.8 |
| 혼인 상태 | 배우자 없음 | (1,707) | 16.8 | 42.0 | 34.5 | 6.7 | 1.5 | 12.6 | 48.7 | 29.9 | 7.3 |
| | 배우자 있음 | (352) | 1.0 | 16.6 | 48.9 | 33.5 | 0.5 | 1.4 | 19.1 | 48.7 | 30.3 |

청년들은 스스로의 독립성에 대해 중립적으로 보고 있다. 부정적인 응답의 합산과 긍정적인 응답의 합산의 차이가 2.4% 로 나타났다. 대조적으로 성인으로서의 자각은 다소 높은 편이다. 스스로를 성인이라 전혀 느끼지 못하거나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11.9%에 불과했으며, 그나마도 10대 청년의 응답에 집중되어 있었다.

주관적 자립 수준은 비임금근로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에서의 높은 자율성과 책임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정이 맞는다면, 일자리가 어느 정도 유지될 때 두 집단 간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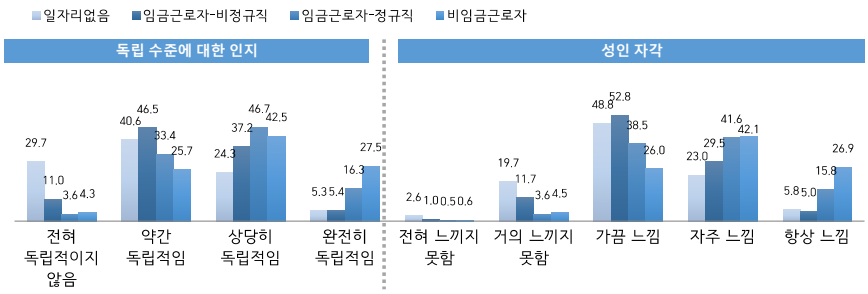



**그림 Ⅲ-24 주관적 자립 수준(독립성 인지 및 성인 자각) - 일자리형태**

배우자가 있는 청년의 경우 주관적 자립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 자립의 또 다른 차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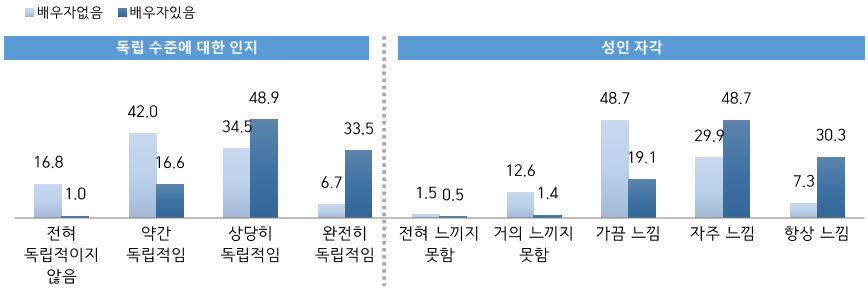



**그림 Ⅲ-25 주관적 자립 수준(독립성 인지 및 성인 자각) - 혼인상태**

**표 Ⅲ-34 주관적 자립 수준(독립성 인지)**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독립적 의사결정 | | | |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 | | |
|---|---|---|---|---|---|---|---|---|---|---|
| | | | 전혀 성취하지 못함 | 거의 성취하지 못함 | 어느정도 성취함 | 완벽히 성취함 | 전혀 성취하지 못함 | 거의 성취하지 못함 | 어느정도 성취함 | 완벽히 성취함 |
| 전체 | | (2,059) | 2.4 | 17.7 | 56.0 | 23.9 | 1.4 | 13.0 | 57.7 | 27.9 |
| 성별 | 남자 | (1,092) | 3.4 | 16.8 | 58.0 | 21.9 | 1.9 | 13.5 | 57.1 | 27.5 |
| | 여자 | (967) | 1.3 | 18.7 | 53.8 | 26.1 | 0.8 | 12.5 | 58.4 | 28.3 |
| 연령 | 만18~19세 | (191) | 11.4 | 36.9 | 42.4 | 9.3 | 8.2 | 26.0 | 54.3 | 11.6 |
| | 만20~24세 | (578) | 3.4 | 23.1 | 59.7 | 13.7 | 1.4 | 15.9 | 62.7 | 19.9 |
| | 만25~29세 | (686) | 1.1 | 14.4 | 59.6 | 24.9 | 0.6 | 12.7 | 58.8 | 28.0 |
| | 만30~34세 | (604) | 0.3 | 10.9 | 52.6 | 36.3 | 0.3 | 6.9 | 53.0 | 39.8 |
| 학력 | 고졸이하 | (553) | 4.8 | 18.0 | 53.9 | 23.3 | 3.2 | 15.2 | 55.9 | 25.7 |
| | 대학/대학원 재학 | (462) | 3.8 | 26.2 | 57.5 | 12.5 | 1.4 | 18.1 | 61.9 | 18.5 |
| | 대졸이상 | (1,044) | 0.5 | 13.8 | 56.5 | 29.2 | 0.4 | 9.5 | 56.9 | 33.2 |
| 부모 소득 수준 | 낮은편 | (92) | 2.6 | 17.9 | 51.5 | 28.1 | 1.1 | 17.5 | 51.1 | 30.3 |
| | 중간 | (1,654) | 2.4 | 17.8 | 56.3 | 23.4 | 1.4 | 12.9 | 57.8 | 27.9 |
| | 높은편 | (313) | 2.1 | 17.2 | 55.8 | 24.9 | 1.2 | 12.1 | 59.7 | 27.0 |
| 도시 규모 | 대도시 | (937) | 1.9 | 17.3 | 58.7 | 22.1 | 0.8 | 11.4 | 61.0 | 26.8 |
| | 중소도시 | (794) | 3.0 | 17.3 | 52.9 | 26.8 | 1.8 | 13.2 | 54.2 | 30.8 |
| | 농어촌 | (328) | 2.4 | 19.6 | 56.2 | 21.8 | 1.8 | 16.8 | 57.4 | 24.0 |
| 일자리 형태 | 일자리 없음 | (727) | 5.3 | 24.2 | 55.9 | 14.6 | 2.9 | 17.0 | 61.6 | 18.5 |
| | 임금근로자-비정규직 | (312) | 1.4 | 24.3 | 60.7 | 13.6 | 1.3 | 19.6 | 58.7 | 20.4 |
| | 임금근로자-정규직 | (883) | 0.7 | 11.4 | 55.0 | 32.9 | 0.4 | 8.7 | 55.1 | 35.8 |
| | 비임금근로자 | (137) | 0.0 | 9.5 | 53.1 | 37.4 | 0.0 | 4.9 | 52.6 | 42.5 |
| 주거 형태 | 동거 | (1,269) | 3.7 | 21.3 | 59.3 | 15.7 | 1.9 | 15.8 | 61.2 | 21.1 |
| | 비동거 | (110) | 2.6 | 23.5 | 59.4 | 14.6 | 2.1 | 16.7 | 56.3 | 25.0 |
| | 독립 | (680) | 0.0 | 10.2 | 49.6 | 40.2 | 0.4 | 7.3 | 51.7 | 40.6 |
| 혼인 상태 | 배우자 없음 | (1,707) | 2.9 | 19.5 | 58.4 | 19.2 | 1.7 | 14.6 | 60.2 | 23.5 |
| | 배우자 있음 | (352) | 0.0 | 9.4 | 45.3 | 45.3 | 0.0 | 5.6 | 46.8 | 47.6 |

독립적 의사결정이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에 대한 지표에서 나타난 결과는 앞선 독립성 인지에 관한 문항의 분석결과와 유사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결과가 일자리와 혼인 여부에서 나타났고, 연령의 증가에 따른 주관적 자립인식의 상승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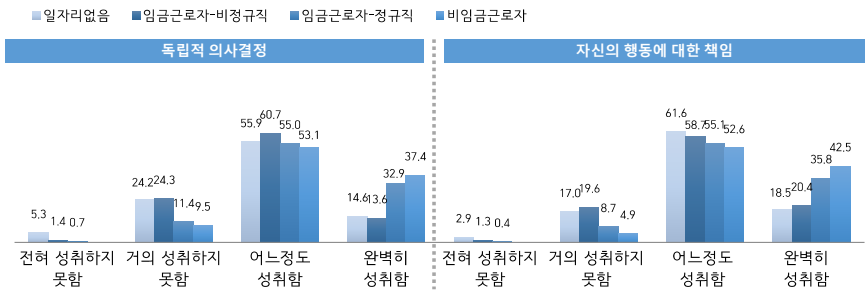



그림 Ⅲ-26 주관적 자립 수준(독립성 인지) - 일자리형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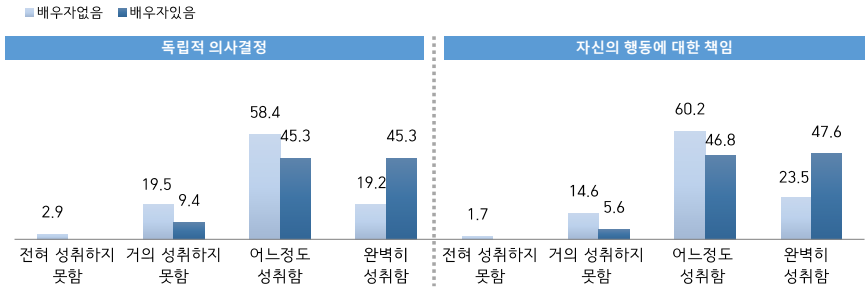



그림 Ⅲ-27 주관적 자립 수준(독립성 인지) - 혼인상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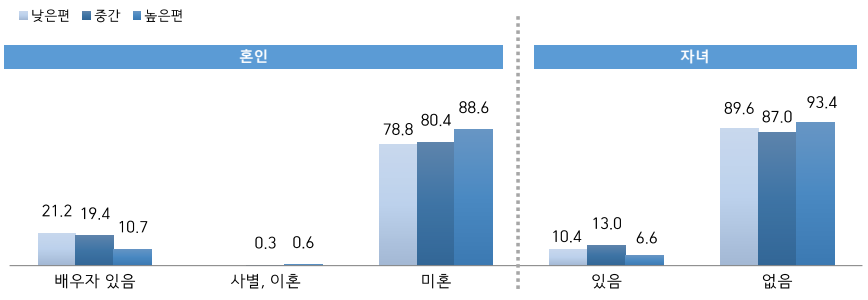



그림 Ⅲ-28 전환 사건 경험 여부(혼인 및 자녀) - 부모소득수준

⑤ 전환 사건

**표 Ⅲ-35 전환 사건 경험 여부(혼인 및 자녀)**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혼인 | | | 자녀 | |
|---|---|---|---|---|---|---|---|
| | | | 배우자 있음 | 사별·이혼 | 미혼 | 있음 | 없음 |
| 전체 | | (2,059) | 18.1 | 0.3 | 81.6 | 11.9 | 88.1 |
| 성별 | 남자 | (1,092) | 14.0 | 0.2 | 85.8 | 8.3 | 91.7 |
| | 여자 | (967) | 22.7 | 0.4 | 76.8 | 15.9 | 84.1 |
| 연령 | 만18~19세 | (191) | 0.0 | 0.5 | 99.5 | 0.5 | 99.5 |
| | 만20~24세 | (578) | 0.7 | 0.0 | 99.3 | 0.7 | 99.3 |
| | 만25~29세 | (686) | 11.7 | 0.3 | 87.9 | 7.6 | 92.4 |
| | 만30~34세 | (604) | 46.1 | 0.5 | 53.4 | 29.9 | 70.1 |
| 학력 | 고졸이하 | (553) | 21.9 | 0.6 | 77.4 | 16.4 | 83.6 |
| | 대학/대학원 재학 | (462) | 0.7 | 0.0 | 99.3 | 0.4 | 99.6 |
| | 대졸이상 | (1,044) | 23.8 | 0.2 | 76.0 | 14.6 | 85.4 |
| 부모 소득 수준 | 낮은 편 | (92) | 21.2 | 0.0 | 78.8 | 10.4 | 89.6 |
| | 중간 | (1,654) | 19.4 | 0.3 | 80.4 | 13.0 | 87.0 |
| | 높은 편 | (313) | 10.7 | 0.6 | 88.6 | 6.6 | 93.4 |
| 도시 규모 | 대도시 | (937) | 17.4 | 0.1 | 82.5 | 11.5 | 88.5 |
| | 중소도시 | (794) | 19.9 | 0.5 | 79.6 | 12.6 | 87.4 |
| | 농어촌 | (328) | 16.0 | 0.3 | 83.6 | 11.3 | 88.7 |
| 일자리 형태 | 일자리 없음 | (727) | 15.2 | 0.3 | 84.6 | 12.7 | 87.3 |
| | 임금근로자-비정규직 | (312) | 7.6 | 0.7 | 91.7 | 5.7 | 94.3 |
| | 임금근로자-정규직 | (883) | 20.3 | 0.2 | 79.5 | 11.0 | 89.0 |
| | 비임금근로자 | (137) | 42.2 | 0.0 | 57.8 | 26.9 | 73.1 |
| 주거 형태 | 동거 | (1,269) | 0.7 | 0.3 | 99.0 | 0.7 | 99.3 |
| | 비동거 | (110) | 1.5 | 0.0 | 98.5 | 0.0 | 100.0 |
| | 독립 | (680) | 52.3 | 0.3 | 47.4 | 34.0 | 66.1 |
| 혼인 상태 | 배우자 없음 | (1,707) | 0.0 | 0.4 | 99.6 | 0.2 | 99.8 |
| | 배우자 있음 | (352) | 100.0 | 0.0 | 0.0 | 64.6 | 35.4 |

여러 차원에서 드러나듯 전환 사건은 자립의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정 수준의 자립을 달성한 것으로 보이는 집단에서 혼인율과 자녀 출산율이 높게 나타난다. 부모소득 수준에 따른 결과는 이와 반대되는 결과로 보인다. 부모소득수준이 높은 편인 청년의 경우 혼인을 늦게 하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경제 자립이나 주거 자립에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고소득층 청년의 경우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선제적 조건 마련을 위해 일종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노동시장 및 사회에 진출하는 경향이 크며 그로 인한 성과도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 4.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특성: 자립 특성 및 인구사회학적 차이[8)]

### 1) 청년들의 성인 인식과 성인기 지표 성취와의 관계

이 절에서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 원데이터를 통해 청년들의 자립 특성 및 인구사회학적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MoA(Markers of Adulthood), 주관적 성인 인식 등의 문항을 통해 청년기 특징을 살펴보고, 성인기 지표(MoA: Markers of Adulthood)의 격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새로운 성인기 혹은 성인 진입기(emerging adulthood)의 특징이 이 데이터에서도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주관적 성인 인식에 대해 응답자의 출생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자. 아래 그림은 "귀하는 얼마나 자주 스스로 성인이 되었다고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8세부터 34세의 청년들이 5가지 응답범주(① 전혀 느끼지 못함, ② 거의 느끼지 못함, ③ 가끔 느낌, ④ 자주 느낌, ⑤ 항상 느낌)로 응답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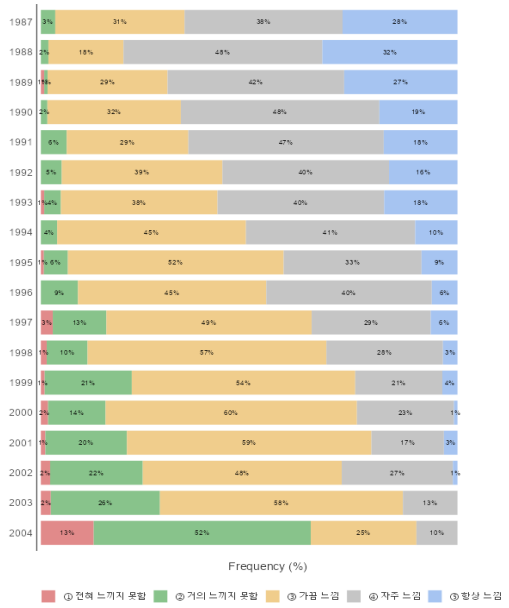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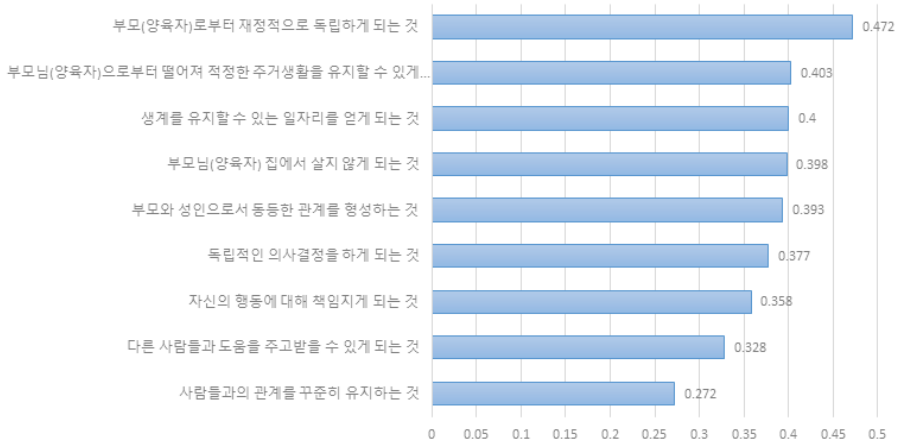



**그림 Ⅲ-29 주관적 성인 인식 결과(출생연도별)**

8) 이 절은 유민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다.

이 결과는 가장 어린 응답자인 2004년생에서부터 출발하여 점차적으로 성인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20대에는 성인이 되었음을 '가끔 느낌' 이라 응답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한 편으로는 성인이 되었다고 느끼지만 한 편으로는 아직 성인이 되지 못했다고 느끼는 상태이다. 30대에는 성인이 되었음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만 '항상 느낌'이라는 응답은 34세에 가서도 28%에 불과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성인 이행기에 성인으로 항상 느낀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주 느낌'을 포함하면 30대에 스스로 성인임을 자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진다. 하지만 30대에도 성인이 되었음을 가끔 느끼는 사람과 거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30% 가량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으로 정해놓은 청년기에만 성인으로의 이행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성인 이행기 동안 성취한 것들과 주관적 성인 인식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다음으로 주관적 성인 인식과 실제 청년들의 어떠한 과업 성취와 관련이 있는지 성인기 지표(MoA: Markers of Adulthood) 척도의 일부 문항을 통해 살펴보자. 다음의 그림은 단순 상관관계의 값을 구하여 나열한 것인데, 여기서의 상관계수는 -1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며 -1과 +1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 간의 연관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고: 모든 상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함(p<0.01)

**그림 Ⅲ-30 주관적 성인 인식과 생애주기 과업 성취 간의 상관관계 결과**

가장 주관적 성인 인식과 관련이 높은 것은 '부모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것(0.472)', '부모로부터 떨어져 적절한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0.403)',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게 되는 것(0.4)', '부모님 집에서 살지 않게 되는 것(0.398)', '부모와 성인으로서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0.393)' 등의 순이었다. 독립적 의사결정, 책임감 등도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사람들과의 도움, 사람들과의 꾸준한 관계 등은 다른 변수들에 비해 비교적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났다. 주로 경제적인 독립, 주거 독립을 성취했는지가 주관적 성인 인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청년들이 단순히 인식하는 성인기 지표의 중요성은 상관관계 결과와는 차이가 난다. 다음의 그림은 성인기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성인이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본인은 얼마나 성취하였는지를 물어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청년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게 되는 것(5점 만점 중 3.53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부모님(양육자) 집에서 살지 않게 되는 것(2.93점)',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 적절한 주거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3.07점)'은 비교적 중요도가 낮게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보면 실제로는 주거 독립이 성인이 되었다는 인식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덜하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성취 정도는 앞서 살펴본 경제적 측면과 주거 측면의 성취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성인기를 나타내는 지표들은 언제 성취되는가? 여기서는 성인기 지표(MoA: Markers of Adulthood)를 출생연도별로 중요성 인식과 실제 성취여부가 어떠한지 비교해보았다. 대략적인 결과를 보면, 특정한 이행사건을 나타내는 지표들의 중요도 인식은 출생연도별(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성취정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부모(양육자)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하게 되는 것'의 결과를 보면 중요도 인식은 몇몇 연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일정한 패턴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성취여부를 보면 20대 초반까지는 전혀 성취하지 못한 경우와 거의 성취하지 못한 경우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대 중반으로 가면서 이 비율이 비교적 크게 감소하게 되는데 20% 가량의 사람들이 거의 성취하지 못했거나 전혀 성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완전히 성취하는 비율은 34세까지 절반을 넘지 못하는데, 청년기에도 어느 정도는 재정적으로 독립을 하나 필요할 경우 금전적 지원(사적 이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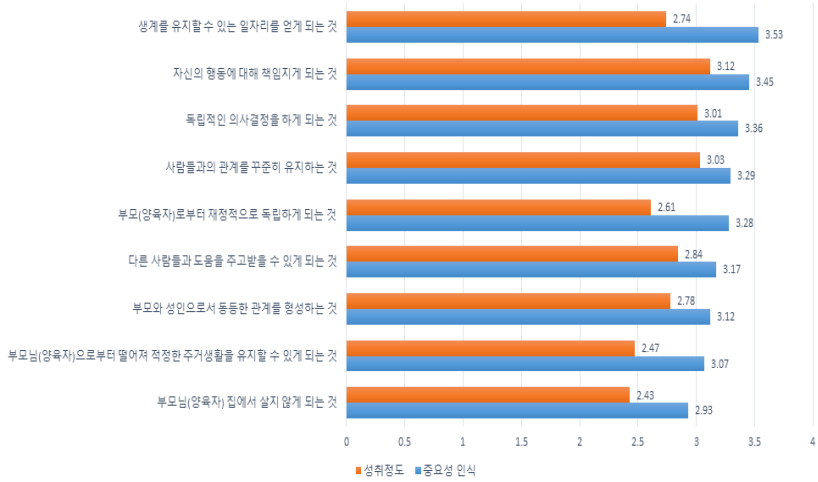



**그림 Ⅲ-31 성인기 지표별 중요성과 성취 정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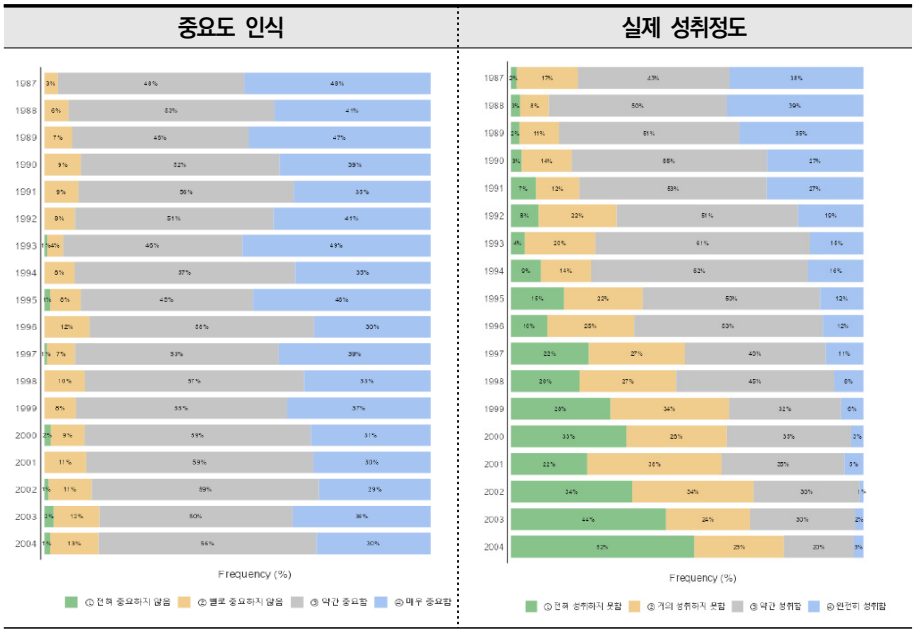



**그림 Ⅲ-32 출생연도별 성인기 지표(Markers of Adulthood)의 중요성 인식과 성취여부 : ① 부모(양육자)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하게 되는 것**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게 되는 것은 성인기 지표 중 가장 중요도가 높았던 항목으로 전 연령에 걸쳐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성취 정도는 낮은 편이었는데, 20대 중반에야 과반 이하로 떨어졌고 20대 후반에야 70% 선을 넘겼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진학률이 70% 이상으로 상당수의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어 실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는 것이 졸업 이후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30대에도 20% 가량의 청년들이 전혀 성취하지 못하거나 거의 성취하지 못했다고 응답하는 것인데, 이것은 청년들에게 나타나는 니트 문제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육아나 장기실업으로 인해 취업/교육/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청년들의 니트 비율이 20%를 상회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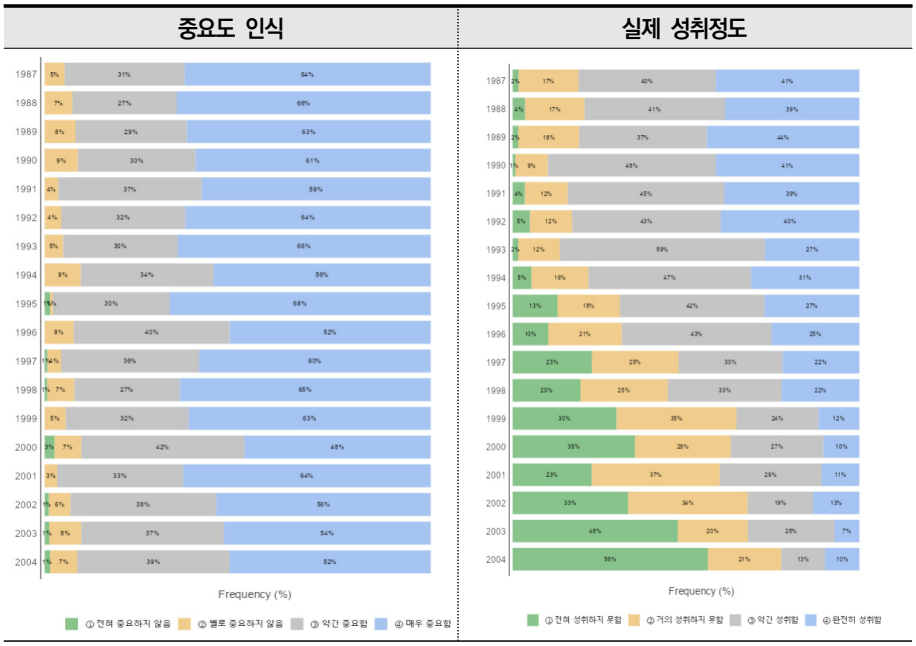



**그림 Ⅲ-33 출생연도별 성인기 지표(Markers of Adulthood)의 중요성 인식과 성취여부 : ②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게 되는 것**

'부모님(양육자) 집에서 살지 않게 되는 것'은 성인기 지표 중 가장 중요도가 낮게 나타났었고(5점 만점 중 2.93점), 성취 수준 역시 가장 낮았다(5점 만점 중 2.43점). '부모님(양육자)으로부터 떨어져 적정한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중요도가 낮은 편이고(5점 만점 중 3.07점), 성취 수준 역시 두 번째로 낮았다(5점 만점 중 2.47점). 중요도 인식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성취 수준 역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고 있다. 다만 전혀 성취하지 못하거나 거의 성취하지 못한 경우가 다른 지표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을 캥거루족 등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으나, 이는 성인 이행기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은 동아시아 문화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특성이며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Arnett,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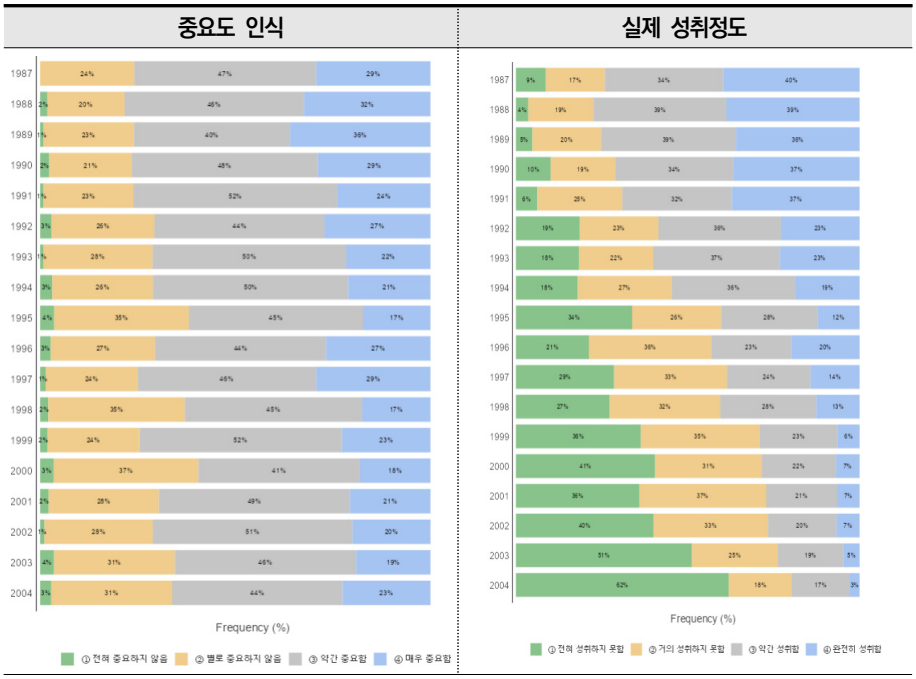



**그림 Ⅲ-34 출생연도별 성인기 지표(Markers of Adulthood)의 중요성 인식과 성취여부 : ③ 부모님(양육자) 집에서 살지 않게 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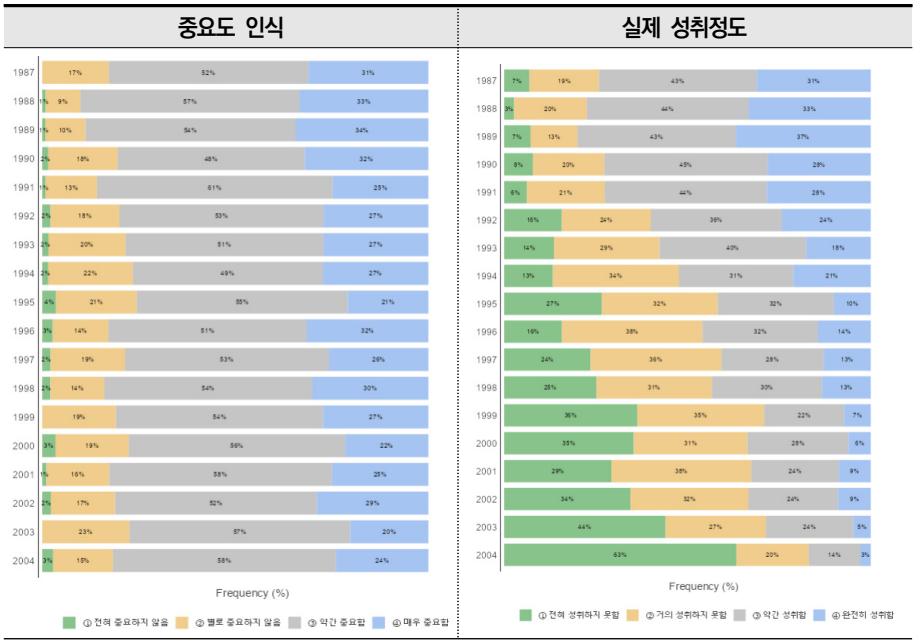



**그림 Ⅲ-35 출생연도별 성인기 지표(Markers of Adulthood)의 중요성 인식과 성취여부 : ④ 부모님(양육자)으로부터 떨어져 적정한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

'다른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상호의존을 보여주는 것으로 성인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상부상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청년들은 모든 연령대에서 이와 같은 것이 성인으로서 중요하다(5점 만점 중 3.17점)고 이야기하였고, 실제 성취했다는 응답도 낮지 않은 편이었다(5점 만점 중 2.84점). 이는 경제적 자립이나 주거 자립에 비해 조건(condition)보다는 역량(competence)에 가까운 특성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 역시 사회성과 같은 역량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요성(5점 만점 중 3.29점), 성취정도(5점 만점 중 3.03점) 모두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두 지표 모두에서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20대 초에 일부 나타나기는 하지만 20대 중반 이후 거의 사라졌다. 거의 성취하지 못한 경우도 20대 초반에서 20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점차 줄어든다. 30대로 가면 10% 내외에서 거의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관계와 교류에도 취약층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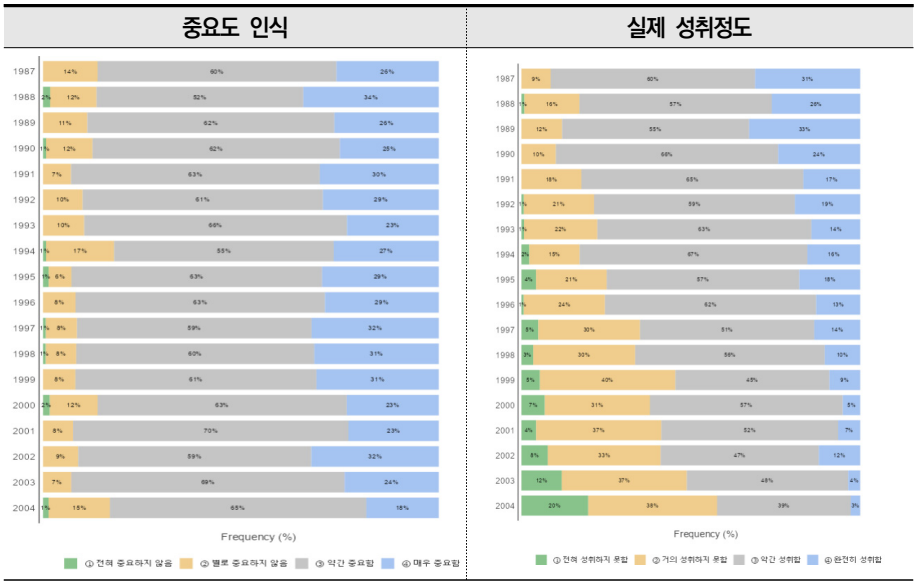



**그림 Ⅲ-36 출생연도별 성인기 지표(Markers of Adulthood)의 중요성 인식과 성취여부 : ⑤ 다른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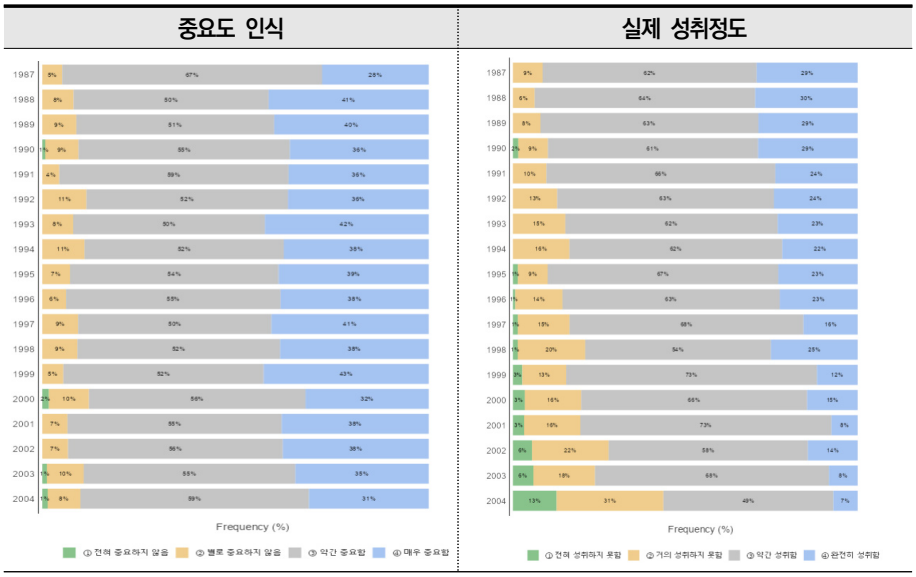



**그림 Ⅲ-37 출생연도별 성인기 지표(Markers of Adulthood)의 중요성 인식과 성취여부 : ⑥ 사람들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

'부모와 성인으로서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위계적 관계에서 벗어나 성인으로서 부모와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역시 중요도는 모든 연령에서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성취정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취정도가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주었다. 30대 후반에도 17% 가량이 거의 성취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여 30대 청년 5명 중 1명은 부모와 동등한 관계를 거의 맺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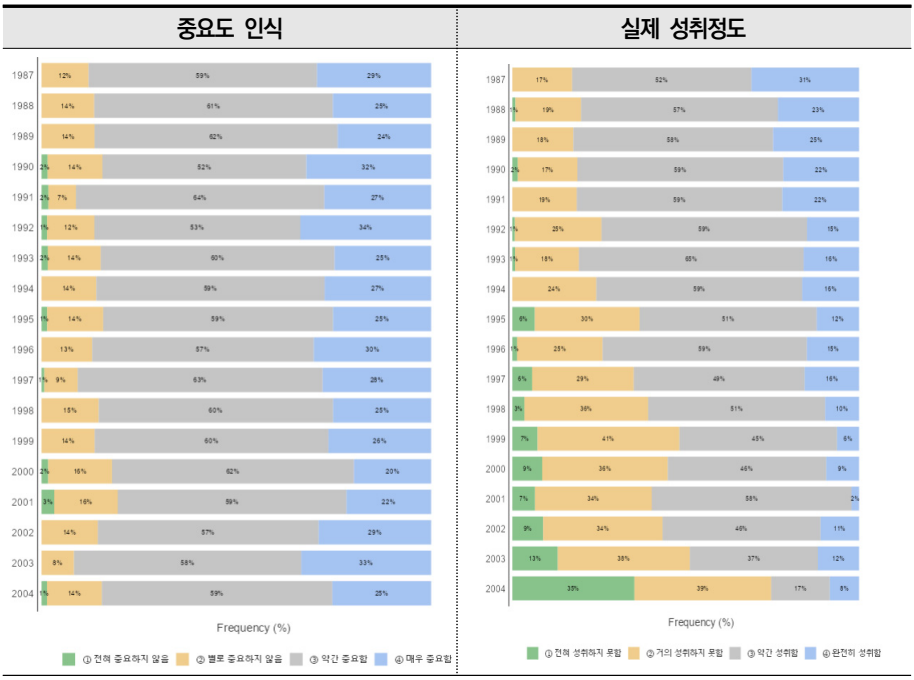



**그림 Ⅲ-38 출생연도별 성인기 지표(Markers of Adulthood)의 중요성 인식과 성취여부 : ⑦ 부모와 성인으로서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은 중요도(5점 만점 중 3.36점), 성취정도(5점 만점 중 3.01점)에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매우 중요하거나 약간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실제 성인 연령에 들어서면서 성취한 청년의 비율이 비교적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항상 성취했다는 비율은 20대 초에는 거의 없다가 이후 늘어나는 패턴을 보인다. 이 역시 30대에도 10% 가량은 거의 성취하지 못했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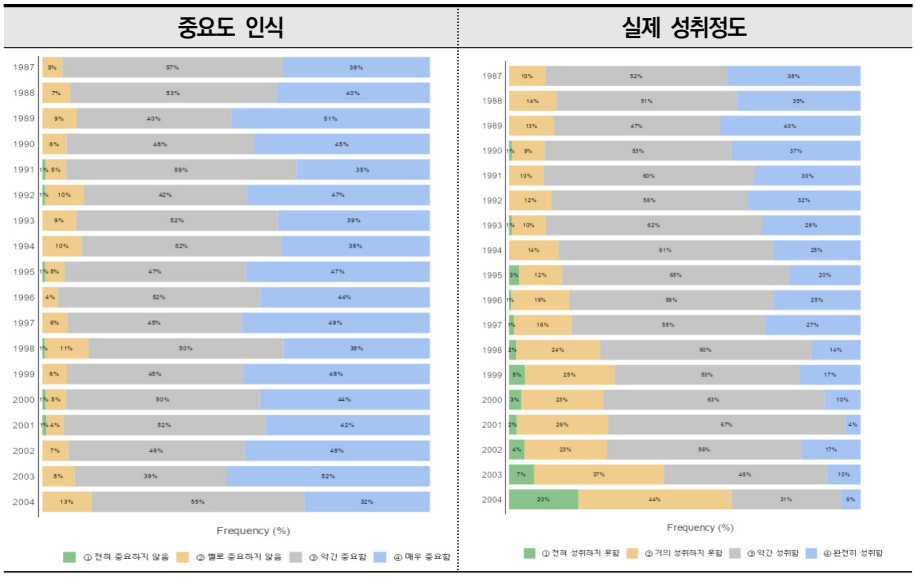



그림 Ⅲ-39 출생연도별 성인기 지표(Markers of Adulthood)의 중요성 인식과 성취여부
: ⑧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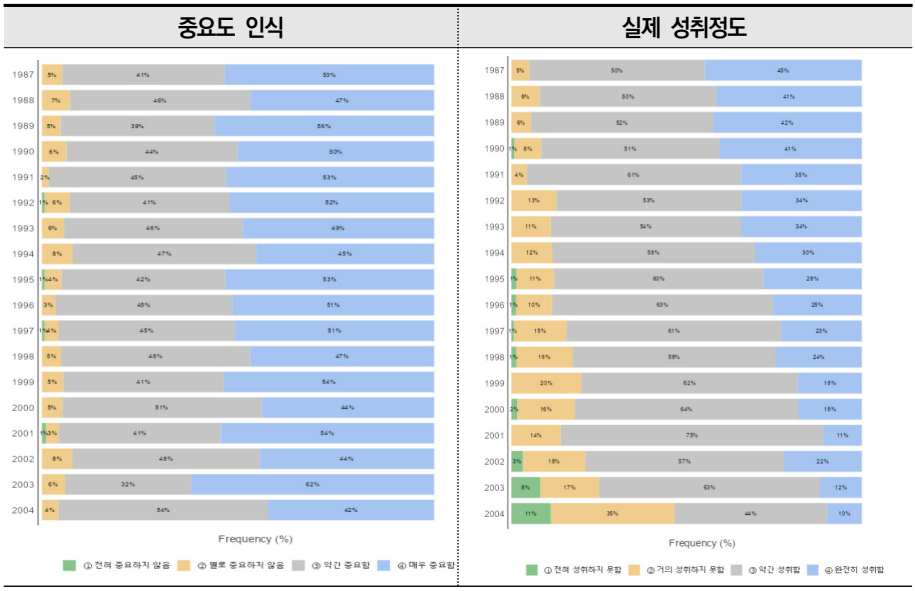



그림 Ⅲ-40 출생연도별 성인기 지표(Markers of Adulthood)의 중요성 인식과 성취여부
: ⑨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게 되는 것

마지막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게 되는 것은 중요도(5점 만점 중 3.45점)가 두 번째로 높았고, 성취도(5점 만점 중 3.12점)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9개의 지표 중에서 이른 나이에서부터 완전히 성취했다는 응답이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하면서 거의 선형적으로 이러한 응답이 늘어나고 있다. 전혀 성취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18세부터 3년 간 나타나지만 이후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되고, 거의 성취하지 못했다는 응답 역시 줄어들었다.

요컨대 성인기 지표(MoA: Markers of Adulthood)를 출생연도별로 중요성 인식과 실제 성취여부로 비교한 결과 두 가지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성인 연령 이후에도 성인이 되었다는 인식은 완전히 발현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발현되는 특성을 보인다. 이는 경제적 선진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성인기 혹은 성인 진입기의 특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시기가 나타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건과 관련한 성취는 중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취 수준은 낮은 편이었다. 이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관련이 되므로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되어 청년들이 더 많은 성취를 할 수 있다면 자신이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 2) 성인 이행기 자립의 인구사회학적 차이: MoA 척도를 중심으로

이 분석에서는 본 연구의 원데이터를 활용하여 성인 이행기 자립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다중회귀분석 방식으로 살펴보았다. 성인 이행기가 길어지면서 이행 지연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지만, 이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여기서는 그러한 차이를 보여주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무엇인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 분석에서 살펴본 종속변수는 개인의 성취 수준이다. 앞서 살펴본 성취수준 9개 문항을 하나로 평균 내어 생성한 변수와 9개 변수들을 모두 투입하였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성취수준과 개별적 성취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전반적 자립성취로 9개 MoA 개별 문항을 평균 낸 것이다. 평균은 2.79점으로 어느 정도 성취(3점)보다는 조금 낮았다. 이외에 부모(양육자)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하게 되는 것,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게 되는 것, 부모님(양육자) 집에서 살지 않게 되는 것, 부모님(양육자)으로부터 떨어져 적정한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 다른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 부모와 성인으로서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게 되는 것 등의 평균, 표준편차 등을 제시하였다.

**표 Ⅲ-36 주요 종속변수의 기초통계**

| | 최소값 | 최대값 | 평균 | 표준편차 |
|---|---|---|---|---|
| 전반적 자립성취(9개 문항 평균) | 1 | 4 | 2.79 | .625 |
| 부모(양육자)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하게 되는 것 | 1 | 4 | 2.61 | .935 |
|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게 되는 것 | 1 | 4 | 2.75 | 1.017 |
| 부모님(양육자) 집에서 살지 않게 되는 것 | 1 | 4 | 2.44 | 1.062 |
| 부모님(양육자)으로부터 떨어져 적정한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 | 1 | 4 | 2.47 | 1.010 |
| 다른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것 | 1 | 4 | 2.85 | .721 |
| 사람들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 | 1 | 4 | 3.02 | .653 |
| 부모와 성인으로서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 1 | 4 | 2.78 | .753 |
|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 | 1 | 4 | 3.01 | .715 |
|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게 되는 것 | 1 | 4 | 3.12 | .670 |

다음으로 독립변수는 연령, 부모소득, 성별, 지역규모 더미, 본인 학력, 만성질환 여부 등이 있었다. 연령은 18세부터 34세까지의 사람으로 평균은 26.4세이었고, 부모소득은 10개 구간으로 나누었을 때 중간보다 조금 뒤였다. 중소도시는 39.5%, 농어촌은 16.6%였고, 만성질환 유병률은 2%에 불과하였다.

**표 Ⅲ-37 주요 독립변수의 기초통계**

| | N | 최소값 | 최대값 | 평균 | 표준편차 |
|---|---|---|---|---|---|
| 연령 | 2059 | 18 | 34 | 26.35 | 4.698 |
| 부모소득(구간) | 2059 | 1 | 10 | 6.11 | 1.441 |
| 성별(여자=0, 남자1) | 2059 | 0 | 1 | .53 | .499 |
| 중소도시 더미 (대도시=0, 중소도시=1) | 2059 | .00 | 1.00 | .3946 | .48889 |
| 농어촌 더미 (대도시=0, 농어촌=1) | 2059 | .00 | 1.00 | .1656 | .37177 |
| 본인 학력 (범주) | 2059 | 2 | 7 | 4.83 | .978 |
| 만성질환 여부 | 2040 | 0 | 1 | .02 | .140 |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든 분석 모형에서 연령은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이었다. 자립은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서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다른 변수들은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성별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자립 성취수준이 높았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주었다. 부모소득은 10개 문항 중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것'으로 나왔는데 부정적으로 나오게 된 것은 부모소득이 높을수록 개인의 책임보다는 부모 책임으로 돌아가는 것이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도시가 대도시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없었으나, 농어촌은 대도시와 차이를 보이는 항목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농어촌이 대도시에 비해 유리하게 나타났으나, 사람들과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것 등은 대도시에 비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학력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게 되는 것에는 유리하나, 부모님 집에서 살지 않게 되는 것에는 불리하였다. 이는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 자립할 기회를 놓치거나 자립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것은 학력과 양의 관계를 보였다. 만성질환 여부는 영향력이 약하게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10개 중 5개 모형에서 영향이 있었고 전반적인 자립 성취, 부모로부터 재정적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일자리 얻기,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 적정한 생활 유지하기, 독립성 등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요컨대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자립 성취에 영향을 미치며, 농어촌에 거주하거나 만성질환이 있으면 그런 격차는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표 Ⅲ-38 청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취 차이**

| 독립변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Beta |
| 연령 | .479*** | .439*** | .400*** | .448*** | .409*** | .308*** | .217*** | .294*** | .286*** | .232*** |
| 부모소득 | -.010 | -.019 | -.004 | .001 | .009 | -.011 | .000 | .004 | -.012 | -.044* |
| 성별(남자=1) | -.057** | -.069** | -.067** | -.039+ | -.030 | -.065** | -.006 | -.033 | -.035 | -.016 |
| 중소도시 더미 (중소도시=1) | .012 | -.013 | -.003 | .025 | .019 | .024 | -.021 | .006 | .028 | .010 |
| 농어촌 더미 (농어촌=1) | -.007 | -.011 | .003 | .019 | .047* | .022 | -.090*** | -.019 | -.011 | -.052* |
| 본인 학력 | .020 | .019 | .069** | -.063** | -.040 | .025 | .028 | .016 | .052* | .064* |
| 만성질환 여부 | -.042* | -.035+ | -.062** | -.033 | -.024+ | -.014 | -.019 | -.032 | -.043* | .000 |
| 상수 | 1.144*** | .397*** | .237*** | .119 | .323* | 1.587*** | 2.189*** | 1.512 | 1.742*** | 2.193*** |
| R-square | .245 | .209 | .202 | .176 | .153 | .109 | .061 | .093 | .104 | .080 |
| n | 2039 | 2039 | 2039 | 2039 | 2039 | 2039 | 2039 | 2039 | 2039 | 2039 |

주: 위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전반적 자립성취(9개 문항 평균), ②부모(양육자)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하게 되는 것, ③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게 되는 것, ④부모님(양육자) 집에서 살지 않게 되는 것, ⑤부모님(양육자)으로부터 떨어져 적정한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 ⑥다른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것, ⑦사람들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 ⑧부모와 성인으로서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⑨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 ⑩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게 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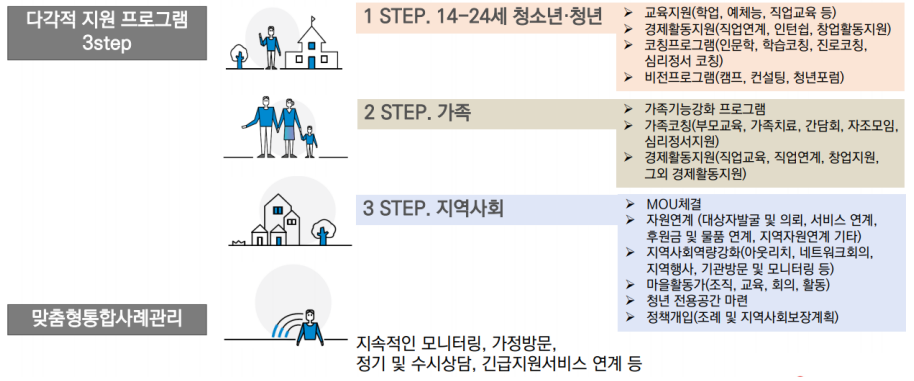
*** $p < 0.001$, ** $p < 0.01$, * $p < 0.5$, + $p < 0.1$

## 5.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지원 효과 분석[9)]

이 절에서는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자원으로 진행되었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플랜' 사업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청년 자립지원의 효과성과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플랜' 사업 개요

'희망플랜' 사업은 성인 이행기 빈곤 아동·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2018년의 3년 동안 진행된 사업으로, 청년기에 니트상태에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 대상사업(14세~19세)과 니트상태 청년들의 니트 탈출을 돕는 청년사업(20세~24세)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사업 진행을 위해 전국 11개소에 '희망플랜 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였으며[10)],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지원체계를 발굴하고 연계함으로써 성인 이행기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였다.




* 출처: 박미희 (2022). 청년 자립을 위한 민간 프로그램 사례 : 사랑의 열매 희망플랜(시즌1, 2) 성과와 교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콜로키움 발표자료(2022.09.01. 온라인)

**그림 Ⅲ-41 희망플랜의 사업내용**

희망플랜 사업은 [그림 III-41]과 같이 '3 STEP'이라 불리는 지원체계와 맞춤형 통합사

9) 이 절은 박미희 연구위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가 집필하였다.

10) 희망플랜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자원으로 전국 11개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희망플랜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여 사업이 진행되었다. 서울지역에는 은평/성북/신림센터가 설치되었고, 경기도에는 춘의/광명센터가, 강원도에는 원주센터가, 전북에는 전주평화센터, 광주에는 무등센터, 대구에는 중구/달서센터, 부산지역에는 부산진구센터가 설치되었다.

례관리를 핵심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청년이 니트상태에 진입하거나 니트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청년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가 동시에 변화해야 한다는 생태체계적 관점이 반영된 기획이라 할 수 있다.

### 2) 분석자료

희망플랜 사업이 청년의 자립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희망플랜 사업의 진행과 함께 수집된 '성인 이행기 아동·청소년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사는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2016년 사업 착수와 함께 사업 참여 대상자를 모집하면서 기초선 조사를 진행하였고(2016년 6월~8월), 1차 추적조사는 약 14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7년 8월~10월에, 마지막 조사인 2차 추적조사는 사업 종료 직전인 2018년 10월~12월에 진행되었다. 희망플랜 사업의 성과를 자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나눔문화연구소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고 전문조사업체를 통해 면접원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Ⅲ-39 조사 개요**

| 구분 | 내용 |
|---|---|
| 표집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지원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의 14~24세 청소년 및 청년<br>(*구축 당시 기준 연령으로, 1차년도 패널은 만 25세까지 조사에 참여) |
| 예상<br>표본 수 | 선정된 17개 지역(11개 사업지역과 6개 비교지역[1]) 내 600명, 총 10,200명<br>(*지역별 600 사례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최소 400 사례이상이 될 수 있도록 표집틀의 50%를 추출함) |
| 표본 추출 | 지역별 유의할당 및 임의추출<br>(*사업 비참여자의 경우, 지역내 관공서 및 기관/시설의 협조로 진행) |
| 사례 유지 | 지역별 600사례 중 50%는 종단(longitudinal) 조사 실시<br>(기초선 조사 1회, 추적조사 2회) |
| 조사 방법 | 가구 방문조사를 통한 대인면접조사(TAPI)<br>(전화조사 및 온라인조사 병행) |
| 조사 기간 | 기초선 조사 : 2016.6~8월<br>1차 추적조사 : 2017.8~10월<br>2차 추적조사 : 2018.10~12월 |

*출처 : 이봉주, 박미희, 남기철, 노혜진, 이신혜, 이성학. (2018:101-102 수정보완). 배분의제 2-3차년도 성과평가(빈곤)」,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주 1) 비교지역은 사업지역과 유사한 특성(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촌락-및 영구임대지역 여부, 동 단위 인구수, 청소년 인구수, 청소년 수급자 수 등)을 가진 곳으로, 서울 동대문구, 대구 수성구, 부산 사하구, 전북 익산시, 경기도 군포시, 강원도 홍천이 비교지역으로 선정됨

희망플랜 사업의 특성에 맞게 청소년과 청년으로 구분하여 설문지가 개발되었으며, 사업의 성과를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두 개의 비교집단을 설정한 준실험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를 적용하여 조사가 진행되었다. 비교집단1은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비참여자이며, 비교집단2는 사업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비교지역[11]의 비참여자이다. 비교집단을 이렇게 두 그룹으로 설정한 이유는 청년의 개인적 변화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변화도 비교집단2를 통해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희망플랜 사업이 개인을 넘어 지역사회차원의 변화까지도 고려한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는 사업지역의 청년자료 중 2차례 이상 반복 측정된 사례만을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사례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청소년기가 아닌 청년기 자료만 활용하였는데, 이렇게 제한한 이유는 3년이라는 단기자료로 청소년의 성인 이행기를 거치면서 나타난 변화를 논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경우 청소년은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는 사례가 많아 자립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파악하기에는 3년이라는 시간이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희망플랜사업에서도 사업참여 청소년들의 '자립'보다는 자립을 위한 준비로서 진로성숙도, 자기신뢰감,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반면, 청년의 경우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변화를 통해 사업을 통한 청년의 자립을 논하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았다. 둘째, 비교지역을 분석에서 제외한 이유는 본 연구가 지역 차원의 변화보다는 청년 개인의 변화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셋째, 2차례 이상의 반복측정 사례로만 제한한 이유는, 사업의 성격상 사업참여와 비참여를 강제할 수가 없으며 사업종료 이후에 추적조사가 수월하지 않아 사례마다 측정 횟수가 다르기 때문이다[12]. 또한 사업진행 중간에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우 2016년에 진행된 기초선 조사에 참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모든 조사에 참여한 균형패널만 분석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 경우 사례수가 크게 감소하여 안정적인 분석결과를 도출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로 인해 최소 2번 이상 반복측정 된 사례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표 Ⅲ-40〉은 분석에 활용한 자료의 기본적 현황이다. 분석에 포함된 청년은 1,886명이며, 사례수는 총 4,311케이스로 확인되었다. 이중, 3년 동안 한번이라도 희망플랜 사업에 참여한 청년은 376명, 비참여 청년은 1,623명이었다. 세 번의 조사 중 두 번 이상

11) 표 Ⅲ-39 주1) 참고

12) 이사, 군입대, 연락두절, 서비스 거절 등으로 중도에 포기된 사례가 있으며, 이에 따라 추적조사가 원활하지 않았던 한계도 있었다.

참여자만을 분석에 활용했기 때문에, 각 패널별로 조사에 참여한 상태는 다르게 나타났다. 가장 많은 패널 샘플을 보유한 조사는 2017년에 진행된 1차 조사와 2018년에 진행된 2차 조사로 746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0 분석자료 현황**

| 구분 | | 전체 | | 패널 기준 | |
|---|---|---|---|---|---|
| | | 빈도 | 비중(%) | 빈도 | 비중(%) |
| 전체 | | 4,311 | 100 | 1,886 | 100 |
| 사업참여 여부 | 참여자 | 763 | 17.7 | 376* | 19.9 |
| | 비참여자 | 3,548 | 82.3 | 1,623* | 86.1 |
| 패널 패턴 | 모두 참여 | 1,617 | 37,5 | 539 | 28.9 |
| | 기초선-1차 조사 | 836 | 19.4 | 418 | 22.2 |
| | 기초선-2차 조사 | 366 | 8.5 | 183 | 9.7 |
| | 1차-2차 조사 | 1,492 | 34.6 | 746 | 39.6 |
| 조사년도 | 2016년 | 1,140 | 26.4 | | |
| | 2017년 | 1,703 | 39.5 | | |
| | 2018년 | 1,468 | 34.1 | | |

* 주: 연도별 사업참여 여부가 변하기 때문에 총 합계는 패널개체수와 다름

〈표 Ⅲ-41〉은 분석에 포함된 사례 4,311개를 대상으로 사업참여와 비참여자를 구분하여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 것이다. 분석대상자중 여성은 51.2%, 남성은 48.8%였으나 사업참여자 집단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두 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분석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1.3세였으나 사업참여자는 이 보다 낮은 20.9세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도 비참여자 집단에 비해 사업참여자 집단에서 중졸 및 고졸이하의 저학력 집단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구구성을 보면 사업참여자 집단의 열악함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를 보면, 사업참여자의 71.3%가 수급가구인 반면, 비참여자 집단은 19.3%만이 수급가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족구성을 살펴보면, 사업참여자 집단에서 한부모가구나 조손가구가 비참여자집단에 비해 두 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이 스스로 인식하는 가구의 경제적 상태도 낮다고 응답한 비중이 참여자 집단에서 75.5%로 비참여자 집단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

다. 부모의 학력이나 근로 여부도 사업참여자 집단과 비참여자 집단에서 상이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참여자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 가족특성이 비참여자 집단에 비해 상당히 열악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희망플랜 사업의 중요한 참여조건 중 하나가 '저소득 빈곤가구'였기 때문이며, 빈곤가구 중 니트상태의 청년을 발굴하여 사업참여자로 모집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표 Ⅲ-41 조사대상 인구학적 특성**

| 구분 | | 사업참여자 | | 비참여자 | | 전체 | |
|---|---|---|---|---|---|---|---|
| | | 빈도 | 비중(%) | 빈도 | 비중(%) | 빈도 | 비중(%) |
| **총 사례수** | | **763** | **100** | **3,548** | **100** | **4,311** | **100** |
| 성별 | 여성(ref.) | 497 | 65.1 | 1,709 | 48.2 | 2,206 | 51.2 |
| | 남성 | 266 | 34.9 | 1,839 | 51.8 | 2,105 | 48.8 |
| 연령 | 18세 | 2 | 0.3 | 1 | 0.0 | 3 | 0.1 |
| | 19세 | 136 | 17.8 | 523 | 14.7 | 659 | 15.3 |
| | 20세 | 189 | 24.8 | 786 | 22.2 | 975 | 22.6 |
| | 21세 | 160 | 21.0 | 657 | 18.5 | 817 | 19.0 |
| | 22세 | 133 | 17.4 | 574 | 16.2 | 707 | 16.4 |
| | 23세 | 104 | 13.6 | 549 | 15.5 | 653 | 15.1 |
| | 24세 | 36 | 4.7 | 343 | 9.7 | 379 | 8.8 |
| | 25세 | 3 | 0.4 | 115 | 3.2 | 118 | 2.7 |
| | 평균 | 20.9세 | | 21.4세 | | 21.3세 | |
| 교육수준 | 중졸이하(ref.) | 16 | 2.1 | 13 | 0.4 | 29 | 0.7 |
| | 고졸이하 | 195 | 25.6 | 630 | 17.8 | 825 | 19.1 |
| | 대재이상 | 552 | 72.3 | 2,905 | 81.9 | 3,457 | 80.2 |
|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 일반가구(ref.) | 217 | 28.4 | 2,857 | 80.5 | 3,074 | 71.3 |
| | 수급가구 | 544 | 71.3 | 685 | 19.3 | 1,229 | 28.5 |
| | 모름/무응답 | 2 | 0.3 | 6 | 0.2 | 8 | 0.2 |
| 가족구성 | 부모동거(ref.) | 242 | 31.7 | 2,639 | 74.4 | 2,881 | 66.8 |
| | 한부모가구 | 452 | 59.2 | 710 | 20.0 | 1,162 | 27.0 |
| | 조손가구 | 24 | 3.1 | 60 | 1.7 | 84 | 1.9 |
| | 기타 | 45 | 5.9 | 139 | 3.9 | 184 | 4.3 |

| 구분 | | 사업참여자 | | 비참여자 | | 전체 | |
|---|---|---|---|---|---|---|---|
| | | 빈도 | 비중(%) | 빈도 | 비중(%) | 빈도 | 비중(%) |
| 가구 경제상태 (주관적 인식) | 낮음(ref.) | 576 | 75.5 | 1,195 | 33.7 | 1,771 | 41.1 |
| | 보통 | 178 | 23.3 | 1,971 | 55.6 | 2,149 | 49.8 |
| | 높음 | 7 | 0.9 | 381 | 10.7 | 388 | 9.0 |
| | 무응답 | 2 | 0.3 | 1 | 0.0 | 3 | 0.1 |
| 아버지 학력 | 고졸미만(ref.) | 49 | 6.4 | 139 | 3.9 | 188 | 4.4 |
| | 고졸 | 223 | 29.2 | 1,625 | 45.8 | 1,848 | 42.9 |
| | 대재이상 | 84 | 11.0 | 1,102 | 31.1 | 1,186 | 27.5 |
| | 해당없음(부 없음) | 403 | 52.8 | 661 | 18.6 | 1,064 | 24.7 |
| | 무응답 | 4 | 0.5 | 21 | 0.6 | 25 | 0.6 |
| 아버지 근로여부 | 비근로(ref.) | 453 | 59.4 | 772 | 21.8 | 1,225 | 28.4 |
| | 근로 | 310 | 40.6 | 2,776 | 78.2 | 3,086 | 71.6 |
| 어머니 학력 | 고졸미만(ref.) | 64 | 8.4 | 161 | 4.5 | 225 | 5.2 |
| | 고졸 | 364 | 47.7 | 2,102 | 59.2 | 2,466 | 57.2 |
| | 대재이상 | 144 | 18.9 | 813 | 22.9 | 957 | 22.2 |
| | 해당없음(모 없음) | 187 | 24.5 | 447 | 12.6 | 634 | 14.7 |
| | 무응답 | 4 | 0.5 | 25 | 0.7 | 29 | 0.7 |
| 어머니 근로여부 | 비근로(ref.) | 364 | 47.7 | 1,317 | 37.1 | 1,681 | 39.0 |
| | 근로 | 399 | 52.3 | 2,231 | 62.9 | 2,630 | 61.0 |

### 3) 희망플랜 사업의 자립지원 효과 – 청년의 변화

희망플랜 사업은 앞서 제시한 [그림 III-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년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 청년이 속한 가족에 대한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자원 및 서비스 연계, 정책 및 제도적 지원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의 심리적 자립 역량 강화, 그리고 활성화 상태로의 전환,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니트상태를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희망플랜 사업의 자립지원 효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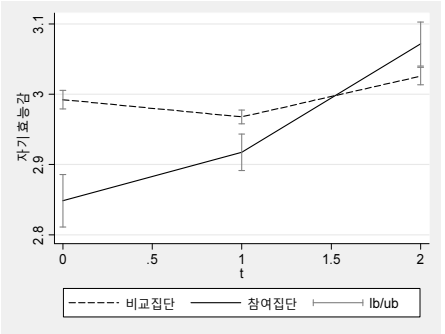
① 심리적 자립역량의 변화

[그림 Ⅲ-42]는 사업 참여청년과 비참여 청년의 심리적 자립역량의 변화를 확인한 것이다. 분석에 포함된 패널의 연도별 평균값과 표준오차를 표현한 것이다. 첫 번째 그림은 청년이 본인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13]'에 관한 것이다.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는 청년은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세상 밖으로 나아가 활동하기를 두려워하는 상태에 있기가 쉽다. 니트상태를 오래 경험할수록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지고 스스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자학의 마음이 생겨나 더욱 더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기 쉽다. 이에 희망플랜 사업은 청년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고 본인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개입을 진행하였다. 기초선 조사에서는 비교집단에 비해 사업 참여집단의 자기효능감/존중감이 현저히 낮았으나,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t=2)에서는 참여집단의 자기효능감/존중감 점수가 비교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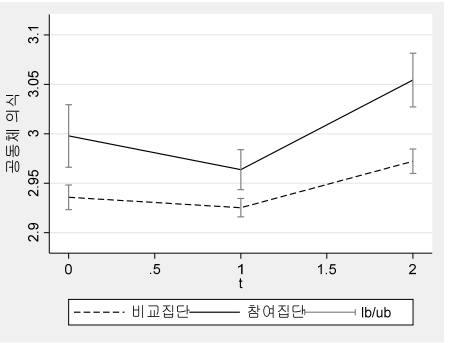
두 번째 그림은 공동체 의식[14]에 대한 청년의 인식수준을 확인한 것이다. 참여집단의 경우 비교집단에 비해 사업초기부터 공동체 의식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사업종료시점(t=2)에는 그 점수 차이가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13) 아동종합실태조사(2013년조사)의 자존감/효능감 문항을 활용하였음. Rosenberg의 자존감 척도 10문항과 박현선(1998)이 재구성한 효능감척도 3문항으로 구성한 것으로,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으로 측정함(김미숙 외, 2013: 203). 부적 문항은 역문항 처리하여 평균점수를 활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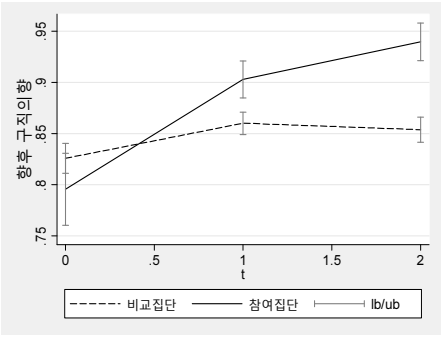
14) 아동종합실태조사(2013년조사)의 공동체 의식 8문항-'나보다 못한 친구를 잘 돕는다', '내 친구가 상이나 칭찬받았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준다', '나는 양보할 줄 안다', '불우이웃을 도와주고 싶다', '친구가 없는 아이와도 잘 놀아준다', '남을 위해 내 것을 나눈다', '공동생활에 필요한 규칙을 잘 지킨다', '시키지 않아도 봉사활동을 한다'-을 활용함.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4점)로 측정하였으며, 분석에는 8개 문항의 평균점수를 활용함




1) 자기효능감/자아존중감의 변화 ▲




2) 공동체 의식 ▲




3) 향후 구직의향의 변화 ▲

* 주: 1) 자기효능감/존중감을 측정하는 13개 문항의 평균점수(1점~ 4점)를 활용함(부적 문항은 역문항 처리)
2) 공동체 의식을 측정하는 8개 문항의 평균 점수(1점~4점)를 활용함
3) 그림은 집단별 패널 평균값 및 표준오차를 표현한 것임

**그림 Ⅲ-42 심리적 자립역량의 변화 (패널의 연도별 평균값 추이)**

마지막 그림은 향후 구직의향의 변화를 보여준다. 구직의향이 있다는 것은 현재 구직활동을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준비를 해보겠다는 다짐과 연결된다. 니트상태의 청년에게 향후 구직활동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은 향후의 활동상태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인식변화라 하겠다. 그림을 보면, 사업초기에 참여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향후 구직의향이 낮게 나타났으나, 사업종료시점(t=2)에서는 참여집단의 구직의향이 비교집단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② 활동상태의 변화 – 니트에서 비니트로

〈표 Ⅲ-42〉는 분석대상자의 니트상태를 제시하고 있다. 참여집단의 경우 376명중 97명(25.8%)이 한번이라도 니트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반면, 비교집단은 1,623명중 317명(19.5%)이 조사기간 동안 한번이라도 니트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참여집단에서 니트상태에 있는 청년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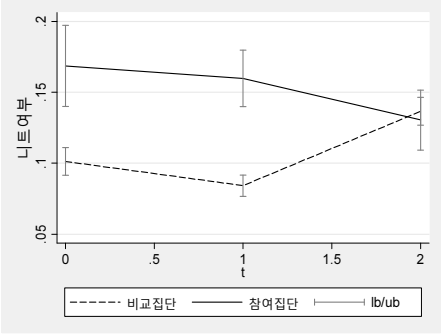
**표 Ⅲ-42 분석대상자의 니트 상태**

| | | 전체(overall) | | 개체간(between) | | 개체내 (within) |
|---|---|---|---|---|---|---|
| | | 빈도 | 비중(%) | 빈도 | 비중(%) | 비중(%) |
| 참여집단 | 비니트 상태 | 647 | 84.8 | 349 | 92.8 | 90.4 |
| | 니트 상태 | 116 | 15.2 | 97 | 25.8 | 62.4 |
| | 합계 | 763 | 100 | 446 (n=376) | 118.6 | 84.3 |
| 비교집단 | 비니트 상태 | 3,169 | 89.3 | 1,572 | 96.9 | 92.02 |
| | 니트 상태 | 379 | 10.7 | 317 | 19.5 | 55.7 |
| | 합계 | 3,548 | 100 | 1,889 (n=1,623) | 116.4 | 85.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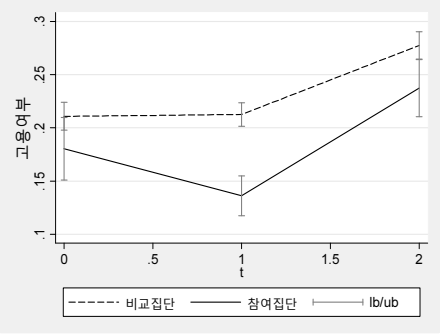
[그림 Ⅲ-43]는 사업참여 집단과 비참여 집단(비교집단)에서 확인된 활동상태의 평균적 변화를 확인한 것이다. 첫 번째 그림은 니트비중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사업초기(t=0)에 사업참여집단의 니트 비중이 비참여 집단(비교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참여집단의 니트비중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어 사업종료시점에는 두 집단의 니트비중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차년도에서 2차년도 사이에 비교집단의 니트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에 비해, 참여집단의 니트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이 눈에 띈다.

참여집단의 니트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기초선(t=0) ~ 1차년도(t=1) 구간에서는 학교재학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1차년도(t=1) ~ 2차년도(t=2) 구간에서는 고용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니트상태에 있는 청년이 바로 고용의 상태로 전환되기 보다는 교육이나 훈련의 상태에 있다가 고용으로 전환되는 이동경로가 현실적으로 가능함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기타 비경활(가사, 육아, 장애, 군입대 등) 상태에 있는 청년은 참여집단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비교집단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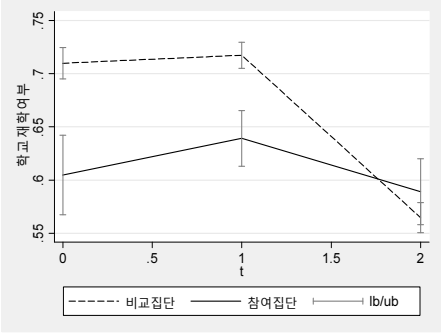
후반기에 크게 증가한 것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에 참여한 청년집단에서는 노동시장에서 벗어난 니트, 비경활 상태가 줄어들고 있고, 교육/훈련/고용 등과 같은 노동시장 인접성이 더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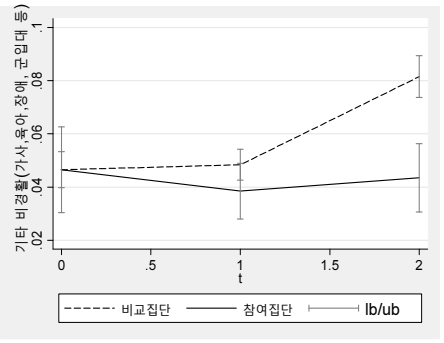

1) 니트 비중의 변화 ▲




2) 고용 비중의 변화 ▲




3) 학교 재학 비중의 변화 ▲




4) 기타 비경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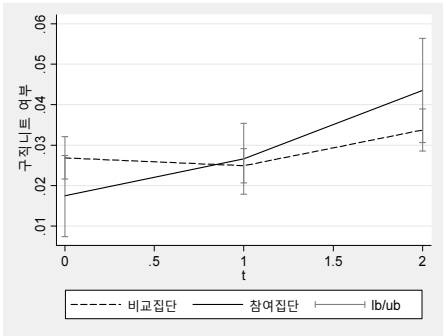
* 주: 1) 그림은 집단별 패널 평균값 및 표준오차를 표현한 것임
2) 청년의 활동상태는 고용, 학교재학/직업훈련, 니트, 기타 비경활의 네 범주로 구분됨. 여기서 기타 비경활은 가사나 육아, 심신장애 및 군입대로 인해 일자리가 주어진다 해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함

**그림 Ⅲ-43 니트상태내에서의 활동변화 (패널의 연도별 평균값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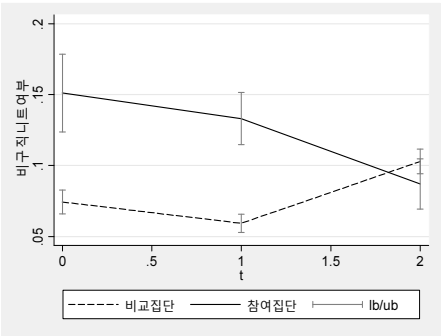
③ 니트내에서의 상태 변화

[그림 Ⅲ-44]는 니트내에서의 상태변화를 확인한 것이다. 앞서 사업 참여집단에서 니트 비중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또한 사업 기간동안 니트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해서 사업에 참여한 청년에게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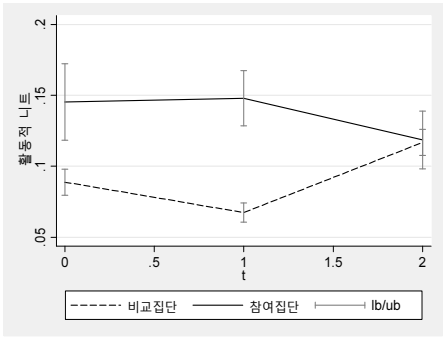
아니다. 여전히 니트상태이지만 그 내에서도 다양한 활동수준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니트내 상태변화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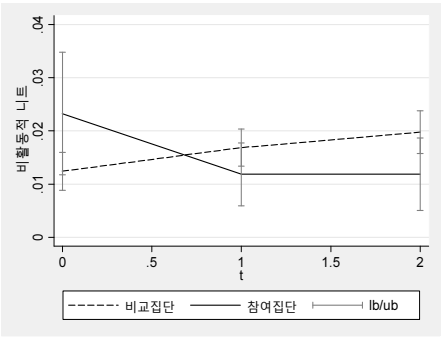

1) 구직 니트 비중의 변화 ▲




2) 비구직 니트 비중의 변화 ▲




3) 활동형 니트 비중 ▲




4) 비활동형 니트 비중 ▲

* 주: 1) 구직니트 : 고용, 교육, 훈련상태가 아니지만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가사/육아, 심신장애, 군입대 대기는 니트에서 제외)
2) 비구직 니트 : 고용, 교육, 훈련상태가 아니며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
3) 활동형 니트 : 고용, 교육, 훈련 상태가 아닌 니트상태의 청년이지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취업/시험준비, 자격증 준비, 자원봉사, 아르바이트 등의 다양한 활동 수행
4) 비활동형 니트 : 니트상태이며 다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청년
5) 그림은 집단별 패널 평균값 및 표준오차를 표현한 것임

**그림 Ⅲ-44 니트상태내에서의 활동변화 (패널의 연도별 평균값 추이)**

[그림 III-44]의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구직 니트/비구직 니트의 구분은 현재 구직활동 여부로 구분한 것이다. 구직활동을 한다는 것은 노동시장 진입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현재 니트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비구직 니트에서

구직 니트로의 전환은 유의미한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이 진행될수록 사업참여 집단에서 구직니트의 비중이 증가하고 비구직 니트의 비중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그림과 네 번째 그림은 니트상태에서도 여타의 다른 활동을 하는지 여부로 구분한 것이다. 어떠한 사회활동도 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것은 니트상태의 심도가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니트상태에 있으나 다양한 외부활동을 한다는 것은 약간의 지원만 있으면 니트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니트상태의 심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여타 다른 활동을 하는 '활동형 니트'와 어떠한 활동을 하지 않는 '비활동형 니트'로 구분하여 변화를 살펴보았다. 사업초기에 참여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활동형 니트와 비활동형 니트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진행과 더불어 활동형 니트와 비활동형 니트가 함께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니트의 심도가 깊은 비활동형 니트의 경우, 비교집단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반면 참여집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4) 이중차이분석을 통한 청년의 변화 검증

지금까지 사업참여 청년의 변화를 심리적 자립역량, 활동상태의 변화, 니트 기간 내의 활동변화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러한 평균적 변화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통계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중차이분석(difference -in-difference)을 수행하였다.

이중차이분석은 완벽한 실험설계가 어려운 사회실험에서 실험설계와 유사한 방법으로 개입(정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실험집단과 유사한 집단을 비교군으로 설정한 후, 시간의 변화에 따라 두 집단의 시간적 차이와 집단적 차이를 차감하여 개입의 효과를 계산해내는 방법이다. 특히 비교집단의 구성시 실험집단과 유사한 집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나(이봉주 외, 2018: 110-111), 희망플랜 사업의 경우 참여자 선발에서 소득기준이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되어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참여자와 비참여자간의 인구학적 특성차이가 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관찰가능한 두 집단의 이질적 특성은 모두 통제하였고, 관찰가능하지 않은 이질성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분석을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이중차이분석은 2개 시점의 자료를 결합(pooling)하여 반복횡단자료로 간

주하고 분석이 진행된다. 본 분석은 3개 시점에서 2개 이상의 자료가 있는 패널만을 분석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개체 내 상관이 큰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이러한 개체 내 상관을 고려한 오차(robust clustered standard error)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이봉주 외, 2018:111). 물론 불균형 패널을 활용하여 고정효과분석(fixed effects analysis)을 수행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경우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프로그램참여 여부의 변량이 크지 않아 분석모형의 적절성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하였다. 이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하에서는 조정된 표준오차를 적용한 이중차이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보고한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종속변수의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을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종속변수가 이분변수일 때에는 로짓모형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 선형확률모형을 적용한 이유는 해석의 편의성과 로짓모형의 상호작용항 계수의 정확성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Ai & Norton, 2003:129, 박미희, 2017:105-107; 이봉주 외, 2018:114). 이중차이모형에서 중요 관심사인 회귀계수는 프로그램 참여여부와 시기더미변수의 상호작용항이기 때문이다.

각 분석의 모델은 크게 세 가지, 초기성과모델, 후기성과모델, 최종성과모델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조사시점이 3시점이고 불균형 패널의 특성상 각 시점별로 조사대상이 조금씩 상이한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성과가 어느 시점에서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초기성과모델은 기초선 대비 1차 조사의 변화를, 후기성과모델은 1차조사 대비 2차 조사의 변화를, 마지막으로 최종성과모델은 기초선 대비 2차 조사의 변화를 확인한 것이다.

〈표 Ⅲ-43〉은 심리적 자립역량의 변화를 이중차이모델로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은 다른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사업참여집단의 변화가 비교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초기부터 최종까지 꾸준히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공동체 의식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고, 향후 구직의향은 최종성과모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참여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3 심리적 자립역량의 변화 (이중차이분석)**

| | 자기효능감/자아존중감 | | | 공동체 의식 | | | 향후 구직의향 | | |
|---|---|---|---|---|---|---|---|---|---|
| | 초기성과 | 후기성과 | 최종성과 | 초기성과 | 후기성과 | 최종성과 | 초기성과 | 후기성과 | 최종성과 |
| 1. 초기성과 모델 사업참여*1차 (ref. 기초선) | **0.095*** (0.048) | | | -0.013 (0.041) | | | 0.064 (0.043) | | |
| 2. 후기성과 모델 사업참여*2차 (ref. 1차) | | **0.092*** (0.043) | | | 0.046 (0.037) | | | 0.046 (0.032) | |
| 3. 최종성과모델 사업참여*2차 (ref. 기초선) | | | **0.207***** (0.052) | | | 0.038 (0.046) | | | **0.111*** (0.045) |
| 절편 | 2.608*** (0.199) | 2.910*** (0.271) | 2.468*** (0.169) | 2.699*** (0.254) | 2.871*** (0.268) | 2.677*** (0.149) | 0.839*** (0.136) | 0.836*** (0.151) | 0.302 (0.195) |
| N | 2,813 | 3,145 | 2,582 | 2,813 | 3,145 | 2,582 | 2,075 | 2,238 | 1,785 |
| $R^2$ | 0.075 | 0.068 | 0.067 | 0.037 | 0.044 | 0.045 | 0.033 | 0.030 | 0.049 |

* 주: 1) 패널 내 개인의 계열 상관을 고려하여 조정된 표준오차(robust clustered standard error)를 활용하였으며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로 분석함
2)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유형, 가족구성, 가구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부/모의 학력, 부/모의 근로여부, 지역더미를 통제하였으나 표에는 제시하지 않음
3) 괄호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의미
*$p$ 〈 .05, **$p$ 〈 .01, ***$p$ 〈 .001.

**표 Ⅲ-44 활동상태의 변화 (이중차이분석)**

| | 니트여부 | | | 고용여부 | | | 학교재학여부 | | |
|---|---|---|---|---|---|---|---|---|---|
| | 초기성과 | 후기성과 | 최종성과 | 초기성과 | 후기성과 | 최종성과 | 초기성과 | 후기성과 | 최종성과 |
| 1. 초기성과 모델 사업참여*1차 (ref. 기초선) | 0.017 (0.034) | | | -0.016 (0.039) | | | -0.007 -0.029 | | |
| 2. 후기성과 모델 사업참여*2차 (ref. 1차) | | **-0.075**** (0.029) | | | 0.05 (0.035) | | | **0.083**** (0.031) | |
| 3. 최종성과모델 사업참여*2차 (ref. 기초선) | | | **-0.073*** (0.036) | | | 0.04 (0.043) | | | **0.081*** (0.035) |
| 절편 | -0.047 (0.147) | -0.028 (0.138) | -0.01 (0.104) | 0.259+ (0.133) | 0.218 (0.135) | 0.378* (0.152) | 0.834*** (0.109) | 0.816*** (0.138) | 0.563*** (0.132) |
| N | 2,813 | 3,145 | 2,582 | 2,813 | 3,145 | 2,582 | 2813 | 3145 | 2582 |
| $R^2$ | 0.197 | 0.144 | 0.151 | 0.186 | 0.186 | 0.168 | 0.641 | 0.502 | 0.525 |

* 주: 1) 패널 내 개인의 계열 상관을 고려하여 조정된 표준오차(robust clustered standard error)를 활용하였으며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로 분석함
2)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유형, 가족구성, 가구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부/모의 학력, 부/모의 근로여부, 지역더미를 통제하였으나 표에는 제시하지 않음
3) 괄호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의미
*$p$ 〈 .05, **$p$ 〈 .01, ***$p$ 〈 .001.

〈표 Ⅲ-44〉는 활동상태의 변화, 구체적으로는 니트상태에서 벗어났는지를 통계적으로 확인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사업 참여집단에서 비교집단에 비해 니트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효과는 사업후기부터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기성과모델을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오히려 니트확률이 참여자집단에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용확률과 학교재학 확률도 사업참여자 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확률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는 니트상태를 벗어난 청년들은 고용보다는 학교재학의 상태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Ⅲ-45〉는 니트의 하위 유형별 탈출확률을 확인한 결과이다. 본 분석에서는 니트의 하위유형으로 구직니트/비구직니트, 그리고 활동형 니트/비활동형 니트을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비구직니트의 감소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확인되었다, 반면, 비활동형 니트는 사업기간 동안 꾸준히 감소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비교집단과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한편, 활동형 니트는 후기성과모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활동형 니트상태의 청년이 니트상태에서 벗어났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표 Ⅲ-45 니트 하위 유형별 상태변화 (이중차이분석)**

| | 비구직 니트 | | | 비활동형 니트 | | | 활동형 니트 | | |
|---|---|---|---|---|---|---|---|---|---|
| | 초기성과 | 후기성과 | 최종성과 | 초기성과 | 후기성과 | 최종성과 | 초기성과 | 후기성과 | 최종성과 |
| 1. 초기성과 모델 사업참여*1차 (ref. 기초선) | 0.000<br>(0.033) | | | -0.015<br>(0.014) | | | 0.032<br>(0.033) | | |
| 2. 후기성과 모델 사업참여*2차 (ref. 1차) | | **-0.083**<br>(0.026) | | | -0.005<br>(0.011) | | | **-0.069***<br>(0.028) | |
| 3. 최종성과모델 사업참여*2차 (ref. 기초선) | | | **-0.093****<br>(0.034) | | | -0.022<br>(0.015) | | | -0.05<br>(0.035) |
| 절편 | 0.034<br>(0.152) | -0.008<br>(0.134) | 0.000<br>(0.081) | -0.042*<br>(0.021) | -0.046*<br>(0.022) | -0.028<br>(0.018) | -0.005<br>(0.151) | 0.018<br>(0.135) | 0.018<br>(0.104) |
| N | 2,813 | 3,145 | 2,582 | 2,813 | 3,145 | 2,582 | 2,813 | 3,145 | 2,582 |
| R2 | 0.154 | 0.117 | 0.122 | 0.039 | 0.037 | 0.039 | 0.159 | 0.119 | 0.117 |

* 주: 1) 패널 내 개인의 계열 상관을 고려하여 조정된 표준오차(robust clustered standard error)를 활용하였으며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로 분석함
2)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유형, 가족구성, 가구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부/모의 학력, 부/모의 근로여부, 지역더미를 통제하였으나 표에는 제시하지 않음
3) 괄호안 숫자는 표준오차를 의미

*$p$ 〈 .05, **$p$ 〈 .01, ***$p$ 〈 .001.

### 5) 분석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희망플랜 사업은 니트청년 지원사업이 전무한 한국사회에서 청년의 니트문제를 주된 타겟으로 체계적 기획에 기반을 둔 최초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민간자원이 투입되어 2016~2018년, 그리고 그 후속사업으로 2019~2022년 동안 니트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이중, 2016~2018년 동안 진행된 사업이 니트청년의 자립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니트청년 지원사업의 궁극적인 성과는 청년이 니트상태에서 벗어나 학업이나 고용의 상태로 진입하여 우리사회의 공식체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니트청년의 문제가 청년실업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되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고용상태로 전환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일 것이다. 그러나 본 분석의 결과 희망플랜 사업참여로 인해 고용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아졌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희망플랜 사업이 성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취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그 중간지점의 활동상태, 즉 학업이나 직업훈련 상태로, 또는 구직활동이나 기타 사회활동을 하는 활동형 니트상태로 변화되는 것은 달성가능한 목표이며 궁극적인 변화를 위한 기초가 되는 변화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니트상태가 장기화되어 외부세계와의 단절까지 초래하는 경우에는, 많은 실패의 경험속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두려운 상태에 있는 청년에게 당장의 취업보다는 심리적 자립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다.

니트상태의 청년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이 본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연히 니트의 기간이나 심도가 심한 경우에는 지원이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희망플랜 사업의 경우에도 초기성과는 거의 전무하다시피하고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니트청년의 자립을 위한 정책과 개입은 장기적인 안목과 빠른 성과를 요구하지 않는 정책적 인내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간에 성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선다면, '성과가 날 만한 청년을 골라내는' 크리밍(creaming)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오히려 사각지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 안목, 변화를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심이 정책적·실천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 6. 요약 및 시사점

설문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경제·주거·관계·주관적 자립 격차가 나타났다. 특히, 부모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부모소득이 높은 청년은 자원을 바탕으로 충분한 준비를 거쳐 여러 가지 영역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부모소득 수준에 따른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각각의 자립은 혼인여부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 각 영역별 자립과 혼인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으나 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 사회에서 혼인과 같은 역할 전환(role transition)은 성인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심층분석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들이 성인이라는 걸 지각하는 패턴을 살펴본 결과, 성인이라는 느낌이 혼재되어 있는 시기가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20대에서 30대까지 완전히 성인으로 느끼는 비율이 점진적으로 올라갔다. 성인으로 전환되는데 중요한 사건들을 성취하는 비율도 연령이 올라가면서 점진적으로 높아졌다. 성인 이행기 지연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청년연령이 지날 때까지 성인으로 자각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는 사회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성인 이행기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청년기본법」에서 정해놓은 청년기가 끝날 때까지 성인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자립에 대한 성취를 제대로 못한 경우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등 연령 중심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욕구(needs) 중심적 대응으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자리와 주거는 중요한 자립요인이지만 성취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일자리와 주거를 제공해주는 것은 성인 이행기의 혼란을 줄여주고 안정되게 초기 성인기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의미를 갖는다. 일자리와 주거가 성인으로의 이행에 가장 중요하므로 해당 영역에 대한 지원이 높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자립 성취에 영향을 미치며, 농어촌에 거주하거나 만성질환이 있으면 자립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자립이 어려운 대상을 자립취약계층으로 설정하여 통합적인 자립 지원을 제공하여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자원으로 진행되었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플랜' 사업 분석 결과, 희망플랜으로 인한 취업 성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회참여의 활성화(activation)가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니트상태에서 학업이나 직업훈련 상태로, 또는 구직활동이나 기타

사회활동을 하는 활동형 니트상태로 변화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가는 위험성을 막을 수 있다. 이는 자립을 위한 출발선의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표 Ⅲ-46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현황 분석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 주요 내용 | 시사점 |
|---|---|---|
| 설문조사 주요 결과 | 경제, 주거, 관계, 주관적 자립의 영역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립 격차가 나타남. 특히, 부모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는 독특한 양상을 보임 | 부모소득이 높은 청년은 자원을 바탕으로 충분한 준비를 거쳐 여러 가지 영역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질 수 있음 |
| | 각각의 자립은 혼인여부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임 | 각 영역별 자립과 혼인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으나 결과를 종합해보면, 혼인은 자립을 가속화하고 추가적인 인식의 변화를 주는 것으로 보임 |
| 심층분석 주요 결과 | 20대에서 30대까지 완전히 성인으로 느끼는 비율은 적고, 성인이라는 느낌이 혼재되어 있는 시기가 나타남 | 성인 이행기가 지연되고 있고, 청년연령이 지날 때까지 성인으로 자각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어 연령 중심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
| | 일자리와 주거가 중요한 자립요인이나 실제로 성취는 가장 어려운 부분임 | 일자리와 주거를 제공해주는 것은 성인 이행기의 혼란을 줄여주고 안정되게 초기 성인기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의미를 가짐 |
| |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자립 성취에 영향을 미치며, 농어촌에 거주하거나 만성질환이 있으면 격차가 유지될 수 있음 | 자립이 어려운 대상을 자립취약계층으로 설정하여 통합적인 자립 지원을 제공하여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함 |

# 제4장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

1. 개요
2.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에 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
3. 요약 및 시사점

# 4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15),16)]

## 1. 개요

이 장의 목적은 청년들의 자립의 경험, 인식, 어려움, 정책욕구 등을 청년들의 목소리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다. 양적연구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정보를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청년 당사자 면접조사를 시행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제언의 근거자료로 활용하였다.

### 1) 면접조사의 목적

이 연구는 자립이라는 개념을 경제적 차원, 주거 차원, 관계 차원, 주관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장에서는 각 차원별 청년들의 경험과 인식에 대해 들어보고 정책욕구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관련 정책에 활용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청년들의 목소리를 주로 담고자 하여 연령, 지역, 성별, 학력, 주거형태 등에 균형을 두고자 하였다. 특히 특수한 욕구가 있는 청년들(youth with special needs)을 포괄하고자 하였는데 이번에는 아동양육시설에서 거주하다 퇴소한 자립준비청년, 니트상태에 있는 구직단념청년, 장애가 있는 청년들을 면접에 포함시켰다. 이는 보편적 욕구 혹은 권리로서의 청년의 성인 이행기 자립을 다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자립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청년들이 경험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여 보편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집단에 따른 특수한 욕구 관점에서 자립 정책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15) 이 장은 유민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다.
16) 연구에 참여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신 청년 당사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표 Ⅳ-1 심층면접 개요**

| 주요 요소 | 내 용 |
|---|---|
| 면담참여자 수 | • 총 24명 |
| 면담방식<br>(공식성 정도, 구조화 정도, 개별 혹은 집단면담) | • 반구조화된 면접방식<br>• 개별면담 & 초점집단면접 |
| 면담장소 | • 온라인 줌(Zoom) 회의실 |
| 면담 시간 및 횟수 | • 개별면접 1인당 90분씩 진행 1~2회 (일부 참여자의 경우 2회 이상 면접하기도 하였음)<br>• 초점집단면접 1그룹 당 90분씩 1회 진행 |
| 면담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 • 면접 시 녹음하여 전사 |
| 참여자 모집 방법 | • 조사전문 업체의 패널에 속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되, 니트 청년과 자립준비 청년 등은 연구자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였음.<br>•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면접수당 지급 |
| 면담자 및 분석 | • 연구진 |
| 연구윤리 | • NYPI IRB 심의 완료(202206-HR-고유-014) |

### 2) 면접조사 주요 프레임과 내용

면접조사의 주요 질문은 “청년들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자립의 어려움은 무엇이고, 지원 욕구는 무엇인가?”이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상황의 청년들 중 사회에 자립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는 청년 당사자들을 면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면접조사를 통하여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자립의 어려움은 무엇이며, 각 대상별 자립의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청년들의 자립지원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틀과 방향에 대해 정리하였다.

면접 조사는 청년 당사자 대상의 조사와 청년 활동가 대상의 조사로 기획되었으나, 청년 활동가들이 단지 청년센터에서 서비스 지원 역할을 하는 활동가(worker)로의 특징뿐만 아니라 청년 당사자로서의 특징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청년 당사자와 활동가의 차이를 두지 않고 모두 청년 당사자로서 면접을 진행하였다.

청년 당사자 대상 조사는 과거-현재-미래의 틀로 생애 전반기 자립 경험을 알아보고,

현재 자립 상태가 어떠한지, 향후 자립 전망 및 욕구가 어떠한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청년들은 공통적으로 자신들의 성인이 되었다는 인식이 어떠한지, 자신의 사회경제학적 배경을 가진 청년이 향후 자립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청년 활동가들에게는 추가적으로 자립 지원 서비스의 특성을 소개하고, 자립지원의 사례에서 성공적 사례와 실패 사례가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표 Ⅳ-2 청년 당사자의 자립 경험 관련 심층면접 질문 프레임**

| 주요 요소 | 내 용 |
|---|---|
| 생애 전반기 자립 경험 | • 아동·청소년기에서부터의 자립 준비 경험 |
| 현재 자립 상태 | • 본인의 성인 인식<br>• 경제적 자립 상태<br>• 주거 자립 상태<br>• 관계 자립 상태<br>• 주관적 자립 상태 |
| 향후 자립 전망 및 욕구 | • 현재 자립을 위해 필요한 우선순위<br>• 개인의 자립을 사회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의견<br>• 자신의 자립 전망 및 욕구 |

### 3) 면접조사의 주요 방법

면접조사의 주요 방법은 개별면접과 초점집단면접(FGI)이었다. 개별면접은 전반적인 주제를 모두 1:1 면접을 통해 다루었고, 초점집단면접은 전체 주제 중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주제들을 주로 물어보았다. 연구 주제가 개인의 생활, 취향, 혼인 및 출산 계획 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참여자 중 1/3에 가까운 청년들은 연구자와 사전 인터뷰를 하여 2회 이상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라포를 형성한 후 개인적인 이야기를 진행하였다.

### 4) 샘플링 및 참여자 정보

참여자 모집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다수 청년들은 전문 조사업체의 패널에 속해 있는 청년들을 다양한 특성 별로 모집하고, 소수집단 청년들은 연구자의 개인 네트워크 및 청년 관련 지원기관의 소개를 통한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통해 진행하

였다. 청년 20명 중 일부는 청년센터의 활동가들을 섭외하여 청년 당사자로서, 그리고 청년정책 관련 실무자로서의 의견을 묻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Ⅳ-3 청년 당사자 응답 특성**

| 번호 | ID | 연령 | 성별 | 지역 | 현재상태 | 학력 | 특성 |
|---|---|---|---|---|---|---|---|
| 1 | AY | 25 | 남성 | 서울 | 직장인 | 고교졸업 | 고졸취업 |
| 2 | BY | 22 | 여성 | 서울 | 직장인 | 고교졸업 | |
| 3 | CY | 25 | 여성 | 서울 | 직장인 | 고교졸업 | |
| 4 | DY | 34 | 여성 | 인천 | 직장인 | 대학졸업 | 30대 직장인 |
| 5 | EY | 33 | 여성 | 서울 | 직장인 | 대학졸업 | |
| 6 | FY | 33 | 여성 | 서울 | 직장인 | 대학졸업 | |
| 7 | GY | 32 | 남성 | 경기 | 직장인 | 대학졸업 | |
| 8 | HY | 24 | 남성 | 서울 | 대학생 | 대학재학 | 20대 대학생 |
| 9 | IY | 22 | 여성 | 서울 | 대학생 | 대학재학 | |
| 10 | JY | 23 | 여성 | 서울 | 대학생 | 대학재학 | |
| 11 | KY | 27 | 여성 | 충청 | 청년활동가 | 대학졸업 | 청년센터 근무 |
| 12 | LY | 32 | 여성 | 대구 | 청년활동가 | 대학졸업 | 청년센터 근무 |
| 13 | MY | 27 | 남성 | 대구 | 청년활동가 | 대학졸업 | 청년센터 근무 |
| 14 | NY | 27 | 남성 | 충청 | 청년활동가 | 대학졸업 | 청년센터 근무 |
| 15 | OY | 26 | 여성 | 강원도 | 직장인 | 대학졸업 | 농촌거주 여성 |
| 16 | PY | 32 | 여성 | 서울 | 직장인 | 대학졸업 | 1인가구 여성 |
| 17 | QY | 28 | 남성 | 서울 | 프리랜서 | 대학졸업 | 직업계고 졸업자 |
| 18 | RY | 26 | 여성 | 서울 | 직장인 | 고교졸업 | 직업계고 졸업자 |
| 19 | SY | 23 | 여성 | 경기 | 대학생 | 대학재학 | 자립준비청년 |
| 20 | TY | 23 | 남성 | 서울 | 대학생 | 대학재학 | 자립준비청년 |
| 21 | UY | 24 | 남성 | 서울 | 단기업무 | 고교졸업 | 장애를 가진 청년 |
| 22 | VY | 27 | 여성 | 서울 | 단기업무 | 고교졸업 | 장애를 가진 청년 |
| 23 | WY | 27 | 남성 | 서울 | 장애활동가 | 대학졸업 | 장애를 가진 청년 |
| 24 | XY | 31 | 여성 | 서울 | 장애활동가 | 대학졸업 | 장애를 가진 청년 |

### 5) 분석방법

이번 면접조사는 모두 연구진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연구진이 직접 분석하여 결과를 정리하였다. 코로나19 시기임을 감안하여 모든 면접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해당 분야와 관련한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였고, 관련된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탐색의 기간을 가졌다. 이에 주제와 핵심 질문을 나열하여 반구조화하였고, 면접을 진행하면서 기존의 내용을 확인하고 새로운 주제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하는 등 유연하게 진행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기존의 질적 연구와 달리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면담이기 때문에 특정 주제 및 정책에 대해 세부적인 의견을 묻고 피드백 받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였다. 연구자는 모든 전사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코드화하고 이를 재분류하여 하위범주, 범주, 주제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 2.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에 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

### 1) 연구 결과

이 연구는 다양한 상황에 있는 청년들의 자립 과정에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에 집중하여 면담을 진행하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 참여자는 장기 니트 경험, 아동양육시설 양육 경험, 장기 입원 경험, 직업계고 현장실습 경험, 취업 후 대학 진학 경험, 장애인 특수학교 경험 등 다양한 인생 과정을 거쳤고, 현재도 대학 재학, 직장인, 프리랜서 등 직업도 다양했다. 참석자 중에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자립 노력을 한 1인가구도 있었고, 서울에서 자라나 지방에서 삶의 여유를 느끼며 지내는 청년도 있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환경 속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자립 특성과 차별적인 자립 특성 및 욕구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 연구가 이러한 관점에서 도출한 주제는 “성인되기와 자립하기”, “자립조건과 격차”, “자립을 실현하기”, “자립 정책 욕구”였다. “성인되기와 자립하기”는 ‘정상적인 혼란’, ‘자립 지연 및 다양화’로 구성되었고, “자립조건과 격차”는 ‘스스로 일어서기’, ‘출발선 격차’, ‘자립의 벽’으로 구성되었다. “자립을 실현하기”는 ‘점진적 자립’, ‘노력과 좌절’ 범주로 구성되었고, “자립 정책 욕구”는 ‘함께 자립하기’, ‘조건, 역량, 기회의 조합’으로 구성되었

다. 마지막 주제와 범주들은 이 연구가 과제 도출에 목적이 있으므로 이에 맞게 구성하였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청년 면담조사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이다.

**표 Ⅳ-4 청년 면담조사 분석결과**

| 주제 | 범주 | 하위범주 |
|---|---|---|
| 성인되기와 자립하기 | 정상적인 혼란 | 혼란스러움 |
| | | 가끔은 성인 |
| | | 완전한 성인 |
| | 자립 지연 및 다양화 | 일상적 과정 지연 |
| | | 진로 변경으로 인한 지연 |
| 자립조건과 격차 | 스스로 일어서기 | 가족 배경의 힘 |
| | | 위축되는 홀로서기 |
| | 출발선 격차 | 격차 인지 |
| | | 격차의 극복 |
| | 자립의 벽 | 돈, 직업, 학력 |
| | | 나의 과거 |
| 자립을 실현하기 | 점진적 자립 | 나이 들어감 |
| | | 조건을 갖추어감 |
| | 노력과 좌절 | 벽을 넘기 위해 돌아가기 |
| | | 자립을 포기하기 |
| 자립 정책 욕구 | 함께 자립하기 | 함께 하는 사람이 중요 |
| | 조건, 역량, 기회의 조합 | 내가 사는 곳에서 자립 |
| | | 곧 다가올 자립 기회를 찾아서 |

### 2) 성인되기와 자립하기

성인되기와 자립하기 주제는 정상적인 혼란, 자립 지연 및 다양화로 범주화하였다. 연구자는 청년들을 인터뷰하면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성인되기와 자립하기에서 정상적인 혼란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자립 지연과 생애과정 다양화로 인해 더 어려운 질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인되기와 자립하기에서는

청년들이 이야기한 성인되기와 자립하기의 응답을 살펴보고, 이것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로 가게 된 이유에 대해 살펴본다.

(1) 정상적인 혼란

성인되기와 자립하기는 유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청년들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이 성인이 되었는지, 자립을 하였는지를 이야기하였다. 연구자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본인이 성인이 되었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을 듣고 여러 고민을 하며 대답하고, 이에 대해 부연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표 Ⅳ-5 성인되기와 자립하기 범주 및 하위범주**

| 주제 | 범주 | 하위범주 |
|---|---|---|
| 성인되기와 자립하기 | 정상적인 혼란 | 혼란스러움 |
| | | 가끔은 성인 |
| | | 완전한 성인 |
| | 자립 지연 및 다양화 | 일상적 과정 지연 |
| | | 진로 변경으로 인한 지연 |

① 혼란스러움

성인 자각의 혼란스러움은 스스로 성인 나이가 되었는데 자신은 성인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 "법적으로는 당연히 어른인 건 맞는데 아직까지는 부모님 밑에서 지원받으면서 학교 다니고 편하게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완전하게 독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성인이라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HY, 24세, 남성, 대학생)***

② 가끔은 성인

성인으로서의 기능은 다차원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끔은 성인이 되었다가 다시 성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 자연스럽다.

> "저는 고등학교 때랑 미성년자 때 못했던 것들이 많은데 오히려 성인이 되고 나서

풀린 게 많아서 그런 제약에서 벗어나서 법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완전히 독립하지는 못해서 완전한 성인이라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IY, 22세, 여성, 대학생)***

③ 완전한 성인

완전한 성인이 되는 것은 나이를 먹어서, 취업을 해서, 주거 독립을 해서 등 매우 다양하다. 이들은 20대 후반부터 점차적으로 자신의 책임에 대해 인지하기 시작하고 성인으로서의 길을 걷는다.

"올해부터였던 것 같아요. 올해가 지나면 저도 아직은 젊기는 하지만 앞자리가 바뀌니까 이제 일도 어느 정도 한 상태이고 막 시작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QY, 28세, 남성, 대졸 프리랜서)***

주거 독립이 성인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주거를 함께 해도 성인이라 느낄 수 있다. 자신이 독립할 여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반대에 의해 독립하지 못하고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여성 청년 면담에서 이러한 사례를 몇 사례 볼 수 있었다.

"저는 서른 살이 넘어서 독립을 하고 싶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굉장히 반대를 하시거든요. 결혼을 하면 어차피 따로 살아야 되는데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같이 살자 해서 계속 같이 살고 있긴 한데 저는 웬만한 선택은 제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에 관한 한. 부모님께 이러이러한 게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 ***(LY, 32세, 여성, 청년센터 실무자)***

(2) 자립 지연 및 다양화

① 일상적 과정 지연

청년들은 자신들이 성인이 되는 과정이 예전에 비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예전에 비해 휴학과 졸업 유예 등으로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저희 학교도 3학년 끝나고 4학년 되기 전에 1년 정도는 웬만하면 다 하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취업준비 같은 것도 있고 너무 스트레이트로 달리다 보면 힘드니까 1년 정도 쉬다가 4학년을 다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취업준비 때문에 그런 것 같은 데 공부하려고 하는 휴학보다 취준은 27, 28에 성공하는데 졸업하고 나서 텀이 길면 면접에서 그런 걸 물어볼까 봐 일부러 휴학을 하고 졸업을 늦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JY, 23세, 여성, 대학생)***

20대 후반의 남성들 중에 주변에 자립한 경우가 있는지를 물으면 잘 떠오르지 않는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20대는 성인 진입기로서 아직 성인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남자 친구들이 자립하는 경우는 제 주변에 부모님 곁을 떠나서 혼자 지내고 있는 친구가 없어서. 아예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직업상 타지로 가야 해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친구들 밖에 없어서 자립한 남자 친구들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QY, 28세, 남성, 대졸 프리랜서)***

② 진로 변경으로 인한 지연

청년들은 자신의 진로 변경을 위하여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잘 몰랐어서, 경험을 해보니까 이 길이 아니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새로운 길을 간다. 새로운 길을 찾느라 시간이 지연되면 과거를 떠올리며 진로 탐색 시기를 놓친 것을 아쉬워하기도 한다. 아동·청소년기에서부터 진로에 대한 탐색이 더 잘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저는 직업적으로 미래가 확실하지 않아서 다른 직업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이 올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여러 길을 좀 찾아봐야겠다. 살아남을 방법을 좀 더 모색해야겠다는 생각이 올해 짙게 들기 시작했어요." ***(QY, 28세, 남성, 대졸 프리랜서)***

### 3) 자립조건과 격차

자립 조건과 격차는 스스로 일어나기, 출발선 격차, 자립의 벽의 범주로 구성이 되었다. 청년들은 자신들이 쌓은 자립의 조건을 보고 앞으로 더 나은 조건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여러 격차를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한다.

**표 Ⅳ-6 자립조건과 격차 범주 및 하위범주**

| 주제 | 범주 | 하위범주 |
|---|---|---|
| 자립조건과 격차 | 스스로 일어서기 | 가족 배경의 힘 |
| | | 위축되는 홀로서기 |
| | 출발선 격차 | 격차 인지 |
| | | 격차의 극복 |
| | 자립의 벽 | 돈, 직업, 학력 |
| | | 나의 과거 |

대학생들은 학교에 있을 때는 가정 배경으로 인한 격차가 크게 보이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가정 배경에 의해서 뒤집을 수 없는 격차가 발생한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

> "뒤집을 수는 있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IY, 22세, 여성, 대학생)***

이러한 격차는 쉽게 극복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격차를 취업으로 뒤집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의 청년정책으로도 이러한 격차를 뒤집기는 어렵다.

> "저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했었어요. 한 2, 3년 전에 했었는데 이게 자립을 위한 도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당장 이달에 써야 될 돈 이 정도의 도움이지 자립을 위한 도움이라고 하기에는 돈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기간이 길지 않고 쓸 수 있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는 현금으로는 받지 않고 통장으로 받았는데 통장이 이음카드라고 인천시 내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인데 그걸로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든지 이런 건 못하고 그냥 책 사고 슈퍼 가서 먹을 것 사 먹는 건 쓸 수 있는 거라서 내가 당장 뭘 배워야 된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돈인 것 같아서 자립을 위한 것과는 동떨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DY, 34세, 여성, 대졸 직장인)***

이러한 격차는 뒤늦게 발견되기도 한다. 자신이 걸어왔던 길이 이러한 격차를 발생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는 순간 다른 길에 접어들기도 한다.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취업을 한 청년은 자신이 과거로 돌아간다면 너무 쉽게 진로를 정하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진로를 정했을 것이라 이야기했다.

"제가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취업반으로 내보내고 그런 상태였는데 저는 그때도 조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안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도 솔직히 학연이 엄청 큰 지분을 차지해서 이게 학업이라는 연도 그렇고 학연도 그렇고 어느 정도 기본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래도 뽑는 게 안정적이다 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대표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 봐도.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끝나고 바로 졸업을 하는 것 자체가 자립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QY, 28세, 남성, 대졸 프리랜서)***

자립 격차는 장애를 가진 청년들에게서도 발견된다. 한 청년은 성인기 이후 발견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 간의 격차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는 성인이 되어 어차피 이러한 벽에 부딪혀야 한다면 일찍 부딪혀 봐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아동·청소년기에서부터 부딪히지 않으면 성인기에 이러한 격차에 좌절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어차피 받아야 되는 고통, 미리 받고 그냥 약간 단단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 있을 때는 되게 힘들다고 생각은 했지만 사회에 나가보니까 더 힘든 거예요. 더 부딪힐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그때 약간 배움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일반 학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XY, 31세, 여성, 장애를 가진 청년, 장애활동가)***

장애는 자립의 벽을 만든다. 직업을 갖기 위해 대학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하였지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를 당한다. 장애를 가진 보육교사, 장애를 가진 종교인을 꿈꾸기에는 아직 벽이 높다.

"저는 사회복지학과를 나왔고요, 사회복지학과 보통 나오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증이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같이 취득하게 만들어요. 사회복지쪽 과정은 그나마 나은데 어린이집 쪽은 이제 실습하는 과정에서 실습처를 구할 때 '장애가 있다' 하면, '부모님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너 장애 있어서 애들 보기 힘들 것 같아' 단정 짓고 뽑지 않아요. 그게 제가 처음으로 맞닥뜨린 큰 산이었던 것 같아요." ***(XY, 31세, 여성, 장애를 가진 청년, 장애활동가)***

"대학원도 신학을 하려고.. 원래 목사가 꿈이었고.. 이제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전도사로 취업을 해야 하는데... 장애가 있다고 대놓고 안 된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너 운전을 할

수 있나? (중략) 종교 활동 하다 보니까 장애 때문에 거절된 적이 많이 있었어요.." ***(WY, 27세, 남성, 장애를 가진 청년, 장애활동가)***

### 4) 자립을 실현하기

자립을 실현하기 주제는 점진적 자립과 노력 및 좌절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자립의 실현을 놓고 청년들이 인식하는 내용을 정리하였다.

**표 Ⅳ-7 자립을 실현하기 범주 및 하위범주**

| 주제 | 범주 | 하위범주 |
|---|---|---|
| 자립을 실현하기 | 점진적 자립 | 나이 들어감 |
| | | 조건을 갖추어감 |
| | 노력과 좌절 | 벽을 넘기 위해 돌아가기 |
| | | 자립을 포기하기 |

청년들은 자립 과정에서 다양한 벽을 경험하지만 청년들이 가진 탄력성을 가지고 다양한 기회를 찾기도 한다. 청년들이 마주하는 벽을 돌아가는 것이다.

"저는 성적도 좀 그랬고 바로 취업하기에는 자격증도 없었고 그래서 학업을 선택한 게 커서 저는 빠르게 선택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제가 더 나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QY, 28세, 남성, 대졸 프리랜서)***

현실적인 벽도 있다. 자립의 물리적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청년들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여러 고민을 하게 된다. 좌절과 포기를 이야기한 청년들도 있고, 현재 상태를 지속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며 비혼과 딩크(Double Income, No Kids)를 선언하기도 하였다.

"결혼을 생각하면 무조건 돈 문제는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걱정이 되고." ***(DY, 34세, 여성, 대졸 직장인)***

"아무래도 둘이 살면 그래도 평범하게 살 수 있는데 아이가 있으면 그 평범의 기준이

너무 떨어져 버리니까 그 위치가 완전히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이기적이라기보다는 나 살기도 힘들어서 누구랑 같이 살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QY, 28세, 남성, 대졸 프리랜서)*

청년정책 자체도 부재한 상황 상황에서 다른 도움을 받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 자립의 극복을 위해서는 청년정책이 더 포괄적인 지원을 해야한다.

### 5) 청년들의 목소리로 전하는 자립 정책 욕구

청년들의 자립 정책 욕구는 혼자 하는 자립이 아닌 함께 하는 자립, 그리고 다양한 조건과 역량, 기회의 조합을 기다리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표 Ⅳ-8 자립 정책 욕구 범주 및 하위범주**

| 주제 | 범주 | 하위범주 |
|---|---|---|
| 자립 정책 욕구 | 함께 자립하기 | 사회 속에서 생활 |
| | | 함께 하는 사람이 중요 |
| | 조건, 역량, 기회의 조합 | 내가 사는 곳에서 자립 |
| | | 곧 다가올 자립 기회를 찾아서 |

#### (1) 함께 자립하기

청년들은 혼자 자립할 수 없다. 자신이 살아온 사회 속에서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자립을 하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는 자립이 청년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

"저는 오히려 대학에 가서 전공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대학교에 가서 사회화를 더 가르치고 보내는 게 그 사람에게도 더 많은 공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학교라는 곳이 심화된 걸 배우는 곳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공부해서 나와도 모르는 게 많은데 그래도 대학교에 가야 지식을 얻고 나와서 좀 더 스텝을 밟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말할 것 같아요." *(QY, 28세, 남성, 대졸 프리랜서)*

자립 정보를 물어볼 수 없을 때 청년정책을 안내해 줄 주체가 있으면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이 있었다.

"제가 막내이고 위에 오빠랑 나이 차이가 많아서 저한테 공부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만 들어서 그때 저를 본다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남들이 가는 안정적인 코스대로 살거나 아니면 대학을 들어감과 동시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그때부터 공무원을 시키거나 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제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안정적인 상황을 하라고 조언을 해줬을 것 같아요." ***(DY, 34세, 여성, 대졸 직장인)***

(2) 조건, 역량, 기회의 조합

① 내가 사는 곳에서 자립

청년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자립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지역에는 그런 정책이 없어서 서울의 정책을 보고 부러워하기도 하였다.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아직 일상적 정책 전달체계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거의 없어요. 그때 들었던 서울 분들에 비해서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DY, 34세, 여성, 대졸 직장인)***

"저희 동네에 하나 있었던 것 같은 데 청년들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이라고 하나 있었던 것 같은 데 간판만 세워놓고 운영도 안 해서 다 쓰러져가는 건물이라서 안 갔던 것 같아요." ***(JY, 23세, 여성, 대학생)***

내가 사는 곳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곳을 의미하기도 한다. 부모와 떨어져 시설에서 살아야 했었던 한 청년은 장애인 시설에서 선생님에게 맞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불쾌해했고, 밖에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했다. 그 청년은 장애인 기관에서 다른 사람과 교류하며 어울리고 있었으나 청년 기관을 이용한 경험은 없다고 이야기했다.

"**연구자**: 혹시 다른 청년들.. 지금 00씨 나이에 청년들이랑 같이 어울리기는 기회가 생기면 그런데 나가서 같이 어울리고 싶어요?
**청년VY**: 어울리고 싶어요. 어울리고 싶어요.
**연구자**: 그러면 혹시 그런 청년센터들에서 그런 자리를 마련한다 이러면 오시겠어요?
**청년VY**: 저 혼자 못가요. 활보(활동보조) 선생님이랑 같이 가야해요
**연구자**: 활보 선생님이 도와주면 오고 싶어요?

**청년VY:** 어딘지 알아야 콜을 타고 가기라도 하죠"
***(VY, 27세, 여성, 장애를 가진 청년)***

그녀가 사는 서울은 2022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년센터가 가장 많고 잘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이다. 그녀를 포함한 장애를 가진 청년 4명은 모두 서울시청년센터 오랑을 이용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했다. 청년센터가 이들에게도 열린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면 자립의 조건, 기회, 역량을 조금이나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은 내가 사는 곳에서의 자립에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② 곧 다가올 자립 기회를 찾아서

청년들의 자립은 한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건과 역량과 기회의 조합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역량을 증진시킨다.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같다.

"계단을 밟아서 위로 올라가는 거지 한 번에 점프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DY, 34세, 여성, 대졸 직장인)***

"6개월 1년 정도 쉬는 건 진짜 놀고 싶어서 니트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취준 하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상태에서 지원을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JY, 23세, 여성, 대학생)***

"중고등학교 때 그냥 당장 눈앞에 닥친 상황만 해결하고 크게 내다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는 뭐가 되어야지! 라고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서 만약 그때로 돌아가게 된다면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살 건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고 얘기하고 싶고 그걸 배우기 위해서는 더 알아보라고 하고 싶은 데 과연 제가 그렇게 했을까요?" ***(DY, 34세, 여성, 대졸 직장인)***

청년정책이 포괄적이지 않아 상심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다.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청년 자립의 어려움은 보편적인 정책을 통해 풀어야 한다. 지금은 청년정책이 자립을 지원한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한들이 있다.

"청년 수당 그런 것도 다 중위소득이라든가 그런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위 소득

이 해당이 안 된다거나 9분위 10분위라고 해도 다 다르거든요. 9분위라고 해도 부모님이 지원을 안 해 주는 집도 있을 것이고 2, 3분위라고 해도 부모님이 공부만큼은 아낌없이 투자해주는 부모님도 계실 텐데 그런 걸 생각해서 중위 값을 나누지 않고 증빙 서류만 제출이 된다면 광범위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 혜택이 있으면 좋겠는데 청년 수당이나 이런 걸 보면 중위소득이나 분위 값으로 나눠서 그런 게 없더라고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JY, 23세, 여성, 대학생)***

청년정책이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조건, 자립할 수 있는 기회,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정책적 노력이 이어져야 청년들의 첫 시작을 지원할 수 있다.

"배울 수 있는 기회랑 취업의 폭을 많이 넓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시작을 할 수 있게." ***(IY, 22세, 여성, 대학생)***

## 3. 요약 및 시사점

이 연구는 성인 이행기 청년들을 면담하여 양적 연구에서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자립 인식, 자립 조건/역량/실현 인식, 정책 욕구를 중심으로 청년들을 면담하였다. 면담의 주요한 결과와 시사점 및 정책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이식 및 자립 인식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새로운 성인기(emerging adulthood)의 등장으로 성인 이행 기간이 늘어나고 있었고, 생애과정의 탈표준화가 나타나 굉장히 다양한 성인 이행의 경로를 밟고 있었다. 청년들은 자신이 성인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아니다' 보다는 '거끔', '아직', '얼마 전부터' 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였다. 성인 연령에 자신을 성인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청년들의 내적 문제가 아닌 매우 정상적인 혼란 상태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인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청년정책으로서는 무의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생애과정의 탈표준화는 대학진학, 결혼, 연애, 취업, 휴식 등 생애과정의 탈표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 청년들의 경우 전통적인 연령기준에 따라 우려하고 있기도 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청년들이

성인으로의 전환을 망설이는 이유는 자립 조건의 미충족과 전통적 가족 형태 속에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립조건을 충족하는 것에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자립 격차를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청년들은 자립조건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나, 이것이 좌절될 경우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비혼, 딩크와 같이 전통적인 사회적 결속 체계로 나아가지 않고자 하는 의도가 많아지기는 하였으나, 자립의 조건이 부족하여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립의 조건이 채워지면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자 하는 욕구도 강한 편이므로 자립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청년들의 자립 욕구에 대해 다양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정책의 지원이 주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저소득층에 몰려 있는 것도 청년의 자립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중산층의 청년들도 자립 격차를 느끼고 자립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자립 지원 욕구가 매우 넓고 혹은 보편적이라고 가정하는 게 타당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자립의 벽을 느끼는 청년들도 있었다. 일부 청년은 자립 과정에서 벽을 만나기도 하며, 이를 뛰어넘는 방안을 탐색하지만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였다. 고졸 취업 청년들은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하는 어려움과 함께 고졸로서 진로에 대한 벽과 차별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셋째, 정책지원욕구는 조건뿐만 아니라 주관적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역량과 준비도 중요하다, 상당수 청년들은 당장 취업과 같은 자립의 조건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 시기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했고, 진로 변경의 어려움에 대한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자립탐색 시기를 아동·청소년기부터 세밀하게 만들고, 성인 이행기 이것을 점진적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이번 보고서에서 다룬 갭이어(gap year)의 사례 혹은 전환학기제(transitional year) 사례와 연관이 있다.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과 함께 제대로 된 정보를 받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욕구는 폭넓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은 현재 청년정책은 자립 지원보다는 생활에 대한 가벼운 지원의 의미라는 이야기도 하였는데, 청년정책이 자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매우 소수였다. 대신 자립의 기반이 마련된 이후에는 사회적 연결망이나 일상 지원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

**표 Ⅳ-9 성인 이행기 자립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주요 내용 | | 시사점 |
|---|---|---|
| 성인 인식 및 자립 인식 | 새로운 성인기의 등장으로 성인 이행 기간이 늘어나고 있음 | 청년들은 자신이 성인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아니다' 보다는 '가끔', '아직', '얼마 전부터' 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였음. 성인 연령에 성인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은 청년들의 내적 문제가 아닌 매우 정상적인 혼란 상태임 |
| | 생애과정의 탈표준화가 나타나고 있음 | 대학진학, 결혼, 연애, 취업, 휴식 등 생애과정의 탈표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 청년들의 경우 전통적인 연령기준에 우려하고 있기도 함 |
| 자립 조건과 격차 | 청년들은 자립조건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나, 이것이 좌절될 경우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함 | 비혼, 딩크와 같이 전통적인 사회적 결속 체계로 나아가지 않고자 하는 의도가 많아지기는 하였으나, 자립의 조건이 부족하여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임. 자립의 조건이 채워지면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자 하는 욕구도 강한 편이므로 자립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 | 청년은 단일한 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다양성을 지니고 있음 | 공통의 욕구와 특별한 욕구를 구분하되, 공통의 욕구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특별한 욕구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인가구 청년, 니트 청년, 자립준비청년) |
| | 중산층의 청년들도 자립 격차를 느끼고 있어 자립 지원의 욕구를 지니고 있음 | 종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청년정책지원 선별 기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음. 면담에 참여한 청년들은 자신들도 자립 격차를 느끼고 경험하기 때문에 자신들에 대한 자립지원 정책이 없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음 |
| | 일부 청년은 자립 과정에서 벽을 만나기도 하며, 이를 뛰어넘는 방안을 탐색하지만 쉽지 않음 | 고졸 취업 청년들은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하는 어려움과 함께 고졸로서 진로에 대한 벽과 차별을 경험하기도 하였음. 관련 연구에서 장애, 성정체성, 아동기 아동시설양육경험 등 취약한 특성이 자립을 가로 막는 것과 비슷한 의미가 있어 사회적 개선이 필요함 |

| 주요 내용 | | 시사점 |
|---|---|---|
| 정책 지원 욕구 | 조건뿐만 아니라 주관적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역량과 준비도 중요함 | 상당수 청년들은 당장 취업과 같은 자립의 조건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 시기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했고, 진로 변경의 어려움에 대한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자립탐색 시기를 아동·청소년기부터 세밀하게 만들고, 성인 이행기 이것을 점진적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 | 현재 청년정책은 자립 지원보다는 생활에 대한 가벼운 지원의 의미임 | 청년정책이 자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매우 소수이지만, 자립의 기반이 마련된 이후에는 사회적 연결망이나 일상 지원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 | 청년 자립지원 서비스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별화와 한 번에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으로의 변화가 모두 필요함 | 같은 니트 청년이라 하더라도 니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지원 욕구가 모두 다른 것으로 나타났음. 청년은 단일한 대상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대상들의 총칭이므로 서비스의 개별화가 필요함. 또한, 조각조각난 서비스를 찾아가기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있으므로 사례관리가 포함된 통합지원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음 |

# 제5장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관련 국내법 및 공공·민간 정책사례 분석

1. 개요
2. 청년 관련 법률에서의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3. 청년 관련 정부정책에서의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4.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관련 민간기관 활동
5. 요약 및 시사점

# 5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관련 국내법 및 공공·민간 정책사례 분석[17)]

## 1. 개요

자립은 한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며, 사회제도와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자립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 시기(transition period) 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아동기부터 청소년기 동안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쌓고 성인 이행기 동안 자립을 위한 적절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과 관련하여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포괄하는 법률과 제도들을 모두 검토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 장에서는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관련 국내 법·제도를 분석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도들에서는 청년의 자립을 명시하고 관련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의 '자립'은 너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거나, 너무 협소한 대상에게만 제공하는 서비스로 구체화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법·제도들을 분석하고, 현재 자립 관련법과 제도의 한계와 개선사항은 무엇인지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장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2절에서는 국내 청년 자립 관련법과 지자체의 자치법규를 검토하여 자립 관련 법령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다. 둘째, 3절에서는 청년정책기본계획과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내용 중 자립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청년 자립 관련 사업을 정리하여 실제 어떠한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셋째, 4절에서는 정부정책 밖에서 민간기관들이 자립 지원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것 중 사회정책으로 제도화되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하였다. 넷째, 마지막 5절에서는 이를 통해 이 장에서는 청년정책에

17) 이 장은 유민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신동훈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 작성하였다.

서 어떠한 자립의 영역이 추가되어야 하고, 어떠한 자립의 대상이 포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 2. 청년 관련 법률에서의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 1) 법령 (법률, 대통령령)

#### (1) 자립 관련 법률[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검색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자립'이 들어간 법률명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유일하다. 조문 제목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아동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으로 범위가 늘어난다. 이들 법률은 노숙인, 장애인, 보호종료아동, 학교 밖 청소년, 한부모 등의 자립이 어려운 대상들의 자립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본문 내용으로 범위를 확대해보면 법률의 수가 조금 늘어난다. 이 결과들 중 본 연구와 관련 있는 법률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청년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서 자립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자립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아동, 청소년, 청년 등 생애주기별 대상으로 한 법률과 장애인,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특수한 욕구가 있는 대상에 대한 법률, 그리고

18) 이 부분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2022년 10월 13일 최종적으로 검색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회보장기본법」과 같이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법률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여기서는 아동, 청소년, 청년 등 생애주기별 대상으로 한 법률과 이 대상들 중 특수한 욕구가 있는 대상에 대한 법률을 중심으로 각 법률이 자립을 어떻게 규정하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표 V-1 생애전반기 자립 지원 법률**

<table>
<tr><th>생애주기</th><th>아동기[19)]</th><th>청소년기</th><th>청년기</th></tr>
<tr><td rowspan="2">생애전반기 법률</td><td>• 「아동복지법」<br>•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td><td>• 「청소년복지 지원법」<br>•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td><td rowspan="2">• 「청년기본법」</td></tr>
<tr><td colspan="2">•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td></tr>
<tr><td>전생애주기 법률</td><td colspan="3">• 「여성폭력방지기본법」<br>• 「장애인복지법」<br>•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br>•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br>•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br>•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br>•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br>•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br>•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br>• 「한부모가족지원법」</td></tr>
<tr><td>사회보장제도 관련 법률</td><td colspan="3">• 「사회보장기본법」<br>• 「사회복지사업법」<br>• 「국민기초생활보장법」</td></tr>
</table>

(2) 생애전반기 아동, 청소년, 청년 관련 법률

여기서는 생애전반기 아동, 청소년, 청년 관련 법률이 자립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에 대해 다루고 있으므로 「청년기본법」을 먼저 살펴보고, 아동기와 청소년기 관련 법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기본법」에는 유일하게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에 “청년의 경제적 자립”이 명시되어 있어 자립의 의미를 경제적 측면으로 구분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법률에 근거한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의 방향은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근거

19) 2022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아동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시민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아동기본법」 제정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법인 「청년기본법」에는 경제적 자립 이외의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표 V-2 「청년기본법」 내 자립 관련 조항**

| |
|---|
|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청년기본법)에서 2022년 10월 13일 인출

「아동복지법」에는 자립 지원에 대한 조항이 비교적 많이 들어가 있으나 복지법의 특성상 특별한 욕구를 가진 대상인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에 한정되어 '자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2절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 지원'으로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별도 조항들이 나열되어 있다. 제38조(자립 지원), 제39조(자립 지원 계획의 수립 등), 제40조(자립 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제41조(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등은 직접적으로 자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등 역시 자립 지원의 방식에 대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생애전반기 법률 중 가장 구체적인 자립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자산형성 및 관리 등 자립 지원의 영역을 구성한 것은 참고할 만하다.

**표 V-3 「아동복지법」 내 자립 관련 조항**

| |
|---|
|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br>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br>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br>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br>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br>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br>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 생활 및 정서적 · 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br>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 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 운영,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아동의 자립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에서 2022년 10월 13일 인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제2조 기본이념을 통해 빈곤아동이 태어나서 자립할 때까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고 지원함을 규정하고 있다.

**표 V-4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내 자립 관련 조항**

제1조(목적) 이 법은 빈곤아동이 복지 · 교육 · 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빈곤아동이 부모의 사회적 ·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태어나서 자립할 때까지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2022년 10월 13일 인출

「아동복지법」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연령이 상이한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도 '자립'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가정 밖 청소년'에 국한되어 자립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의 자립지원은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등과 관련이 있고 서비스와 지원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표 Ⅴ-5「청소년복지지원법」내 자립 관련 조항**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 홍보 · 연구 · 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 ·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 · 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 · 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2022년 2월 18일 인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정의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자립지원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1조에서는 자립지원을 더 폭넓게 정의하고 있는데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교육지원 등이 규정된 것은 자립지원의 구체성과 포괄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지원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표 Ⅴ-6「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내 자립 관련 조항**

제11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한다),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에서 2022년 10월 13일 인출

마지막으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제2조(기본이념)에 "태어나서 자립할 때까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 자립은 가구의 빈곤에서 벗어나 탈빈곤 상태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것이 구체적인 자립지원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기본이념과 같은 정책방향으로 제시된 만큼 향후 구체적인 자립지원 제도가 명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V-7「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내 자립 관련 조항**

| |
|---|
|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빈곤아동이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태어나서 자립할 때까지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2022년 10월 13일 인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45조에서 보호시설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자립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립지원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의하지 않고 있었다.

**표 V-8「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내 자립 관련 조항**

| |
|---|
| 제45조(보호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br>1. 제46조제1항 각 호의 업무<br>2.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자립지원<br>3. 장기치료가 필요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다른 기관과의 연계 및 위탁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2022년 10월 13일 인출

(3) 특수한 욕구를 가진 대상의 자립과 관련한 법률

「장애인복지법」에는 법의 목적과 책임에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명시되어 있고, '자립생활의 지원'과 관련한 일련의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생활지원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이라는 조건(자기결정)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만하다. 다른 법률들에 비하여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자립 지원이 가장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Ⅴ-9「장애인복지법」 내 자립 관련 조항**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의8(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장애인과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못한 신청인에게 장애 정도의 변동, 장애인 자격의 상실 등에 따른 지원의 변화에 대한 정보와 재활 및 자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 · 기준 및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장애 유형 · 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 · 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 · 의사소통 · 보행 · 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 · 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 · 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 · 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3조(자립훈련비 지급)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3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 · 상담 · 치료 · 훈련 등을 받도록 하거나 위탁한 장애인에 대하여 그 시설에서 훈련을 효과적으로 받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립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훈련비 지급을 대신하여 물건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훈련비의 지급과 물건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의 연구)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재활 및 자립생활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 연구 · 평가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에 장애예방 · 의료 · 교육 · 직업재활 및 자립생활 등에 관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에서 2022년 10월 13일 인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고 정책 시행 근거와 예산 수립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표 V-10「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내 자립 관련 조항**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에서 2022년 10월 14일 인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제23조 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에서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재활훈련 및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진로 및 직업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육권 보장을 위한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표 V-11「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내 자립 관련 조항**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①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 · 직업교육 · 고용지원 · 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응훈련 · 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 · 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서 2022년 10월 14일 인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자립에 대해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사회적응교육(제15조), 직업훈련(제16조), 취업보호(제17조), 영농정착지원(제17조의3), 창업지원(제17조의6), 주거지원(제20조),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제21조의2), 교육지원(제24조), 생활보호(제26조) 등 다양한 자립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는 향후 다양한 측면에서 자립의 어려움을 겪는 대상들을 위한 자립 지원 영역을 선정할 때 참고할 만하다.

**표 V-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내 자립 관련 조항**

제22조(거주지 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 · 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학 여부 등 교육현황
2. 취업직종 · 근로형태 · 근속기간 · 임금수준 · 근로조건 등 취업현황
3. 주거현황
4.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현황
5. 소득 · 지출 · 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서 2022년 10월 14일 인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청년 및 관계 법률들에서 '자립'이란 보편적 대상에 적용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특별한 욕구를 가진 대상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청년기본법」에서는 보편적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특정한 영역에만 국한되어 사용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검토를 통해 법률적 개선 방향을 도출할 것이다.

**표 V-13 생애전반기 자립 관련 법률의 주요 시사점**

| 생애주기 | 주요 조항 | 시사점 |
|---|---|---|
| 생애전반기 법률에서의 자립 | • 「청년기본법」 | •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대책마련으로 부분적으로만 명시(제22조) |
| | • 「아동복지법」 | •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자산형성 및 관리 등 자립지원의 영역을 구성(제38조1항)<br>•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으로 한정(제38조1항1호) |
| | • 「청소년복지지원법」 | •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중 하나로 자립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았음(제16조) |
| |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기본이념으로 한정(제2조) |
|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을 규정(제11조1항)<br>•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지원 근거 마련(제11조2항) |
| |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보호시설의 업무로 보호·자립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음(제45조) |
| 전생애주기 법률에서의 자립 | • 「장애인복지법」 | • 장애인 자립에 대한 국가책무(제9조)<br>• 지자체장의 자립에 필요한 정보제공 의무(제32조의8)<br>• 장애유형, 장애정도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제35조)<br>• 자립훈련 지원(자립훈련비 지급) (제43조)<br>• 자립생활 연구(제52조) |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 |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재활훈련 및 자립생활훈련을 실시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br>• 자립지원에 대해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 사회적응교육(제15조), 직업훈련(제16조), 취업보호(제17조), 영농 정착지원(제17조의3), 창업지원(제17조의6), 주거지원(제20조),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제21조의2), 교육지원(제24조), 생활보호(제26조) 등 |

### 2) 자치법규 (조례)

지방자치 단체의 청년 관련 조례들도 청년의 자립 지원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청년의 자립이 포함된 조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20] 하나는 지자체의 「청년 기본 조례」[21]로 지역 청년정책의 기본적 틀을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지자체의 자립 지원 조례로 자립준비청년, 청년 주거복지 지원, 일자리 지원 조례, 지역 정착 지원 조례 등이다.

#### (1) 청년 기본 조례 (광역자치단체 기준)

우리나라의 청년정책은 지자체에서 먼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청년기본법」이 2020년 2월 제정되기 이전 지자체의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정책의 발전을 견인하였다.

**표 V-14 광역자치단체 청년 기본 조례 (2022년 5월 31일 기준)**

| 법령명 | 지역명 | 제정 일자 |
|---|---|---|
|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 경상남도 | 2016. 6. 9. |
| 경상북도 청년 기본 조례 | 경상북도 | 2017. 12. 28. |
| 광주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 광주광역시 | 2015. 12. 28. |
|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 대구광역시 | 2015. 12. 30. |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 대전광역시 | 2016. 10. 20. |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 부산광역시 | 2017. 5. 31. |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 2015. 1. 2. |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기본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 2016. 12. 20. |
|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 울산광역시 | 2017. 4. 27. |
|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 인천광역시 | 2018. 2. 26. |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2016. 6. 22. |
|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 충청남도 | 2016. 2. 22. |
|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 충청북도 | 2016. 5. 24. |

20) 조례 검색 절차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청년'과 '자립'을 키워드로 1차로 검색한 후, 2차로 연구진의 검토를 통해 연관이 적은 조례를 삭제하였다. 이를 통해 전체 263개 조례가 청년 자립과 연관된 조례로 선정되었다.

21) 청년 기본 조례의 명칭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청년정책 기본 조례 혹은 청년 지원 기본 조례 등이다. 여기서는 이들 조례가 각 지역의 청년 기본 조례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전국 최초로 2015년 1월에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현재는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까지 200개가 넘는 지자체가 청년 기본 조례를 가지고 있다.

청년 기본 조례가 급속도로 확대된 것은 청년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에서 매우 긍정적이지만, 지자체 고유의 특성이 담긴 자치법규가 만들어지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 청년 기본 조례들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매우 유사한 형태로 제정된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청년 기본 조례들은 「청년기본법」과 같이 자립 지원에 대해 매우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신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청년센터의 자립 지원 활동 등 일부 구체화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는 제1조 목적에서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형성하는 것, 제13조 청년의 주거안정에서 독립가구 형성을 위한 이사비를 지원하는 것, 제14조 청년의 금융생활지원 등에서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대책 수립, 교육, 예산지원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0조 청년지원기관의 설치·운영의 제3항 2호에서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의 기능으로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을 언급하고 있다.

**표 V-15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내 자립 관련 조항**

|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br>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br>③ 시장은 청년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거와 관련한 보증보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독립가구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br>④ 시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청년 1인가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제14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하고,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8353,20220310))에서 2022년 10월 14일 인출

2015년 12월에 제정된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의 경우에는 제3조 책무에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발전, 참여 확대, 정책 개발, 자립 기반 형성 등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청년센터)의 각 호에서 청년센터의 자립 지원 기능을 세부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3조(보조금 지원)에서도 청년 자립 역량 강화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와 같은 광역시의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비해 자립의 개념과 자립지원을 위한 방안을 구체화했다는 것, 그리고 정책전달체계의 기능에 자립지원을 추가한 것에서 실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는 향후 「청년기본법」 및 시행계획이 개정되는데 있어 자립지원정책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2) 자립 지원 조례 (기초자치단체 포함)

다음으로 지자체의 청년 기본 조례를 제외한 자립 지원 조례를 살펴보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청년'과 '자립'을 키워드로 1차로 검색한 후, 2차로 연구진의 검토를 통해 연관이 적은 조례를 삭제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지자체의 조례 중 청년 자립 관련 조례는 55개였다. 이 조례들에서 '자립'은 더 다양한 형태로 사용된다. 이는 자립 영역, 자립 대상, 기타 조례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자립 영역별 조례로서 창업, 일자리, 금융 지원과 같은 경제적 자립 관련 조례, 주거지원 및 주거복지와 같은 주거 자립 관련 조례다. 예를 들어 경제적 자립 관련 조례는 「경기도청년기본금융지원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년일자리창출및고용촉진조례」 등이고, 주거 자립 관련 조례는 「서울특별시청년주거기본조례」, 「전주시주거복지지원조례」 등이다. 둘째, 자립 대상별 조례로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자(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 느린 학습자 지원 조례 등이 있다.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고양시청년느린학습자지원조례」, 「서울특별시성북구사회적고립청년지원에관한조례」, 「수원시아동·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년지원에관한조례」 등이다. 셋째, 기타 조례로 청년들의 중소도시 및 농어촌 정착을 지원하는 조례, 각종 청년 기관 설치 조례 등이다. 농어촌의 청년 정착 조례는 「전라남도청년인구유입·정착지원조례」, 「철원군마을공동체및청장년육성지원등에관한조례」, 청년 기관 설치 조례는 「군산시청년센터및창업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 「서울특별시금천구청년미래기금설치및운

용조례」, 「시흥시청년협업마을설치및운영조례」, 「인천광역시동구청년복합공간설치및운영조례」 등이 있다.

**표 V-16 청년 자립 지원 관련 조례 (가나다순 정렬)**

| 법령명 | 지역명 | 법령명 | 지역명 |
|---|---|---|---|
|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 경기도 | 서울특별시청년주거기본조례 | 서울시 |
| 경기도청년공간설치및운영조례 | 경기도 | 서울특별시금천구청년미래기금설치및운용조례 | 금천구 |
| 경기도청년기본금융지원에관한조례 | 경기도 | 서울특별시노원구청년문화예술활성화지원조례 | 노원구 |
| 경기도청년주거안정지원조례 | 경기도 | 서울특별시노원구청년일자리창출촉진조례 | 노원구 |
| 경상남도청년주거지원조례 | 경상남도 | 서울특별시성북구사회적고립청년지원에관한조례 | 성북구 |
| 경상북도농어촌지역개발사업추진및지원조례 | 경상북도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년일자리창출및고용촉진조례 | 종로구 |
| 고양시주거복지지원조례 | 고양시 | 수원시아동·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년지원에관한조례 | 수원시 |
| 고양시청년느린학습자지원조례 | 고양시 | 시흥시청년협업마을설치및운영조례 | 시흥시 |
| 고창군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 | 고창군 | 신안군청년지원조례 | 신안군 |
| 광주광역시남구청년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 남구 | 영광군청년발전및지원에관한조례 | 영광군 |
| 광주광역시북구청년친화도시기본조례 | 북구 | 이천시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 | 이천시 |
| 광주광역시아동·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년지원에관한조례 | 광주광역시 | 이천시주거복지지원조례 | 이천시 |
| 군산시아동·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년지원에관한조례 | 군산시 | 이천시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 | 이천시 |
| 군산시청년센터및창업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 | 군산시 | 익산시청년희망도시구축조례 | 익산시 |
| 군포시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이자지원조례 | 군포시 | 인천광역시동구청년복합공간설치및운영조례 | 동구 |
| 금산군청년지원조례 | 금산군 | 인천광역시서구청년문화예술활성화지원조례 | 서구 |
| 김해시주거복지지원조례 | 김해시 | 인천광역시서구청년활동공간설치및운영조례 | 서구 |
| 나주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 나주시 | 전라남도청년인구유입·정착지원조례 | 전라남도 |
| 남양주시청년창업센터설치및운영조례 | 남양주시 | 전주시주거복지지원조례 | 전주시 |
| 대전광역시양성평등기본조례 | 대전광역시 | 전주시청년희망도시구축을위한조례 | 전주시 |
| 대전광역시청소년기본조례 | 대전광역시 | 정선군청년활동거점공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정선군 |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조례 | 대전광역시 | 정읍시청년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 | 정읍시 |
| 목포시주거복지지원조례 | 목포시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고립청년밀착지원에관한조례 | 제주 |
| 목포시청년·일자리통합센터설치·운영조례 | 목포시 | 제주특별자치도청년문화예술육성및지원조례 | 제주 |
| 보성군청년발전지원조례 | 보성군 | 철원군마을공동체및청장년육성지원등에관한조례 | 철원군 |
| 부산광역시남구청년기금설치및운용조례 | 남구 | 청양군청년창업및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 | 청양군 |
|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년미래기금설치및운용조례 | 부산진구 | 춘천시청년발전지원조례 | 춘천시 |
| 부산광역시영도구청년기금설치및운용조례 | 영도구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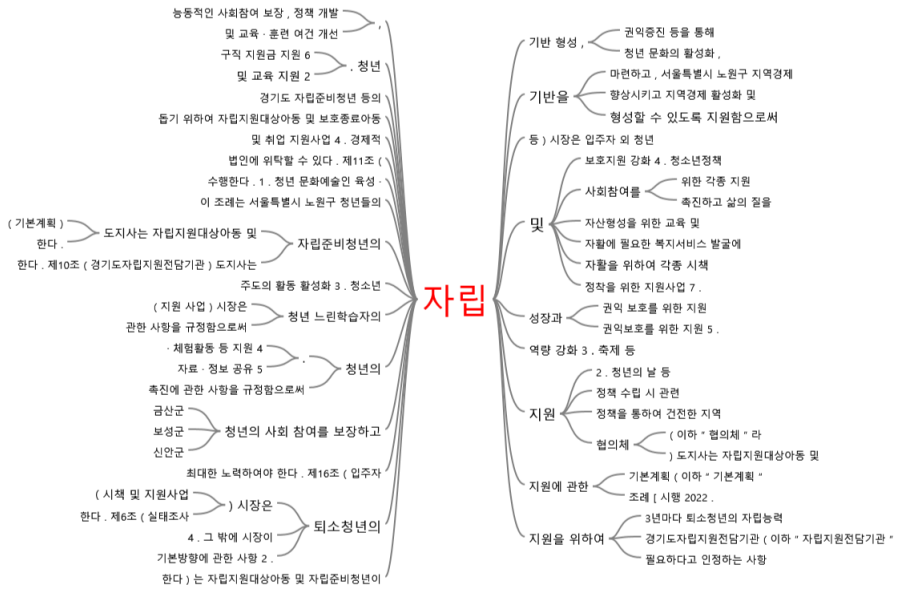



**그림 V-1 지자체 청년 자립 지원 조례 중 '자립' 관련 Word Tree**

지자체 청년 자립 지원 조례들의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하여 질적자료 분석 프로그램인 Nvivo를 통하여 이들 조례들에서 '자립'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단어트리(word tree) 방식으로 살펴보았다. '자립'이라는 용어를 중간에 놓고 어떤 단어들이 자립의 앞이나 뒤에 나오는지를 살펴보면, 주로 자립의 앞에서는 자립준비청년, 퇴소청년 등의 자립지원의 대상 관련 단어들이 나오고, 자립의 뒤에는 자립 기반형성, 자립 역량, 자립 지원 등의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자립 지원들에서는 누구에게 자립지원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자립 지원을 할 것인지를 주로 규정하고 있다. 자립 지원은 자립 기반 형성, 자립 역량 강화, 그리고 구체적인 자립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요컨대 지금까지 살펴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분석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광역자치단체 청년 기본 조례에서 자립이라는 용어는 청년기본법과 같이 상징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 차이점은 지자체 내의 청년센터의 기능으로 자립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경제적 자립과 주거 자립을 위한 정책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 등이었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자립이라는 용어가 보다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자체 청년 자립 지원 조례에서 자립이라는 용어는 더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업, 금융과 같은

경제적 자립, 주거복지 및 전월세 지원과 같은 주거 자립 등으로 분화되어 사용되고 있었고, 대상별로는 아동·청소년 퇴소자 지원 조례를 중심으로 사회적 고립 청년, 느린 학습자 지원 등 소수집단 청년 혹은 특수한 욕구를 가진 대상들로 분화되고 있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기본 조례가 청년정책을 견인해왔던 것처럼, 청년 자립 지원 법률에서도 「청년기본법」 이 향후 더 구체화된 자립지원으로 세분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절에서 살펴본 생애주기 법률과 자치단체 자치법규(조례) 분석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청년정책의 자치법규(조례)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이끄는 경향이 있다. 「청년기본법」에서는 자립이 청년정책의 목적으로 상징과 같이 활용되고 있지만, 실제 자립에 대한 구체적 조항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향후 자치법규의 자립 지원이 「청년기본법」에 포함된다면, 자립을 경제적 차원과 주거 차원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지원으로 구체화하고, 자립지원 대상도 자립준비청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 청년, 느린 학습자, 장애 청년 등 다양한 욕구를 가진 청년들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지자체의 청년정책은 우리나라 청년정책의 미래다.

## 3. 청년 관련 정부정책에서의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생애전반기 법률은 아동, 청소년, 청년 관련법 내용 중 자립 관련 정책을 분석한 것이다. 2022년 현재 우리나라의 생애전반기 아동, 청소년, 청년을 관장하는 정부부처는 모두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연령별, 대상별 서비스 역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등에 속한 청소년들은 자립지원전담요원 등으로부터 자립준비와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기도 하지만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은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자립지원체계 보다 다른 지원과의 연계를 통해 자립생활 준비 지원이 이루어진다. 법과 제도의 분절성은 실제 아동, 청소년, 청년들의 자립 기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 1)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의 성인 이행기 청년 자립 지원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10대 국정과제를 확정하여 발표하였

고, 국정과제에 담긴 20개의 약속 중 17번째는 청년정책 3개를 담고 있다.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라는 약속 17번에 담긴 국정과제는 국정과제 90번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국정과제 91번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국정과제 92번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등이 있다(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 이 세 가지 국정과제는 모두 이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자립과 일부 관련이 있다.

**표 V-17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청년 자립 관련 과제(국정과제 90번)**

| 번호 | 과제 및 목표 | 주요내용 (일부) | 부처 |
|---|---|---|---|
| 90 | □ **과제명**<br>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br><br>□ **과제목표**<br>○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 주거사다리 복원<br>○ 청년특화 취·창업지원 확대를 통한 일자리 기회 창출<br>○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및 청년의 교육 기회 확대 | ○ (내 집 마련) 청년·신혼·생애최초 계층에 원가주택 등 50만호 공급, 청약 및 특별공급 제도개선으로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br>-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 완화(60~70% → 80%)를 추진하고, DSR 산정시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 병행<br>○ (취업지원 혁신)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재학 단계의 청년들에 조기 개입하여 취업·경력설계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br>-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지방청년 위한 기업주도 프로그램 등 민·관 협업을 통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 제공<br>○ (청년창업 기반 강화) 청소년 시기부터 창업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과감한 창업도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 구축<br>○ (교육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내실화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지원 확대를 통한 학비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br>- 취업준비생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가칭)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도입 | 국토부·금융위·고용부·중기부·교육부·국방부·국조실 |

* 출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22).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제20대 대통령실, p.153.

먼저 국정과제 90번 '청년에게 주거, 일자리, 교육 등 맞춤형 지원'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청년 세대의 주거 마련 기회 확대, 취업 지원 혁신, 창업 기반 강화, 미래역량 강화, 교육 부담 완화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청년들의 자립에 기초가 되는 주거, 일자리, 교육을 보장하는 정책들을 구성하는 것이며 경제적 자립, 주거 자립과 같은 자립 조건 혹은 자립 기반을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정과제 91번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은 공정기반 구축, 자산형성 지원, 취약청년 출발 지원이다. 자산형성 지원은 90번 과제에서와 같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형태로 볼 수 있고, 공정기반 구축과 취약청년 출발 지원은 자립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취약청년 발굴 및 지원체계를 재편성하고, 구직단념청년과 취약청년(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어 많은 청년들이 첫 출발 기회를 동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Ⅴ-18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청년 자립 관련 과제(국정과제 91번)**

| 번호 | 과제 및 목표 | 주요내용 | 부처 |
|---|---|---|---|
| 91 | □ **과제명**<br>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br><br>□ **과제목표**<br>○ 청년세대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br>○ 사회 출발시 자립 기반 구축이 어려운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 ○ (공정기반 구축)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 해소 등 공정문화 확산<br>-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불공정한 특례제도 개선 추진<br>-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한 상시 단속·점검, 신고 접수·처리 및 직권조사, 교육·컨설팅 등 추진으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추진<br>- 청년 아르바이트생 노동권 침해 시 원스톱 권리구제 서비스 지원 확대<br>- 불공정 사례 모니터링 및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홍보 강화<br>○ (자산형성 지원)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여 만기시 목돈이 마련될 수 있는 상품((가칭) 청년도약계좌) 출시<br>-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세제혜택도 제공<br>○ (취약청년 출발 지원) 취약청년 발굴·지원체계 재편 및 취약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가칭)청년도약준비금' 신설 검토<br>-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및 취약청년(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 청(소)년, 고립·은둔청년 등) 실태 파악,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확대 | 고용부·권익위·금융위·복지부·국조실 |

* 출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22).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제20대 대통령실, p.154.

마지막으로 국정과제 92번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는 청년참여 확대,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지방 및 민간 협업, 청년정책 인프라, 법제 개선 등이다. 92번 과제는 과제목표로 '청년세대에 불합리한 법령상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내세우고 있다. 이 과제는 청년들의 참여를 증진하고, 추진체계와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중앙-지방 및 공공-민간의 협업을 통해 청년정책들을 발굴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과제는 개별적인 목적을 가진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립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전달체계 개편에는 함의가 있어 보인다.

**표 V-19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청년 자립 관련 과제(국정과제 92번)**

| 번호 | 과제 및 목표 | 주요내용 | 부처 |
|---|---|---|---|
| 92 | □ **과제명**<br>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br><br>□ **과제목표**<br>○ 청년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확대하고, 종합적인청년정책 추진체계 확립 및 인프라 정비<br>○ 청년세대에 불합리한 법령상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 | ○ (청년참여 확대) 국정전반에 청년인식 반영통로를 활성화하고, 중앙부처 청년참여 정부위원회(現190개) 및 청년위촉 확대 추진<br>○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 쌍방향 소통, 청년활동 진흥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지원체계(가칭 청년도약베이스캠프) 개선<br>-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지역별 거점청년센터 및 중앙 지원센터 운영<br>○ (지방 및 민간 협업) 중앙부처와 지자체·청년단체 간 협업을 통해 청년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지원<br>○ (청년정책 인프라) 청년문제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조성 방안을 강구하고, 근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할 전담 연구기관 설치 검토<br>○ (법제 개선) 일 · 학습 병행 또는 취업 후 진학 청년에게 불공정하거나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에 장애가 되는 자격제도 개선 | 국조실·법제처 |

* 출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22).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제20대 대통령실, p.155.

요컨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는 자립의 다차원적 영역(경제 자립을 위한 일자리와 자산형성, 주거 자립) 정책을 수립하고, 출발선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원활한 출발이 어려운 청년층을 포괄 및 지원하며, 이를 위한 법제도와 추진 전달체계를 개편하는데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취약 청년 출발 지원으로 제시된 '청년도약준비금' 신설은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제도가 신설되고 예산이 투입되어 취약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눈여겨볼 만하다.

### 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의 성인 이행기 청년 자립 지원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은 청년층의 주거, 일자리,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의 분야를 망라하는 20개 중점과제 및 270개 세부과제를 통해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수립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20). 중앙부처에서는 청년들의 원활한 성인기 이행과 성과 도출을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기본계획에서 38개의 과제가 더해진 총 308개의 청년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21a).

이 연구에서는 청년의 자립과 관련한 정부 수준에서의 지원을 검토하기 위해 '자립'이라

는 키워드를 포함하는 정책과제를 정리하였다. 정책에서 실제적으로 "자립"이라는 용어가 어떠한 대상과 맥락으로 쓰였는지 파악하고자 이와 같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립의 키워드를 담고 있는 정책과제는 총 10개로 주거, 복지·문화, 참여·권리에 분포되어 있었다.

(1) 주거분야

먼저 주거분야에는 1개의 과제가 청년의 자립과 관련되어 있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중위소득 45% 이하의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미혼 청년이 부모님 떨어져 별도가구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청년 자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저소득 계층 자녀세대의 미래준비와 자립에 목표를 두고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함으로써 취학이나 구직 등의 사유로 필요한 독립된 거주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V-20 중앙행정기관 청년 자립 관련 정책과제(주거 분야)**

| 분야 | 과제 | 대상 | 주요내용 | 부처 |
|---|---|---|---|---|
| 주거 |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중위소득 45% 이하 미혼 청년(만19-29세) | - 중위소득 45%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자녀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3.1만 가구)<br>-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 도모 | 국토부 |

* 출처: 관계부처합동 (2021b).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2) 복지·문화 분야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7개의 정책과제가 청년 자립과 관련되어 있었는데, 이 중 몇몇은 각각 동일한 청년을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주로 저소득청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위기청년(학교밖 및 쉼터), 청년 한부모, 이주배경청년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집단의 주거, 역량, 경제적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저소득(일하는 수급자가구 또는 차상위자가구) 청년(만15~39세)을 위한 자립지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근로와 저축을 통해 첫 출발 자산 형성에 초점을 맞춘 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기존 운영되었던 여러 유형의 금융지원사업(희

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은 2개(희망저축계좌 Ⅰ·Ⅱ)로 통합되고, 지원내용의 개선도 이뤄질 예정으로 장기적으로는 10만명 지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청년에 대한 지원은 기존에 연령 범위나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었으나,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을 거치면서 지원이 강화되었다. 이들을 위한 정책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으로 분류되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보호종료 3년 이내(향후 5년 이내로 확대 추진)의 만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수당 월 30만원과 주거 임대료(매월 15만원 상당) 및 물품지원(50만원), 그리고 사례관리를 통한 자립정보 제공 등을 주요 지원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만15~24세)과 쉼터 퇴소 청소년(만18세 이상)의 자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중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내일이룸학교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즉, 직업체험 등을 바탕에 둔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역량강화와 안정적 사회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쉼터 퇴소 청소년에게는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하여 청소년 쉼터 퇴소 이후의 자립생활을 돕는다. 가출청년의 경우 경제적 여건이 취약하고 끊어진 가족관계로 인해 독립된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원금(월 30만원)을 통해 기본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및 위기 청년은 스스로 원하는 시기나 방식이 아닌 상당 부분 상황에 내몰린 자립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출발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가족과 같은 안정적인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과 관련한 정책에서 의미하는 자립은 불안정한 출발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청년 한부모는 스스로의 생계와 자녀의 양육을 동시에 오롯이 책임져야 하는 이유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았을 때 겪는 어려움이 크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경제·사회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만 25~34세에 해당하는 청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월 5~10만원의 추가적인 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

복지·문화 분야에 포함되는 마지막 자립 지원 정책 대상은 이주배경 청년이다.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추진되는 정책의 내용은 한국어 교육과 사회 적응 등과 같은 입국초기

지원, 상담 등을 통한 심리·정서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 지역정착 지원,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정보제공, 지역기관 연계 활성화, 2중 언어 인재 관리 등이다. 이와 같은 정책은 만 9~24세에 걸친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의 청년기 원활한 이행과 자립을 목표로 한다.

복지·문화에 속한 자립취약청년 주로 저소득청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위기청년(학교밖 및 쉼터), 청년 한부모, 이주배경청년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집단의 주거, 역량, 경제적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 Ⅴ-21 중앙행정기관 청년 자립 관련 정책과제(복지·문화 분야)**

| 분야 | 과제 | 대상 | 주요내용 | 부처 |
|---|---|---|---|---|
| 복지·문화 | 일하는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지원 | 일하는 수급자가구 또는 차상위자가구 청년 (만 15-39세) | -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꾸준한 근로 및 저축을 유도하여, 첫 출발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청년들의 성공적인 자립·자활을 독려<br>- 저소득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기존 사업 통합 및 지원대상 확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희망저축계좌 Ⅰ·Ⅱ) | 복지부 |
|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보호종료 3년 이내 청년 (만18-34세) |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 강화<br>- 자립수당 지급(매월 30만원) | 복지부 |
| | 보호종료청년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 보호종료 3년 이내 청년 (만18-34세) |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 강화<br>- (주거지원) LH매입·전세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매월 15만원 상당)<br>- (주거환경조성) 생활 필수 집기 등 물품 지원(50만원)<br>- (사례관리) 사례관리사(30호당 1명)를 통해 정보제공·서비스 연계 등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실시 (자립·일자리 정보 제공, 고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 학교·기업 연계 등) | 복지부 |
| | 위기 청년 자립 지원 (내일이룸학교) | 학교밖청소년 (만15-24세) | -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 및 경제적 자립 지원 | 여가부 |

| 분야 | 과제 | 대상 | 주요내용 | 부처 |
|---|---|---|---|---|
| | 위기 청년 자립 지원 (쉼터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 지원) |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이상 및 직전 1년은 연속해 보호받은 자 (18세 이상) | - 쉼터에서 퇴소한 가출청년에 대한 자립지원수당 신설 추진('21)<br>-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의 자립생활 지원<br>- 매월 30만원 자립수당 지급 | 여가부 |
| | 청년한부모 자립 지원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중위소득 52% 이하 청년 (만25~34세) | - 경제·사회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월 5~1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으로 이들의 자립 지원 강화 | 여가부 |
| | 이주배경 청년 지원 | 9~24세 | - (입국초기 지원) 한국어 교육, 진로·직업교육 및 탈북청소년 정착지원 / 입국초기 사회 적응, 정착 지원을 위한 서비스 지원 및 일반청소년 다문화 이해도 증진을 위한 인식 제고 사업 추진<br>- (지역정착 지원) 개별·집단상담, 심리·정서적 지지를 위한 1:1 멘토링 운영<br>- (인식개선 및 정보제공) 일반 청소년 대상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운영<br>-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 지역 내의 자원 연계체계 마련 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br>- (이중 언어 인재DB) 유관기관 단체와 협력체계 강화, 이중 언어 인재 DB 등록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실시 등 | 여가부 |

* 출처: 관계부처합동 (2021b).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3) 참여·권리 분야

참여·권리 분야의 청년 자립 정책은 청년자립 및 활력지원 사업과 청년두레 지원 두 가지이다. 이중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자립 및 활력지원 사업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층의 지역정착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청년을 방지하고, 타지역에서 유입되는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층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그리고 지역사회에는 활력을 제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21년 기준 12개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청년활동공간을 갖추고 취·창업이 가능한 구조의 청년마을이 조성되어 운영 중이다. 청년마을 이주 청년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 및 개인 특성에

따른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 청년들은 주거 및 일자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립에 가까워질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역 주민 공동체가 주도하는 관광사업체인 청년두레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청년이 중심이 된 사업체의 자립을 통해 지역발전 선순환구조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여·권리 분야에서 추진되는 자립 관련 정책은 청년 당사자를 자립에 취약한 집단으로 설정한다기보다 청년들의 경제적 자생 구조 확립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 이때의 자립은 취약계층의 안정적 사회 출발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표 Ⅴ-22 중앙행정기관 청년 자립 관련 정책과제(참여·권리 분야)**

| 분야 | 과제 | 대상 | 주요내용 | 부처 |
|---|---|---|---|---|
| 참여·권리 | 청년자립 및 활력지원 사업 | 지방거주 또는 이주 청년 대상 | - 인구유출지역에 청년활동공간 확보, 맞춤형 설계에 기반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지역 취·창업 기회 제공, 지역주민과의 소통 등을 중심으로 한 청년마을을 조성하여 지방 청년들의 유출 방지 및 도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 | 행안부 |
| | 청년두레 지원 | 사업체 대표가 청년(만 39세 미만)이거나 구성원 중 2/3 이상이 청년인 주민사업체 (3인 이상 구성) | - 지역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관광사업체(청년두레)의 성공적인 창업과 자립·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선순환구조 확립 | 문체부 |

* 출처: 관계부처합동 (2021b).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청년자립도전사업은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2018.07.)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2017.10.)에 근거하여 청년 수급자의 자립 및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만18~39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및 차상위(중위소득 50%) 청년을 대상으로 자활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유도하고 취·창업 등의 자립을 이끌어내는 한편, 자활기업의 확대와 활성화를 도모한다.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추진하지만, 주로 지자체 자활센터 등을 중심으로 민간의 사회적 기업 및 자원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진다. 사업 참여 청년들은 욕구와 역량에 맞는 자격증 취득이나 전문교육 수강 등을 진행하고 이후 희망

근로 유형에 따라 취업 또는 창업과 관련한 경험을 쌓게 된다. 일자리 경험이나 취·창업 준비 등의 활동과 더불어, 심리정서적 상담 지원도 함께 제공받는다. 또한, 운영위원회 등에 직접 참여하는 등 다른 청년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자존감 강화와 공동체성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청년자립도전사업이 시작된 2018년에는 14개 참여 센터에서 120명의 참여자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1년 9월 말 기준 79개 참여 센터에서 1,048명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이상아, 2022). 이 사업에 참여한 청년이 실제 취업이나 창업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사업 초기 5%에서 최근 8% 정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이들 가운데에서 일반기업으로 취업하게 된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는 특징을 보였다(이상아, 2022). 다만, 참여 청년들의 다수가 취업에 관심이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창업지원사업의 참여가 많아 욕구와 지원에 괴리가 있는 점이나, 근로 업종이 카페나 제과제빵에 쏠려 있고, 전통적 업종에 집중해 있는 현상 등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다(최상미, 2022).

이 사업에서는 중첩된 다양한 어려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놓여 있는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사회 및 직업 경험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인의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자립을 빈곤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3)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2022년)에서의 성인 이행기 청년 자립 지원

지난 2021년 발표된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 자립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는 정책은 일자리와 교육 분야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두 분야에서 자립 관련 내용이 정책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취업을 그 자체로 하나의 목적으로 보고 교육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시각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2022년의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립"이란 용어는 복지·문화 분야의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국한되어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다른 하나는 '청년정책 사각지대'에서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 대상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부분이었다.

이는 자립지원이 주로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보다 보편적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자립 지원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물론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분야의 다양한 정책들을 담고 있고 명시적으로 “자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큰 맥락에서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단지 시행계획의 목록들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자립 지원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청년을 중심으로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 패키지들이 무엇인지, 생애전반기에 걸쳐 자립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기회와 역량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표 V-23「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내 ‘자립’ 관련 계획**

| |
|---|
| 3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
| ①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
| - 자립준비청년이 사회 진출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립수당(월30만원) 지급기간 연장(3년 → 5년) 및 지급대상 확대('21년, 약 8천명 → '22년, 약 1만여 명)복지부 |
| - 주거·취업·교육·건강 등 자립준비청년의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8개→17개소) 확대 및 법적 기반 구축복지부 |
| ②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
| - 경제사회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 대상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을 지속하여 양육 및 자립 지원 강화여가부 |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2).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 4) 공공(정부 및 지자체) 정책에서의 성인 이행기 청년 자립 지원 (본 연구의 자립 개념)

지금까지 법률, 자치법규, 국정과제, 청년정책기본계획 등에 대해 ‘자립’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분야 정책에서 자립 지원으로 직접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본 연구진이 구분한 자립 개념에 맞추어 주요 정책을 정리했다. 본 연구진은 경제적 자립, 주거 자립, 관계 자립, 주관적 자립, 특별한 욕구를 가진 대상에 대한 자립 등으로 영역을 구분하였는데 실제 아직 미발달된 정책영역이 있으므로 정부 수준에서는 경제적 자립과 주거자립 관련 정책에 집중하고, 지자체 수준에서는 몇몇 특징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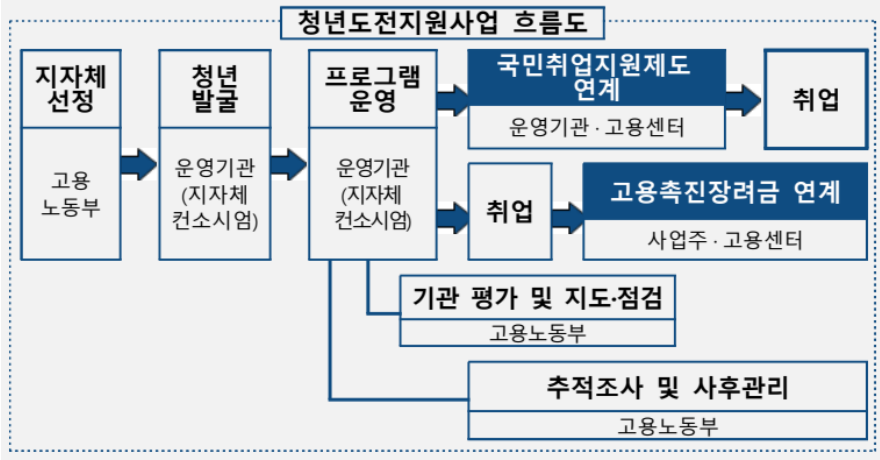
(1) 경제적 자립 (일자리 및 자산형성)

①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니트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의 내용은 "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초진 지원"이다. 이 사업은 2021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고 2022년 본사업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2021년 시범사업 당시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일차적으로 니트 상태에 있는 구직단념청년들을 발굴해 사회활동 참여 의욕을 고취시키고, 프로그램 참여 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하여 단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2022년 본사업에서는 사업 제공기관이 2배 이상 확대되었고, 프로그램의 표준화와 사후관리의 강화 등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졌다(유민상, 신동훈, 2022; 고용노동부, 2022)

청년도전지원사업 시범사업의 참여대상은 '구직단념청년'으로 니트상태(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에 있는 청년들이다. 구직단념청년은 "최근 6개월 간 취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만18세~34세 청년"이다. 이 사업은 니트 상태에 있는 청년(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하여 지방자치단체 청년센터를 통해 상담, 구직애로 해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프로그램 이수시 청년에 20만원을 제공한다(유민상, 신동훈, 2022).

이 사업은 니트와 같이 활력 수준이 낮은 구직단념청년이 청년도전지원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동안 활성화되어 구직단계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단순히 취업연계 사업은 아니다. 이 사업은 활성화(activation)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직접적인 취업 연계보다는 심리정서적 안정, 자존감 회복, 진로 탐색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은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청년센터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센터(비영리법인·민간기관)를 주요 전달체계로 활용하면서 청년 기관들이 취약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플랫폼의 역할도 하고 있어 관계적 자립, 주관적 자립과 관련한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 출처: 고용노동부(2022). 2022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그림 V-2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② 국민취업지원제도[22)]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도입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고 평가받는데, 1995년에 도입된 1차 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가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어 고용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부여되므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취업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을 함께 지원한다. 이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제도에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보장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15세부터 69세까지이며, 청년은 18세부터 34세까지로 별도 규정하고 있다. I 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이 있고,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로 설정되어 있지만 선발형의 청년은 중위소득의 120%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재산은 4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최근 2년 이내 100일(또는 800시간)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청년은 취업경험과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다. II 유형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데 청년은 소득제한을 두지 않았다. II 유형은 재신과 취업경

22) 이 파트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를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험에 별도의 기준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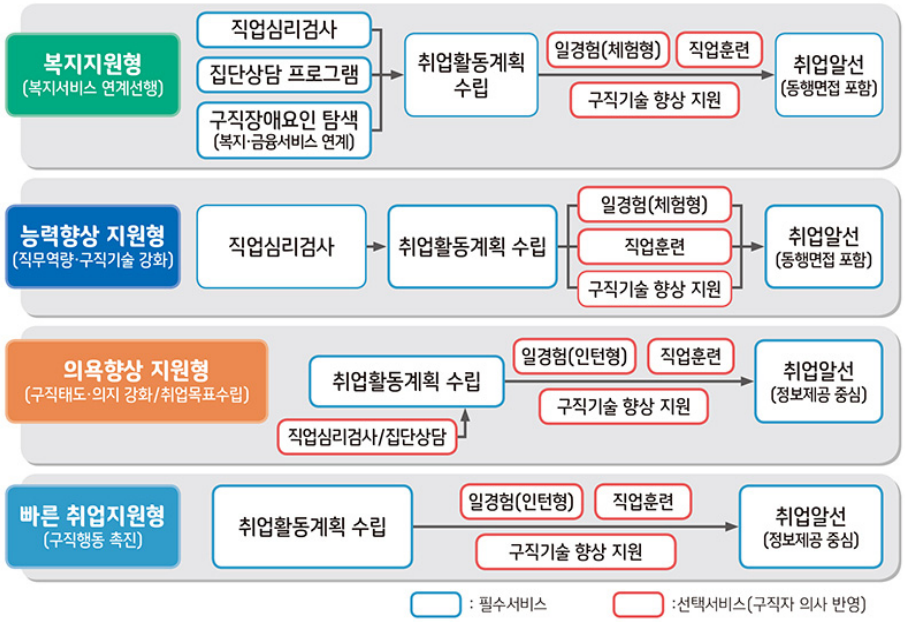
이 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고, 취업활동 계획에 기반하여 구직활동이나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하여, 소득과 취업지원서비스를 결합하여 지원한다(이병희, 2021). 이 제도는 참여자 특성 진단(프로파일링)을 토대로 최장 1년간 '상담, 진단, 경로설정(1단계)' → '훈련, 인턴 등 직업능력증진(2단계)' → '취업알선(3단계)'을 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종합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은 크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I유형과 II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지원에서 차이가 있으며, 특히 I유형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에서 차이가 있다.

**표 V-2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 구분 | 취업지원서비스 | 수당 지원 |
|---|---|---|
| I유형 | • 심층상담 :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br>• 취업지원 : 심층상담을 토대로 훈련·일경험·창업·해외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및 복지 연계서비스 등 |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월50만원x6개월)<br>•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중위소득 50%이하) |
| II유형 | • (1단계)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br>• (2단계) 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등 취업 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br>• (3단계)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진행 등 | • 취업활동비용 15~195.4만원*(6개월)<br>* 1단계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원 지원 (월28.4만원x6개월)<br>•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저소득층, 특정계층) |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2).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2년부터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여 서비스를 차등화하였다. 구직자의 특성을 구직의지와 역량 등으로 파악하기 위해 취업역량평가를 개편하고, 참여자의 특성에 기반을 둔 유형별로 차등화된 취업지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역량이 낮은 구직자에게는 구직기술 향상(집단상담 등) 의무화, 직업훈련, 일경험을 제공하고, 역량이 높은 구직자에게는 면접클리닉, 알선 등 우선 제공하고 상담사 개입과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2.01.04). 시행 2년째 맞는「국민취업지원제도」, 확실히 안착시키고 성과를 내겠습니다.

**그림 Ⅴ-3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별 흐름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당제공으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수당이 제공되는 I 유형은 소득과 자산기준이 있어 일부 청년들에게만 지원이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고, 취업을 목표로 하므로 경제적 자립의 지원에는 유리하지만 다중적인 취약성이 나타나는 대상들은 포괄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③ 청년내일채움공제[23)]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청년·기업·정부가 2년간 공제금을 공동 적립해 만기 도래시 적립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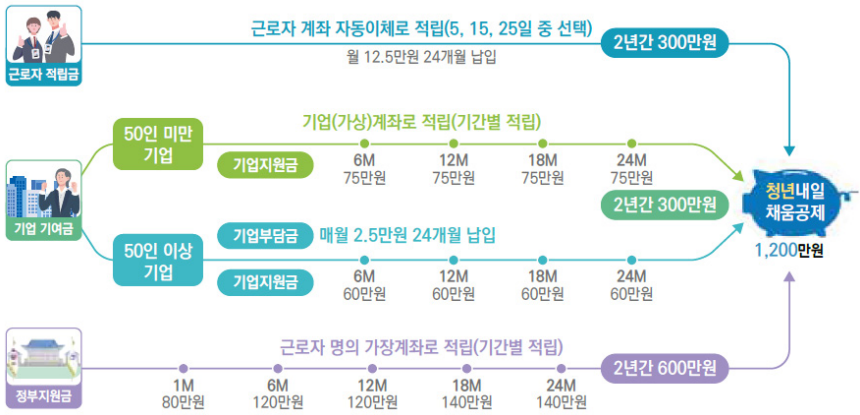
23) 이 파트는 워크넷 내일채움공제 정보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의 정보를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장기근속 유도와 자산형성을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청년들은 2년간 근속 시 본인이 스스로 적립한 300만원(12.5만＊24개월)을 포함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기업기여금 300만원)이 함께 적립한 만기공제금 총 1,200만원(이자 별도)을 수령하게 된다.

이 사업은 청년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이므로 각각에 대한 가입조건이 설정되어 있다. 우선 청년의 경우 만 15세~34세(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 연령 연동, 최고 만 39세로 제한)에 해당하는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을 최초로 취득했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년 이하일 때 가능하다. 또한 월 임금 총액이 35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며 조건에 따라 벤처기업이나 청년 창업기업 등도 참여가 가능하나, 일부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참여가 불가능하다.

지난 2016년 시범사업으로 시행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본 사업이 시작된 2017년 이래로 가입자 수는 40,170명에서 2020년 137,226명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2021년 12만 명(추경지원 2만 명 포함), 그리고 2022년 7만 명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1c; 국무조정실, 2022).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업 참여로 인한 근속기간 연장과 만기 후 이직 시 임금상향 이동 등에서 특히 긍정적인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받는다(김유빈, 2020).

정규직 입사 후 6개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이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조건에 해당하지만, 그 이후라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과 동일한 목적 하에 실시되고 있다. 큰 틀에서 5년간 청년·기업·정부가 공동 적립해 만기 도래시 3,000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 구조이다. 이 사업의 경우 2021년 예정된 사업 일몰이 1년 연장된 상황이지만, 추가적인 사업연장 없이 다른 사업으로 고도화 또는 대체되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가 도래한 청년을 위한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가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출처: 국무조정실(2022). 2021년 청년정책백서

**그림 V-4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방식**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상대적으로 자립을 하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청년집단 내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없는 점은 개선사항으로 고려할만하다. 또한, 기업에 대한 순지원금 폐지로 인해 참여 기업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역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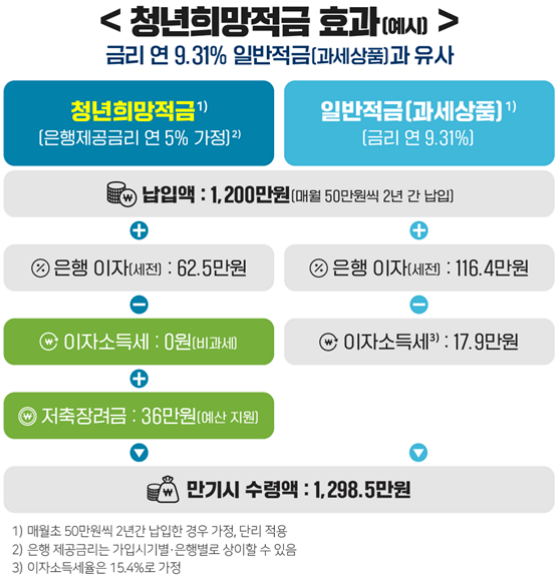
④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2021년 8월 발표된 「청년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희망적금(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청년희망적금은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자산형성 제도를 차상위 계층 이상으로까지 확대하고, 최대 원금의 약 9%에 해당하는 혜택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다.

구체적으로 직전 과세기간(2021.01.~12.) 기준 총소득 3,600만 원 이하의 만 19세~34세 청년(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불산입)이 가입 대상이며, 월 50만 원 한도로

2년 만기 납입 시 시중이자에 추가 저축장려금이 지급되는 형태이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와 2년차 납입액에 대해 각각 2%와 4%로 다르게 적용되며 최대 납입 한도(월 50만 원)로 2년 간 납입할 경우 36만원 수준에 이른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로 금리 연 9.31% 일반적금(과세)과 유사한 수준의 상품으로 홍보되었다.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22년 2월 초 시작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에 많은 관심이 몰리며 당초 제한된 수의 신청자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려던 계획에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청년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2.02.22.). 이로 인해 마감직후 가입인원은 약 290만 명에 달했으며, 이는 최초 예상 인원 약 38만 명의 7.6배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YTN 보도자료, 2022.03.06). 국제정세와 사회환경의 변화로 최근까지 약 6%에 해당하는 약 17만 명이 가입을 중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서울경제 보도자료, 2022.10.11), 여전히 많은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2.02.08). 2.9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 시작됩니다.

**그림 V-5 청년희망적금 효과(예시)**

청년희망적금 가입은 2022년 3월 초 마감되었으며, 향후 재추진 계획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적어도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기획재정부, 2022). 또한, 윤석열 정부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2023년 하반기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두 사업 간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년희망적금에 쏠린 청년층의 많은 관심은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다만, 늘어나는 중도 해지 인원은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의 크기가 자립으로 이어질 만큼 의미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동시에, 소득기준을 고려하면 한도 최대치로 납입했을 때 중도 해지가 필요할 만큼 생활에 여유가 없는 청년이 많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⑤ 국민내일배움카드[24)]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불확실성이 큰 사회경제적 상황과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평생교육과 훈련을 지원함으로써 역량개발 및 향상을 돕고자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08년 이후 두 가지 유형(실업자 및 재직자)으로 구분해 운영되었던 내일배움카드는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장기적인 훈련계획을 지원하고자 2020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되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일부 집단을 제외하고 경우 만 75세 미만 국민 대부분을 지원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지원 제외 대상은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학생 등이다. 다만, 재학생의 경우 학교 급별로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에 따라 참여가 가능토록 해 졸업 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은 크게 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으로 구성되어있다. 훈련비는 1인당 5년의 기간 동안 300만 원~500만 원 한도에서 일정 비율의 훈련비를 지급하는 형태이며, 소득기준과 훈련내용 등에 따라 자부담비율이 달라진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는 경우 훈련비 지원율이 더 높게 적용되는데 청년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훈련비 지원에서도 약간의

24) 이 파트는 직업훈련포털(https://hrd.go.kr/)과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DB(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871&pWise=sub&pWiseSub=B12)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정보를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혜택을 더 누리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훈련장려금은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할 때 월 최대 11만6천 원이 지급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인원 중 저소득층의 경우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에서도 훈련장려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디자인, 영상 제작, 법무, 전산, 요리, 제빵, 간호 등 일반훈련과정을 포함해 국가기간 및 전략산업직종, 국가기술자격 취득 과정, 일반고 특화훈련 등 다양한 분야의 훈련을 지원한다. 최근에는 노동시장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신기술 분야 등에 관한 훈련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22년 4월부터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중장년을 대상으로 경력을 진단하고 설계하는 컨설팅 참여도 가능하도록 지원의 내용을 확대했다.

이와 같은 사업은 교육 및 훈련 기회의 부족으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훈련 내용과 소득 수준 등에 따라 훈련비 지원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청년 내 차이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가능한 훈련과정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특정 직무 또는 직업 분야 진출을 위한 내용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청년보다는 뚜렷한 방향성을 가진 청년에게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며, 구체적 방향 설정 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진로탐색 과정이 추가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2) 주거 자립 (주거 및 정착)

① 청년 주택 공급 확대[25)]

청년 주택은 공적임대주택을 통해 5년 동안(2021년~2025년) 총 27.3만호를 공급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청년주택은 크게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행복주택 유형에서는 특화주택으로 일자리 연계형 주택의 공급이 포함되어 있으며, 매입임대는 역세권 리모델링형과 기숙사형을 포함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120%)을 제외하고 나머지 유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만 19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각 유형과 지역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임차료의 수준은 다르나 대체로 주변 시세 대비 약 50%~80% 수준을 부담하도록 설계되었다. 거주 기간은 2년이지만 입주자격이 유지될 경우 재계약 2회가

25) 이 파트는 관계부처 합동(2021a)과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청년포털(https://2030.go.kr/)의 청년 사회적 주택 정보에 기반해 작성되었음

가능해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특화주택 중 일자리 연계형은 주거·문화·일자리가 복합된 모형을 기본으로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기근로자 지원주택으로 세분화된다. 기숙사형은 특화주택은 낮은 기숙사 수용률로 인해 높은 주거비를 부담해야 하는 저소득 청년층의 수요에 대응하고자 추진되었다. 기존 주택을 소규모(동별 또는 단지별) 매입하여 대학 등과 같은 운영기관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기숙사를 운영하는 형태로 입주 학생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LH의 매입임대주택은 사회적 기업,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등에 의해 사회적 주택 형태로 운영되기도 한다. 사회적 주택은 주거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주변 시세 50% 수준의 임대료로 청년층에게 거주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단순한 거주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커뮤니티 활동과 같은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청년의 각기 다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의 유형을 다양화하려는 시도는 청년 맞춤형 정책 추진의 바람직한 접근이며, 각자의 상황에 부합하는 자립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주변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 청년들이 부담하기에는 높은 임대료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소득기준과 임대료 간 불일치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쟁률과 중도 퇴거 비율 등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완화하되 임대료 수준을 보다 차등화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26)]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2018년부터 청년 전용 저리 대출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사업은 크게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로 구분할 수 있으며,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이 사업대상이다.

이 가운데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사업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조건이 있고, 중소기업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사업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조건(단독가구 3,500만 원 이하)에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창업자의 조건이 추가된다. 마지막으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도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하고 단독세대주일 경우만 사업을 통한 저리 대출이 가능하다. 모든 상품의 대출금리는

26) 이 파트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의 주택전세자금대출 내용을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약 2% 이하 수준이나, 대상 주택 및 대출 한도는 상이하다. 각각에 대한 내용은 표 V-2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저금리 대출을 통해 임차보증금을 충당할 수 있는 상품은 청년들이 주거비를 아끼거나 비슷한 수준의 주거비로 더 나은 환경에서 거주하도록 도와 자립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원되는 내용만으로는 여러 조건에서 적절한 수준의 거주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의 경우 지원내용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 지원대상의 기준이 기존 연소득 2,000만 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되고, 지원 규모의 경우 월세금 2년간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이내)에서 1,200만원(월 50만원 이내)으로 확대되었음에도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다(경향신문 보도자료, 2022.04.25.). 이때 청년들은 추가적인 자원을 투입하게 될 가능성이 커 이들의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Rent to Income Ratio)도 높게 형성될 수 있다.

**표 V-25 청년전용 저리 대출상품 사업대상 및 지원내용**

| 구분 |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
|---|---|---|---|
| 신청대상 | • 만19세~34세 이하 청년<br>•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br>• 부부합산 순자산 3.25억 원 이하<br>•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 만 19세~34세 이하 청년<br>•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br>• 부부합산 순자산 3.25억 원 이하<br>• 중소기업 재직자, 창업자 | • 만 19세~34세 이하 청년<br>•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br>• 부부합산 순자산 3.25억 원 이하<br>•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 대상주택 | • 전용면적 85㎡이하<br>•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 • 전용면적 85㎡이하<br>•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 • 전용면적 60㎡이하<br>•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br>• 월세금 70만 원 이하 |
| 대출금리 | • 1.5 ~2.1%<br>•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우대금리별도적용) | • 1.2% | • 보증금: 1.3%<br>• 월세금: 0~1.0% |
| 대출한도 | • 임차보증금 80% 이내<br>• 7,000만 원 한도 | • 1억원 | • 보증금: 3,500만원<br>• 월세금: 1,200만원 (월 50만원 이내) |
| 대출기간 | • 2년 이내 일시상환 (4회 연장, 최장10년 가능) | • 2년 이내 일시상환 (4회 연장, 최장10년 가능) | • 2년 이내 일시상환 (4회 연장, 최장10년 가능) |

* 출처: 국무조정실(2022). 2021년 청년정책백서.

③ 청년 내 집 마련(청년 우대형 청약통장)[27]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소득수준이 낮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 구입 또는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일반 청약통장 기능에 더해 원금 5,000만 원 한도 내 최대 10년간 1.5%p 우대금리(연최대 3.3%)와 합계 이자소득 500만 원 및 원금 연 600만 원 한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제외한 연령 만 19세~34세에 해당하고,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등일 경우 가입자격을 갖는다.

이 사업에 대한 청년층의 높은 선호에 따라 정부는 당초 2021년 말까지였던 사업기간을 2023년 말까지로 연장하였으며, 소득 기준 또한 기존 3,0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완화하였다. 지난 2018년 7월 시작된 이래 2021년 11월 기준 총 55.5만 명의 청년이 여기에 가입했으며, 2023년 말까지 누적가입 59.8만 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2; 국무조정실, 2022).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 방법 가운데 하나인 주택청약의 기본조건으로 갖추어야 하는 청약통장에 청년을 위한 혜택을 추가한 형태로 사업 대상자와 밀착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주택청약의 높은 경쟁률을 감안하면 청년 내 집 마련 정책으로서의 효용성은 크지 않을 수 있다.

**표 V-26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 및 혜택**

| 구분 | 가입자격 및 혜택 |
|---|---|
| 가입자격 | • 만 19세~34세 이하 청년(병역이행 기간 불산입, 최대 6년)<br>• 연소득 3,600만 원 이하(근로·사업·기타)<br>• 무주택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 금리혜택 | • 원금 5,000만 원까지 연최대 3.3% |
| 비과세 혜택 | • 이자소득 500만 원 및 원금 연 600만 원까지 비과세<br>* 대상 요건은「조세특례제한법」에 따름 |
| 소득공제 | • 연간 납입액(최대 240만 원)의 40%까지<br>* 대상 요건은「조세특례제한법」에 따름 |

* 출처: 국무조정실(2022). 2021년 청년정책백서.

27) 이 파트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에서 운영하는 청년포털(https://2030.go.kr/)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정보를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④ 취약 청년 지원

앞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주거 분야 청년정책으로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소개하였다. 중위소득 45%이하로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해당할 때 사업대상이 되므로 이는 일종의 취약 청년 지원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고시원 등 거주자 이주 패키지 지원 사업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사회경제적 배경이 취약한 집단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곳의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에게 이사비(20만 원), 생필품비(20만 원), 보증금(50만 원) 패키지를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때 공공임대주택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같은 필수가전의 빌트인 설치를 지원한다(관계부처 합동, 2021a).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무주택자가 구체적인 사업대상이며, 비주택거주 요건과 자산기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대상 선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연령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취약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청년이 적잖이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취약 청년 친화적인 사업이라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공공임대이주희망 현장조사 결과 조사에 응한 8,878가구 중 만 34세 이하의 비율은 3.7%였으며(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 04. 08.), 청년층의 응답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이 사업은 지자체 특화사업으로 주거지원 외 일자리, 자활, 돌봄 등의 서비스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주거 안정을 넘어 장기적 관점에서 자립이 가능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 자립에도 기여할 것이라 볼 수 있다.

(3) 지자체 청년 자립 관련 정책

① 지자체 청년 주관적 자립 지원 정책

주관적 자립은 스스로 자립했다는 인식 또는 독립적이라는 인식을 의미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진로에 대한 뚜렷한 정체감은 주관적 자립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스스로에 대해 탐색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탐구해볼 수 있는 시간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해외에서는 생애 어느 순간에서든 이러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음을 사회문화적으로 받아들이고 갭이어(Gap Year)에 대해 자연스럽게 접근한다.

아일랜드(Ireland)는 과도한 경쟁 속에서 놓쳤던 전인적 성장이라는 교육의 본질과 가치를 회복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개념을 제도화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되는 시점 1년간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하였다(박희진, 허예지, 장애리, 2017). 국내에서도 유사한 맥락에서 '꿈'과 '끼'를 찾기 위한 자유학기제를 도입했으며, 확대·발전해 자유학년제로 나아가고 있다.

청년층에서 높아진 실업율과 니트 비율은 갭이어와 같은 형태의 정책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다. 이에 몇몇 지자체를 중심으로 갭이어의 가치를 표방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서는 그 중 서울의 청년인생설계학교와 제주의 청년 갭이어 체험 사업 사례를 살펴보았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인생설계학교[28]는 서울청년의회에서 2017년 처음 제안되어 2018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서울시를 생활권으로 하는 청년(만 19세~39세)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서울시 청년인생설계학교는 라이프, 커리어, 리더십 총 3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나를 찾는 시간', '더 나은 일과 삶', '넓게 성장하는 리더'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라이프 코스는 강점 찾기와 자존감 회복, 커리어 코스는 개인의 욕구와 성향 이해, 리더십 코스는 효과적 의사소통이 핵심 목표이다. 청년들은 스스로 코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각의 코스는 총 4주 커리큘럼으로 운영된다.

제주시에서는 '제주 청년 갭이어 체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제주를 떠나 다양한 삶을 경험할 기회가 적은 청년들이 도외에서 갭이어 체험을 통해 배움과 체험의 기회를 가지고 향후 청년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고 자기 성장을 통한 가치관 확립 등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제주특별자치시 홈페이지, 2022.10.13. 인출, 재구성). 제주도 거주 청년(만 19세~39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번 2022년에는 '제주 청년 자기탐구 갭이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었는데, 진로설정, 가치관, 창직 목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큰 틀에서 청년들에게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진로를 설계하고 스스로 기획한 도외 탐방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한 변화를 비롯해 실질적인 성장과 직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 2021년의 경우 도외 탐방으로 뮤지컬

28) 서울시 청년인생설계학교에 관한 내용은 청년인생설계학교 홈페이지(https://youthschool.olly.kr/)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관람, 미술관 방문, 체험 전시회, 야간 고궁 방문, 청계천 도깨비 야시장 방문, 이태원 다문화 체험, 한강 플로깅 체험, 외국인 언어교환 프로그램 참여, 서울 둘레길 완주 등을 기획하고 실행했다. 사업 참여를 통해 청년들은 추가로 자기 탐구와 창직 탐구 중 한 가지에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진로에 도움을 받는다(제주특별자치시 홈페이지, 2022.10.13. 인출, 재구성).

서울시와 제주도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갭이어는 한 달 정도의 일정 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하며 자신의 흥미, 강점, 원하는 삶 등을 이해하도록 설계되었다. 서울의 경우 3가지 유형 중 본인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을 선택해 진행할 수 있었으며, 제주의 경우는 도외탐방과 같이 스스로 기획할 수 있는 일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만, 대체로 주어진 교육과 프로그램의 틀에 따라 활동하는 것이 주된 운영방법이어서 참여자의 자율성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② 지자체 청년 주거 자립 지원 정책

주거 정책은 대체로 예산 규모가 커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은 추진하기 쉽지 않다. 여기서는 지자체 수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성공적인 주거 자립에 이를 수 있도록 시행 중인 몇 가지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은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증을 위해 납부해야 하는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사회초년생에 가까운 청년층은 전세사기에 매우 취약하며, 그로 인해 받는 타격도 크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계약한 청년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의무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하는 것이 법률화되었다. 이때 보증료는 청년과 사업자가 나눠서 내게 되는데 청년이 부담해야 하는 수준은 보증료의 25%이다. 보증료는 전세보증금의 크기에 따라 다른데, 보증금 1억 원(부채 80% 이하)을 가정했을 때 보증요율은 연 0.122%로 연 12.2만 원이며, 청년들이 연 3만 원 가량을 부담하게 된다. 서울, 대구, 부산 등을 포함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저소득 청년을 중심으로 이러한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비교적 소액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지며, 서울, 대전, 광주, 경남 등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예컨대, 대전의 경우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생 또는 직장인, 그리고 대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39세 무주택자 청년에게 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7,000만원 까지 5%의 금리(대전시 부담 4%, 청년 부담 1%)로 대출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강동구에서는 주거 자립 성공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청년들의 주거 독립을 위한 교육을 통해 기초지식을 전달하고, 강동구의 주거 매물 정보 및 주거지역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 교류를 활성화해 궁극적으로 주거 관련 역량 증진을 도모하고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2021년 제안되어 2022년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청년들이 성인기로 이행하면서 주거와 관련해 마주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문제를 새로운 접근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4.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관련 민간기관 활동

우리나라 청년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책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공백을 메워왔다. 민간단체의 활동은 지자체의 정책으로 제도화되거나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제도화되는 경로로 발전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민간기관의 활동을 살펴보고, 민간의 노력은 어떠하였는지,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본다.

민간기관에서 지원하는 청년기 자립과 관련한 사업이나 활동 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배경이 취약한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첫 출발을 지원하는 형태의 활동이 다수를 차지한다.

### 1) 주거 자립 관련 민간기관 활동

#### (1) 민달팽이 유니온 (청년 주거상담 및 교육)

민달팽이 유니온은 청년층의 주거취약성 극복을 위해 새로운 주거 모형의 실험과 제도 개선의 실천을 목표로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주거 독립의 과정에는 괜찮은 집구하기, 임대차 계약, 자금조달, 계약의 연장 및 만료 등 교육과정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는 생활기술 및 상식이 요청되며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및 보호방법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민달팽이 유니온에서는 주거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세입자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

실용적 도움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주거비 완화, 주거환경 개선, 세입자 권리 보호, 주거복지 강화 등과 같이 청년의 주거 자립과 관련한 제반 사항 개선을 위한 의제 도입과 대응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2) 지역 정착 지원 프로그램

청년문화예술협동조합 들락날락은 문화예술기획, 잡화점 운영, 디자인 등의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살이(자립) 도모하는 청년협동조합이다. 금산의 간디학교 출신 청년들은 지역 정착을 위한 청년 커뮤니티로부터 시작하여 청년자립학교 아랑곳, 충남 청년정책 거버넌스 등의 활동을 기반으로 주거, 배움, 네트워크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추었지만 이후 경제적인 자립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협동조합 설립으로 이어졌다. 이들의 활동이 다른 누군가의 자립을 지원하는 활동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서 자생적인 수익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음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팜프라는 주식회사로 이동식 목조주택 제작 워크숍과 농촌살이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 회사의 대표가 농촌살이를 지향하던 청년 당사자로서 기반 없이 시작하며 겪은 불완전한 자립(주거)의 경험이 스스로 제작할 수 있는 목조주택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사업으로까지 발전한 형태이다. 농촌생활의 자립 요건인 토지, 주거, 수익 모델에 관한 종합적인 해결책 제시를 추구한다. 팜프라에서는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팜프라촌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청년들은 공동 집짓기와 농사짓기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청년 마을의 자생구조에 대해 이해하고 농촌에서의 자립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팜프라의 수익구조와 지향점을 통해 드러나는 청년 자립은 주거와 수익 안정성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 2) 관계 자립 관련 민간기관 활동

(1) 청년재단 고립청년 자립경험 프로젝트

청년재단은 2015년 설립된 이후 청년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당사자 지원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을 위한 지원 몇몇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중 고립청년 자립경험 프로젝트는 다양한 이유로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경험을 제공하여 업무수행 능력 향상과 역량 강화 등을 이끌어낼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지난 2021년 기준 20명의 청년이 16개의 사업체 또는 단체에서 6개월 동안 업무를 수행하였다. 일경험처 내 전담 멘토가 존재하여 업무와 환경적응에 도움을 주며 외부 전담 코치가 1:1 상시소통 및 상담, 그리고 상황에 따른 주기적 코칭을 실시하여 긍정적인 일경험이 축적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참여자들 간 소통의 장을 통한 사회성 증진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고립 완화의 지속을 추구하였다(유민상, 신동훈, 2021).

지원 대상의 특성과 지원 내용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고립청년 자립경험 프로젝트에서 의미하는 자립이 경제적 수입을 벌어들이고 다른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수준을 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청년자립도전사업에서 설정한 수준의 자립보다 오히려 낮은 기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2) 니트생활자 청년 자립 지원: 니트 컴퍼니와 니트 인베스트먼트[29)]

니트생활자는 '무업 청년들의 사회적 연결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는 비영리기구(NPO)이다. 2019년 시작된 니트생활자는 니트 청년들이 일정한 관계를 맺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상의 회사 '니트 컴퍼니'를 만들었다. 니트 컴퍼니는 여러 언론에 가상의 회사놀이, 가짜회사 놀이 등 흥미로운 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니트 컴퍼니의 사례는 가볍거나 흥미로운 사례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니트 청년들에게 현금과 취업 정보뿐만 아니라 연결과 관계도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통찰력 있는 사례이다. 니트 컴퍼니의 목적은 "무업기간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서로 연결되어 소속감과 유대감을 가지고, 100일 간의 루틴을 통해 성취감과 자기효능감을 통해 일과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니트생활자, 2021). 이 프로그램은 100일 간 가상 회사의 부서에 배치되어, 회사놀이를 하며 개인이 매일 하고 싶은 일을 선정하여 사진으로 인증하게 된다. 회사놀이에서 하는 일은 사회 관계형성 프로그램, 사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온라인 사내 클럽) 등에 참여하는 것이다.

29) 이 파트는 니트생활자 전성신, 박은미 대표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콜로키움 자료 및 니트생활자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출처: 니트생활자(2021). 2021 상반기 카카오프로젝트100X니트컴퍼니 운영결과보고. 니트생활자 내부자료.

**그림 V-6 니트 컴퍼니 참여자들이 좋았던 프로그램으로 응답한 결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니트 상태의 청년들에게 100일 간 참여 만족도를 물었을 때 95% 이상이 6점 이상, 80% 이상이 8점 이상을 응답하였다. 프로그램 중 어떤 것이 가장 좋았는지를 물어본 결과 '매일의 출퇴근 관리'를 가장 좋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60% 가량이었다. 니트 상태가 되면 조금씩 사회적 연결망이 줄어들어 외로움이나 사회적으로 단절되는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유민상, 신동훈, 2021), 니트 컴퍼니는 홀로 니트 생활을 하며 느끼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연결망'을 제공함으로써, 역할 없는 역할이라는 허무함을 '가상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완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니트생활자에서는 2022년 니트 청년들의 진로 개발 지원을 위하여 니트 인베스트먼트라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다.[30] 이 사업은 "나만의 일을 찾는 니트의 시간에 투자"하며 "나와 사회, 서로를 이해하고 발견하기 위해 무업기간을 활용"한다는 컨셉으로 12주간 니트 청년들의 진로 방향을 설정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무업청년에게는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여 포트폴리오 제작을 지원하고, 소규모 스터디 모임을 지원하며, 분야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컨설팅을 연계해준다. 이 사업의 참여 대상은 "취업이 아닌 '일 경로'를 고민하는 무업 청년"으로 12주 간 자신이 좋아하는 가능성을 찾아보는 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공유한다.

니트생활자 사례는 니트 청년들의 자립에 필요한 관계 욕구 충족, 그리고 주관적 자립을 위한 니트 상태에서 자신의 진로 탐색 및 개발을 위한 시간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특징이

30) 니트생활자 홈페이지(http://neetpeople.kr)와 닛커넥트 (닛커넥트 홈페이지, https://neetconnect.kr)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공공에서 쉽게 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로 민간 비영리기관의 자유롭고 유연한 운영에서 나타나는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사례는 민간 비영리기관의 장점을 살리면서 사업의 연속성을 이어나가는 방법으로 향후 민관협력을 통한 자립 지원 사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3) 특별한 욕구가 있는 대상 중심 자립지원

#### (1) 자립준비청년 민간지원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검토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여러 영역에 걸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민간에서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재단이나 사단법인 등에 의해 교육, 생활, 금융, 주거 등에서의 역량 강화와 자립에 초점을 맞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재단에서는 기업이나 타기관 등과 협력하여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퇴소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 배움 지원, 생활안정금 지원, 경제교육 지원, 통합 지원 사업 등을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 PIE나다운청년들, 스타벅스,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 등과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아름다운재단, 스타벅스,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운영한 청년 자립정착꿈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본격화되었는데, 2021년 기준 25명의 대상을 지원하였다. 생계를 위한 취업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의 진로 및 교육활동을 위한 1인당 연 최대 500만원의 통합적 자립정착금과 멘토링 및 참여자들 간 네트워킹 활동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지체계 형성을 주요 지원 내용으로 설정하고 있다.

사회연대은행에서는 HSBC 및 한화생명과 협약을 통해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퇴소 청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 상담, 각종 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HSBC 지원으로 지난 2021년 운영된 High-Five 사업은 20명의 시설퇴소예정 청(소)년에게 1인당 총 460만원의 지원금과 자립지원교육, 진로 및 취업지원, 재정관리 및 실생활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생활에 대한 역량 강화와 사회관계망 확장을 도모하였다. 이번 2022년에는 만 18세~30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 퇴소(예정) 경계선 지능 청년 중 카페업종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과 실습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한화생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은 청년비상금, 맘스케어 Dream

저축보험, 맘스케어 Dream 인턴십 등으로 구분된다. 청년비상금은 보호종료청년에게 자립 지원금(월 35만원, 총 350만원)과 더불어 재무, 금융, 상담 멘토링 및 네트워킹 활동을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산 형성의 토대를 닦고, 경제 역량을 강화하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한다. 맘스케어 Dream 저축보험은 3년간 매월 28만원(청년 8만원, 한화생명 20만원 지원)의 저축을 통해 기본적인 보험 기능과 3년 후 1천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여기서 청년들은 일정 수준의 기여를 스스로 부담하면서 책임감과 올바른 금융습관을 함양하여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맘스케어 Dream 인턴십은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민간에서 추진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대체로 지원금에 추가하여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중앙부처의 정책적 지원이 이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 연결망이 취약한 특성을 보완해 자립을 위한 동일한 출발선을 형성하는 데 기여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2) 장애 청년의 지역사회 주거지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은 2005년 설립되어 장애인 차별 금지 및 탈시설 전환 등 장애인의 주체성 회복과 자립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는 NGO이다. 이 단체에서는 청년층에 특별한 초점을 맞추지는 않지만,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는 자립의 개념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이나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자립생활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 이는 자립을 보다 근본적이고 인권적인 측면에서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 사례를 통해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청년 자립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은 이주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주거 및 경제적 자립과 더불어 필요한 것을 학습하고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졌는지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 5. 요약 및 시사점

이 장에서는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관련 국내법 및 공공·민간 정책사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그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하고, 향후 법령개정 및 중앙·지자체의 정책발전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 분석한 내용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전반기 법률에서의 자립을 보면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의 자립에 대해 경제적 자립에서 한정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과 가정 밖 청소년 등 한정된 대상에게만 자립 지원을 명시하고 있었다. 각 생애주기별 법률에서는 생애전반기에 당사자들의 자립을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자립의 대상은 보편적으로, 자립의 영역은 경제, 주거, 관계 등 다차원적으로 명시하여 더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차원적인 자립 영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다차원적인 자립 영역에 대한 권리로서 보장은 「장애인복지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등은 경제적 자립, 주거자립 등을 명시하고, 청년정책전달체계에 자립지원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청년센터 등 청년정책전달체계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적극적 자립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전달체계와 지원인력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는 90번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국정과제 91번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국정과제 92번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등 3가지 국정과제가 모두 청년의 자립과 관련이 있으며, 자립지원의 포괄적 영역, 격차의 완화, 전달체계의 개편 등 구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청년도약준비금'과 같은 니트 청년에 대한 새로운 지원 정책 방안 마련도 청년들의 자립 지원을 위한 좋은 방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청년의 사회적 권리로서 자립을 지원하는 것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어 더 보편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 지원 정책은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 있었고 중층의 고용안전망으로서의 의의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장기 니트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사회복지 차원의 대상자 발굴 및 활서오하 프로그램이 기초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각 제도 간 연계 수준도 더

높아져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관계적 자립을 지원하는 민간사례로서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니트 지원을 하는 니트생활자의 니트컴퍼니의 사례는 중앙이나 지자체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유연하고 혁신적인 방식의 사업이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커뮤니티 형성 지원이 자립을 이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자립 프로그램의 하나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 니트 기간 동안 자신의 역량 개발뿐만이 아니라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관련 국내법 및 공공·민간 정책사례에 대해 분석은 7장 정책제언 파트에서 정책화 방향에 대해 탐색하고 실제 세부정책으로 구체화하였다.

**표 V-27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관련 국내법 및 공공·민간 정책사례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주요 내용 | | | 시사점 |
|---|---|---|---|
| 법령 및 자치법규 | 생애전반기 법률에서의 자립 | • 「청년기본법」은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으로 부분적으로만 명시한 한계 | • 자립의 개념을 경제적 자립에서 주거자립과 주관적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등으로 확대하고 권리성을 부여할 필요 |
| | | • 「아동복지법」은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자산형성 및 관리 등 자립지원의 영역을 구성하여 구체화하였으나 보호가 종료된 사람에 한정하여 명시 | • 특별한 욕구를 가진 대상에 대한 자립지원이 명시되어 있음<br>• 자립지원의 다차원적 특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 |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정의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립지원 규정. 제11조에서는 자립지원을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교육지원 등으로 규정하여 자립지원의 구체성과 포괄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지원의 범위에는 한계 | •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영역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으나 지원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음<br>• 법제화이후 정책의 포괄성, 구체성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즉, 실제적인 도움이 줄 수 있는 서비스의 양과 질이 모두 필요 |
| | 전생애주기 법률에서의 자립 | •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자립에 대한 국가책무(제9조), 지자체장의 자립에 필요한 정보제공 의무(제32조의8), 장애유형, 장애정도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제 | • 자립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개인의 권리로 상향시킴<br>• 맞춤형 자립 지원뿐만 아니라 자립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 |

| 주요 내용 | | | 시사점 |
|---|---|---|---|
| | | 35조), 자립훈련 지원(자립훈련비 지급) (제43조), 자립생활 연구(제52조) 등 별도 자립을 권리적으로 설정하고 서비스를 촉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
| | **조례** |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등은 경제적 자립, 주거자립 등을 명시하고, 청년정책전달체계에 자립지원 기능을 부여하고 있음 | • 경제적 자립, 주거 자립 등 세분화<br>• 청년정책전달체계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자립지원을 사업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자립지원 기능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임 |
| **청년 관련 정부정책**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 • 주거, 일자리, 교육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취약청년의 첫출발을 지원<br>• 이를 위한 법제도와 추진 전달체계를 개편 | • 취약청년의 첫출발을 강조한 것은 바람직하나 모든 청년들의 자립을 사회적 권리로 지원할 필요<br>• '청년도약준비금'과 같은 새로운 방식의 예산 지원 활용 필요 |
| | **청년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 주거, 복지·문화, 참여·권리 영역에서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나 취약 청년을 위한 지원에 치중되어 있으며, 자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체계는 미비 | • 취약청년 지원의 근거법과 지원체계도 모두 상이하며, 자립의 영역 또한 상이함. 이를 정비하여 '자립취약청년 지원'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 | **경제적 자립 관련 정책** |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청년들을 발굴하여 사회 진출을 돕는 체계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로 고용안전망의 기능을 하고 있음<br>•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비구직 니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I유형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있는 한계가 있음.<br>•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신규직원 및 재직자 청년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참여자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고 있음.<br>•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해지율은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에 대한 관심과 달성의 어려움을 동시에 보여줌<br>•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구체적인 진로의 방향이 설정된 청년에게는 용이할 수 있으나, 진로 탐색 과정 |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취업 전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국민취업지원사업은 이후 취업에 대한 적극적 연계 프로그램으로 연계성 있게 발전할 필요가 있음<br>•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비활성화된 장기 니트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례관리를 포함하는 사회복지적 접근이 필요함.<br>• 청년집단 내 차이를 고려한 세부적 사업 설계가 요청됨.<br>•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생애전환기에 진로탐색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

| 주요 내용 | | | 시사점 |
|---|---|---|---|
| | | 에 있는 청년에게는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음. | |
| | **주거 자립 관련 정책** | • 청년 주거 정책은 다양한 유형의 공급과 시세보다 낮은 금리 및 임대료를 특징으로 하며, 상대적으로 엄격한 소득기준에 근거해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있음. | • 모든 청년이 보편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움 구조임.<br>• 소득기준과 임대료 간 불일치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소득기준을 완화하되 임대료 수준을 차등화하는 방식의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민간사례** | **관계 자립 사례** | • 니트 컴퍼니의 예에서 니트 청년들에게는 구직지원뿐만 아니라 지지체계가 필요하며, 고립되지 않도록 일상적 활동을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해주는 것이 필요함<br>• 니트 인베스트먼트의 예에서 청년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기획하고 탐구하는 과정을 제공하는 것도 자립 지원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음 | • 개인의 성향에 따라 커뮤니티 형성 지원이 자립을 이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자립 프로그램의 하나로 설정할 수 있음<br>• 니트 기간 동안 자신의 역량개발뿐만 아니라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 제6장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지원 해외사례

1. 개요
2. 청년기 경제적 자립지원에서 부터 사회참여 지원까지: 핀란드의 유럽청년보장제 (European Youth Guarantee) 사례
3. 유럽의 갭이어(Gap year) 사례
4. 요약 및 시사점

# 6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지원 해외사례[31)]

## 1. 개요

이 장의 목적은 해외의 성인 이행기 청년의 지원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새롭게 성인 도래기(emerging adulthood)라는 시기는 경제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며, 국가마다 이 시기를 지원해주는 방식은 다양하다(Chevalier, 2016). 여기서는 니트 상황의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제도라 할 수 있는 유럽의 청년보장제(European Youth Guarantee)와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체험해볼 수 있는 시간을 하나의 문화로서 보장하고 있는 갭이어(gap year)에 대해 정리하였다.

유럽의 청년보장제의 예는 경제적 자립의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핵심은 니트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다양한 취업, 훈련, 교육 기회를 제공받고 진로를 선택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청년보장제는 취업에 대한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청년이 국가로부터 취업, 훈련, 교육 기회를 제공 받는 기회를 보장받는다는 의미에서 권리성이 부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들이 권리로서 이러한 기회를 제공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의 청년보장제가 주는 함의는 클 수 있다. 여기서는 유럽의 청년보장제가 모델로 한 북유럽 국가의 사례, 즉 핀란드와 덴마크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갭이어의 예는 주관적 자립의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갭이어는 보통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사이 다양한 체험을 하는 기간을 두는 것으로 하나의 문화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시기에 국내나 해외에서 여행, 사회봉사, 인턴, 파트타임을 하면서 사회를 체험하는 것이 갭이어의 보편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갭이어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31) 이 장은 내부 연구진과 외부 연구진, 집필진이 공동작성하였다. 핀란드의 청년보장제 사례는 신영규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해외의 갭이어 사례는 김나라 전문연구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작성하였다. 개요와 시사점은 유민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다.

이해하여 수당과 교육을 제공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인 접근이다. 아동·청소년기에서부터 진로에 대한 성찰을 하는 시기를 가져야 하며, 자유학년제,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 갭이어(gap year) 등 다양한 형태로 이러한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 자립 지원 논의의 핵심은 청년을 독립된 개인으로 보고 지원하는 것이다. 국가가 권리로서 청년들의 고용, 교육, 훈련을 보장하는 유럽의 청년보장제 사례를 통해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유럽의 갭이어 사례를 통해 청년들의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을 사전적으로 사회제도 내에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알아본다.

## 2. 청년기 경제적 자립지원에서부터 사회참여 지원까지: 핀란드의 유럽청년보장제(European Youth Guarantee) 사례[32)]

### 1) 유럽의 청년보장제와 COVID-19 이후 강화된 청년보장제 개요

#### (1) 유럽 청년보장제 도입 배경

1970년대 중반 이후 유럽에서 사회적 배제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유럽연합도 사회적 배제 예방을 위한 정책 도입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이후 20세기 후반부터 복지국가 재편 논의가 활발해지고 고용을 강조하는 사회정책 기조가 퍼지면서 유럽연합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적 배제 해결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유럽연합이 발표한 2000년의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과 2004년의 '사회적 포용에 관한 공동보고서(Joint Report on Social Inclusion)'에 잘 나타난다. 리스본 전략은 유럽에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강조하고, 공동보고서는 유럽에서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정책과제로 고용 증진을 꼽는다. 이후 2005년 5월 유럽연합은 '유럽청년협약(European Youth Pact)'을 제정했다. 청년의 적극적인 시민권 강화를 목표로 하는 이 협약은 청년에게 고용, 교육, 직업훈련, 일과 생활의 균형 등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한다(Eurofound, 2015).

32) 이 장의 2절은 신영규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집필하였다.

이처럼 일자리 창출과 고용 기획 확대를 강조해온 유럽연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사회 진출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증가하는 상황을 겪으며 청년에게 초점을 맞춘 고용지원정책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2012년 유럽연합은 모든 회원국이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유럽연합이 제시한 청년보장제는 정부가 공공고용서비스를 통해 실업 상태에 있는 25세 미만 청년에게 실직 또는 교육과정 졸업 후 4개월 이내에 양질의 일자리, 지속적인 교육과정, 수습이나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뜻한다(European Commission, 2012).

2013년 유럽연합은 회원국에 청년보장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고용이니셔티브(Youth Employment Initiative; YEI)'를 도입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22a) YEI는 청년 실업률이 25%를 넘는 지역에 거주하는 니트(NEET) 청년들에게 직업을 소개하거나 직업훈련, 교육, 견습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YEI의 예산으로 89억 유로가 투입되었다. 2021년부터 YEI는 '유럽사회기금플러스(European Social Fund Plus; ESF+)'와 통합되어 운용되고 있는데 이는 청년 고용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이다(European Commission, 2022a).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청년보장제를 도입한 후, 유럽 청년의 고용률과 실업률이 개선되었다. 2013년 32%에 미치지 못했던 청년 고용률은 2018년 35%를 넘었고, 2013년 24%를 넘었던 청년 실업률은 2019년 14.6%까지 떨어졌다. 니트 청년 비율도 줄어 2012년 13.2%였지만 2018년에는 10.2%를 기록했다. 2018년까지 2,000만 명이 넘는 청년이 청년보장제에 등록하고, 이 중 1,400만 명 이상이 취업, 교육, 직업훈련 등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집계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19).

(2) COVID-19로 인한 청년보장제 강화

2020년 들어 COVID-19의 대유행으로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되고, 특히 청년층의 실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유럽연합은 기존 청년보장제를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강화된 청년보장제의 핵심 내용은 그 대상을 15~29세 청년으로 넓히고, 그들에게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회원국은 청년보장제의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추진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2b).

강화된 청년보장제는 청년 각자에게 맞는 서비스 구성과 제안을 강조한다. 이는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까지 오랫동안 다양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강화된 청년보장제는 COVID19의 영향이 길어짐에 따라 이로 인한 지역 노동시장 상황까지 고려한 고용서비스가 청년들에게 제공될 것임을 밝힌다. 이렇게 확대된 정책 집행을 위해 유럽연합은 COVID19 대유행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마련된 기금인 NextGenerationEU를 활용할 계획이다(European Commission, 2022b, 2022c).

(3)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핀란드의 노력

유럽연합이 시행 중인 청년보장제와 유사한 제도가 이미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었다. 이는 북유럽 국가들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를 통한 고용 확대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청년에게 초점을 맞춘 고용지원정책을 1984년에 도입했고, 노르웨이는 1993년에, 덴마크와 핀란드는 1996년에 도입했다. 이런 측면에서 청년보장제는 북유럽의 기존 정책을 전 유럽에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Escudero & Lopez, 2017). 이러한 맥락에서 북유럽 국가는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시킨 가장 완성도 높은 형태의 청년보장제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핀란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정책을 발전시켜오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19세기 말 종교단체가 주도하여 청년사업(youth work)이 시작되었고, 이후 1940년대 들어 청년사업은 전문적인 영역으로 발전하였다.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은 오랫동안 민간조직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1980년대부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municipalities)가 본격적으로 민간조직들과 협력하여 청년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핀란드는 1970년대 초에 청년법(Youth Act)을 제정하면서 국가가 청년사업을 지원하고,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고, 청년법에 따라 중앙정부는 4~5년마다 '국가 청년사업·정책 프로그램(National Youth Work and Policy Programme)'을 수립하여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정책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2d).

복지 보편주의 이념에 따라 핀란드 정부는 전통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은 누구나 평등하게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최근 심각해지는 청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핀란드는 청년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는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핀란드의 최근 사례를 구체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핀란드 사례

#### (1) 청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핀란드 청년보장제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관대한 급여를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보장프로그램들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핀란드 사례를 깊이 있게 탐색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선 청년보장제를 통해 청년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각종 사회보장 현금 급여와 서비스 그리고 교육 및 직업훈련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다.

조세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현금 급여와 보건의료서비스 재정을 관리하는 중앙정부 기구인 핀란드사회보험청(Kela; The Social Insurance Institution of Finland)은 청년에게 노동시장보조금, 주택수당, 학업보조금 등의 현금 급여를 제공한다. 노동시장보조금(labour market subsidy)은 핀란드의 실업부조제도로서 고용 이력이 없는 구직자와 실업보험이 제공하는 실업수당의 최대 지급 기간을 초과한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그러므로 학업을 마친 후 고용 이력 없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구직자는 노동시장보조금을 통해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시장보조금의 월평균 급여액은 구직자가 양육하는 자녀가 없을 경우 월평균 768유로(2022년 기준)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높다. 노동시장보조금의 지급 기간에 제한은 없어 구직활동을 유지하면 급여를 무기한 받을 수 있다. 이 급여는 자산조사를 통해 자격과 급여액이 결정되지만, 배우자의 소득은 자산조사 대상이 아니다. 또한, 부모와 따로 살고 있으면 부모의 소득도 자산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은 부모에게서 독립한 청년의 주거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된다. 주택수당 급여액은 가구소득, 가구원 수, 거주 지역, 주거비용 등을 바탕으로 산출된다. 2021년 한 가구당 지급된 월평균 주택수당은 325.28유로(12월 기준)였고, 주택수당을 받은 학생가구는 163,534가구, 실업자가구는 135,586가구였다(Kela, 2022). 학업보조금(study grant)은 대학교나 직업학교에 다니는 만 17세 이상 전일제 학생의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다. 2022년 현재, 학업보조금의 급여액은 자녀가 있는 경우 월 375.4유로, 자녀는 없고 기혼인 경우 월 268.23유로, 18세 이상이고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월 268.23유로다. 미혼이면서 자녀가 없는 학생이 부모와 함께 살 때는 그 급여액이 부모의 소득에 따라 줄어든다.

핀란드의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서비스는 조세를 재원으로 제공되고 보편성의 원칙에 따라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자격 제한 없이 평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핀란드에 거주하는 청년은 누구나 별도의 사회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욕구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고등 교육과 직업훈련을 포함한 모든 공교육이 무상으로 제공되므로 청년들은 언제든 원하는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구직활동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면 공공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핀란드 청년은 누구나 청년법(Youth Act)의 규정에 따라 지방정부가 청년을 위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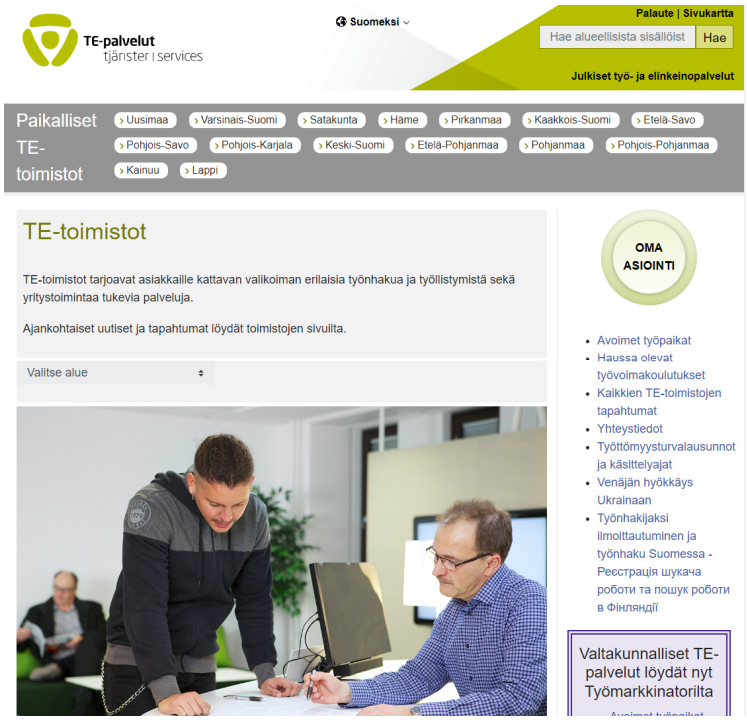
(2) 공공고용서비스

핀란드의 공공고용서비스(Public Employment Service)는 경제고용부(Th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Employment of Finland)의 산하 조직인 15개 지역의 경제발전·수송·환경센터(Centre for Economic Development, Transport and the Environment; ELY-keskus)가 관리한다. 이 센터는 서비스 데스크인 TE오피스(TE-Offices)를 통해 대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핀란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120곳 이상의 TE오피스를 통해 직접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이 조직이 공공고용서비스 전달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TE오피스는 취업 상담, 취업 계획 컨설팅, 이민자를 위한 노동시장 안내, 직업훈련 기회 소개 및 제안 등 각종 구직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실업자는 우선 TE오피스에 구직자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구직자로 등록된 사람만 앞서 설명한 노동시장보조금과 같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청년 구직자는 TE오피스를 방문하여 구직자로 등록해야 한다. TE오피스 상담사는 해당 구직자에게 적합한 실업급여 종류와 그것을 받는 방법을 알려준다.

TE오피스의 고용서비스는 대면서비스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서비스 두 가지로 제공된다. 대면서비스의 경우, 핀란드 공용어인 핀란드어와 스웨덴어로 제공되는데 이 중 어느 언어도 구사하지 못하는 이민자를 위해서는 통역사를 통해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서비스는 위 두 가지 언어와 함께 영어로도 제공되고 있다.

TE오피스를 통한 구직자 등록과 관련하여 연령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구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이나 교육 참여를 위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연금을 받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은퇴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구직의사가 있는 연금 비수급자만 공공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출처: https://toimistot.te-palvelut.fi/ 에서 2022.10.18. 인출.

**그림 Ⅵ-1 핀란드 TE오피스 인터넷 홈페이지**

(3) 2010년대 청년보장제 확대

핀란드의 청년보장제(Nuorisotakuu)는 1996년에 처음 도입된 후,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 내용과 적용 범위가 조금씩 바뀌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청년보장제가

핀란드 전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15~24세 핀란드 청년의 실업률이 갑자기 상승하여 2009년에 20%를 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핀란드 중앙정부는 범부처 회의를 통해 청년보장제의 확대를 준비했고, 유럽연합의 결정과 함께 2013년에 공공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 청년보장제를 전국으로 확대했다(Valtioneuvosto, 2012).

핀란드의 청년보장제는 유럽연합이 제시한 청년보장제의 내용보다 더 넓은 범위의 청년들에게 더 짧은 시간 안에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했다. 즉, 핀란드 청년보장제는 24세 이하의 실업자 또는 최근 교과과정을 졸업한 25~29세 청년을 대상으로 3개월 이내에 그들의 상황과 선호를 고려하여 고용을 위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OECD, 2019a). 공공고용서비스센터인 TE오피스가 청년보장제를 담당했기 때문에 위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이 TE오피스를 찾아가 구직자로 등록할 때 이러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4) 청년보장제의 한계와 원스톱안내센터의 도입

청년보장제가 핀란드 전역으로 확대되어 운영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우선 실업 청년들이 필요한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협조가 부족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주요한 문제였다. 또한, 행정조직들 사이에 서로 다른 지침과 예산 항목 사이의 경계도 청년보장제의 효율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Sorsa, 2019).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핀란드 정부는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 구축을 시도했다. 핀란드 경제고용부가 청년들의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에 시작한 '꼬흐따모(Kohtaamo)'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핀란드어 kohtaamo는 '만남을 위한 공간'을 뜻하는데 이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함께 소통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전국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2015년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인 헬싱키(Helsinki)는 자체적인 청년을 위한 통합서비스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오흐야모(Ohjaamo)'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조종실'을 의미하는 핀란드어 ohjaamo가 이 프로젝트의 이름으로 쓰인 것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조종실

로 활용될 수 있는 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다(European Commission, 2021). 헬싱키의 오흐야모센터는 개장과 동시에 청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며 많은 방문자 수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는 꼬흐따모 프로젝트팀이 헬싱키 오흐야모센터를 전국에 구축할 원스톱안내센터의 모델로 채택하게 했다. 이후 경제고용부는 개별 지방정부에 오흐야모센터라는 이름의 원스톱안내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장려하고 있다. 2017년에는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을 위한 원스톱안내센터를 운영했는데 매년 그 수가 늘어 2021년에는 약 70개가 되었다(Ohjaamo, 2021).

(5) 헬싱키 원스톱안내센터 현황

핀란드 전역의 원스톱안내센터는 30세 미만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과 청년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원스톱안내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므로 개별 센터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구성은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모든 원스톱안내센터의 공통점은 청년이면 누구나 편하게 방문할 수 있고, 그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조직의 전문가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며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원스톱안내센터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담당자, TE오피스의 고용상담사, 사회보험청의 급여담당자가 파견되어 있다. 이 외에도 청년들의 수요에 따라 지역별로 심리상담사, 간호사, 재무상담사 등이 근무한다.

헬싱키 사례를 살펴보면, 원스톱안내센터는 헬싱키시청 고용서비스 부서에 속해있는 조직이다. 이 센터는 헬싱키시청 소속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그들의 역할은 고용서비스 상담사, 직업심리사(vocational psychologist), 간호사, 사회복지사, 학업상담사, 청년상담사, 미디어 디자이너 등이다(Ohjaamo Helsinki, 2022a). 시청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원스톱안내센터에서 전일제 근무를 한다. 이들 외에도 주거 서비스 지원단체, 이주민·난민 지원단체, YMCA(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헬싱키지부 등 민간단체의 전문가들이 헬싱키 원스톱안내센터에 정기적으로 주 1~2회 출근하여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Ohjaamo Helsinki, 2022b). 이처럼 서로 다른 조직에 속해있고 서로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전문가들이 원스톱안내센터에서 함께 근무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이들 사이의 소통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소통과 협력을 높이기 위해 헬싱키 원스톱안내센터는 매일 오전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헬싱키 원스톱안내센터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직원회의를 마친 후 정오에 문을 열어 방문자를 받기 시작하고, 오후 4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헬싱키에 거주하는 30세 미만 청년은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상시 제공되는 상담 서비스 분야는 취업, 학업, 재정 및 주거, 웰빙 등 4개로 구성되고, 방문자가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하면 추후 관련 직원이나 전문가와의 상담 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Ohjaamo Helsinki, 2022c).

이외에도 헬싱키 원스톱안내센터는 공개 행사를 개최하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행사는 기업들과 구직자들의 만남을 통해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공개 취업 설명회이다. 또한, 대학교나 직업학교 입학 지원서 작성 안내, 취미생활 및 여가 정보 제공, 정치참여 교육, 미래 설계 가이드 등을 주제로 많은 사람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도 열린다(Ohjaamo Helsinki, 2022d).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헬싱키 원스톱안내센터는 한시적으로 방문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았다. 대신 전화, 이메일, 인스타그램(Instagram), 페이스북(Facebook), 디스코드(Discord)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서비스만을 제공했다. 이 당시 현장에서 대규모 행사 개최가 어려워 많은 행사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매주 요일별로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행사가 열렸다. 이러한 행사의 주제는 취미생활, 주거, 운동, 심리상담, 진학 상담 등이 주를 이루었다.

2019년에는 이 센터를 방문한 청년 수는 모두 16,771명이었고, 방문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인 28%가 취업 및 창업에 관한 문의를 하고 관련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19%가 진학과 학업에 관한 상담을 받았고, 13%는 재정적인 문제로 센터를 찾았다. 이용자 현황을 나이별로 살펴보면, 18~24세가 40%로 가장 많았고, 25~29세가 31%를 기록해 그 다음으로 많았다(Ohjaamo Helsinki, 2022e).




* 출처: https://www.facebook.com/ohjaamohelsinki/photos/a.1619849384947088/2638034506461899 에서 2022.11.10. 인출.

**그림 Ⅵ-2 코로나19 상황에서 헬싱키 원스톱안내센터 주간(2020년 5월 5-11일) 프로그램 안내**




* 출처: https://ohjaamo.hel.fi/ohjaamon-illat-alkavat/ 에서 2022.10.18. 인출.

**그림 Ⅵ-3 헬싱키 원스톱안내센터 전경**



* 출처: https://ohjaamo.hel.fi/miten-voimme-auttaa-sinua/neuvonta/ 에서 2022.10.18. 인출.

**그림 Ⅵ-4 헬싱키 원스톱안내센터 상담 모습**

(6) 아웃리치 청년사업과 청년워크숍

원스톱안내센터 구축이 서비스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더 많은 청년이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라면, 아웃리치 청년사업은 스스로 고립 상황에 있거나 사회적으로 배제된 청년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하는 활동이다. 아웃리치 청년사업이란 교육이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떠한 복지 급여나 사회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29세 미만의 청년을 찾아 그들이 사회 속에서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의미한다(Etsivä nuorisotyö, 2022a).

핀란드 청년법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아웃리치 청년사업을 수행할 책임과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아웃리치 청년사업가(outreach youth worker)를 고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아웃리치 청년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아웃리치 청년사업가가 찾아낸 청년들이 사회참여를 준비할 공간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아웃리치 청년사업은 민간 조직인 청년워크숍(youth workshop)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전국 310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90%가 넘는 곳에 청년워크숍이 운영 중이고, 총 2,2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Etsivä nuorisotyö, 2022b).

아웃리치 청년사업을 통해 청년워크숍 프로그램 참여를 결정한 청년들은 우선 사회서비스 이용 안내를 받거나, 자신의 진로 탐색을 시작하거나 기초적인 사회성 기술(social skills)을 익힌다. 이후 청년 개인의 상황과 욕구에 따라 청년워크숍 담당자는 청년의 진학이나 취업을 목표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제공한다. 청년워크숍 활동은 개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므로 청년워크숍도 직업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된다. 예를 들면, 헬싱키에는 멀티미디어 제작, 자동차 수리, 섬유 인쇄 및 염색, 목공, 요리 등 다양한 직종의 청년워크숍이 있다.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90% 이상이 아웃리치 청년사업을 시행하고 청년워크숍을 운영하는 만큼 이러한 형태의 청년사업은 핀란드에서 매우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함께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직들 사이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핀란드 중앙정부 조직인 문화교육부(Opetus- ja kulttuuriministeriö)는 아웃리치 청년사업과 청년워크숍 활동을 개선할 수 있는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각종 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핀란드 광역지방행정청

(Aluehallintovirastot)은 지역별 아웃리치 청년사업과 청년워크숍 활동에 관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지역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Aluehallintovirastot, 2022).

## 3. 유럽의 갭이어(Gap year) 사례[33]

갭이어는 영국 정부의 대국민 공공서비스 포털 사이트인 Directgov[34]에서 1년 동안 공부하는 것에서 벗어나, 능력(Skills), 자신감, 이력서의 경력사항들(CV:Curriculum vitae)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대학 입학 전이나 대학 시절, 대학 졸업 후 갭이어를 가지지만, 갭이어를 언제 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고 의무도 아니다. 언제라도 갭이어를 가질 수 있지만, 보통 갭이어는 3개월에서 24개월의 어느 기간 동안 정규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앞으로의 진로(career)를 생각해보기 위해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Jones, 2004). 여기에서는 갭이어란 무엇이고, 갭이어의 대상과 활동 유형 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 1) 개념

갭이어(gap year)는 이어아웃(year out)이라고도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사이에 휴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형식적인 교육, 훈련 또는 직업으로부터 벗어다 보다 긴 진로(career)에 대하여 고민해 보는 3개월에서 24개월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Jones, 2004). 학생들이 공교육체제를 벗어나 자신의 진로 경력에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훈련, 체험을 하는 기간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또한 갭이어는 학생들이 더욱 성숙하고 독립적이며 자신감 있고, 직업세계에서의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Jones, 2004)

갭이어는 학자들에 의해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Simpson(2005)은 갭이어를 좁은 관점으로 접근해서 청년들이 일, 봉사, 경험을 위해 여행을 하거나 해외를 나가는 기간이라고 하였고, King(2011)은 갭이어는 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간이라고

33) 이 장의 3절은 김나라 전문연구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집필하였다.
34) www.direct.gov.uk 에서 2022.10.08. 인출

하였다. Dover & Lawrence(2010)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 사이에 1년 동안 여행, 자원봉사, 일을 통해 개인적으로 변화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관행이라고 정의하였으며, O'shea(2011)는 공교육체제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로 경력에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나 훈련, 체험하는 기간이라고 정의하였다.

### 2) 참여 대상 및 내용

갭이어에 참여하는 동기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학 또는 주변 사람(친구, 가족) 등의 소개로 갭이어를 접하고 정규 교육과정에서 벗어나고 싶거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개인 삶의 기술(Skills)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곳으로의 취업,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또는 개인적인 신념 등을 이유로 갭이어에 참여하게 된다(Jones, 2004).

갭이어의 대상은 보통 16세에서 25세이지만,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이후의 직장인들도 갭이어야 참여하기도 한다. 직장인들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의 기간을 두고 직장을 떠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영국 내에서 또는 해외로 나가서 경험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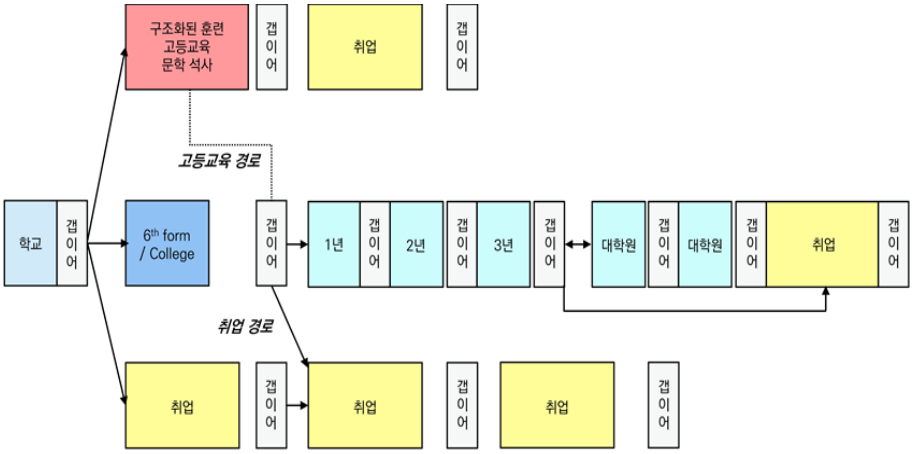
**표 Ⅵ-1 참여 대상별 갭이어의 참여 내용**

| 유형 | 대상 | 참여 내용 |
|---|---|---|
| A1 | 고등학생 | 16세, 졸업을 앞두고 계획 |
| A2 | | 18세, 졸업을 앞두고 계획 |
| A3 | | 18세, 졸업을 하지 못함 |
| B1 | 대학생 | 대학 중 휴학 |
| B2 | | 대학 졸업 후 휴식 |
| C | 대학 졸업 직후 | 바로 대학원 진학 |
| D1 | 대학원생(석, 박사) | 대학원 과정 중 휴학 |
| D2 | | 코스와 결합된 대학원 과정 |
| E | 직장인 | 구직 활동 |
| F | | 즉시 훈련 |
| G | | 복합적인 갭이어 |

* 출처: Jones. A. (2004). Review of gap year provision. London: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재구성.

갭이어에 참여하는 대상(Jones, 2004)을 살펴보면, 중·고등학교 졸업생, 대학생, 대학교 졸업생, 대학원생, 휴직자(직장인), 취업준비생 등으로 분류된다.

다음 [그림 Ⅵ-5]는 영국의 갭이어가 각 경로에 따라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타내는 그림인데, 갭이어는 크게 훈련, 고등교육, 구직 등으로 나뉜다. 고등학교 교육 이후에 학생들은 직업 훈련, 대학 교육,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다. 갭이어는 교육단계별 또는 취업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선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하여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색을 수행하게 된다.




* 출처: Jones. A. (2004). Review of gap year provision. London: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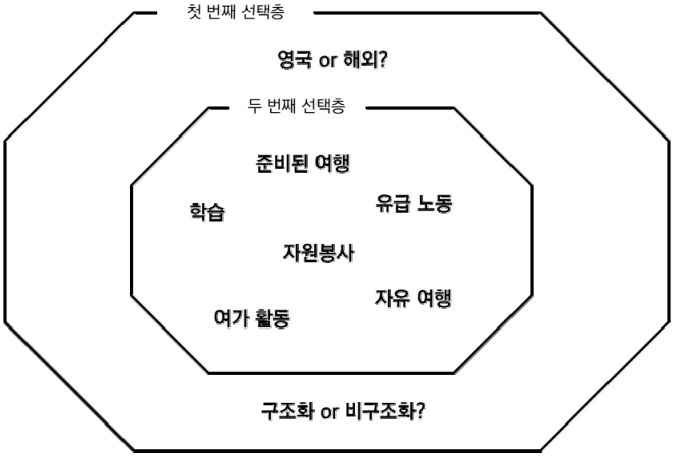
**그림 Ⅵ-5 갭이어 참여 학생 진로 경로**

### 3) 갭이어 활동 유형

갭이어 유형은 서로 합의된 것은 없지만(Jones, 2004), 영국의 학생들은 아래 그림과 같이 갭이어 활동 중에서 원하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 선택층을 살펴보면, 먼저 영국 국내에서 활동할 것인지, 해외에서 활동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고, 구조화된 활동을 할 것인지, 비구조화된 활동을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구조화된 활동이란 계획적으로 정해진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비구조화된 활동이란 정해지지 않고 학생 스스로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선택 층을 살펴보면, 학습, 준비된 여행, 유급 노동, 자원봉사, 자유 여행, 여가 활동 등의 활동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그림 Ⅵ-6] 참조).




* 출처: Jones, A. (2004). Review of gap year provision. London: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p.9.의 갭이어 활동 모형을 연구자가 번역하여 작성함.

**그림 Ⅵ-6 갭이어 활동 선택 유형**

앞서 제시한 것처럼, 갭이어는 합의된 유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크게 일(paid work. 유급 노동), 봉사활동(Volunteer work), 여행(travel)으로 나눌 수 있다.

**표 Ⅵ-2 갭이어의 유형**

| | 일 | 봉사활동 | 여행 | 기타 |
|---|---|---|---|---|
| Jones(2004) | 영국 국내 일<br>해외 일 | 영국 국내 봉사활동<br>해외 봉사활동 | 여행, 레저 | |
| 갭-이어 | 일 | 봉사 | - | 배움 |
| 갭이어 Ltd. | - | 봉사활동 | 여행 | 경험 |
| 갭이어 365 | 직업, 일, 가르침 | 봉사활동 | 여름 캠프, 여행 | |
| 리얼갭 | 일 | 봉사활동 | 여행, 세계여행,<br>스포츠 여행 | 학습 |

* 출처: Jones. A. (2004). Review of gap year provision. London: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재구성.

4) 갭이어의 의의 및 효과

갭이어는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해보면서 모험심과 자립심을 키울 수 있다. 갭이어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효과가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효과가 있었다. 갭이어에 대한 효과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갭이어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교육적 성과향상, 진로 방향 설정 및 진로 계획 명확화, 교육·훈련·인턴을 통한 독립심, 자립심 고취, 고용역량 및 취업 가능성 증대, 관심 있는 기술 및 자격증 취득 가능, 삶의 기술 획득, 사회적 가치 형성 등의 효과가 있었다.




* 출처: Roker, D., Player, K, & Coleman, J. (1999). Challenging the image: Young people as volunteers and compaigners. Leicester. Youth Work Press.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그림 Ⅵ-7 갭이어의 개인적 효과**

갭이어의 개인적 효과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적 성과 향상을 들 수 있다. 학생들은 갭이어를 통하여 자신의 인생 전반에 대해 고민을 하고 진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갭이어를 하고 대학에 들어온 후에 다른 학생들보다

학업에 더 열중하며 열심히 하였다. Jones(2004)에 따르면, 갭이어를 경험한 학생들의 경우, 학업에 있어서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아지고, 자제력이 증가하였다고 하였으며, 갭이어를 통한 경험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부 목표에 대한 동기를 강화된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진로 방향 설정 및 진로 계획이 명확해졌다. 갭이어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 하기 때문에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파악하기 쉬웠다고 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이 진로 방향을 설정하고, 진로 계획을 명확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셋째, 교육·훈련·인턴을 통해 독립심 및 자립심을 기를 수 있었다. 갭이어 경험 전에는 부모 밑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왔지만, 갭이어는 스스로 독립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독립심을 기를 수 있다. 특히 해외로 떠나는 갭이어의 경우에는 다양한 언어, 문화 등을 가진 낯선 곳에서 혼자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심과 자립심을 기를 수 있게 된다. 넷째, 고용역량 및 취업가능성이 증대되었다. 갭이어를 통해 인턴 경험 등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고용역량이 개발되었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취업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다섯째, 관심있는 기술 및 자격증 취득 가능하였다. 갭이어 경험 전에는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 위주의 학습이었지만, 갭이어를 통해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이와 관련된 기술이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여섯째, 삶의 기술을 획득할 수 있었다. 갭이어를 통해 다른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과정속에서 삶의 기술을 획득하였다. 일곱째, 사회적 가치 형성할 수 있었다. 갭이어를 통해 다양한 것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형성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갭이어는 갭이어에 참여한 학생 개개인의 효과도 있었지만, 이들이 속해있는 사회에 주는 효과도 있었다. 사회적인 효과로는 첫째, 갭이어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면서 봉사활동과 시민 활동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증대하여 매우 긍정적이었다(Roker, Player, & Coleman, 1999). 둘째, 갭이어를 통해 직업체험 등도 해보고 실제 일을 해본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더욱 숙련된 인재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 Roker, D., Player, K, & Coleman, J. (1999). Challenging the image: Young people as volunteers and compaigners. Leicester. Youth Work Press.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그림 Ⅵ-8 갭이어의 사회적 효과**

### 5) 갭이어 해외 사례

여기서는 미국, 영국, 일본에서의 갭이어 사례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미국은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갭이어를 장려하는 편으로, 개인적으로 선택하는 갭이어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정규 프로그램으로 갭이어를 개설하고 있다. 프린스턴대[35]의 경우에는 갭이어 프로그램으로 'Novogratz 브리지 이어 프로그램(Novogratz Bridge Year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부 1학년 신입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5개 국제 지역 중 한 곳에서 1년 동안 지역사회 학습으로 프린스턴 대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현지의 언어를 학습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과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화적 시야를 넓혀주고 있다. 매세추세츠공대(MIT)와 웰즐리대[36]는 신입생과 예비 지원자 전원에게 갭이어를 강력히 추천하고 있어 학생들이

35) https://oip.princeton.edu/our-programs/novogratz-bridge-year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 정리함.
36)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On a Takinig 'Gap Year' https://mitadmissions.org/blogs/entry/on_taking_a_gap_year_2/ 및 중앙일보 보도자료 (2022.07.04.). 대학 '갭이어'제도는 세계적 추세, 다양한 경험 쌓을 필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4104#home을 바탕으로 요약, 정리함.

한국의 하자센터 등에서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고, 하버드대의 경우에는 매년 100명 이상의 신입생이 입학 전 갭이어를 체험하게 한다. 특히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고, '하버드 갭이어 소사이어티'라는 모임을 구성해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이 외에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UNC)[37]도 학생들에게 'Global Gap Year Fellowship'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해외에서 1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향후 진로 설계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터프츠대학(Tufts University)[38]도 대학 1학년을 시작하려는 학생들에게 '1+4 Bridge Year Service Learning Program'을 제공하여 자신을 되돌아보고,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삶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장을 마련하고 있다.

다음으로 영국의 갭이어 사례로는 영국 왕립음악원의 One year 프로그램과 사우샘프턴 솔렌트대학교의 갭이어 및 Curriculum Plus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39] 왕립음악원에서는 갭이어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One Year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사 학위과정에 있는 학생들과 교육 기회와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확인하고 학사 학위과정에 진학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사우샘프턴 솔렌트 대학교(Southampton Solent University)는 학생들이 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로 설계사를 두고 있다. 학위 기간 중 진로 설계사를 통하여 학생들이 체계적인 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사우샘프턴 솔렌트 대학교는 학생 스스로 독립심을 기르고 건강한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갭이어를 장려하고 있는데, 갭이어와 연계하여 20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Curriculum Plus(C+)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1년 동안 활동을 하고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력 관리 및 진로 설계 활동, 스포츠 코칭 활동, 업무 기반 학습, 지역 봉사활동, 언어학습, 영어교육, 기업가 정신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갭이어 사례로는 동경대학교의 FLY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40] 동경대학교에서는 입학시험을 통과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대학에 입학하여 수업을 받기

37) https://globalgap.unc.edu/내용을 바탕으로 요약, 정리함.
38) https://tischcollege.tufts.edu/news/tufts-14-fellows-start-their-service-year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 정리함.
39) 김정희 외(2017). 영·미·일 대학 갭이어 사례 및 시사점 분석. 비교교육연구. 27(4), 평생학습타임즈(2019). http://lltimes.kr/?p=26120의 내용을 재구성함.
40) 김정희 외(2017). 영·미·일 대학 갭이어 사례 및 시사점 분석. 비교교육연구. 27(4), 평생학습타임즈(2019). http://lltimes.kr/?p=26120의 내용을 재구성함.

전까지 갭이어 프로그램인 FLY(Freshers' Leave Year Programme)를 실시하고 있다. 2013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대학 입학시험이 끝나고 합격한 시점부터 실제로 대학 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대학 신입생들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의미와 목표를 재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FLY프로그램은 크게 지적인 모험과 도전활동(연구실 체험, 학술참관, 리더십 육성프로그램 등), 사회체험 활동(자원봉사, 인턴십, 홈스테이 등), 대학에서의 배움을 위한 기초형성 활동(일본어 프로그램, 체력증진, 기초학력 양성)으로 나뉜다. 동경대학교에서 선도적으로 갭이어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본의 다른 대학에서는 갭이어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학생들이 해외에서 공부를 할 경우 재정적인 부담이 늘어나고, 부모의 소득에 따라 불균형이 조장될 수 있으며 사회에 1년 늦게 나오면 취업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 6) 갭이어 사례 요약 및 시사점

앞에서 갭이어의 개념, 참여 대상 및 내용, 활동 유형, 효과,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보통 갭이어는 봉사활동, 인턴십, 여행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 더 나아가 진로를 탐색하는 기간을 말한다. 갭이어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 스스로가 갭이어를 통해 시야를 넓히고 자신의 진로 개발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갭이어는 개인적,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사례 및 국내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갭이어를 통해 진로방향을 설정하고, 진로설계를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갭이어를 체험하면서 자신의 진로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해보고,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었고, 진로설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체계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생 기간 동안에 갭이어를 경험하였다면 대학 내에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와 관련하여 잘 실행해볼 수 있는 교과목 개설을 입학직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체계적으로 누적 기록할 수 있도록 커리어포트폴리오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갭이어는 특정한 형식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해보는데 어려움이 존재할 수도 있어, 학생 또는 휴직자 등이 자신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경험해볼 수 있도록, 유형별로 체계화된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생의 경우에도 1학년 입학시기에 갭이어를 하게 되는 경우와, 4학년 졸업을 앞두고 갭이어를 할 때에는 그 목적과 내용이 달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생, 또는 직장인들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갭이어는 이 기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개인의 진로개발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이 기간에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졸업 후 진로를 준비하는 데 힘이 되는 진로개발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 학생들을 갭이어를 계기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대학 등에서 갭이어를 도입하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갭이어가 학생들의 진로개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는지를 진단하기 위한 진단도구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 4. 요약 및 시사점

지금까지 청년 자립 지원 관련 해외사례를 살펴보았다. 청년보장제사례와 갭이어 사례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핀란드의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 사례는 유럽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보장제를 핀란드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어떠한 전달체계를 구성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핀란드 사례는 공공전달체계를 통해 청년보장제를 시행하다 최근 '오흐야모(Ohjaamo)'라는 원스탑센터를 구성하여 청년들이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 센터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중앙과 민간의 인력이 함께 파견 나와 근무하는 형태로 다양한 서비스들을 한 곳에서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청년정책 전달체계가 아직 초기단계에 있어 비전문적이고, 담당 부처나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나는 형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핀란드 사례는 유럽의 청년보장제와 같이 사회진출을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취업, 교육, 주거 지원이 욕구에 기반한 보편적 지원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청년들의 적극적 자유(positive liberty)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지원 정책이 부족하거나 매우 선별적인 형태로 이루어졌을 때는 청년들이 자립에 관련한 선택을 하기 어려워 실제적인 자유보장이 안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청년정책들이 선별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점, 대학과 같이 자립에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교육기관이 높은 등록금을 받고 있어 실제적인 선택이 제한되는 점이 자립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핀란드 사례는 서비스 최저연령기준을 15세로 설정하고 있다. 유럽의 청년보장제는 15세부터 25세까지의 청년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어 10대부터 성인기 이행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우리의 경우 청년정책이 만 19세부터 시작되고 있어 아동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 지원에 제한이 있는 점에서 참고할만하다.

다음으로 갭이어(gap year) 사례는 제도나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인생의 전환기에 일종의 휴지기를 갖는 것으로 여러 유럽과 영미권 국가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갭이어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입학 사이에 휴지기를 통해 사회 혹은 세계를 체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갭이어는 청년 자신에게 진로방향 설정, 독립심 증진, 삶의 기술 획득, 사회적 가치 형성 등의 기초자립역량을 증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갭이어를 장려하고 있으며, 갭이어를 체계적으로 보낼 수 있는 안내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갭이어가 일종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시장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대학 1학년이 갭이어를 보낼 수 없는 제도적 상황을 개선하고, 갭이어를 국내외에서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표 Ⅵ-3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지원 해외사례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주요 내용 | | 시사점 |
|---|---|---|
| 핀란드 청년보장제 사례 | '오흐야모' 원스탑서비스센터 | - 청년정책을 단일한 창구에서 제공하고, 지방지차단체 소속 직원과 중앙정부 및 민간에서 파견된 인력이 함께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br>- 청년이 다양한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기관에서 여러 정책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성이라 할 수 있음. |
| | 청년의 취업, 교육, 주거 욕구에 대한 보편적 지원 서비스 구성 | -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 선택지를 지원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 실제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함으로써 적극적 자유(positive liberty)를 실현하도록 지원할 수 있음 |

| 주요 내용 | | 시사점 |
|---|---|---|
| | | - 청년정책 전달체계(delivery system)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실제 다양한 급여, 서비스가 구비되어 있어야 함. 무엇을 전달할지가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한계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
| | 자립의 최저연령 기준 미지정 | - 핀란드의 청년법은 29세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최저연령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청소년들, 학생들도 서비스 전달체계에 포괄될 수 있음 |
| 갭이어 사례 | 성인 이행기의 한 과정으로서의 갭이어 문화 | - 진로 방향 설정, 독립심 증진, 삶의 기술 획득, 사회적 가치 형성 등 기초자립역량 형성 |
| | 해외 갭이어 지원 프로그램 | - 대학의 갭이어 추천 및 갭이어 기간을 체계적으로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및 연계 |

이 보고서에서 정리한 해외 사례는 바로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는 특정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그 사회에서 오랫동안 사회문화적으로 발전해온 산물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북유럽 복지국가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핀란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을 통해 실업 상태의 사람들에게 보장하는 제도를 갖춰 놓고 있었고, 교육을 받는 청년들에 대해서도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생활비를 보조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었다. 이들은 성인 이행기의 청년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반면 우리는 노동시장 밖의 청년에 대한 제도들이 탄탄하지 못하고 높은 등록금 역시 청년들에게 부담스럽게 남아 있다. 청년정책 역시 여전히 잔여적인 방식의 제도들로 파편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공할 수 있는 정책들이 별로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달'할 것이 별로 없는 '전달체계'만 고안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혹은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전달체계를 고민할 때는 우리가 진정 무엇을 전달하기 위해 이러한 전달체계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여야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누가, 어떻게, 어떤 예산을 가지고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해외의 좋은 제도를 무작정 우리나라에 도입하겠다는 것은 본질적인 것은 놓치고 껍데기만 가져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유념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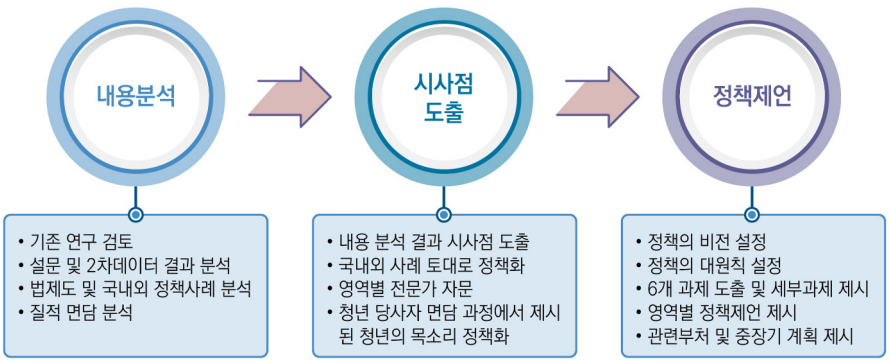
# 제7장 정책제언

1. 제언 도출 과정
2. 성인 이행기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3. 성인 이행기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한 세부정책

# 7 정책제언[41]

## 1. 제언 도출 과정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성인 이행기 청년들의 자립 실태 및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국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하는 정책연구로서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해 문헌연구, 양적연구(설문조사 및 2차 데이터 분석), 질적연구, 국내 법률 및 자치법규 분석, 중앙과 지방의 정책 분석, 민간 사례 분석, 해외사례 분석 등의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본 연구는 각 내용들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성인 이행기 청년들의 자립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림 Ⅶ-1 참조).




* 출처: 저자작성

**그림 Ⅶ-1 제언 도출 과정**

41) 이 장은 유민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신동훈 부연구위원이 공동작성하였다.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은 생애 전반기를 아우르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청년 자립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미래를 위한 비전과 일관된 원칙, 그리고 정책영역과 세부 정책을 정리해야 했다. 연구진은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혹은 공식적인 워크숍 속에서 이에 대한 여러 논의를 진행하였고, 연구가 진행될수록 이러한 내용들은 점차 다듬어져 갔다. 이 연구가 제안하는 비전, 원칙, 정책은 한 번에 나타난 것이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순환하여 도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그림 Ⅶ-2 참조).




* 출처: 저자작성

**그림 Ⅶ-2 연구의 비전, 원칙, 정책 도출 간의 상호 보완적 순환 관계**

이 연구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폭넓게 수행된 연구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책적으로 제언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이번 제언에서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정책 방향을 도출한 후, 정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비전, 원칙, 정책영역들을 소개하였다. 그 이후 각 정책 영역별로 세부 과제를 도출하여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언들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국가가 성인 이행기 청년들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청년정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1)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 및 정책 방향 도출

#### (1) 문헌연구 주요내용 및 시사점

이 장에서는 성인 이행기 청년과 관련한 새로운 성인기 혹은 성인 진입기(emerging adulthood) 관련 내용과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관련 지표의 검토를 통해 한국 성인 이행기 청년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 장의 내용을 요약하고 시사점 및 정책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인기 혹은 성인 진입기(emerging adulthood)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이 짧게 일어났으나 교육기간의 증가, 결혼연령의 지연으로 인해 새로운 시기가 출현하고 있다. 성인 이행기의 지연은 현대 경제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이러한 사회변화를 인식하고 새로운 성인기 혹은 성인 진입기(emerging adulthood)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응하고, 관련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 해결을 개인의 의식 변화 등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으므로 구조적이고 통시적인 변화의 방향에서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자립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교육, 결혼, 출산 지표들과 주관적 인식 지표들도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인생 단계가 생겨났다는 시각을 지지해주고 있다. 성인기로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니트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이행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성인 이행기 지원을 위하여 청년들이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하고,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교육, 결혼, 출산 등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결혼과 출산을 위해 자립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으므로 청년들의 자립 지원을 통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청년 자립 관련 연구들은 그동안 어느 정도 축적되었으나 대상과 연구 범위가 한정적인 특성이 있다. 연구 대상별로는 취약청년 대상의 연구(자립준비청년, 장애청년, 빈곤청년, 니트상태 청년), 연구 영역별로는 경제적 자립, 주거 자립, 심리적 자립 등의 연구들이 있었다. 청년 자립 개념은 학술적, 정책적으로 더 세분화되고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성인기로의 전환 지원은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independence)을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청년의 자립은 경제상황, 주거상황, 관계 특성, 주관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청년의 자립을 위해서는 일자리·자산형성 등의 경제적 자립지원, 주택·주거비경감과 같은 주거지원, 부모로부터의 독립·커뮤니티 형성과 같은 관계 자립 지원, 진로 탐색을 통한 성인인식·독립성 같은 주관적 자립 지원 등으로 분류하고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자립 지원 정책의 우산개념 생성과 세부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단지 보고서나 백서 안의 정책 나열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연결되고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는 이렇게 넓어진 개념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프로그램화할지, 산발적으로 만들어질 자립지원 정책을 어떻게 청년들에게 원스탑으로 통합적으로 지원할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전달체계 및 인력에 대한 고민, 사례관리(case management)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2) 양적연구 주요내용 및 시사점(설문조사 및 심층분석)

설문조사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주거·관계·주관적 자립의 영역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립 격차가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소득이 높은 청년은 자원을 바탕으로 충분한 준비를 거쳐 여러 가지 영역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각각의 자립은 혼인 여부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 각 영역별 자립과 혼인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으나 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 사회에서 혼인과 같은 역할 전환(role transition)은 성인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층분석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들이 성인이라는 걸 지각하는 패턴을 살펴본 결과, 성인이라는 느낌이 혼재되어 있는 시기가 나타났다. 20대에서 30대까지 완전히 성인으로 느끼는 비율이 점진적으로 올라갔다. 성인으로 전환되는데 중요한 사건들을 성취하는 비율도 연령이 올라가면서 점진적으로 높아졌다. 성인 이행기가 지연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고, 청년 연령이 지날 때까지 성인으로 자각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어 성인 이행기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기본법」에서 정해놓은 청년기가 끝날 때까지 성인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자립에 대한 성취를 제대로 못한 경우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등 연령 중심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욕구

(needs) 중심적 대응으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자리와 주거가 중요한 자립요인이나 실제로 성취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일자리와 주거를 제공해주는 것은 성인 이행기의 혼란을 줄여주고 안정되게 초기 성인기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의미를 갖는다. 일자리와 주거가 성인으로의 이행에 가장 중요하므로 해당 영역에 대한 지원이 높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자립 성취에 영향을 미치며, 농어촌에 거주하거나 만성질환이 있으면 자립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자립이 어려운 대상을 자립취약계층으로 설정하여 통합적인 자립 지원을 제공하여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자원으로 진행되었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플랜' 사업 분석 결과, 희망플랜으로 인한 취업 성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회참여의 활성화(activation)가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니트상태에서 학업이나 직업훈련 상태로, 또는 구직활동이나 기타 사회활동을 하는 활동형 니트상태로 변화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가는 위험성을 막을 수 있다. 이는 자립을 위한 출발선의 차이가 너무 커지지 않게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3) 질적연구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이 연구는 성인 이행기 청년들을 면담하여 양적 연구에서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자립 인식, 자립 조건/역량/실현 인식, 정책 욕구를 중심으로 청년들을 면담하였다. 면담의 주요한 결과와 시사점 및 정책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이식 및 자립 인식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새로운 성인기(emerging adulthood)의 등장으로 성인 이행 기간이 늘어나고 있었고, 생애과정의 탈표준화가 나타나 굉장히 다양한 성인 이행의 경로를 밟고 있었다. 청년들은 자신이 성인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아니다' 보다는 '가끔', '아직', '얼마 전부터' 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였다. 성인 연령에 성인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은 청년들의 내적 문제가 아닌 매우 정상적인 혼란 상태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인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청년정책으로서는 무의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생애과정의 탈표준화는 대학진학, 결혼, 연애, 취업, 휴식 등 생애과정의 탈표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 청년들의 경우 전통적인 연령 중심적 문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도 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청년들이 성인으로의 전환을 망설이는 이유는 자립 조건의 미충족과 전통적 가족 형태 속에서 의무

가 부과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립조건을 충족하는 것에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자립 격차를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청년들은 자립 조건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나, 이것이 좌절될 경우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비혼, 딩크와 같이 전통적인 사회적 결속 체계로 나아가지 않고자 하는 의도가 많아지기는 하였으나, 자립의 조건이 부족하여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립의 조건이 채워지면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자 하는 욕구도 강한 편이므로 자립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청년들의 자립 욕구에 대해 다양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정책의 지원이 주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저소득층에 몰려 있는 것도 청년의 자립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중산층의 청년들도 자립 격차를 느끼고 자립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자립 지원 욕구가 매우 넓고 혹은 보편적이라고 가정하는 게 타당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자립의 벽을 느끼는 청년들도 있었다. 일부 청년은 자립 과정에서 벽을 만나기도 하며, 이를 뛰어넘는 방안을 탐색하지만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였다. 고졸 취업 청년들은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하는 어려움과 함께 고졸로서 진로에 대한 벽과 차별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셋째, 정책 지원 욕구는 조건뿐만 아니라 주관적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역량과 준비도 중요하다. 상당수 청년들은 당장 취업과 같은 자립의 조건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 시기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했고, 진로 변경의 어려움에 대한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자립탐색 시기를 아동·청소년기부터 세밀하게 만들고, 성인 이행기 이것을 점진적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이번 보고서에서 다룬 갭이어(gap year)의 사례 혹은 전환학기제(transitional year) 사례와 연관이 있다.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과 함께 제대로 된 정보를 받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욕구는 폭넓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은 현재 청년정책은 자립 지원보다는 생활에 대한 가벼운 지원의 의미라는 이야기도 하였는데, 청년정책이 자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매우 소수였다. 대신 자립의 기반이 마련된 이후에는 사회적 연결망이나 일상 지원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 청년 자립지원 서비스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별화와 한 번에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으로의 변화가 모두 필요하다. 같은 니트 청년이라 하더라도 니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지원 욕구가 모두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은 단일한 대상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대상들의 총칭이므로 서비스의 개별화가 필요하다. 또한, 조각 조각난 서비스를 찾아가기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있으므로 사례관리가 포함된 통합지원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4) 국내 법률 및 공공·민간 정책사례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국내 법률 및 공공·민간 정책사례에서는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관련 국내 법·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법·제도들에서는 청년의 자립을 어떻게 명시하고 관련 지원 방안을 구성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법령 및 자치법규 분석 결과 '자립'은 너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거나, 너무 협소한 범위의 대상에게만 제공하는 서비스로 구체화되어 있었다. 「청년기본법」은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으로 부분적으로만 명시한 한계가 있었으며, 「아동복지법」은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자산형성 및 관리 등 자립지원의 영역을 구성하여 구체화하였으나 보호가 종료된 사람에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정의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립지원 규정, 제11조에서는 자립지원을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교육지원 등으로 규정하여 자립지원의 구체성과 포괄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지원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었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등은 경제적 자립, 주거자립 등을 명시하고, 청년정책전달체계에 자립지원 기능을 부여하고 있었으나, 청년센터 등 청년정책전달체계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자립지원 기능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청년 관련 정부 정책분석 결과 '자립'은 아직 포괄적 영역으로 분화되지 않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내용은 미흡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는 주거, 일자리, 교육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취약청년의 첫출발을 지원하는 점, 이를 위한 법제도와 추진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점, '청년도약준비금'과 같은 새로운 방식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는 점은 장점이었으나 모든 청년을 위한 사회적 권리와 같은 수준으로는 아직 발달하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청년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는 주거, 복지·문화, 참여·권리 영역에서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나 취약 청년을 위한 지원에 치중되어 있으며, 자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체계에 대한 구상도 미비한 상태였다. 경제적 자립 관련 정책으로 청년도

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청년들을 발굴하여 사회 진출을 돕는 체계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로 고용안전망의 기능을 하고 있었지만, 두 제도 간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구조상의 한계가 있었다. 주거 자립 관련 정책들은 다양한 유형의 공급과 시세보다 낮은 금리 및 임대료를 특징으로 하며, 상대적으로 엄격한 소득기준에 근거해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니 청년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기 어렵고 소득 기준은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에 비해 실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높게 설정되어 있어 주거비 부담 적정성에서는 개선이 필요하였다.

셋째, 민간사례는 정부의 공식적이고 경직된 서비스보다 유연하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니트 생활자가 운영하는 니트 컴퍼니의 예에서 니트 청년들에게는 구직 지원뿐만 아니라 지지체계가 필요하며, 고립되지 않도록 일상적 활동을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다. 또한 니트 생활자가 신규로 시작한 니트 인베스트먼트의 예에서 청년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기획하고 탐구하는 과정을 제공하는 것도 자립 지원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니트 기간 동안 자신의 역량개발뿐만 아니라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국내 법률 및 공공·민간 정책사례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 및 정책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전반기 법률 및 제도 간 통합이 필요하다. 성인 이행기 자립은 아동·청소년기부터의 진로탐색 및 역량개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기의 법률과 정책들이 아동·청소년기에서부터 자립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받고, 성인기로의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일어나야 한다.

둘째, 자립지원 세분화 및 정책화가 필요하다. 「청년기본법」은 경제적 자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자치법규 및 아동·청소년 관련법을 보면 자립의 영역이 단일하지 않고 분화된 것을 볼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자립지원을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교육지원 등으로 규정한 것, 「장애인복지법」에서 지자체장의 자립에 필요한 정보제공 의무(제32조의8), 장애유형·장애정도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제35조), 자립훈련 지원(자립훈련비 지급) (제43조) 등을 명시한 것 등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생애전반기 정책에서 이러한 자립이 세부적으로 명시되고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실제 다양한 자립 지원을 통하여 여러 상황에 놓인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자립 지원 전달체계 설정 및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현재 특수한 대상을 위한

자립 정책은 분절적,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립준비청년과 장애인의 자립에 대해서는 지원기관과 인력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일반 청년들을 위한 자립 지원은 전달체계가 미비하고 인력 기준도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전달체계와 인력 양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다만 기존의 청년전달체계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기보다는 기존 전달체계를 통해 이러한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혹은 지자체 청년전달체계는 정보제공 및 연계의 기능을 담당하고 기존의 복지 전달체계가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넷째, 유연한 방식의 진로탐색 및 진로개발을 통한 주관적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 민간 사례에서 본 것처럼 니트 상태의 청년들에게는 당장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것보다는 자기탐색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에 대해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진로탐색 및 진로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식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 사업은 실적 위주의 평가로 도입되기 어려운 방안일 수 있으나, 민간 위주의 사업으로는 발전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5) 해외사례 분석

해외사례 분석에서는 해외의 성인 이행기 청년의 지원 사례 핀란드의 청년보장제(European Youth Guarantee)와 여러 국가들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있는 갭이어(gap year)에 대해 살펴보았다.

핀란드의 청년보장제 사례는 크게 세 가지의 특성이 있다. 첫째, '오흐야모' 원스탑서비스센터에서는 청년정책을 단일한 창구에서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과 중앙정부 및 민간에서 파견된 인력이 함께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특성이 있었다. 청년이 다양한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기관에서 여러 정책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성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청년의 취업, 교육, 주거 욕구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특징적이었는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 선택지를 지원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실제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함으로써 적극적 자유(positive liberty)를 실현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년정책 전달체계(delivery system)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실제 다양한 급여, 서비스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자립의 최저 연령 기준이

15세로 지정되어 있어 아동·청소년기에서부터 청년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최저연령을 15세로 설정함으로써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청소년들, 학생들도 서비스 전달체계에 포괄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갭이어 사례에서는 크게 두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는 성인 이행기의 한 과정으로서의 갭이어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진로방향 설정, 독립심 증진, 삶의 기술 획득, 사회적 가치 형성 등 기초자립역량 형성 등 앞서 질적 연구에서 보았던 청년들의 욕구의 실현과 관련이 있었다. 둘째, 해외 갭이어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 갭이어 동안의 시간을 체계적으로 보내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대학의 경우 갭이어를 갖는 것을 독려하고, 이 시간을 체계적으로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하고 연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해외사례가 주는 시사점 및 한국 청년정책에 주는 함의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핀란드의 청년보장제 사례는 청년들이 니트상태를 경험하는 시기 정부의 지원을 권리로서 보장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청년들의 사회적 권리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청년보장제는 취업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니트 청년들이 취업, 교육, 훈련 등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의미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둘째, 핀란드에서 청년보장제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오흐야모는 원스탑 서비스로 청년정책을 전달하는 특성이 있다. 서비스 제공 인력도 지방지차단체 소속 직원과 중앙정부 및 민간에서 파견된 인력이 함께 한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수요자 중심적으로 서비스가 전달되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청년센터가 지자체 청년센터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의 예산만으로 운영되어 서비스의 질적 격차가 크다는 점,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이 청년센터가 무엇을 전달할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달체계만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무엇을 전달하는 전달체계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갭이어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문화로서 존재하고 있고, 청년들이 갭이어를 통해 학교 밖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진로탐색 및 개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갭이어가 주로 이루어지는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사이, 즉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사이는 우리나라 대학 대부분에서 휴학을 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갭이어는 영리적 성격으로도 다루어지고 있어 섣부른 프로그램화는 오히려 제도의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 생애전반기에 청년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성찰적 시기를 보낼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성인 이행기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이 연구의 정책제언은 “모든 청년이 권리로 누리는 자립 보장”이라는 비전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성인 이행기에 다양한 경험을 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제시하였고, 사회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여러 격차와 배제를 경험하고 좌절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해주었다. 이 연구는 오늘날 성인 이행기에 있는 청년들이 이러한 격차와 배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모든 청년들에게 맞춤형 자립 지원이 가능해야 하고, 이것이 사회권(social citizenship)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보았다(Chevalier, 2016). 우리 사회는 성인 이행기 청년을 독립된 개인으로 인정하고, 자립에 대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청년이 시민으로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비전이다.




* 출처: 저자작성

**그림 Ⅶ-3 본 연구의 비전, 원칙, 정책과제**

4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모든 청년을 위한 포용적 자립과 개인이 원하는 자립의 형태를 제공해야 한다는 개별화의 원칙(포용·개별화 원칙)이다. 이 원칙은 문헌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인 이행기의 출현 및 연장으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어 특정한 취약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들을 포괄해야 한다는 점, 삶의 경로가 다양해짐으로써 자립이 취업-결혼-출산 등의 보편적인 경로가 아닌 다양한 경로를 통한 자립이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다양성에 맞추어 개별화해야 한다는 점 등에 기반하여 도출하였다.[42]

두 번째, 홀로서기는 혼자 남겨지는 것이 아닌 함께 홀로서기 하면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연대와 독립성의 원칙(연결·독립성 원칙)이다. 이 원칙은 장애분야의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의 의미가 시설 안과 밖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지만, 장애인이 시설 밖에서도 생활지원 및 활동보조 등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에서 착안하여 설정한 원칙이다. 즉, 자립은 고립(isolation)이 아닌 연립(alliance)이 되어야 한다.[43]

셋째, 성인 이행기 과정의 자립은 개인이 가진 역량과 기회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역량 증진과 기회 제공의 원칙(역량증진·기회 제공 원칙)이다. 이 원칙은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Nussbaum(2009)의 역량 논의에서와 같이 자립지원은 단순히 물질적 조건(material condition)을 배분해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자립은 개인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서 도출된 것이다. 개인의 역량은 생애전반기에 걸쳐 축적되고 증진되며 적절한 사회적 기회를 통해 발현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인 역량증진 및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넷째,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생애전반기 동안의 다차원적인 지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애전반기 원칙과 법제도 통합 및 연계지원의 원칙(생애주기·통합 원칙) 등이다. 이 원칙은 면담조사에서 청년들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성인 이행기 자립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기에서부터의 역량 증진이 이루어지므로 생애주기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부처별로 분절된 법제도와 서비스 전달체계는 청년들의 자립을 부분적으로 지원하거나 많은 당사자들을 사각지대에 몰아넣는다는 점을 근거로 도출이 되었다. 이는 정책분석에서 분절된 체계들의 현황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네 가지 원칙이 기계적으로 세부 과제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연구진은 세부정책

42) 이에 대한 자문을 주신 뿌리의 집 김도현 대표, 신필식 사무국장, 한분영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43) 이에 대한 자문을 주신 노란들판 허신행 사무국장께 감사드린다.

의 적용과 설계에서 되도록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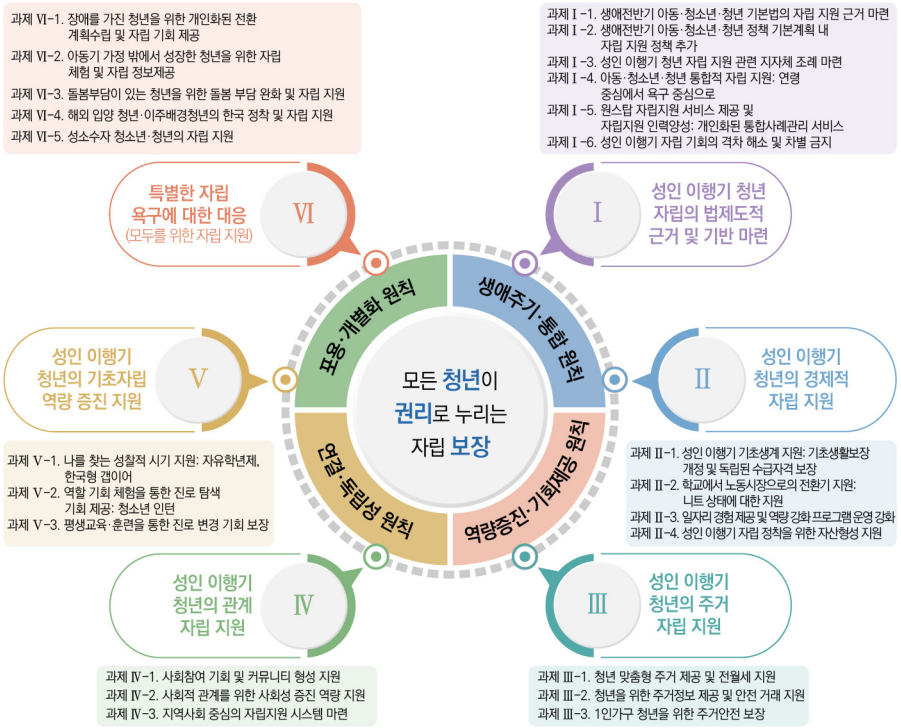
이 연구는 정책연구로써 종합적인 비전과 4가지 원칙을 토대로 6가지 영역의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첫 번째 영역은 '성인 이행기 청년 자립의 법제도적 근거 및 기반 마련'으로 청년 자립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와 전달체계를 구성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두 번째 영역은 '성인 이행기 청년의 경제적 자립 지원'으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개념에서부터 일자리와 자산형성까지를 포괄하는 영역이다. 세 번째 영역은 '성인 이행기 청년의 주거 자립 지원'으로 청년 주택 공급과 주거 부담 감소, 주거 정보의 지원과 주거 안전 보장 등을 포괄한다. 네 번째 영역은 '성인 이행기 청년의 관계 자립 지원'으로 고립된 자립이 아닌 사회 속에서 함께 하는 자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포괄하고 있다. 다섯째는 '성인 이행기 청년의 기초자립역량 증진 지원'으로 성인으로 나아가기 위한 진로탐색 및 기초적인 역량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져 있다. 여섯째로 '자립취약청년들의 특별한 자립 욕구에 대한 대응'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였다.

전반적으로 전체 과제는 법제도적 자립 인프라 마련(과제Ⅰ), 자립 영역에 대한 세부적 지원(과제Ⅱ~Ⅴ), 보편적 욕구에 더한 특별한 욕구에 대한 지원(과제Ⅵ)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진은 청년 연구를 수행하며 만나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던 청년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 과제들을 적용해보았다. 아직 청년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이 공고하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정책들만으로 청년들이 자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되도록 많은 청년들을 포괄하여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 3. 성인 이행기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한 세부정책

### 1) 세부 정책 과제 도출

이 절에서는 앞에서 제시된 6개 과제 영역을 바탕으로 24개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다. 모든 세부 과제들은 연구의 내용 분석을 토대로 작성이 되었고, 학계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반영된 세부 과제들도 있다. 이 연구의 비전, 원칙, 과제 영역, 세부 과제들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 출처: 저자작성

**그림 Ⅶ-4 본 연구의 비전, 원칙,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개념도**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6개 정책영역의 세부 정책과제들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이행기 청년 자립의 법제도적 근거 및 기반 마련은 청년 자립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와 전달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6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과제는 '생애전반기 아동·청소년·청년 기본법의 자립 지원 근거 마련 ', '생애전반기 아동·청소년·청년정책 기본계획 내 자립 지원 정책 추가', '성인 이행기 청년 자립 지원 관련 중앙의 지역균형 지원 및 지자체 조례 마련', '아동·청소년·청년 자립 통합적 지원: 연령 중심에서 욕구 중심으로', '원스탑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및 자립지원 인력양성', '성인 이행기 자립 기회의 격차 해소 및 차별금지' 등이다.

둘째, 성인 이행기 청년의 경제적 자립 지원은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개념에서부

터 일자리와 자산형성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4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성인 이행기 기초생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정 및 수급자격 보장',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전환기 지원: 니트 상태에 대한 지원', '일자리 경험 제공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강화', '성인 이행기 자립 정착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등이다.

셋째, 성인 이행기 청년의 주거 자립 지원은 청년 주택 공급과 주거 부담 감소, 주거 정보의 지원과 주거 안전 보장을 포괄하는 3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청년 맞춤형 주거 제공 및 전월세 지원', '청년을 위한 주거정보 제공 및 안전 거래 지원', '1인가구 청년을 위한 주거안전 보장' 등이다.

넷째, 성인 이행기 청년의 관계 자립 지원은 고립된 자립이 아닌 사회 속에서 함께 하는 자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3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참여 기회 및 커뮤니티 형성 지원', '사회적 관계를 위한 사회성 증진 역량 지원',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지원 시스템 마련' 등이다.

다섯째, 성인 이행기 청년의 기초자립역량 증진 지원은 성인으로 나아가기 위한 진로탐색 및 기초적인 역량을 지원하는 3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나를 찾는 성찰적 시기 지원: 자유학년제, 한국형 갭이어', '역할 기회 체험을 통한 진로 탐색 기회 제공: 청소년 인턴', '평생교육·훈련을 통한 진로 변경 기회 보장' 등이다.

여섯째, 자립취약청년의 특별한 자립 욕구에 대한 대응은 모두를 위한 자립 지원을 위하여 4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를 가진 청년을 위한 개인화된 전환 계획수립 및 자립 기회 제공', '아동기 가정 밖에서 성장한 청년을 위한 자립 체험 및 자립 정보제공', '돌봄부담이 있는 청년을 위한 돌봄 부담 완화 및 자립 지원', '해외 입양 청년·이주배경청년의 한국 정착 및 자립 지원' 등이다. 각 과제들은 제안 배경, 주요내용, 기대효과, 단기·중기·장기적 전략, 담당 부처, 신규과제 여부 등을 표기하여 과제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6개 정책영역과 24개 세부과제 중 첫 번째 과제인 성인 이행기 청년 자립의 법제도적 근거 및 기반 마련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 부처 및 서비스 전달체계는 항상 법제도적 근거를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표 Ⅶ-1 세부 정책 과제**

| 정책과제명 | 도출근거 | | | | |
|---|---|---|---|---|---|
| | 문헌 검토 | 양적 연구 | 질적 연구 | 법제도 및 민간사례 분석 | 해외 사례 분석 |
| **Ⅰ. 성인 이행기 청년 자립의 법제도적 근거 및 기반 마련** | | | | | |
| 과제 Ⅰ-1. 생애전반기 아동·청소년·청년 기본법의 자립 지원 근거 마련 | ◎ | | | ◎ | |
| 과제 Ⅰ-2. 생애전반기 아동·청소년·청년 정책 기본계획 내 자립 지원 정책 추가 | | | | ◎ | |
| 과제 Ⅰ-3. 성인 이행기 청년 자립 지원 관련 중앙의 지역균형 지원 및 자치체 조례 마련 | | | ◎ | ◎ | |
| 과제 Ⅰ-4. 아동·청소년·청년 자립 통합적 지원: 연령 중심에서 욕구 중심으로 | ◎ | ◎ | ◎ | | |
| 과제 Ⅰ-5. 원스탑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및 자립지원 인력양성 | | | ◎ | | ◎ |
| 과제 Ⅰ-6. 성인 이행기 자립 기회의 격차 해소 및 차별 금지 | ◎ | ◎ | ◎ | | ◎ |
| **Ⅱ. 성인 이행기 청년의 경제적 자립 지원** | | | | | |
| 과제 Ⅱ-1. 성인 이행기 기초생계 지원: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수급자격 보장 | | ◎ | ◎ | | ◎ |
| 과제 Ⅱ-2.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전환기 지원: 니트 상태에 대한 지원 | ◎ | ◎ | ◎ | ◎ | |
| 과제 Ⅱ-3. 일자리 경험 제공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강화 | | ◎ | ◎ | ◎ | |
| 과제 Ⅱ-4. 성인 이행기 자립 정착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 | | | ◎ | |
| **Ⅲ. 성인 이행기 청년의 주거 자립 지원** | | | | | |
| 과제 Ⅲ-1. 청년 맞춤형 주거 제공 및 전월세 지원 | | ◎ | ◎ | ◎ | |
| 과제 Ⅲ-2. 청년을 위한 주거정보 제공 및 안전 거래 지원 | | | ◎ | ◎ | |
| 과제 Ⅲ-3. 1인가구 청년을 위한 주거안전 보장 | | | ◎ | ◎ | |
| **Ⅳ. 성인 이행기 청년의 관계 자립 지원** | | | | | |
| 과제 Ⅳ-1. 사회참여 기회 및 커뮤니티 형성 지원 | | ◎ | ◎ | ◎ | |
| 과제 Ⅳ-2. 사회적 관계를 위한 사회성 증진 역량 지원 | | ◎ | ◎ | ◎ | |
| 과제 Ⅳ-3.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지원 시스템 마련 | | ◎ | ◎ | | |
| **Ⅴ. 성인 이행기 청년의 기초자립역량 증진 지원** | | | | | |
| 과제 Ⅴ-1. 나를 찾는 성찰적 시기 지원: 자유학년제, 한국형 갭이어 | | | ◎ | ◎ | ◎ |
| 과제 Ⅴ-2. 역할 기회 체험을 통한 진로 탐색 기회 제공: 청소년 인턴 | | | ◎ | | |
| 과제 Ⅴ-3. 평생교육·훈련을 통한 진로 변경 기회 보장 | | | ◎ | | |
| **Ⅵ. 자립취약청년의 특별한 자립 욕구에 대한 대응 (모두를 위한 자립 지원)** | | | | | |
| 과제 Ⅵ-1. 장애를 가진 청년을 위한 개인화된 전환 계획수립 및 자립 기회 제공 | ◎ | | ◎ | ◎ | |
| 과제 Ⅵ-2. 아동기 가정 밖에서 성장한 청년을 위한 자립 체험 및 자립 정보제공 | ◎ | | | ◎ | |
| 과제 Ⅵ-3. 돌봄부담이 있는 청년을 위한 돌봄 부담 완화 및 자립 지원 | ◎ | | | ◎ | |
| 과제 Ⅵ-4. 해외 입양 청년·이주배경청년의 한국 정착 및 자립 지원 | ◎ | | | ◎ | |
| 과제 Ⅵ-5. 성소수자 청소년·청년의 자립 지원 | ◎ | | | | |

2) 정책영역별 세부 정책 과제

## Ⅰ 성인 이행기 청년 자립의 법제도적 근거 및 기반 마련

성인 이행기 청년 자립의 법제도적 근거 및 기반 마련은 청년들이 법적, 제도적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인 자립 지원을 받는 방안에 관한 것이다. 이 과제는 6개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Ⅶ-2 성인 이행기 청년 자립의 법제도적 근거 및 기반 마련 영역의 주요 정책과제**

| 정책과제 |
|---|
| **Ⅰ. 성인 이행기 청년 자립의 법제도적 근거 및 기반 마련** |
| 과제 Ⅰ-1. 생애전반기 아동·청소년·청년 기본법의 자립 지원 근거 마련 |
| 과제 Ⅰ-2. 생애전반기 아동·청소년·청년 정책 기본계획 내 자립 지원 정책 추가 |
| 과제 Ⅰ-3. 성인 이행기 청년 자립 지원 관련 중앙의 지역균형 지원 및 지자체 조례 마련 |
| 과제 Ⅰ-4. 아동·청소년·청년 자립 통합적 지원: 연령 중심에서 욕구 중심으로 |
| 과제 Ⅰ-5. 원스탑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및 자립지원 인력양성 |
| 과제 Ⅰ-6. 성인 이행기 자립 기회의 격차 해소 및 차별 금지 |

첫째, 생애전반기 아동·청소년·청년 기본법의 자립 지원 근거 마련은 생애전반기 법제들이 자립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둘째, 생애전반기 아동·청소년·청년 정책 기본계획 내 자립 지원 정책 추가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 후 실제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셋째, 성인 이행기 청년 자립 지원 관련 지자체 조례 마련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화하기 위하여 제시되었다. 넷째, 아동·청소년·청년 통합적 자립 지원은 현대 사회의 성인 이행기는 탈표준화되고 있어 연령 중심의 획일적 지원에서 욕구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다섯째, 원스탑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및 자립지원 인력양성은 자립지원 서비스가 개인화된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 지원프로그램, 전문인력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여섯째, 성인 이행기 자립 기회의 격차 해소 및 차별 금지는 사회정책적으로 자립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자립을 취약하게 만드는 사회적 차별을 더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 과제 Ⅰ-1 생애전반기 아동·청소년·청년 기본법의 자립 지원 근거 마련

###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은 아동·청소년기에서부터 시작되나 현재 우리의 법률은 아동·청소년·청년의 자립을 매우 추상적인 형태로 다루거나, 너무 선별적인 형태로만 규정하고 있음.

○ 새로운 성인기의 출현으로 성인 이행기가 점차 길어지고 있고 자신의 힘만으로 자립하기 어렵다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성인 이행기 자립 지원의 욕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 역시 보편적인 욕구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오늘날 아동·청소년·청년기의 자립과 자립 지원에 대해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자립 지원의 근거를 생애전반기 기본적인 법률에 명시하여 관련 법제도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세부내용

○ 아동기, 청소년기는 성인기로의 이행기 전 단계 혹은 이행 과정 중으로 해석될 수 있음. 성인 이행기 경제적 자립, 주거 자립, 관계 자립 등 자립 조건 형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립역량을 기를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체계 및 아동·청소년 체계에서 실현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생애전반기 내에 아동, 청소년, 청년으로의 전환기를 지원하고, 서비스 연계를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분절적인 향후 아동정책기본계획,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청년정책기본계획에도 해당 사항으로 명시하고, 자립지원을 세분화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화함.

○ 생애전반기 자립지원 정책의 프레임은 자립의 조건, 역량, 기회의 세 가지 축으로 구체화하고, 보편적인 욕구에서부터 특수한 욕구까지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 첫출발 선을 맞추어 조건의 평등을 실현하는 방식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는 자립을 위한 보편적인 지원과 함께 특별한 욕구에 대한 지원이 하나의 틀 내에서 모두 기획되고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임. 모든 청년의 자립을 고려해야 함.

○ 또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자립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해 조율하고 발전시킬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법개정 등 특이사항

○ 자립 지원 및 자립 교육은 아동, 청소년, 청년의 발달단계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전환기 지원은 아동, 청소년, 청년 체계가 분절된 상태에서 각 전달체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 전환기 지원으로 서비스 연계 및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임. 이를 위해서는 단지 아동, 청소년, 청년 체계로의 이동과 정보연계에 그쳐서는 안 되며 당사자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들이 기능적으로 유사하게 각 체계에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아동복지법」 내 자립 지원 및 자립 교육 명시, 전환기 지원 명시

○ 「청소년기본법」 내 자립 지원 및 자립 교육 명시, 전환기 지원 명시

○ 「청년기본법」 내 자립 지원 및 자립 교육 명시, 전환기 지원 명시

### ▢ 관련부처 및 기관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표 Ⅶ-3 생애전반기 아동·청소년·청년 기본법의 자립 지원 근거 마련 과제의 추진사항**

| 추진일정 | | | 주관 부처 | 신규 여부 |
|---|---|---|---|---|
| 단기('23-'24) | 중기('25-'29) | 장기('30-'35) | | |
| ● | ● |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 신규 |

## 과제 Ⅰ-2 생애전반기 아동·청소년·청년 정책 기본계획 내 자립 지원 정책 추가

###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아동, 청소년, 청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관련 부처에 따라 분절되어 있어 근거법과 기본계획이 모두 별도로 속해 있음. 아동, 청소년, 청년의 삶의 질에는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과 발달단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해야 할 영역이 있으나 우리의 아동, 청소년, 청년 지원체계는 이러한 인간 중심적, 생애주기별 접근에 의해 고안된 결과물은 아님. 부처의 특성에 따른 서비스와 정책의 분절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 세부내용

○ 현재 자립지원 관련 정책은 아동정책기본계획,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청년정책기본계획 등 특수한 욕구를 가진 대상에 한정하여 기재되어 있음.

○ 또한 각 기본계획은 모든 대상을 포괄하는 것이 아닌 담당 부처의 기능을 중심으로 작성된 측면이 있음. 예를 들어,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비행청소년, 가출 청소년, 저소득 청소년, 나홀로 청소년 등으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으나 빈곤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는 일부 사업만 기재되어 있고, 장애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누락되어 있음.

○ 앞서 근거법 개정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자립 지원 및 자립 교육, 전환기 지원을 명시하고 관련 정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자립 지원은 자립의 조건, 역량, 기회의 조합이므로 경제적 지원, 주거 지원, 관계 지원, 의료 지원, 교육 지원 등의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사례관리(case management)를 통하여 지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통합사례관리(case management)는 연속적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측면이나 실제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전달체계에는 사례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기관들이 있음. 생애전반기 정책 개발에는 각 연령에서 통합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각 체계들 간의 연계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명시해야 함.

▢ 법개정 등 특이사항

○ 아동정책기본계획,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청년정책기본계획에 생애전반기 기본계획의 기본 이념은 아동, 청소년, 청년이 성인기로의 이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해주는 것이라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에 자립에 관한 통합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통합사례관리 전달체계가 보편적인 대상에게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및 조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정책전달체계에의 접근성을 높이고, 연속적으로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실현.

▢ 관련부처 및 기관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표 Ⅶ-4 생애전반기 아동·청소년·청년 정책 기본계획 내 자립 지원 정책 추가 과제의 추진사항**

| 추진일정 | | | 주관 부처 | 신규 여부 |
|---|---|---|---|---|
| 단기('23-'24) | 중기('25-'29) | 장기('30-'35) | | |
| ● | |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 신규 |

## 과제 Ⅰ-3 성인 이행기 청년 자립 지원 관련 중앙의 지역균형 지원 및 지자체 조례 마련

###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는 중앙의 법률보다 자립지원이 세분화되고 구체화되어 있는 장점이 있음. 다만, 지역 간 조례 및 정책 차이로 지역 간 격차가 커질 수 있음.

○ 실제 이번 연구의 면담조사에서 청년들은 각 지역 별 청년정책의 큰 격차와 자립 조건의 차이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였음. 지역 격차를 줄이는 방안 모색 필요.

### ▢ 세부내용

○ 지방자치제의 장점인 지역 밀착형 정책 개발과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지자체로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유럽의 청년보장제가 청년보장이라는 우산 개념을 각 나라에 확대하면서, 각 나라의 초기 정책 인프라의 격차를 보완하는 방식이 유럽연합의 기금을 각 나라에 지원하는 것이었음.

○ 우리나라도 청년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에서 청년이 자립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청년정책기금 지원이 필요함.

### ▢ 법개정 등 특이사항

○ 가칭 “전국 청년도약기금”을 도입. 지역 간 청년정책의 격차 해소 및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자금으로 활용. 청년에 대한 직접 지원 포함.

### ▢ 관련부처 및 기관

○ 국무조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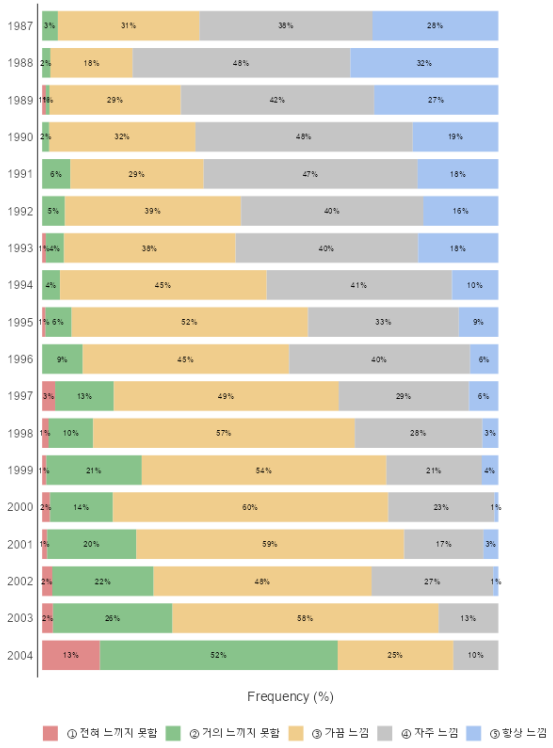
**표 Ⅶ-5 성인 이행기 청년 자립 지원 관련 지자체 조례 마련 과제의 추진사항**

| 추진일정 | | | 주관 부처 | 신규 여부 |
|---|---|---|---|---|
| 단기('23-'24) | 중기('25-'29) | 장기('30-'35) | | |
| | ● | | 국무조정실 | 신규 |

## 과제 Ⅰ-4 아동·청소년·청년 자립 통합적 지원: 연령 중심에서 욕구 중심으로

###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아동·청소년·청년기 자립 지원은 연령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대사회에서 생애과업은 점차 탈표준화되고 있음. 우리의 연구에서도 청년들이 본인들을 성인으로 인식했다는 연령이 점차 늦어지고 있고,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한 연령을 벗어날 때까지 스스로 성인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이는 질적연구를 통해 자립과 매우 유사한 패턴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으므로, 역연령(chronological age)을 기준으로 한 서비스 전달은 매우 한정적인 효과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즉, 서비스는 연령기준이 아닌 욕구기준으로 전달되어야 함.




*출처: 저자작성, 3장 심화분석의 연구결과임

**그림 Ⅶ-5 주관적 성인 인식 결과(출생연도별)**

▢ 세부내용

○ 연령 기준의 사각지대는 자립준비청년의 서비스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등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 아동·청소년·청년기 자립뿐만 아니라 청년기를 벗어난 상황에서의 자립 지원도 중요함. 연령을 기준으로 한 자립지원 정책을 욕구(needs) 중심의 자립지원 정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정책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접근성에 더 유리할 경우, 적어도 연령대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서비스 수급권을 박탈당하거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은 개선해야 함.

○ 생애주기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체계 안에서 연령 특화적 전달체계와 서비스가 제공되는 형태로 발전되어야 모든 청년을 위한 자립 지원 정책,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을 위한 자립 지원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임.

▢ 법개정 등 특이사항

○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의 대상자 연령 정의를 기준으로, 연령 범위를 벗어났으나 욕구가 상존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 방법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

○ 현재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분절되어서 연령도래로 인한 서비스 종결이 가지고 오는 청소년들의 피해를 책임지는 기관이 없음. 생애전반기 혹은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 책임이 있는 부처가 생긴다면, 연령도래로 인한 종결은 서비스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그 책임은 해당 부처가 지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 관련부처 및 기관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표 Ⅷ-6 아동·청소년·청년 자립 통합적 지원: 연령 중심에서 욕구 중심으로 과제의 추진사항**

| 추진일정 | | | 주관 부처 | 신규 여부 |
|---|---|---|---|---|
| 단기('23-'24) | 중기('25-'29) | 장기('30-'35) | | |
| ● | |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 신규 |

## 과제 Ⅰ-5 원스탑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및 자립지원 인력양성

### ▢ 제안배경 및 필요성 (신규)

○ 우리나라의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아직 관계 법령이 정비되지도 않은 채로 급속히 양적으로 확대되어 질적 개선이 절실한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센터에서의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청년센터의 프로그램이 정비되고, 전달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전문화되어야 하며, 이를 전달하는 인력도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청년센터가 청년정책 전달체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핀란드의 '오흐야모'와 같은 원스탑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청년들의 자립 지원을 위한 경제적 자립, 주거 자립, 관계 자립, 주관적 자립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청년센터와 아동·청소년기 사회안전망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간의 연계가 필요함. 성인 이행기 청소년, 청년 전달체계는 청소년 안전망 및 성장 지원망을 통한 청소년 기관과 청년 기관의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 필요. 원스탑 자립지원센터를 구상하되 다른 연령을 포괄하고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세부내용

○ 청년 자립을 지원하는 원스탑 청년센터로의 개편. 원스탑 청년센터에서 청년의 경제, 고용, 주거, 관계, 의료, 건강 차원의 자립 지원 사업 지원.

○ 청년 자립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력 기준 도입. 단, 전문인력의 양성은 기존의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의 직업으로 해야할지, 청년에 특화된 전문가(youth specialist)를 신규로 양성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함.

○ 인력 기준은 전문성에 기반한 인력 선발 기준과 성범죄자의 취업제한과 같은 결격 기준 마련이 포함됨.

▢ 법개정 등 특이사항

○ 「청년기본법」내 청년정책 전달체계 관련 조항의 신설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의 주요 내용 참조)

○ 「청년기본법 시행령」내 청년정책 전달체계 인력 기준 관련 조항의 신설

(※ 서울시는 2022년 서울청년센터 종사자에 대한 인력 선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참고할 수 있음)

**표 Ⅷ-7 「청년기본법」 내 청년정책전달체계 추가(안)**

| 현행 | 개정안 |
|---|---|
| (없음) | **제25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운영)**<br>**①지자체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br>**1. 청년지원정보 집적·제공 및 분야별 종합상담 사업**<br>→ **2.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br>**3. 청년의 경제, 고용, 주거, 관계, 의료, 건강 차원의 자립 지원 사업**<br>**4. 지역별 청년 활동 공간 및 기반 제공**<br>**5. 그 밖에 청년의 생활권 기반 정책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 관련부처 및 기관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표 Ⅷ-8 원스탑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및 자립지원 인력양성 과제의 추진사항**

| 추진일정 | | | 주관 부처 | 신규 여부 |
|---|---|---|---|---|
| 단기('23-'24) | 중기('25-'29) | 장기('30-'35) | | |
| ● | ● | | 국무조정실 | 신규 |

## 과제 Ⅰ-6 성인 이행기 자립 기회의 격차 해소 및 차별 금지

### ▢ 제안배경 및 필요성 (신규)

○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는 청년들의 자립 격차가 실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또한 청년들은 이러한 격차의 원인을 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 차이로 인식하고 있었음. 자립 격차 해소는 청년정책의 과제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청년들의 사회 진출에도 차이가 있어 자립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으나 성별, 연령, 학력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장애, 성정체성, 출신지역 등도 차별의 근거가 되고 있음. 특수한 욕구를 가진 청년들은 경제적 장벽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장벽들도 경험하고 있음. 이러한 사회문화적 요인들도 청년들의 원활한 첫출발을 막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서중원, 2018; 인권기록센터 사이 & 곰곰, 2021; 우승연, 2020).[44]

○ 청년기 자립은 가정의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정 이외의 제도(학교, 청소년기관)에서도 청년기 자립을 위한 지원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

### ▢ 세부내용

○ 청소년기 학교를 통한 자립 역량 증진 기회 제공을 통한 자립 기회의 격차 해소

○ 차별금지를 위한 법적, 정책적 근거 마련

44) 자립격차에 대한 개념정의와 측정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청년 집단 내부의 자립 격차를 가장 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자살률일 수 있음. 발달장애 청년, 성소수자 청년, 양육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 등은 비교적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어 여러 자립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 법개정 등 특이사항

○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의 제정 및 적용 (권인숙 의원안 참조)

**표 Ⅶ-9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권인숙 의원 등 17인, 제2112330호(2021. 8. 31.))**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칙) 모든 사람은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 이용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용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평등권을 갖는다.

제4조(차별의 개념)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고용
2.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3.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4. 법령과 정책의 집행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그 기준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차별로 본다.

③ 제1항 각 호의 영역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은 차별로 본다.

④ 성희롱은 차별로 본다.

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는 차별로 본다.

## ▢ 관련부처 및 기관

○ 법무부

**표 Ⅶ-10 성인 이행기 자립 기회의 격차 해소 및 차별 금지 과제의 추진사항**

| 추진일정 | | | 주관 부처 | 신규 여부 |
|---|---|---|---|---|
| 단기('23-'24) | 중기('25-'29) | 장기('30-'35) | | |
| ● | | | 법무부 | 신규 |

## Ⅱ 성인 이행기 청년의 경제적 자립 지원

성인 이행기 청년의 경제적 자립이란 일자리를 통해 경제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통해 자산형성을 하여 경제적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성인 이행기 청년의 경제적 자립 지원은 청년들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전환하면서 경험하는 상황에 대한 지원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고, 4가지의 정책과제로 구성하였다.

**표 Ⅶ-11 성인 이행기 청년의 경제적 자립 지원 영역의 주요 정책과제**

| 정책과제 |
|---|
| **Ⅱ. 성인 이행기 청년의 경제적 자립 지원** |
| 과제 Ⅱ-1. 성인 이행기 기초생계 지원: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수급자격 보장 |
| 과제 Ⅱ-2.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전환기 지원: 니트 상태에 대한 지원 |
| 과제 Ⅱ-3. 일자리 경험 제공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강화 |
| 과제 Ⅱ-4. 성인 이행기 자립 정착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

첫째, 성인 이행기 기초생계 지원은 일정한 수준 이하의 생활을 할 경우 국가의 공공부조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아야 하나 현재의 법제는 청년의 기초보장 사각지대를 유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둘째,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전환기 지원은 청년들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원활할 수 있게 지원하고, 특히 바로 전환하지 못하여 니트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예방적·즉시적 지원을 위해 제안되었다. 셋째, 일자리 경험 제공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은 사회 초년생으로 사회에서 출발해야 하는 청년들이 점진적으로 경험을 쌓고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넷째, 성인 이행기 자립 정착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은 소득활동을 통해 돈을 모아 자산을 형성하여 독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과제 II-1 성인 이행기 기초생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수급자격 보장

### ▢ 제안배경 및 필요성 (신규)

○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립이 기반이 필요함. 일부 청년들은 실제로 빈곤한 상태에 있어 자립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음. 빈곤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이에 대해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핀란드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핀란드의 청년들은 다양한 사회 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진로의 기회를 보장받고 있음. 청년들이 빈곤에서 탈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로에 대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생계의 보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추가적으로 역량을 개발하고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접할 수 있어야 함.

○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부모와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 가구로 보고 개별가구로 인정하지 않음. 즉,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개별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음.

### ▢ 세부내용

○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입 및 자립 정착을 위해서는 성인 이행기에도 기초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따라서 30세 미만의 사람의 국민기초생활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25세로 설정하거나, 연령 조항을 폐지는 방향으로 개정 필요.

○ 국가가 청년을 자녀(child)가 아닌 독립적인 개인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사회보장 수급권을 인정하여 급여를 제공할 때 청년들의 더 안정적인 자립이 가능할 것임. 단 청년들의 사회 참여는 빈곤의 덫(poverty trap)이나 낙인(stigma)가 발생하는 공공부조보다는 수당의 형태가 더 바람직할 수 있음

## ▢ 법개정 등 특이사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

**표 Ⅶ-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내 개별가구 규정 변경(안)**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개별가구)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다.<br>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br>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br>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br>**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br>다.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 제2조(개별가구)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다.<br>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br>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br>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br>나. **(삭제)**<br>다.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

## ▢ 관련부처 및 기관

○ 보건복지부

**표 Ⅶ-13 성인 이행기 기초생계 지원: 기초생활보장 개정 및 수급자격 보장 과제의 추진사항**

| 추진일정 | | | 주관 부처 | 신규 여부 |
|---|---|---|---|---|
| 단기('23-'24) | 중기('25-'29) | 장기('30-'35) | | |
| | ● | | 보건복지부 | 신규 |

## 과제 II-2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전환기 지원: 니트 상태에 대한 지원

### ▢ 제안배경 및 필요성 (기존 및 신규)

○ 새로운 성인기(emerging adulthood)의 출현으로 인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전환이 더 길어지고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취업 준비를 하거나 졸업 유예를 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음.

○ 최근 니트 청년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전환기에 특정한 시간의 휴지기를 갖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음. 예를 들어, 휴학, 졸업유예, 취업준비(취준) 기간 등 다양하게 나타남. 이 기간에 청년들이 큰 문제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청년들은 장기 니트 단계로 들어서고 있어 청년들이 사회안전망 혹은 고용안전망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함.

### ▢ 세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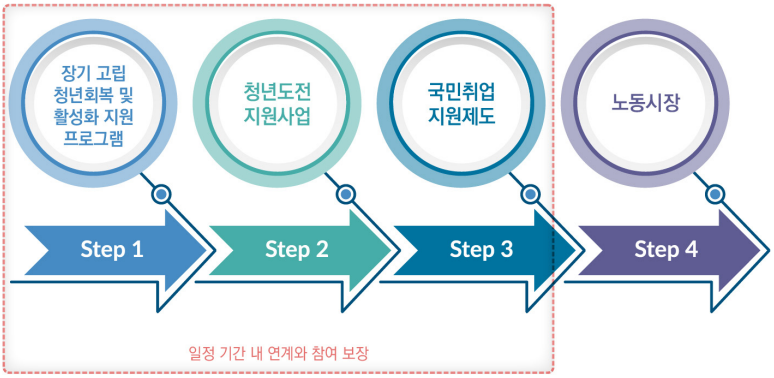
○ 현재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 지원체계가 비교적 많은 예산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장기 니트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들을 위한 정책도 함께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살펴본 희망플랜 사례와 같이 성인 이행기 빈곤 및 니트 상태를 경험하여 기초적인 사회성 훈련 등 활성화가 필요한 대상을 위한 기초 프로그램(장기고립 청년 회복 및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을 기초로 설정하고, 이후 청년도전지원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하여 노동시장 진출까지 연계해주는 방안이 있음.

○ 이러한 체계적 지원으로 사회성 훈련 및 관계적 자립, 진로탐색 및 진로 역량 개발, 직업능력 및 기술 개발 등 일자리로의 역량을 개발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이후 주거안정 및 안정적 생활을 위한 청년정책으로의 연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이러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사업기간 연장, 사업기관의 다년도 서비스 제공, 서비스 프로그램의 차등화 등 청년이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사후관리 등으로 청년취업지원 서비스 및 청년정책과 연결되어 일정 기간 내 청년서비스 내의 연계와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참여자 인센

티브는 '청년도약자금'을 활용하되 이 사업이 목표로 하는 대상자들이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출처: 유민상, 신동훈(2022) 그림 V-2에서 발췌

**그림 Ⅷ-6 니트 청년을 위한 단계적 프로그램 설계(안)**

## ▢ 법개정 등 특이사항

○ 「청년기본법」 개정 혹은 청년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지원하는 근거법률 마련

○ 장기 고립 청년 회복 및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필요(보건복지부)

○ 고용부가 진로지원과 취업지원으로의 연계를, 복지부가 참여자 발굴 및 활성화를 한 프로그램 안에서 각기 담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무적 논의 필요

## ▢ 관련부처 및 기관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표 Ⅷ-14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전환기 지원: 니트 상태에 대한 지원 과제의 추진사항**

| 추진일정 | | | 주관 부처 | 신규 여부 |
|---|---|---|---|---|
| 단기('23-'24) | 중기('25-'29) | 장기('30-'35) | | |
| ● | ● |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 기존&신규 |

## 과제 II-3 일자리 경험 제공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강화

▢ 제안배경 및 필요성 (신규·기존 모두 해당)

○ 청년들은 자립을 위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자립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청년들은 일을 함으로써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이후 자립단계를 거치므로 청년들이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과제 II-2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전환기 지원: 니트 상태에 대한 지원'의 연속선상에서 청년들이 실업과 취업의 이분법적인 상태가 아니라 서서히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세부내용

○ 청년들의 일자리 경험 기회 제공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어려워지면서 경력을 쌓을 방법이 없으므로 청년 인턴과 같은 공공 일자리, 사회적 경제와 같은 비영리 영역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 경험을 하게 만드는 방안임. 청년도전지원사업과 같은 니트 청년을 위한 사회 진출 프로그램 이수 시 청년 인턴 기회의 가산점을 준다면 청년들에게는 사회 진출을 위한 기회와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개선 및 강화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은 한국형 실업부조제도가 청년의 실업기간 동안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취업지원을 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청년이 장기적 시각으로 취업역량 강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필요

▢ 법개정 등 특이사항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등

▢ 관련부처 및 기관

○ 고용노동부

**표 VII-15 1인가구 청년을 위한 주거안전 보장 과제의 추진사항**

| 추진일정 | | | 주관 부처 | 신규 여부 |
|---|---|---|---|---|
| 단기('23-'24) | 중기('25-'29) | 장기('30-'35) | | |
| ● | ● | ● | 고용노동부 | 혼합 |

## 과제 II-4 성인 이행기 자립 정착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 ▢ 제안배경 및 필요성 (신규·기존 모두 해당)

○ 성인 이행기에 일자리를 갖는 것은 경제적 자립의 필요조건일 수는 있으나 충분조건은 아님. 자산형성이 동반될 때 자립 정착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소득 활동이 바탕이 된 자산형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청년 자산형성 관련 정책은 부처별(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로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사업에 따른 지원 규모의 차이도 큼.

○ 다수의 청년과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음.

○ 윤석열 정부 공약사항으로 추진될 청년도약계좌와 다른 자산형성 지원 사업과 지원규모, 대상, 중복 사항 등에서 정리가 필요함.

### ▢ 세부내용

○ 기존 청년 자산형성 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적금, 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과 신규 사업(청년도약계좌) 등을 통합해 운영하는 원스탑 청년 자산형성 지원 체계를 구축.

○ 개인 소득수준, 자산규모, 가구소득 등에 따라 지원의 규모를 다르게 설계하되, 특정 조건에 부합하면 추가적인 혜택을 얹는 블록쌓기 방식으로 운영. 예컨대, 중소기업 취업, 근속기간 등에 따라 청년내일채움공제 수준의 혜택을 추가하는 방식 등을 의미함. 청년 연령 조건에만 부합하면 배제되는 인원은 없도록 하되, 개인소득, 자산규모, 가구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는 지원의 수준은 최소한으로 유지.

▢ 법개정 등 특이사항

○ 각 사업의 법적 근거에 해당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조례특례제한법」(2022.12.31. 일몰 예정) 등 유지.

○ 부처 간 협업 필요성 증대와 사업대상 규모 확대로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 부서 신설 고려.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표 Ⅷ-16 성인 이행기 자립 정착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과제의 추진사항**

| 추진일정 | | | 주관 부처 | 신규 여부 |
|---|---|---|---|---|
| 단기('23-'24) | 중기('25-'29) | 장기('30-'35) | | |
| | ● |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 혼합 |

## Ⅲ 성인 이행기 청년의 주거 자립 지원

성인 이행기 청년의 주거 자립 지원은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거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주거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3가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Ⅶ-17 성인 이행기 청년의 주거 자립 지원 영역의 주요 정책과제**

| 정책과제 |
|---|
| **Ⅲ. 성인 이행기 청년의 주거 자립 지원** |
| 과제 Ⅲ-1. 청년 맞춤형 주거 제공 및 전월세 지원 |
| 과제 Ⅲ-2. 청년을 위한 주거정보 제공 및 안전 거래 지원 |
| 과제 Ⅲ-3. 1인가구 청년을 위한 주거안전 보장 |

첫째, 청년 맞춤형 주거 제공 및 전월세 지원은 청년들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둘째, 청년을 위한 주거정보 제공 및 안전 거래 지원은 청년들이 안전하게 괜찮은 주거지를 찾고 전월세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주거 관련 교육을 하고 주거 관련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보장하는 것을 위해 제안되었다. 셋째, 1인 가구 청년을 위한 주거안전(safety) 보장은 혼자 밖에서 거주하는 거에 대해 위험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해 1인가구 청년들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정책설계에서 한 가지 유념할 사항은 자립취약청년들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거 자립이란 안정된 주거에서 개인이 혹은 가족(동반자)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취약한 상황의 청소년의 주거 자립 지원을 보강하고, 청소년 부모(미혼모, 미혼부 포함) 등 자립이 어려운 대상을 위한 주거 자립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연구의 정책제언 Ⅵ에 포함된 특별한 욕구를 가진 청년들에 대한 주거 자립 지원 정책의 수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과제 Ⅲ-1 청년 맞춤형 주거 제공 및 전월세 지원

### ▢ 제안배경 및 필요성 (기존)

○ 청년의 각기 다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유형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변시세 대비 일정 비율을 임대료 책정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임대료로 인해 사업참여를 위한 소득기준과 임대료 간 불일치가 발생함.

○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가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는 경우 계약을 포기하거나, 중도퇴거를 선택하거나, 또는 생활유지를 위해 빚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입주대상자를 찾기 어려워 공실로 유지되기도 하므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45] [46]

○ 비선호 지역에 위치한 노후화된 주택, 그리고 작은 면적 등 역시 수요자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이 요청됨.

### ▢ 세부내용

○ 예컨대,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경쟁률, 미계약율, 중도 퇴거율 등을 고려해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소득 기준을 완화해(4순위: 본인 소득기준 120% 이하) 지원자를 모집하고, 해당 지역의 경우 상·하위 구간의 임대료 수준을 보다 차등화해 적용.

45) 서울신문 보도자료 (2022.01.26.). "1억 목돈 없어요… 청년주택의 희망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126001012 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46) 쿠키뉴스 보도자료 (2022.06.11.) "4차까지 모집했지만… 청년 외면 받는 행복주택."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6080212 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표 Ⅷ-18 청년매입임대주택 소득자산 기준 및 임대조건 개정(안)**

**현행(2021년 기준)**

| 구분 | 소득 & 자산 | 임대조건 |
|---|---|---|
| 1 순위 | 자격 판단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에 속하는 청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
| 2 순위 | 본인과 부모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
| 3 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 |

→

**개정안**

| 구분 | 소득 & 자산 | 임대조건 |
|---|---|---|
| 1 순위 | 자격 판단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에 속하는 청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30% |
| 2 순위 | 본인과 부모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
| 3 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
| 4 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 120% 이하 | 보증금 3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60% |

○ 지역별 임대료 상한선도 함께 설정하여 청년층이 부담해야 하는 임대료 조정

○ 기존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실시 및 매입임대 지원 단가 현실화로 수요자 친화적 공급 확대

## ▢ 법개정 등 특이사항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 ▢ 관련부처 및 기관

○ 국토교통부

**표 Ⅷ-19 청년 맞춤형 주거 제공 및 전월세 지원 과제의 추진사항**

| 추진일정 | | | 주관 부처 | 신규 여부 |
|---|---|---|---|---|
| 단기('23-'24) | 중기('25-'29) | 장기('30-'35) | | |
| ● | | | 국토교통부 | 기존 |

## 과제 Ⅲ-2 청년을 위한 주거정보 제공 및 안전 거래 지원

###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층이 전세 사기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2.08.17.).

○ 전세 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피해 예방이 우선해야 함. 주거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청년 주거 정책에 관한 정보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청년들이 관련 정책을 조합해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 세부내용

○ (정부) 전세사기예방센터를 통해 전세 사기와 관련한 직접적 정보 제공과 피해 예방을 위한 주거 역량 강화, 안전한 거래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지역별 밀착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문가 및 지원단 양성,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자 확대

○ (지자체) 청년 대상 교육, 주거 정책 가이드, 밀착 지원을 할 수 있는 자생적 커뮤니티 조성 및 확대 (민달팽이 유니온 활동 및 강동구 청년 주거자립 성공 프로젝트 참고)

### ▢ 법개정 등 특이사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지자체 청년, 또는 청년주거 관련 조례 제·개정

**표 Ⅶ-20 지자체 청년 주거 관련 조례 예시(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청년주거사업)** 시장은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의 전월세보증금등 융자지원사업
2. 시설복합화사업과의 연계 등 청년주택 공급사업
3. 청년가구의 임대료 보조사업
4. 청년주거 관련 정보 제공사업
5. 창업지원주택 등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주거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 관련부처 및 기관

○ 국토교통부, 각 지자체

**표 Ⅶ-21 청년을 위한 주거정보 제공 및 안전 거래 지원 과제의 추진사항**

| 추진일정 | | | 주관 부처 | 신규 여부 |
|---|---|---|---|---|
| 단기('23-'24) | 중기('25-'29) | 장기('30-'35) | | |
| ● | | | 국토교통부, 각 지자체 | 신규 |

## 과제 Ⅲ-3 1인가구 청년을 위한 주거안전 보장

### ▢ 제안배경 및 필요성 (신규·기존 모두 해당)

○ 1인가구 청년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동거인의 부재로 범죄에 더욱 취약할 수 있음. 실제로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5대 범죄율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음(김원종, 2020). 주거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은 청년의 주거 자립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 세부내용

○ (정부) 낙후지역 정비 사업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청년 주택 공급 확대
○ (정부) 보행안전을 위한 CCTV 설치 등으로 안전거리 조성 사업 추진
○ (지자체) 1인가구를 위한 이상신호 감지 및 보호물품 지원(서울시 1인가구 도어지킴이,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안심홈세트)

### ▢ 법개정 등 특이사항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 ▢ 관련부처 및 기관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표 Ⅶ-22 1인가구 청년을 위한 주거안전 보장 과제의 추진사항**

| 추진일정 | | | 주관 부처 | 신규 여부 |
|---|---|---|---|---|
| 단기('23-'24) | 중기('25-'29) | 장기('30-'35) | | |
| ● | ● | ●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 혼합 |

## Ⅳ 성인 이행기 청년의 관계 자립 지원

관계적 자립이란 원가족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 선택을 할 수 있고, 개인으로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상호의존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과제는 이를 위하여 3가지 과제를 정리하였다.

**표 Ⅶ-23 성인 이행기 청년의 관계 자립 지원 영역의 주요 정책과제**

| 정책과제 |
|---|
| **Ⅳ. 성인 이행기 청년의 관계 자립 지원** |
| 과제 Ⅳ-1. 사회참여 기회 및 커뮤니티 형성 지원 |
| 과제 Ⅳ-2. 사회적 관계를 위한 사회성 증진 역량 지원 |
| 과제 Ⅳ-3.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지원 시스템 마련 |

첫째, 사회참여 기회 및 커뮤니티 형성 지원은 홀로서기를 하는 청년들이 혼자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타인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상호의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둘째, 사회적 관계를 위한 사회성 증진 역량 지원은 아동·청소년기의 부정적 경험 등 사회적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에서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셋째,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지원 시스템 마련은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에서 공적 지원체계 및 사적 지지체계를 통해 자립을 보장받거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 과제 Ⅳ-1 사회참여 기회 및 커뮤니티 형성 지원

###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본 연구의 청년 면접조사에서 청년들은 자립을 위해서는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하며, 그들로부터 정보를 얻거나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음. 민간기관인 니트생활자의 니트컴퍼니의 예에서와 같이 가벼운 역할과 상호 간의 지지적 관계는 니트 상태의 고통 완화와 주관적 안녕감 증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

○ 1인 가구 청년들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으며, 이러한 욕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음. 커뮤니티 형성의 욕구는 청년들이 느끼는 외로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의 완화와 예방 차원에서도 중요할 것임.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안부(생사)를 확인해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6%였으며, 2022년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한 니트 청년 대상의 조사에서는 12%로 나타나 사회적 연결망이 부족한 청년들의 비율이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유민상, 신동훈, 2021, 2022)

### ▢ 세부내용

○ 청년센터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및 커뮤니티 형성 지원

### ▢ 법개정 등 특이사항

○ 지자체 조례를 통하여 청년센터의 기능에 '청년들의 관계적 자립 지원' 추가

### ▢ 관련부처 및 기관

○ 지자체 청년센터

**표 Ⅷ-24 사회참여 기회 및 커뮤니티 형성 지원 과제의 추진사항**

| 추진일정 | | | 주관 부처 | 신규 여부 |
|---|---|---|---|---|
| 단기('23-'24) | 중기('25-'29) | 장기('30-'35) | | |
| ● | | | 지자체 청년센터 | 신규 |

## 과제 Ⅳ-2 사회적 관계를 위한 사회성 증진 역량 지원

###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자립하기 어려워하는 청년들 중에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고립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 정서적 측면과 아울러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음. 자립이 취약한 청년들에게는 사회적 연결망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

○ 자립 취약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일시적 상담의 관행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청소년 당사자가 고립되지 않고, 사회 속에서 자신과 연관된 모임에 소속되어 상호 의지하며 함께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 세부내용

○ 단절되어 있는 청년들은 사회적 관계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초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초기에는 사회성을 증진시키는 전략에서부터 중장기적으로 정보공유 및 자립정보지원 네트워크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고려할 수 있음.

○ 단, 이러한 지원은 사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생애전반기를 걸쳐 지원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청소년기부터 시작되는 사회적 고립과 니트화가 청년의 자립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청소년기부터 사회적 고립과 니트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학교 안에서 고립을 호소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마련). 이에 따라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에서 사회와 단절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으로 개념을 확대하면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 법개정 등 특이사항

○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생애전반기 동안의 고립 예방 및 연결망 형성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임.

○ 청년 사업으로서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가 문화로서 수용되고 포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관계망을 형성하여 니트 청년을 지원하는 니트 생활자의 니트 컴퍼니 사례를 검토할 수 있으며, 공공에서 민간 위탁을 통해 사업을 확대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예를 들어 니트 생활자의 2022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위탁운영 사례 참고.

○ 단지 사회성 훈련만으로는 사회적 자본 형성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역동을 고려하여 사업 설계를 진행할 수도 있음. 예를 들어, 특수한 욕구가 있는 청년은 본인의 취약 특성과 유사한 집단과 함께 교류하면서 자조집단과 같이 위안을 받고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음. 장애인 인권단체 노란들판 혹은 노들장애인야학의 사례와 같이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며 여러 사회참여의 기회를 창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 관련부처 및 기관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표 Ⅶ-25 사회적 관계를 위한 사회성 증진 역량 지원 과제의 추진사항**

| 추진일정 | | | 주관 부처 | 신규 여부 |
|---|---|---|---|---|
| 단기('23-'24) | 중기('25-'29) | 장기('30-'35) | | |
| ● | ● |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신규 |

## 과제 Ⅳ-3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지원 시스템 마련

###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청년전달체계는 지자체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크고, 청년센터의 전달체계가 청년의 자립 지원보다는 정보 제공 및 연계에 그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앞서 '과제 Ⅰ-5. 원스탑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및 자립지원 인력양성'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청년 자립을 위한 원스탑 서비스 제공 전달체계를 구상하되,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자립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자립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 받아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 세부내용

○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자립지원 시스템이 광역시도 혹은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 구비될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 구축 및 전달체계 마련

### ▢ 법개정 등 특이사항

○「청년기본법」 개정을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 규정 신설 및 자립 지원 프로그램의 지역별 제공의 구체화. 단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비 차등 지원 명시 필요.

### ▢ 관련부처 및 기관

○ 국무조정실

**표 Ⅶ-26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지원 시스템 마련 과제의 추진사항**

| 추진일정 | | | 주관 부처 | 신규 여부 |
|---|---|---|---|---|
| 단기('23-'24) | 중기('25-'29) | 장기('30-'35) | | |
| ● | ● | | 국무조정실 | 신규 |

## V 성인 이행기 청년의 기초자립역량 증진 지원

주관적 자립이란 자신이 스스로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연구는 성인 이행기 청년의 주관적 자립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립역량을 증진해야 한다고 보고 3가지 정책과제를 설정하였다.

**표 Ⅷ-27 성인 이행기 청년의 기초자립역량 증진 지원 영역의 주요 정책과제**

| 정책과제 |
|---|
| **Ⅴ. 성인 이행기 청년의 기초자립역량 증진 지원** |
| 과제 Ⅴ-1. 나를 찾는 성찰적 시기 지원: 자유학년제, 한국형 갭이어 |
| 과제 Ⅴ-2. 역할 기회 체험을 통한 진로 탐색 기회 제공: 청소년 인턴 |
| 과제 Ⅴ-3. 평생교육·훈련을 통한 진로 변경 기회 보장 |

첫째, 나를 찾는 성찰적 시기 지원은 청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고교, 대학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어 아동·청소년기와 청년기로의 전환기에 성찰을 할 수 있는 갭이어와 같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둘째, 역할 기회 체험을 통한 진로 탐색 기회 제공 역시 아동·청소년기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활동을 해보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셋째, 평생교육·훈련을 통한 진로 변경 기회 보장은 성인이 된 후, 혹은 정규교육을 마친 후에도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욕구는 지속될 수 있으므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적절하게 진로 변경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성인 이행기 기초자립역량을 교육하는 과정도 고려해야 한다. 청년기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립 정보와 자립 기술을 체계적으로 전달해줄 수 있는 가칭 「청년 사회 첫출발 교육」 혹은 「청년 사회 첫출발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전환기에 들을 수 있게 하여 공식적인 체계를 통해 이러한 정보를 습득하고 기초적인 자립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체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과정, 커리큘럼, 교육기관, 인력 등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정교화될 필요가 있다.

## 과제 Ⅴ-1 나를 찾는 성찰적 시기 지원: 자유학년제, 한국형 갭이어

### ▢ 제안배경 및 필요성 (신규·기존 모두 해당)

○ 청소년-청년기 개인의 진로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한 탓에 주관적 자립을 달성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사례가 많음. 개인이 진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현 교육체제에서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시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음. 다만, 이 시기를 학생이 선택할 수 없고, 주로 학교 차원에서 주어지는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한계가 있음.

○ 현재 운영되는 자유학년제(2022 개정 교육과정 이후 자유학기제)에 더해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진로연계학기(학교급 전환 직전 학기에 운영)가 포함되면서 나를 찾는 성찰적 시기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해당 학기 중 일부 기간 활용을 전제한다는 점, 그리고 짧은 기간 내 많은 목표(교과학습, 기초학력보장, 진로 탐색 및 설계 등)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함(정철영, 2022).

○ 해외에서 사회문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갭이어(gap year)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하는 시기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대학 1학년의 휴학을 학칙으로 제한한 경우가 있어 갭이어가 시행되기 어려운 상황임.

### ▢ 세부내용

○ **(자유학기제 선택 보장)** 제도권 내 운영되고 있는 자유학년제(또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참여 시기나 여부, 방법 등에 학생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학교와 교사는 그 기간을 적절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획과 실행 과정을 지원. 예컨대, 학교에서 정한 자유학년제 시기 외 진로탐색학기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장.

○ **(청년 갭이어 보장)** 청년의 주관적 자립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탐색 기회로 갭이어를 보장. 예컨대, 대학들에서는 학년에 관계없이 휴학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교육과정의 일부로 갭이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 법개정 등 특이사항

○ **(지자체별 진로탐색 집중형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지자체별 조례제정을 통해 진로탐색을 전담할 수 있는 공립형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학생이 선택한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

○ **(고등교육법 개정)** 「고등교육법」의 휴학 관련 조항 개정

- 학교에 따라 학칙에 근거해 신입생의 휴학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등교육법」 상 강행규정으로 포함하고, 해당 활동에 대한 계획수립을 도울 수 있도록 권고

**표 Ⅶ-28 해당 과제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 현행 | 개정안 |
|---|---|
| **고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
| **제23조의4(휴학)**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하게 한다.<br>1. 「병역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br>2. 신체 ·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br>3.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br>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 | **제23조의4(휴학)**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하게 한다.<br>1. 「병역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br>**2.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진로에 대한 탐색 계획 실현**<br>3. 신체 ·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br>4.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br>5.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 |

□ 관련부처 및 기관

○ 교육부

**표 Ⅶ-29 나를 찾는 성찰적 시기 지원: 자유학년제, 한국형 갭이어 과제의 추진사항**

| 추진일정 | | | 주관 부처 | 신규 여부 |
|---|---|---|---|---|
| 단기('23-'24) | 중기('25-'29) | 장기('30-'35) | | |
| | ● | | 교육부 | 혼합 |

## 과제 Ⅴ-2 역할 기회 체험을 통한 진로 탐색 기회 제공: 청소년 인턴

###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이 연구의 질적면담에서 일부 청년들은 자립을 위해 중요한 것으로 아동·청소년기부터의 진로탐색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아동·청소년기부터의 노동경험이나 현장실습 경험도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청소년들을 위한 일자리와 현장실습 기회가 안전하지 않은 한계가 있음. 청소년들이 주로 일하는 현장들은 노동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곳에 집중되어 있어 보다 안전한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일자리 들이 제공되어야 함.

### ▢ 세부내용

○ 청소년들이 사회경험을 하면서 직업세계를 탐구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인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하계와 동계 방학 기간을 활용하고, 공공기관 인턴 기회를 살리는 방향에서 접근

○ 청소년 인턴제는 소극적 근로 보호(근로 감독 및 보호)에서 적극적 노동권 보장으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 일 경험과 함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인턴 기회 제공의 의미도 포괄.

### ▢ 법개정 등 특이사항

○ 여성가족부의 후기청소년 지원 대책 등을 근거로 할 필요가 있음.

### ▢ 관련부처 및 기관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표 Ⅷ-30 역할 기회 체험을 통한 진로 탐색 기회 제공: 청소년 인턴 과제의 추진사항**

| 추진일정 | | | 주관 부처 | 신규 여부 |
|---|---|---|---|---|
| 단기('23-'24) | 중기('25-'29) | 장기('30-'35) | | |
| ● | |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신규 |

## 과제 Ⅴ-3 평생교육·훈련을 통한 진로 변경 기회 보장

### ▢ 제안배경 및 필요성 (기존)

○ 성인이 된 후, 혹은 정규교육을 마친 후에도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욕구는 지속될 수 있으므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적절한 진로 변경 기회를 보장.

○ 관련 정부 지원 정책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있으나 대부분의 훈련과정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특정 직무 또는 직업 분야 진출을 위한 내용 위주로 이루어져 한계가 있음.

○ 전역을 앞둔 군인은 대학교에 다니지 않을 경우(고졸) 사회진입 및 자립을 위해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큰 집단이지만, 일반 사병으로 복무 했을 시 마땅한 지원이 없는 상황임.

### ▢ 세부내용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영역 확대)** 현재 운영되는 훈련과정의 '특화 훈련과정' 부분에 "청년 첫출발 카운슬링 과정"을 추가해 진로 변경 기회를 제공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사회진입을 앞둔(예를 들어, 육군 기준 병장 계급) 일반사병(고졸)을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지원대상으로 포함해 진로 탐색과 진로 변경을 지원.

※ 현재 제4조 16항에 의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수준 상향)** 의무복무 기간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으로 편입되는 시점(병장 계급)에 100만 원 훈련비용 지급 및 의무복무기간 만료 시 100만 원 훈련비용 추가 지급.

### ▢ 법개정 등 특이사항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

**표 Ⅶ-31 해당 과제 실현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안)**

| 현행 | 개정안 |
|---|---|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중 지원영역 관련 조항**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중 지원영역 관련 조항** |
| 제19조(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요건) ①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1.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br>2. 일반계좌제훈련과정<br>3. 법정직무훈련과정(단, 사업주에게 의무가 지워지는 공통 법정직무훈련 등은 제외한다)<br>4. 외국어훈련과정<br>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화 훈련과정<br>가. 일반고 특화과정<br>나. 과정평가형 자격과정<br>다.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 트레이닝)<br>라.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K-디지털 크레딧)<br>마.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br>바.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br>사.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크레딧) 과정 | 제19조(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요건) ①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1.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br>2. 일반계좌제훈련과정<br>3. 법정직무훈련과정(단, 사업주에게 의무가 지워지는 공통 법정직무훈련 등은 제외한다)<br>4. 외국어훈련과정<br>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화 훈련과정<br>가. 일반고 특화과정<br>나. 과정평가형 자격과정<br>다.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 트레이닝)<br>라.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K-디지털 크레딧)<br>마.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br>바.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br>사.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크레딧) 과정<br>**아. 청년 첫출발 카운슬링 과정** |

**표 Ⅶ-32 해당 과제 실현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안)(계속)**

| 현행 | 개정안 |
|---|---|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중 지원대상 관련 조항**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중 지원대상 관련 조항** |
| 제4조(지원 및 지원제외)<br>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이하 "계좌"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br>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 등을 지원하지 아니한다.<br>…<br>10의2.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br>가.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br>…<br>16.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 제4조(지원 및 지원제외)<br>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이하 "계좌"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br>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 등을 지원하지 아니한다.<br>…<br>10의2.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br>가.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br>…<br>16.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br>…<br>**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10의2 제외) 의무복무기간 종료까지 4개월이 남은 군전역예정자는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표 Ⅶ-33 해당 과제 실현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안)(계속)**

| 현행 | 개정안 |
|---|---|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중 지원대상 관련 조항**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중 지원대상 관련 조항** |
| 제14조(계좌의 지원한도)<br>①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계좌의 1인당 지원한도(이하 "계좌한도"라 한다)는 300만원으로 정한다.<br>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계좌한도에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의 총 한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br>… | 제14조(계좌의 지원한도)<br>①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계좌의 1인당 지원한도(이하 "계좌한도"라 한다)는 300만원으로 정한다.<br>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계좌한도에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의 총 한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br>…<br>⑥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4조제5항에 의해 제19조제1항제5호제아목에 따른 청년 첫출발 카운슬링 과정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총2회에 한하여 각각100만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 관련부처 및 기관

○ 고용노동부, 국방부

**표 Ⅶ-34 평생교육·훈련을 통한 진로 변경 기회 보장 과제의 추진사항**

| 추진일정 | | | 주관 부처 | 신규 여부 |
|---|---|---|---|---|
| 단기('23-'24) | 중기('25-'29) | 장기('30-'35) | | |
| ● | | | 고용노동부, 국방부 | 기존 |

## Ⅵ 자립취약청년의 특별한 자립 욕구에 대한 대응 (모두를 위한 자립 지원)

이 연구는 모두를 위한 자립 지원을 위하여 자립이 어려운 특성을 지닌 자립취약청년들의 특별한 자립 욕구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이 연구는 장애청년, 가정 밖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 해외입양청년, 이주배경청년 등을 포괄하는 세부과제를 정리하였다. 이 정책들은 앞에서 다룬 니트 청년과 빈곤 청년들을 포괄하여 자립이 어려운 청년들의 첫출발을 지원하는 의미를 지닌다.

**표 Ⅷ-35 자립취약청년의 특별한 자립 욕구에 대한 대응 (모두를 위한 자립 지원) 영역의 주요 정책과제**

| 정책과제 |
|---|
| **Ⅵ. 자립취약청년의 특별한 자립 욕구에 대한 대응 (모두를 위한 자립 지원)** |
| 과제 Ⅵ-1. 장애를 가진 청년을 위한 개인화된 전환 계획수립 및 자립 기회 제공 |
| 과제 Ⅵ-2. 아동기 가정 밖에서 성장한 청년을 위한 자립 체험 및 자립 정보 제공 |
| 과제 Ⅵ-3. 돌봄 부담이 있는 청년을 위한 돌봄 부담 완화 및 자립 지원 |
| 과제 Ⅵ-4. 해외 입양 청년·이주배경청년의 한국 정착 및 자립 지원 |
| 과제 Ⅵ-5. 성소수자 청소년·청년의 자립 지원 |

첫째, 장애를 가진 청년을 위한 개인화된 전환 계획수립 및 자립 기회 제공은 장애를 가진 청년이 자유의지에 따라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다. 둘째, 아동기 가정 밖에서 성장한 청년을 위한 자립 지원 및 자립 정보제공은 보호대상아동으로 대리양육을 받은 아동들이 성인기로 전환되면서 지속적으로 자립지원을 받고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셋째, 돌봄 부담이 있는 청년을 위한 돌봄 부담 완화 및 자립 지원은 청소년 부모, 청년 한부모, 가족돌봄청년 등 자신의 자립과 가족 돌봄의 이중 부담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넷째, 해외 입양 청년·이주배경청년의 한국 정착 및 자립 지원은 한국 사회에 진입 혹은 재진입하는 청년들이 동등하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한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다섯째, 성소수자 청소년·청년들은 자립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므로 성소수자 청년들이 사회 진입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진로설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차별 및 배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각 과제들은 성인 이행기 청년들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자립의 어려움을 지원함과 동시에 특별한 욕구가 있는 자립 취약 청년들을 위한 추가적 지원을 고안함으로써 모든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청년의 틀을 구성한 것에 의의가 있다.

## 과제 Ⅵ-1 장애를 가진 청년을 위한 개인화된 전환 계획수립 및 자립 기회 제공

###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 운동의 역사에서 자립은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의 형태로 이어져왔고, 자립지원의 권리성 부여와 다양한 형태의 자립지원으로 이론적, 정책적 기여를 해왔음.

○ 청년정책과 청년운동에서는 종종 '모든 청년을 위한 자립' 관점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청년정책에는 반드시 특별한 욕구가 있는 청년, 특히 장애를 가진 청년에 대한 지원 방안을 함께 정리하고 시행해 나가야 함. 예를 들어, 청년센터의 오프라인 형태와 온라인 형태는 모두 무장애 디자인(universal design)이 적용되어 많은 청년들이 제도의 전달체계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장애를 가진 청년을 위한 개인화된 전환 계획수립 및 자립 기회 제공은 장애인운동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자립생활에 대한 요구와 궤를 같이하며, 장애인 정책뿐만 아니라 청년정책에서도 장애를 가진 청년들이 사회통합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야 함.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기에 통합교육을 받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괴리되어 지내오던 장애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사회에 나가서 사회 속에서 통합되기를 바랄 수 없음. 아동·청소년·청년기 정책들이 청년들의 자립을 위하여 함께 사회과학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정책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각 연령단계별로 특성화된 욕구에 대응하는 체계로 통합 및 개별화되어야 할 근거라 할 수 있음.

### ▢ 세부내용

○ 장애를 가진 청년을 위한 개인화된 전환 계획수립 및 자립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고립된 홀로서기가 아닌 함께 하는 홀로서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독립이 아닌 연립으로 사회 속에서 함께 자립해야 한다는 원칙을 공유하고, 장애인 정책과 청년정책에 함께 반영해야 함.

○ 장애인 정책과 청년정책에 함께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책을 설계하는 부처 간 협의, 정책을 검토하고 의결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간 협의, 그리고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협의하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법개정 등 특이사항

○「청년기본법」 개정을 통한 청년 자립 계획 수립 지원 명시. 단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신책으로 자립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세부적으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인별 계획을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자립취약청년들로 범위를 넓힘으로써 더 적극적 방식으로 자립지원의 근거 및 서비스체계를 구성할 수 있음.

**표 Ⅷ-36 「청년기본법」 개정(안)**

| 현행 | | 개정안 |
|---|---|---|
| (없음) | → | 제25조(청년 자립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자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년 자립을 위한 통합적 지원 대책과 함께 자립취약청년에 대한 자립계획 수립을 지원해야 한다. 청년자립계획은 청년이 가진 장애, 출신, 성별지향, 경제적 배경, 학력 등에 관계없이 지역사회 속에서 원활히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

○ 장애인의 성공적인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기부터의 통합교육, 전환교육,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 관련부처 및 기관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표 Ⅷ-37 장애를 가진 청년을 위한 개인화된 전환 계획수립 및 자립 기회 제공 과제의 추진사항**

| 추진일정 | | | 주관 부처 | 신규 여부 |
|---|---|---|---|---|
| 단기('23-'24) | 중기('25-'29) | 장기('30-'35) | | |
| ● | | | 국무조정실 | 신규 |

## 과제 Ⅵ-2 아동기 가정 밖에서 성장한 청년을 위한 자립 체험 및 자립 정보제공

###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본 연구의 질적연구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청소년기부터의 자립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특히 주거 자립을 위해 시행되는 자립체험관 활동을 늘리고 본인이 성장한 시설 내에서가 아닌 원거리에서 자립 체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음. 이는 기관들 간 업무협약방식(MOU)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자립준비청년들은 현재까지도 자신이 생활한 기관이나 지역의 자립전담요원에게 자립지원서비스를 받게 되나 청년기는 이동성이 매우 높은 시기이므로 원 거주 지역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음. 아동기의 지원체계로 청년기를 포괄하는 방법은 매우 임시적인 효과를 낼 수밖에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또한 성인 이행기 지연이 전체 청년에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기간이 20대 중후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자립지원 연령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음. 혹은 생애과정의 탈표준화로 인해 연령과 자립 간의 연관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므로 연령범위를 넓게 설정하고 욕구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이럴 경우 자립지원 체계 역시 아동복지체계에서 청년복지체계로 전환 혹은 연계에 대한 검토가 시급히 필요함.

### ▢ 세부내용

○ 자립지원 서비스의 기능별 분화를 통해 라포를 형성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서비스와 지역에서 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구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자립준비청년 특례와 같이 자립준비청년이 당사자들을 위한 서비스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와 통합되어 다른 청년들과 함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자립준비청년들이 보호대상아동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는 '바람개비' 서포터즈와 같이 청년 대 청년의 서포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신뢰감 있는 커뮤니티 형성 및 멘토-멘티 관계 형성 프로그램이 필요함. 한 예로, 자립준비청년은 SNS 내에서 자립준비청년 선배가 지속적으로 자립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에 도움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였고 실제 해당

SNS는 500명 이상의 자립준비청년이 정보를 제공받고 있었음. 자립준비는 조건의 제공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여건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채널을 개설할 필요가 있음.

## ▢ 법개정 등 특이사항

○ 자립지원청년의 성장지역 외 생활 지역에서 자립지원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자립지원매뉴얼 변경으로 가능. 단 청년이 많이 생활하여 자립지원청년의 서비스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대한 국비지원 등 보완방안 마련.

○ (자립지원서비스의 연령 포괄범위 변경)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필요

**표 Ⅷ-38 「아동복지법 시행령」 자립지원 기간 조항 변경(안)**

| 현행 | | 개정안 |
|---|---|---|
| 제38조(자립지원) ①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br>1.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br>2. 아동복지시설(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br>3. 삭제 〈2022. 6. 21.〉<br>4. 삭제 〈2022. 6. 21.〉<br>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br>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br>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br>3.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 (좌동)<br><br>3.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청년기본법의 청년연령까지 신청자에 한해 자립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신청 가능** |

## ▢ 관련부처 및 기관

○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표 Ⅷ-39 아동기 가정 밖에서 성장한 청년을 위한 자립 체험 및 자립 정보제공 과제의 추진사항**

| 추진일정 | | | 주관 부처 | 신규 여부 |
|---|---|---|---|---|
| 단기('23-'24) | 중기('25-'29) | 장기('30-'35) | | |
| ● | ● | |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 신규 |

## 과제 Ⅵ-3 돌봄부담이 있는 청년을 위한 돌봄 부담 완화 및 자립 지원

###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청년들은 스스로의 자립을 어려워하고 있으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돌봐야 하는 부담을 가진 청년들이 존재하고 있음. 예를 들어, 청소년 부모, 청년 한부모,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들은 가족 돌봄 부담으로 인하여 자립이 매우 어려운 대상임.

○ 청소년 부모, 청년 한부모,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제도가 마련되고 있으므로 가족 돌봄 부담이 있는 청년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이 과제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91번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과 관련 있음. 91번 과제는 취약청년의 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약청년 발굴,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취약청년(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있음.

### ▢ 세부내용

○ 돌봄 부담이 있는 청년들(청소년 부모, 청년 한부모,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돌봄 부담 경감 방안 마련

### ▢ 법개정 등 특이사항

○ 「청년기본법」이나 하위법률(가칭 「청년복지법」)의 지원대상에 '가족돌봄청년'을 추가하여 지원. 가족돌봄청년의 정의에 아동을 돌봐야 하는 청소년 부모, 청년 한부모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청소년 부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가정방문 아동돌봄서비스를 명시하고,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복지지원에 '현금급여'를 추가. 혹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한 조항 신설 및 세분화.

**표 Ⅷ-40 「청소년복지지원법」 내 청소년 부모 지원조항 신설(안)**

| 청소년복지지원법 | |
|---|---|
| **기존** | **개정(안)** |
|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br>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br>2.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br>3.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br>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br>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br>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br>2.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br>3.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br>**4. 학습시간 보장을 위한 가정방문 아동돌봄서비스**<br>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br>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br>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br>③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br>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현금급여**,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br>③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관련부처 및 기관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표 Ⅷ-41 돌봄부담이 있는 청년을 위한 돌봄 부담 완화 및 자립 지원 과제의 추진사항**

| 추진일정 | | | 주관 부처 | 신규 여부 |
|---|---|---|---|---|
| 단기('23-'24) | 중기('25-'29) | 장기('30-'35) | | |
| ● | |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 신규 |

## 과제 Ⅵ-4 해외 입양 청년·이주배경청년의 한국 정착 및 자립 지원

### ▢ 제안배경 및 필요성 (신규)

○ 우리나라에서 아동기에 해외로 입양되었으나 성인이 되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해외 입양인 혹은 해외 입양 청년들이 있어 한국으로의 정착지원이 필요함.

- 현재까지는 민간기관인 '뿌리의 집', 해외입양인연대 GOAL(Global Overseas Adoptees' Link) 등에서 해외 입양 청년들에게 한국의 가족을 찾는 것을 지원해주거나 다시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음.
-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보호대상입양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근거법령이 「아동복지법」, 「입양특례법」으로 제한적이고, 고위기 상황인 보호대상입양인에 한정된 지원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정착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해외 입양 청년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지원체계가 거의 없는 정책 사각지대에 있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 마련이 필요함.[47), 48)]

○ 이주배경청년 역시 아동기,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 이행기에 진입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정책 지원이 매우 미진한 상황임.

- 이주배경청년들의 사회 정착 및 자립 지원 법적 근거와 제도 마련이 시급함.

### ▢ 세부내용

○ 해외 입양 경험이 있는 청년이 한국에서의 정착을 원할 경우 자립을 지원해주는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법률의 주요한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이 해외입양 청년이 한국으로와 정착을 원할 경우 지원해주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있으며, 이 법률에 명시된 취업보호, 영농 정착지원, 창업지원, 특별임용, 정착금 지원, 전문상담사제도 운영, 교육지원, 의료급여 등 다양할 수 있음.

---

47) BBC NEWS 코리아 보도자료 (2020.10.14.). "해외입양 65년... 끝나지 않은 이야기".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4334000 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48) 여성신문 보도자료 (2017.05.26.). "미국서 쫓겨난 한국 입양인 끝내 자살...'사회적 타살'".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509 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 이주배경 청년의 경우 「청년기본법」이나 하위법률의 지원대상에 명시하여 특별한 욕구에 대한 보호를 받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 ▢ 법개정 등 특이사항

○ 별도의 「해외 입양 청년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자립지원 하는 방안 검토. 단, 연령범위를 청년으로 제한하지 않고 해외 입양인 지원에서 청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청년기본법」이나 하위법률의 지원대상에 '해외 입양 청년', '이주배경청년'을 명시하여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 ▢ 관련부처 및 기관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

**표 Ⅷ-42 해외 입양 청년·이주배경청년의 한국 정착 및 자립 지원의 추진사항**

| 추진일정 | | | 주관 부처 | 신규 여부 |
|---|---|---|---|---|
| 단기('23-'24) | 중기('25-'29) | 장기('30-'35) | | |
| ● | ● | | 보건복지부 | 신규 |

## 과제 Ⅵ-5 성소수자 청소년·청년의 자립 지원

### ▢ 제안배경 및 필요성 (신규)

○ 외국 연구에서 성소수자 청소년·청년들은 자살 생각, 계획, 시도가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Russell, 2003). 우리나라에서도 성소수자 청소년의 성적 지향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거나(권미영, 2020), 성소수자 청소년이 집단괴롭힘으로 인해 자살을 한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가 진행된 바 있음(박지영, 2020). 성소수자들은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남(김하영, 2018; 이혜민, 박주영, 김승섭, 2014). 이러한 성소수자 청소년·청년의 정신건강 문제와 차별 및 배제 문제는 '모든 청년의 자립'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취약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사회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 세부내용

○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성소수자 청소년·청년의 실태 파악 및 규모 추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적극적 차별시정 조치(affirmative action)를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부정적인 차별과 배제를 예방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의 제정 및 적용이 필요함. 또한 예방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 법개정 등 특이사항

○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의 제정 및 적용, 정규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 차별 및 배제 예방을 위한 교육 과정(커리큘럼) 및 방식(교수방식) 마련

### ▢ 관련부처 및 기관

○ 법무부, 교육부

**표 Ⅶ-43 성소수자 청소년·청년의 자립 지원의 추진사항**

| 추진일정 | | | 주관 부처 | 신규 여부 |
|---|---|---|---|---|
| 단기('23-'24) | 중기('25-'29) | 장기('30-'35) | | |
| ● | ● | ● | 법무부, 교육부 | 신규 |

# 참고문헌

# 참고문헌


강부자, 최연실 (2016). 가족건강성이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 **人間發達硏究, 23**(3), 71-90.

경향신문 보도자료 (2022.04.25.).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1년 동안 단 8건.. 대출 요건 너무 까다로웠나.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4251816001#c2b에서 2022년 10월 18일 인출.

고용노동부 (2022). **2022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2.01.04). 시행 2년째 맞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확실히 안착시키고 성과를 내겠습니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138에서 2022년 10월 18일 인출.

고원식, 김대일 (2019).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와 청년층의 독립 선택. **한국인구학, 42**(2), 51-82.

관계부처 합동 (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관계부처합동.**

관계부처 합동 (2021a).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과제별 시행계획).**

관계부처 합동 (2021b).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관계부처 합동 (2021c). **청년특별대책.**

관계부처 합동 (2022).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국무조정실 (2022). **2021년 청년정책백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04.08.). 쪽방·고시원 주민들 보증금 없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767에서 2022년 10월 18일 인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2.08.17.). '갭투기·깡통전세' 사기 피하려면 이렇게!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04860에서 2022년 10월 18일 인출.

권미영 (2020). 고등학생의 성적지향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간호학회지, 34**(1), 87-9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2.02.08). 2.9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507에서 2022년 10월 18일 인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2.02.22). 청년희망적금, 내달 4달까지 요건 맞으면 신청자 '전원 가입'.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9228&pWise=sub&pWiseSub=B12에서 2022년 10월 18일 인출.

기획재정부 (2022.07.21.). **2022년 세제개편안.**

김기헌, 배정희, 김창환, 성재민 (202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일자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유민상, 배정희, 신동훈, 박성재, 정지운, 조양진 (2021). **니트 등 비경제활동 청년층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세종: 고용노동부.

김미숙 (2009). 일본의 니트(NEET)현황과 자립지원정책에 관한 고찰. **청소년복지연구, 11**(4), 173-199.

김미숙, 전진아, 하태정, 김효진, 오미애, 정은희, 최은진, 이봉주, 김선숙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원정, 류진석 (201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수급자 근로능력자 전환 도래가 가구 분리 결정에 미치는 영향: 전망이론의 손실회피 관점에서. **社會 保障 硏究, 33**(4), 1-30.

김원종 (2020). 1인 가구와 범죄. **법경제학연구, 17**(1), 137-160.

김유빈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노동시장 성과**. 청년 이직자 세미나(2020년 10월 8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대회의실) 발표자료(비공개 자료).

김정희, 주동범, 정일환, 정진철, 권동택, 최창범, 이현민 (2017). 영· 미· 일 대학 갭이어 사례 및 시사점 분석. **비교교육연구, 27**(4), 155-186.

김진영, 이현정 (2020). 청년의 독립주거 마련과 거주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29**(6), 1017-1034.

김하영 (2018). 여성 성소수자의 차별과 배제에 관한 연구 - 레즈비언 페미니즘의 관점을 중심으로 -. **여성학연구, 28**(2), 183-214.

김현영, 김태연 (2021). 제주 지역 여성청년의 독립 경험에 관한 공간정치적 접근. **공간과 사회, 31**(4), 198-245.

남춘호, 남궁명희 (2012). 생애과정의 탈표준화 경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 **지역사회연구, 20**(2). 91-128.

노민지 (2022).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주택시장 환경이 청년 독립에 미치는 영향 분석. **주택연구, 30**(1), 103-130.

노현주, 김윤태 (2019). 한국 청년 니트(NEET)의 특성과 영향 요인: 학력 수준별 비교 분석. **공공사회연구, 9**(4), 73-105.

니트생활자 (2021). **2021 상반기 카카오프로젝트100X니트컴퍼니 운영결과보고**. 니트생활자 내부자료.

박미희 (2017). **OECD국가의 청년NEET 결정요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미희 (2022). **청년 자립을 위한 민간 프로그램 사례 : 사랑의 열매 희망플랜(시즌1, 2) 성과와 교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콜로키움 발표자료(2022.09.01. 온라인).

박지영 (2020). 성소수자 청소년 A는 왜 자살했는가?: 질적 심리부검을 통한 학급 내 집단괴롭힘과 A의 행동결정과정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22**(4), 1-36.

박희진, 허예지, 장애리 (2017). 우리나라 자유학기제와 아일랜드 전환학년제의 정책과정 비교. **교육정치학연구, 24**(4),131-160.

서울경제 보도자료 (2022.10.11.). 연 10% 파격 이자 주는데... 석달새 17만명 해지 무슨 일? https://www.sedaily.com/NewsView/26CB5Q58YS에서 2022년 10월 18일 인출.

서울신문 보도자료 (2022.01.26.). "1억 목돈 없어요… 청년주택의 희망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126001012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서중원 (2018). **나, 함께 산다: 시설 밖으로 나온 장애인들의 이야기.** 파주: 오월의 봄

안희란, 이용교 (2020). 시설퇴소 청년들의 자립지원교육에 대한 요구. **청소년복지연구, 22**(2), 61-84.

여성신문 보도자료 (2017.05.26.). "미국서 쫓겨난 한국 입양인 끝내 자살...'사회적 타살'.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509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오지현 (2011). 청년기 지체 장애 여성의 "홀로서기": "일자리 찾기"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14**(2), 187-218.

우승연 (2020). **홈, 프라이드 홈: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서울: 아모르문디.

유민상, 신동훈 (202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민상, 신동훈 (2022). **202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사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연구보고22-수시0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윤주영, 조민효 (2015). 대학생 경제적 자립경향이 미취업 기간과 초기 임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 **政策分析評價學會報, 25**(1), 165-192.

이병희 (202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2차 고용안전망 역할 강화. **노동리뷰 2021년 12월호.**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이봉주, 박미희, 남기철, 노혜진, 이신혜, 이성학 (2018). **배분의제 2-3차년도 성과평가(빈곤)-니트(NEET)청년 지원을 위한 '희망플랜' 사업-**.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상아 (2022). **청년 자립도전 사업단 정책 현황.** 서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이상직 (2022). 한국 청년의 성인기 역할 구조 변화, 1998-2018: 젠더와 계층 차이. **한국인구학, 45**(1), 33-72.

이은미, 백은령 (2010). 지적장애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경험 및 지원 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4**(2), 63-91.

이준석, 김현주 (2016). 경제적 자립전망과 자아정체성 유예가 대학생의 직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13**(1), 169-194.

이혜민, 박주영, 김승섭 (2014). 한국 성소수자 건강 연구: 체계적 문헌고찰. **보건과 사회과학, 36**, 43-79.

인권기록센터 사이, 곰곰 (2021). 비상구에서 지은 누구나의 집: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엑시트와 청소년자립팸 이상한 나라, 그 10년의 기록. 엑시트·자립팸 http://wahaha.or.kr/archives/14276에서 2022년 10월 21일 인출.

장지은 (2010). 청년의 자립지원과 네트워크. **평생교육학연구, 16**(1), 134-162.

전예지, 이재림 (2014). 대학생과 미취업 대졸자 청년이 지각한 부모의 진로기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9**(3), 119-146.

정선욱 (2015). 대학에 진학한 시설 퇴소 청년의 진로준비행동 영향요인 -사회적 지지와 자아정체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6**(1), 191-214.

정철영 (2022). 진로연계학기 도입에 대한 논의와 제안. **교육정책포럼, 344**. 4-9.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제20대 대통령실.

조성호 (2018).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이성교제와 관한 한일 비교연구, **보건사회연구, 38**(4), 398-430.

중앙일보 보도자료 (2022.07.04). 대학 '갭이어'제도는 세계적 추세, 다양한 경험 쌓을 필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4104#home에서 2022년 10월 13일 인출.

차승은, 한경혜 (1999). 청년기 자녀의 경제적 자립도 및 분거 경험이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131-151.

최상미 (2022).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특성 및 효과성.** 서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최윤 (2020).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중증뇌병변장애 청년의 자립 의미에 관한 연구– 아픔과 그리움을 안고 어른으로 홀로서기. **생명연구, 55**(-), 259-282.

쿠키뉴스 보도자료 (2022.06.11.) "4차까지 모집했지만… 청년 외면 받는 행복주택."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6080212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통계청 (각년도). **인구동향조사.**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 (2022).「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월간동향(아파트 매매가격지수)」. https://www.reb.or.kr/r-one/statistics/statisticsViewer.do?menuId=HOUSE_21211에서 2022년 2월 18일 인출.

BBC NEWS 코리아 보도자료 (2020.10.14.). "해외입양 65년… 끝나지 않은 이야기".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4334000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YTN 보도자료 (2022.03.06.). 청년희망적금 290만 명 가입.. 정부 예상의 7.6배. https://www.ytn.co.kr/_ln/0102_202203061020259200에서 2022년 10월 18일 인출.

Ai, C. & Norton, E. C. (2003). Interaction terms in logit and probit models. *Economics Letters, 80*(1), 123-129.

Aluehallintovirastot (2022). Youth work. https://avi.fi/en/about-us/our-services/education-and-culture/youth-work에서 2022년 11월 15일 인출.

Arnett, J. J. (1994). Are college students adults? Their conceptions of the transition to adulthood.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4), 213-224.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

Arnett, J. J. (2001). Conceptions of the transition to adulthood: Perspectives from adolescence through midlife.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8*(2), 133-143.

Arnett, J. J. (2007). Emerging adulthood: What is it, and what is it good for?.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1*(2), 68-73.

Baggio, S., Iglesias, K., Studer, J., & Gmel, G. (2015). An 8-item short form of the Inventory of Dimensions of Emerging Adulthood (IDEA) among young Swiss men. *Evaluation & the Health Professions, 38*(2), 246-254.

Chevalier, T. (2016). Varieties of youth welfare citizenship: Towards a two-dimension typology.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6*(1), 3-19.

Dover, G., & Lawrence, T. B. (2010). A gap year for institutional theory: Integrating the study of institutional work and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Journal of Management Inquiry, 19*(4), 305-316.

Escudero, V., & López, M. E. (2017). *The European Youth Guarantee a Systematic Review of its Implementation across Countries*. ILO Working Papers, 21.

Eurofound (2015). *Social Inclusion of Young People.*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European Commission (2012). *Proposal for a Council Recommendation on establishing a Youth Guarantee.* COM(2012) 729 final,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2019). Youth Guarantee & Youth Employment Initiative. https://ec.europa.eu/social/main.jsp?advSearchKey=YGYEI&mode=adva

ncedSubmit&catId=1307&doc_submit=&policyArea=0&policyAreaSub=0&country=0&year=0에서 2022년 9월 25일 인출.

European Commission (2021). Ohjaamo: the “one-stop guidance shop”. https://ec.europa.eu/esf/main.jsp?catId=46&langId=en&projectId=2859에서 2022년 9월 25일 인출.

European Commission (2022a). Youth Employment Initiative (YEI). 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1176&langId=en에서 2022년 9월 21일 인출.

European Commission (2022b). EU-level suppor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Youth Guarantee. 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1099&langId=en에서 2022년 9월 21일 인출.

European Commission (2022c). The reinforced Youth Guarantee. 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1079&langId=en에서 2022년 9월 23일 인출.

European Commission (2022d). Youth Wiki – Finland – 1. Youth Policy Governance.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finland/1-youth-policy-governance에서 2022년 11월 14일 인출.

Faas, C., McFall, J., Peer, J. W., Schmolesky, M. T., Chalk, H. M., Hermann, A., … & Grahe, J. (2018). Emerging adulthood MoA/IDEA-8 scale characteristics from multiple institutions. *Emerging Adulthood, 8*(4), 259-269.

Faas, C., McFall, J., Peer, J. W., Schmolesky, M. T., Chalk, H. M., Hermann, A., … & Grahe, J. (2020). Emerging adulthood MoA/IDEA-8 scale characteristics from multiple institutions. *Emerging Adulthood, 8*(4), 259-269.

Jones, A. (2004). *Review of gap year provision (p. 2003)*. London: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Kela (2022) *Pocket Statistics 2022.* Kela. Helsinki.

King, A. (2011). Minding the gap? Young people's accounts of taking a Gap Year as a form of identity work in higher education. *Journal of Youth Studies, 14(3)*, 341-357.

Manzoni (2016).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youth independence multidimensionally in the United States. *Acta Sociologica, 59*(4), 362-377.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On a Takinig 'Gap Year'. URL: https://mitadmissions.org/help/faq/gap-year/에서 2022년 11원 18일 인출.

Norman, K. B., Grahe, J. E., & Lee, S. (2021). Reconstructing Adulthood: Revising the Markers of Adulthood Scale for Increased Ecological Validity. *Psychological Reports*. https://doi.org/10.1177/00332941211061700에서 2022년 9월 25일 인출.

Nussbaum, M. C. (2009). Creating capabilities: *The human development approach and its implementation. Hypatia, 24*(3), 211-215.

OECD (2019a) Investing in Youth: Finland, Investing in Youth,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1251a123-en.에서 2022년 11원 18일 인출.

OECD (2019b). Investing in Youth: Korea. https://doi.org/10.1787/4bf4a6d2-en에서 2022년 11원 18일 인출.

Ohjaamo (2021). If you don't know where to start, start at Ohjaamo! https://ohjaamot.fi/en/etusivu에서 2022년 10월 3일 인출.

Ohjaamo Helsinki (2022a). Ohjaamolaiset. https://ohjaamo.hel.fi/ohjaamo-helsinki/ohjaamolaiset/에서 2022년 11월 13일 인출.

Ohjaamo Helsinki (2022b). Organisaatio. https://ohjaamo.hel.fi/ohjaamo-helsinki/organisaatio/에서 2022년 11월 13일 인출.

Ohjaamo Helsinki (2022c). Neuvonta. https://ohjaamo.hel.fi/miten-voimme-auttaa-sinua/neuvonta/에서 2022년 11월 13일 인출.

Ohjaamo Helsinki (2022d). Ohjaamon uutiset. https://ohjaamo.hel.fi/ajankohtaista-ohjaamossa/ohjaamon-uutiset/에서 2022년 11월 13일 인출.

Ohjaamo Helsinki (2022e). Tavoitteet ja tilastot. https://ohjaamo.hel.fi/ohjaamo-helsinki/tavoitteet-ja-tilastot/에서 2022년 11월 13일 인출.

O'shea, J. (2011). Delaying the academy: A gap year education. *Teaching in Higher Education, 16*(5), 565-577.

Reifman, A., Arnett, J. J., & Colwell, M. J. (2007). Emerging adulthood: Theory, assessment and application. *Journal of Youth Development, 2*(1), 37-48.

Roker, D., Player, K., & Coleman, J. (1999). *Challenging the image: Young people as volunteers and compaigners*. Leicester. Youth Work Press.

Russell, S. T. (2003). Sexual minority youth and suicide risk. *American Behavior al Scientist, 46*(9), 1241-1257.

Simpson, K. (2005). *Broad horizons?: Geographies and pedagogies of the gap year* .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ewcastle University, Newcastle upon Tyne, UK.

Sorsa, K. (2019). *The Youth Guarantee and One-Stop Guidance Centres as a social innovation and a policy implementation tool in Finland. In: Baines, Susan, and Andrea Bassi,* eds. Implementing innovative social investment: Strategic lessons from Europe. pp. 83-96. Policy Press.

**[참고사이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2022년 10월 18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2년 2월 18일 인출.

닛커넥트 홈페이지. https://neetconnect.kr에서 2022년 10월 18일 인출.

니트생활자 홈페이지. http://neetpeople.kr에서 2022년 10월 18일 인출.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Gap Year 프로그램 (2022). https://globalgap.unc.edu/에서 2022년 10월 13일 인출.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DB.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871&pWise=sub&pWiseSub=B12에서 2022년 10월 18일 인출.

민달팽이 유니온. https://minsnailunion.net/에서 2022년 2월 18일 인출.

사회연대은행. http://www.bss.or.kr/에서 2022년 2월 18일 인출.

아름다운재단. https://beautifulfund.org/에서 2022년 2월 18일 인출.

영국 대국민 공공서비스 포털 사이트. www.direct.gov.uk에서 2022년 10월 8일 인출.

워크넷 내일채움공제 정보홈페이지.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2022년 2월 18일 인출.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https://www.footact.org/에서 2022년 2월 18일 인출.
제주특별자치시 홈페이지 (2022). 제주 청년 갭이어체험 사업. https://www.jeju.go.kr/tool/search/?query=%EA%B0%AD%EC%9D%B4%EC%96%B4#!#collection-domain에서 2022년 10월 13일 인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https://nhuf.molit.go.kr/에서 2022년 10월 18일 인출.
직업훈련포털. https://hrd.go.kr/에서 2022년 10월 18일 인출.
청년문화예술협동조합 들락날락 홈페이지. http://drnrcoop.co.kr/에서 2022년 2월 18일 인출.
청년인생설계학교 홈페이지. https://youthschool.olly.kr/에서 2022년 10월 18일 인출.
청년포털. https://2030.go.kr/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정보에서 2022년 10월 13일 인출.
터프츠대학 Gap Year프로그램(2022). https://tischcollege.tufts.edu/news/tufts-14-fellows-start-their-service-year에서 2022년 10월 13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에서 2022년 10월 18일 인출.
팜프라 홈페이지. https://www.farmfra.com/에서 2022년 2월 18일 인출.
평생학습타임즈 (2019). https://webzine.smile.seoul.kr/37449/에서 2022년 10월 13일 인출.
핀란드 TE오피스 인터넷 홈페이지. https://toimistot.te-palvelut.fi/에서 2022년 10월 18일 인출.
헬싱키 원스톱안내센터 상담 모습. https://ohjaamo.hel.fi/miten-voimme-auttaa-sinua/neuvonta/에서 2022년 10월 18일 인출.
헬싱키 원스톱안내센터 전경. https://ohjaamo.hel.fi/ohjaamon-illat-alkavat/에서 2022.10.18. 인출.
헬싱키 원스톱안내센터 주간(2020년 5월 5-11일) 프로그램 안내. https://www.facebook.com/ohjaamohelsinki/photos/a.1619849384947088/2638034506461899에서 2022년 11월 10일 인출.
Etsivä nuorisotyö (2022a) Etsivä nuorisotyö. https://www.intory.fi/etsiva-nuorisotyo/에서 2022년 9월 21일 인출.
Etsivä nuorisotyö (2022b) Into – Association for Outreach Youth Work and

Workshop Activities. https://www.intory.fi/briefly-in-english/에서 2022년 9월 21일 인출.

Novogratz Bridge Year프로그램 (2022). https://oip.princeton.edu/our-programs/novogratz-bridge-year에서 2022년 10월 13일 인출.

Ohjaamo (2021). If you don't know where to start, start at Ohjaamo! https://ohjaamot.fi/en/etusivu에서 2022년 10월 3일 인출.

Ohjaamo Helsinki (2022a). Neuvonta. https://ohjaamo.hel.fi/miten-voimme-auttaa-sinua/neuvonta/에서 2022년 10월 18일 인출.

Ohjaamo Helsinki (2022b). Tavoitteet ja tilastot. https://ohjaamo.hel.fi/ohjaamo-helsinki/tavoitteet-ja-tilastot/에서 2022년 10월 3일 인출.

Valtioneuvosto (2012). Social guarantee for young people will come into force from the start of 2013. https://valtioneuvosto.fi/en/-//1410845/social-guarantee-for-young-people-will-come-into-force-from-the-start-of-2013에서 2022년 10월 18일 인출.

# 부 록

1. 조사지

# 부 록

## 1. 조사지

PID

2022년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년들의 일과 삶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청년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2022년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개인정보도 철저히 보호됩니다.
또한, 통계법 제34조(통계종사자의 의무)에 따라 응답 내용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기관에 제공되는 일은 절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귀하께서 받으신 설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각각의 조사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활실태나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문항에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문지는 조사기준일(2022년 6월 1일) 현재 만18세~만34세(1987년 6월 2일~2004년 6월 1일)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아래 사항은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 면접원 ID | | 면접원 이름 | | 응답자 이름 | |
|---|---|---|---|---|---|
| 주소(구/동) | 시/도 구/시/군 동/읍/면 | | | 집계구 일련번호 | |
| 응답자 연락처 | ( ) – ( ) – ( )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
| 주택 유형 | 1. 단독 주택 2. 아파트 3. 연립/다세대주택 4. 기타(적을 것 : _____) | | | | |

| 구 분 | 남 성 | | 여 성 | | 합 계 | |
|---|---|---|---|---|---|---|
| 총 가구원 수 | | | | | | |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가구원 수 | | | | | | |
| 가구당 조사표 부수 | 조사대상 가구원 수 총 ( )부 중 ( )부 진행 | | | | | |

※ 조사원: 동일 가구인 경우라도 모든 설문지 표지에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 미진행 가구원 사유 | | 유치조사 진행 여부<br>※ 해당되는 모든 내용에 표시 | ① 직접 만나서 조사<br>② 설문 회수 시 만남<br>③ 회수 후 전화로 응답확인<br>④ 유치조사 |
|---|---|---|---|

조사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조사수행기관 Hankook Research (주)한국리서치

조사문의 이동휘 02-3014-0995 / 김지혜 02-3014-1039 / 이지연 02-3014-0906

##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귀하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귀하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만일 이해가 되시지 않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면접원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시하는 방법1**

대부분은 주된 응답 한 가지만 고르는 문항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응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표로 구성된 질문은 ①에서 ⑤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다면 ②에, '보통이다면 ③에, '그렇다면 ④에, '매우 그렇다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표시하는 방법2**

숫자를 기입해야 할 때는 박스 안에 한 자리씩 기입해 주세요.

<보기2>

문A.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 1 0 명)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3>과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수정액 등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3>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 ① | ② | ③ | ⊗ | ④ |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4>

문B.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B-1로 이동** ② 없다 ➡ **문C로 이동**

☞ 나는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적이 있어서 '①' 에 표시한 후, **문 B-1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 **설명문 반드시 참고**

질문 아래 설명문(응답 기준, 용어 설명 등)이 있는 경우, 설명문을 읽고 응답해 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보기5>

문C.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① 예 ➡ **문C-1로 이동** ② 없다 ➡ **문D로 이동**

## Ⅰ. 먼저 「인구와 가족」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 귀하는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 동 : 만 [ ][ ] 세 ~ 만 [ ][ ] 세
- 청소년 : 만 [ ][ ] 세 ~ 만 [ ][ ] 세
- 청 년 : 만 [ ][ ] 세 ~ 만 [ ][ ] 세

문2) 귀하는 몇 세부터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만 [ ][ ] 세 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독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③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3) 귀하는 몇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만 [ ][ ]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③ 결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4) 귀하는 몇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만 [ ][ ]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자녀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③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5) 귀하는 성인으로서의 자립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상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1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교를 졸업하는 것
② 첫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
③ 부모와 타인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
④ 부모(보호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것
⑤ 결혼하는 것
⑥ 자녀를 출산하는 것
⑦ 주택을 구입하는 것
⑧ 성인으로서 권리를 갖게 되는 것 (선거권, 운전면허 등)
⑨ 기타(적을 것 : _____)

문6)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에게 성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자립이란 성인으로서 독립적으로 본인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 **문6-1로 이동**

③ 그런 편이다 ┐
④ 매우 그렇다 ┘ ➡ **문7로 이동**

문6-1) (자립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다음 요인들이 자립기회의 차이를 만드는데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 항 | 전혀 중요하지 않음 | 거의 중요하지 않은 편임 | 보통임 | 약간 중요한 편임 | 매우 중요함 |
|---|---|---|---|---|---|
| (1) 운(luck)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성별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사는 지역(대도시, 수도권, 농어촌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학력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부모의 소득과 자산 (재력, 부동산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부모의 권력과 사회적 지위 (직업, 명성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7) 귀하가 생각하는 가장 적절한 가족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인해 이루어진 공동체
② 정서적 연대를 바탕으로 함께 거주하는 공동체
③ 반려동물을 포함하여 함께 거주하는 모든 구성원
④ 기타(적을 것 : _____ )

문8) (2022년 6월 1일 기준) 귀하는 결혼하셨습니까? 사실혼의 경우에는 "①배우자 있음" 으로 응답 해 주십시오.

① 배우자 있음 ➡ **문10으로 이동**
② 사별 · 이혼 ➡ **문11로 이동**
③ 결혼하지 않음 ➡ **문9로 이동**

문9) (2022년 6월 1일 기준) 귀하는 향후 결혼을 할 생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9-1로 이동** ② 없다 ➡ **문9-3으로 이동**

문9-1) 향후 몇 년 내로 결혼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① 향후 ( )년 이내
② 정확한 계획은 아직 없음 ➡ **문11로 이동**

문9-2) 이와 같이 기간을 설정하신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결혼비용 때문에(주택마련, 혼수비용) ② 직장 때문에
③ 적당한 결혼상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④ 자유로운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⑤ 아직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⑥ 출산 혹은 양육에 대한 고민 때문에
⑦ 가족(부모, 형제 등)을 부양해야 해서 ⑧ 기타( )

➡ **응답 후 문11로 이동**

문9-3) 결혼을 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결혼비용 때문에(주택마련, 혼수비용) ② 직장 때문에
③ 적당한 결혼 상대를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 ④ 자유로운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⑤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⑥ 출산 혹은 양육에 대한 고민 때문에
⑦ 가족(부모, 형제 등)을 부양해야 해서 ⑧ 기타( )

➡ **응답 후 문11로 이동**

문10) (2022년 6월 1일 기준) 귀하의 가정은 맞벌이를 하고 계십니까?

☞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있는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맞벌이) ② 아니오(외벌이)

문11) (2022년 6월 1일 기준) 귀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있다면 자녀가 몇 명입니까? [ ][ ]명) ② 아니오

문12) 귀하는 자녀를 가지실 의향이 있습니까?

☞ 이미 자녀가 있으신 경우, 향후에 추가로 자녀를 가지실 의향 여부를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 ➡ **문13으로 이동** ② 아니오

문12-1) 위 문12)에서 ②아니오라고 답하신 경우, 자녀를 가지실 의향이 없는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이미 계획한 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② 불임, 난임 등 임신의 어려움 때문에
③ 맞벌이로 인한 자녀 양육의 어려움 때문에
④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⑤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때문에
⑥ 자녀가 살아가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⑦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⑧ 기타 (  )

문13) 귀하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현재와 비교하여 2027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다 ② 출산율이 유지될 것이다 ③ 출산율이 내려갈 것이다

문14)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교육 및 훈련영역(문15)으로 이동**

문14-1) 해외이주를 고려하셨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자기계발을 위해서 ②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③ 행복한 삶을 위해서 ④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서
⑤ 취업이 어려워서 ⑥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
⑦ 빈부격차가 커서 ⑧ 집값이 너무 비싸서
⑨ 안보가 불안해서 ⑩ 기타(적을 것 : _____)

## II. 다음은 「교육 및 훈련」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5) 귀하는 우리나라 입시경쟁이 현재와 비교하여 2027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경쟁이 약화될 것이다
② 경쟁이 유지될 것이다
③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문16) 귀하는 다음 우리 사회의 교육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 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한국 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17) 귀하는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습니까?(대학교 졸업, 중퇴, 재학, 휴학이신 경우 모두 '① 있다'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있다 ② 없다 ➡ **문22로 이동**

문17-1) **가장 최근에 진학한 2-3년제 및 4-6년제 대학(대학원은 포함되지 않음)**의 학교유형, 소재지, 전공계열, 입학년월, 졸업여부, 학년, 졸업년월을 응답해 주십시오.

| 학교유형 | 학교 소재지 (* 보기1 참조) | 전공계열 (* 보기2 참조) | (편)입학년월 | 졸업여부 | 학년 (4학년 이상인 경우, 4학년에 응답) | 졸업년월 (졸업한 경우 응답) |
|---|---|---|---|---|---|---|
| ① 전문대 (2-3년제)<br>② 대학교 (4-6년제) | | | 년 월 | ① 졸업 ➡ 졸업년월<br>② 재학 ➡ 학년<br>③ 휴학 ➡ 학년<br>④ 중퇴 ➡ 문18 | ① 1학년<br>② 2학년<br>③ 3학년<br>④ 4학년 | 년 월 |

*** 보기1(소재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⑱ 기타(해외 등)

*** 보기2(전공계열)**

① 인문계열 ② 사회계열(경상계열 제외) ③ 경상계열 ④ 자연계열 ⑤ 공학계열
⑥ 의/약학계열 ⑦ 교육계열 ⑧ 예체능계열 ⑨ 사관학교, 경찰대 ⑩ 기타

※ 다음(문18~문21)은 **대학을 다닌 경험이 있거나 다니시는 분들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18) 귀하가 대학 등록금을 마련한 가장 주된 방법은 무엇입니까?

☞ "대학 등록금" 은 문17)에서 응답한 전문대(2-3년제) 또는 대학교(4-6년제)를 다니기 위해 지불한 등록금을 의미하며, 대학원은 포함되지 않음

☞ "학자금 대출" 은 생활비, 주택 등을 위한 대출은 제외하고 "학자금 대출" 이라는 이름이 붙는 금융상품의 이용뿐만 아니라, 학자금의 지불을 위하여 각종 기관 및 개인에게 돈을 빌린 경우를 모두 포함

① 국가 장학금 ┐
② 민간 장학금 ┘ ➡ **문19로 이동**

③ 학자금 대출 ➡ **문18-1로 이동**

④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의 지원 ┐
⑤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스스로 마련 ┘ ➡ **문19로 이동**
⑥ 기타 (　　)

문18-1) (문18에 ③ 응답자만) 귀하의 총 학자금 대출 금액은 얼마입니까?

(　　)만원

문18-2) (문18에 ③ 응답자만) 귀하는 학자금 대출을 언제쯤 모두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① 이미 모두 상환했다.　② 향후 1년 이내
③ 향후 1년 이상 3년 미만　④ 향후 3년 이상 5년 미만
⑤ 향후 5년 이상 7년 미만　⑥ 향후 7년 이상 10년 미만
⑦ 향후 10년 이상　⑧ 상환하지 못할 것 같다.

문19) 귀하는 대학 시절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고도 졸업을 늦추거나, 졸업을 늦추기 위해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지 않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문20으로 이동**

문19-1) 대학 시절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고도 졸업을 늦추거나 졸업을 늦추기 위해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　②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
③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서　④ 경제적으로 학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⑤ 문화 및 여가생활을 누리기 위해　⑥ 기타(적을 것: _____)

문20)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 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나는 대학교육에 만족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나는 대학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나는 대학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나는 내가 선택한 대학에서의 학과(전공)가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21) 귀하는 추후 대학원에 진학할 의사가 있습니까?

☞ 대학원에 진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 '③ 대학원에 진학을 하였다'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 ➡ **문24로 이동** ② 아니오 ➡ **문24로 이동** ③ 대학원에 진학을 하였다

문21-1) 대학원에 진학하셨다면 최종 또는 현재 학위과정은 무엇입니까?

① 석사과정 ② 박사과정 ③ 석·박사 통합과정

문21-2)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이십니까?

※ 대학원을 중퇴한 경우에는 '② 휴학'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재학 ② 휴학 ③ 수료 ④ 졸업

➡ **응답 후 문24로 이동**

※ 다음(문22~문23)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분(고졸 이하 및 재수생 등 비진학자)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22) 귀하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고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해서
②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③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④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⑤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⑥ 고등학교 시절, 졸업 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⑦ 기타(적을 것 : _____)

문23) 귀하는 추후 대학에 진학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24) 귀하는 고등학교를 다니셨습니까?(혹은 다니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문26으로 이동**

문24-1) 다니셨던(혹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일반고　　② 자율형고(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③ 특성화고(공고, 상고, 실업고, 전문계고 등)　　④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특목고)
⑤ 과학/영재고(특목고)　　⑥ 외국어/국제고(특목고)
⑦ 예술/체육고(특목고)　　⑧ 기타(적을 것 : _____)

문24-2) 고등학교 재학 시 다음의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적**이 있습니까? (본인이 직접 찾아 개인적으로 참여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문24-2-1)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받았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 문 항 | 문24-2)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경험 | 문24-2-1) 도움이 되는 정도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1) 진로, 직업, 취업 상담 | ① 예 ➡<br>② 아니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진로와 직업 수업 | ① 예 ➡<br>② 아니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진로, 직업 체험(현장 견학, 현장 직업체험, 직업실무 체험, 캠프 등) | ① 예 ➡<br>② 아니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학과, 전공 체험(대학교 방문, 학과 및 전공 체험 등) | ① 예 ➡<br>② 아니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진로, 직업 특강강의 및 설명회박람회 참석 | ① 예 ➡<br>② 아니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취업처 연계 | ① 예 ➡<br>② 아니오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25)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 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나는 고등학교 교육에 만족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나는 고등학교 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나는 고등학교 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나는 내가 선택한 고등학교에서의 전공(계열)이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다음(문26~문31)은 모든 대상자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26) 귀하는 지난주(2022년 5월25일~5월31일)에 주로 취업준비를 하셨습니까?

☞ 취업준비란 구직, 이직, 창업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탐색 이상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준비, 취업을 위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도 취업준비에 포함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 **문29로 이동**

문26-1) 귀하는 취업을 얼마동안 준비하셨습니까?

( ) 년 ( )개월 (예: 6개월 일 경우 0년 6개월)

문27) 귀하는 취업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였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응답)

☞ 앞서 문26-1에서 응답 해 주신 취업 준비 기간 동안 경험한 항목에 '예' 응답 해 주시면 됩니다.

| 문 항 | 취업준비 경험 | |
|---|---|---|
| (1)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통학을 통한 교육이나 훈련(어학, 면접 제외) | ① 예 | ② 아니오 |
| (2) 인터넷 강의, 어플, 동영상 등을 활용한 교육이나 훈련(어학, 면접 제외) | ① 예 | ② 아니오 |
| (3) 영어회화, 제2외국어, 한자능력, 토익, 토플 등 준비(인터넷 포함) | ① 예 | ② 아니오 |
| (4) 해외 연수, 어학 연수 경험 | ① 예 | ② 아니오 |
| (5) 면접 훈련(인터넷 포함) | ① 예 | ② 아니오 |
| (6) 자소서 작성 훈련(인터넷 포함) | ① 예 | ② 아니오 |
| (7) 취업전문회사 자문이나 컨설팅 | ① 예 | ② 아니오 |
| (8) 현장실습 경험 | ① 예 | ② 아니오 |
| (9)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 ① 예 | ② 아니오 |
| (10) 인턴 경험 | ① 예 | ② 아니오 |
| (11) 봉사활동 경험 | ① 예 | ② 아니오 |
| (12) 동아리, 스터디 활동 경험 | ① 예 | ② 아니오 |
| (13) 희망하는 일자리 관련 아르바이트 경험 | ① 예 | ② 아니오 |
| (14)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 ① 예 | ② 아니오 |

문28) 귀하는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어디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응답)
문28-1)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 앞서 문26-1에서 응답 해 주신 취업 준비 기간 동안 도움 받은 경험에 대해 말씀 해 주세요

| 문 항 | 문28) 도움 받은 경험 | 문28-1) 도움이 되는 정도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1) 학교(상담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 | ① 예 ➡<br>② 아니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공공기관(고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 ① 예 ➡<br>② 아니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 ① 예 ➡<br>② 아니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부모님이나 친인척 | ① 예 ➡<br>② 아니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친구, 선후배 | ① 예 ➡<br>② 아니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① 예 ➡<br>② 아니오 | ① | ② | ③ | ④ | ⑤ |

**➡ 문28) 사 도움 받은 경험이 모두 ② 아니오 인 경우는 문28-4로 이동**

문28-2) 귀하는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주체로부터 주로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
(문28에서 '예'라고 응답한 항목만 선택하여 응답)

| 문 항 | 정보 제공 | 교육/ 훈련 | 상담 | 일자리 알선 | 금전적 지원 | 기타 (구체적으로) |
|---|---|---|---|---|---|---|
| (1) 학교(상담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_____ |
| (2) 공공기관(고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_____ |
| (3)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_____ |
| (4) 부모님이나 친인척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_____ |
| (5) 친구, 선후배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_____ |
| (6) 기타 (구체적으로_____)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_____ |

**➡ (3) 사설기관 문항에 응답한 자는 문28-3으로 이동, 아닌 경우는 문28-4로 이동**

문28-3) (문28-2에서 (3)번 항목 응답자만) 귀하가 도움을 받은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을 이용하는데 월평균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였습니까?

약 □□□□□ 만원

문28-4)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에 지불한 비용을 제외하고 시험응시료, 취업을 위한 교재, 도서 구입 등 취업준비를 위해 월 평균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였습니까?(중·고등학교 및 대학(원)교의 정규 수업료 및 등록금 제외)

약 □□□□□ 만원

문28-5) 취업 준비를 위해 평일 하루에 투자한 시간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십니까?

1일 평균 약 □□ 시간

문29) 귀하는 현재까지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교원 임용 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이 있습니까?

☞ 시험 준비는 학교 재학 시절을 포함하여 현재까지의 시험 준비를 의미하며, 공단(공사) 내부의 진급 시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있다 ② 없다

문30) 귀하는 향후 직업 훈련을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 직업훈련은 취업 및 창업 준비,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 및 훈련과 인턴 근무 등도 포함합니다.
단순한 취미활동을 위한 학원수강과 정규학교교육과 관련된 학원수강 및 실습(교생실습, 사회복지사 실습, 병원실습 등)은 제외됩니다.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직업 훈련(업무능력 향상 교육)이 있는 경우 본인이 해당 교육 수강자에 해당된다면 ①예로 응답 해 주세요.

① 예 ② 아니오 ③ 이미 받고 있다

문31) 귀하는 다음 교육 대책 중 정부가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대학 장학금 지원정책(국가장학금 등)
②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정책
③ 청년 진로관련 정책(진로상담, 진로교육 등)
④ 청년 직업교육 정책(취업지원센터, 일학습병행제 등)
⑤ 청년 인재양성 정책(청년인재 집중양성, 이공계 미취업자 산업맞춤 연수 등)
⑥ 기타 (적을 것: _____ )

## Ⅲ. 다음은 「경제와 고용」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32)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은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분위기 좋은 회사
② 급여가 높은 회사
③ 유명한 회사
④ 안정적인 회사
⑤ 퇴근이 빠른 회사
⑥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
⑦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
⑧ 복지 수준이 좋은 회사
⑨ 기타(적을 것 : _____)

문33) 귀하는 2023년도 최저 임금으로 얼마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실제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이며, 전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청년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2022년도 최저 임금 평균은 9,588원입니다.

시간급 [ ][ ][ ][ ][ ] 원

문34) 한 달 생활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가족을 제외한 본인 생활비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 생활비 포함 내용: 식비, 교통비, 통신비, 문화생활비(오락, 문화생활, 도서구입 등), 학원수강비, 시험응시료, 취업을 위한 도서 등 자료 구입비, 주거비 등으로 대학 등록금은 포함하지 않음

약 [ ][ ][ ][ ][ ] 만원

문34-1) 생활비 중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약 [ ][ ][ ] %

문35)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지원(금전적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경제적 지원(금전적 지원)에는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의 생활비(문34)를 포함하며
주택 관련 전/월세 보증금 및 주택 구입 시 대금 지원과 일시적으로 받은 용돈, 축하금도 포함됩니다.
대학교 등록금 지원을 받은 것과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대한 증여도 경제적 지원에 포함됩니다.

현재 혼인 상태이신 경우 본인의 부모님과 더불어 배우자의 부모(처가, 시댁)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우 경제적 지원 경험을 '②있다' 로 응답 해 주십시오.

① 없다 ➡ **문36으로 이동**　　② 있다 ➡ **문35-1로 이동**

문35-1) 지난 1년 간 귀하의 전체 소득(세후 기준)과 부모님(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은 얼마나 되십니까?

| 문항 | 비용(만원) |
|---|---|
| 1. 지난 1년간 전체 소득<br>(근로소득, 금융소득 등을 포함한 세후 기준) | 연간 (　　)만원 |
| 2. 지난 1년간 부모님으로부터 지원 받은 액수 | 연간 (　　)만원 |

문36) 귀하는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부업체, 또는 개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학자금 대출 포함)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문37로 이동**

문36-1)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부업체 또는 개인에게 채무가 발생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

① 학자금 마련　② 주거비 마련(전·월세자금 대출 등)
③ 생활비 마련(식비, 의료비 등)　④ 창업 자금 마련
⑤ 기타(적을 것 : _____)

문36-2) 귀하는 어느 기관을 통해 돈을 빌리셨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은행　② 제2금융권　③ 대부업체　④ 기타(적을 것: _____)

문37) 귀하는 **지난 1년간(2021년 6월~2022년 5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현재 부모님 및 친척 등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주거비용 및 냉/난방비 지출에 대해 본인이 모를 경우만 (1), (2)에 '⑨ 잘 모름' 에 체크)

| 구 분 | 예 | 아니오 | 잘 모름 |
|---|---|---|---|
| (1)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 ① | ② | ⑨ |
| (2)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 ① | ② | ⑨ |
| (3)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 ① | ② | |
| (4)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 ① | ② | |
| (5)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 ① | ② | |
| (6)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 ① | ② | |
| (7)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 ① | ② | |
| (8)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 ① | ② | |
| (9)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 ① | ② | |

문38) 귀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현재 귀하의 취업상태와 상관없이, 귀하가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 ➡ **문39으로 이동** ② 아니오

문38-1)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대기업보다 낮은 성취감
② 관련된 여러 업무 경험이 부재
③ 고용 불안정
④ 사회적으로 낮은 인지도
⑤ 낮은 급여 수준
⑥ 대기업으로의 이직이 불가능
⑦ 개인의 발전가능성이 없음
⑧ 대기업보다 낮은 복지 수준
⑨ 기타(적을 것 : _____)

문39) 청년층의 중소기업 일자리 선호도 개선을 위해 어떤 점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임금수준 향상
② 정규직 고용 확대
③ 유급휴가, 퇴직금, 초과근무수당 등 복리후생 개선
④ 근로시간 준수
⑤ 민주적 의사소통 문화 정립
⑥ 자기개발 기회 제공
⑦ 기타 (적을 것: _____ )

문40) 창업을 해 보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창업을 생각해보았고 실제로 창업을 했다
② 창업을 생각해보았으나 실제로 창업을 해 본 적은 없다
③ 창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문41) 귀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특례 이전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 포함)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존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한 제도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임
국민취업지원제도 통합 이전에 청년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참여한 경험이 있을 경우 참여한 적이 있다로 응답

① 참여하고 있다 ┐
② 참여한 적이 있다 (참여년도: 년) ┘ ➡ **문41-1로 이동**
③ 참여한 적이 없다 ➡ **문41-3으로 이동**

문41-1) (문41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특례, 이전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포함) 참여는 귀하의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 ┐ ➡ **문41-2로 이동**
② 별로 도움 되지 않았다 ┘
③ 보통이다. ┐
④ 조금 도움이 되었다 ├ ➡ **문42로 이동**
⑤ 많은 도움이 되었다 ┘

문41-2) (문41-1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이유 모두 선택)

① 지원이 체감되지 않아서
② 지원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③ 지원받는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서
④ 지원기관 또는 담당자의 지원이 적절하지 못해서
⑤ 지원받기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되어서
⑥ 기타(적을 것 : _____)

➡ **응답 후 문42로 이동**

문41-3) (문41에서 ③으로 응답한 경우) 귀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특례, 이전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포함)을 알고 계시고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참여할 의향은 있었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참여할 수 없었던 경우는 '②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 로 응답해 주세요.

① 알고 있고 참여할 의향이 있다
②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
③ 모른다

문42) 귀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 *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지 6개월 이내인 만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2~3년간 300~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 매칭으로 1,600~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지 6개월이 넘은 청년이 5년 근속 시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

① 참여하고 있다 ┐
② 참여한 적이 있다 (참여년도: 년) ┘ ➡ **문42-1로 이동**
③ 참여한 적이 없다 ➡ **문42-3으로 이동**

문42-1) (문42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청년 내일채움공제 참여는 귀하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 ┐ ➡ **문42-2로 이동**
② 별로 도움 되지 않았다 ┘
③ 보통이다. ┐
④ 조금 도움이 되었다 ┤ ➡ **문43으로 이동**
⑤ 많은 도움이 되었다 ┘

문42-2) (문42-1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이유 모두 선택)

① 지원이 체감되지 않아서
② 지원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③ 지원받는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서
④ 지원기관 또는 담당자의 지원이 적절하지 못해서
⑤ 지원받기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되어서
⑥ 기타(적을 것 : _____)

➡ **응답 후 문43으로 이동**

문42-3) (문42에서 ③으로 응답한 경우) 귀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알고 계시고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참여할 의향은 있었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참여할 수 없었던 경우는 '②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 로 응답해 주세요.

① 알고 있고 참여할 의향이 있다
②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
③ 모른다

문43) 귀하는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청년도전지원사업: 6개월 동안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4주 동안 취업역량강화 및 심리정서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수 완료 시 2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사업

※ 주요 지원 대상 : ① 6개월 이상 취업, 직업훈련에 참여한 적이 없는 19세 이상 청년, ②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③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생활한 적이 있는 청소년 등

① 참여하고 있다 ➡ **문43-1로 이동**
② 참여한 적이 있다 (참여년도: 년) ➡ **문43-1로 이동**
③ 참여한 적이 없다 ➡ **문43-3으로 이동**

문43-1) (문43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취업역량강화 또는 심리정서적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 ➡ **문43-2로 이동**
② 별로 도움 되지 않았다 ➡ **문43-2로 이동**
③ 보통이다 ➡ **문44로 이동**
④ 조금 도움이 되었다 ➡ **문44로 이동**
⑤ 많은 도움이 되었다 ➡ **문44로 이동**

문43-2) (문43-1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이유 모두 선택)

① 프로그램의 기간 때문에(짧거나 길어서)
② 거리 때문에(집에서 멀어서 등)
③ 담당자가 불친절해서
④ 프로그램 참여 후 수당이 적어서(20만원)
⑤ 프로그램 참여 후 취업 지원을 받지 못해서
⑥ 프로그램 참여 후 취업 지원을 받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⑦ 프로그램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⑧ 기타(적을 것 : _____)

➡ **응답 후 문44로 이동**

문43-3) (문43에서 ③으로 응답한 경우) 귀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알고 계시고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참여할 의향은 있었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참여할 수 없었던 경우는 '②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로 응답해 주세요.

① 알고 있고 참여할 의향이 있다
②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
③ 모른다

문44) 귀하는 현재까지 한번이라도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음식배달앱, 대리운전앱, 프리랜서 마켓앱, 재능마켓앱, 유튜브 등)을 통해 일거리를 받고 이들이 중개하는 수당을 받는 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표 예시
- 음식배달앱을 통한 배달업체 라이더
- 대리운전앱을 통한 대리운전
- 재능공유앱 등 플랫폼을 통한 디자인, 콘텐츠 제작 의뢰

① 예 ➡ **문44-1로 이동** ② 아니오 ➡ **문45로 이동**

문44-1) 귀하는 지난 4주(2022년 5월 4일~5월 31일)동안 이 일을 수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예 ➡ **문44-2로 이동** ② 아니오 ➡ **문45로 이동**

문44-2) 귀하는 지난 4주(2022년 5월 4일~5월 31일)동안 이 일을 주업으로 수행하였습니까?

① 예 (주업임) ② 아니오 (부업임)

문45) 귀하는 지난 주(2022년 5월25일~5월31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셨습니까?

☞ 돈을 받지 않고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 한 경우도 '일을 하였음' 입니다.

① 일을 하였음 ➡ **문45-1로 이동**
② 휴가 및 일시 휴직 ➡ **문45-1로 이동**
③ 일을 하지 않았음 ➡ **문54로 이동**

문45-1) (문45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귀하는 지난주에 총 몇 개의 일자리에서 일을 하였거나 휴가·일시휴직 상태였습니까? (투잡, 쓰리잡 등 동시에 갖고 있는 일자리의 개수를 의미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이상

※ 현재 일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일자리가 있는 경우 (문45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 응답해 주십시오.

문46) 다음은 **지난주(2022년 5월25일~5월31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 상태였던 현재 일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지난주에 가장 많은 시간동안 일을 한 일자리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동일한 경우 임금이 많은 일자리, 시간과 임금이 동일한 경우 최근에 시작한 일자리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사업체란 기업체보다 작은 단위의 개념으로 조사대상자가 직접 일하고 있는 직장을 의미함. 예) ○○은행 △△동 지점에 근무하는 경우, 기업체인 ○○은행 전 사원 수 15,000명 기준이 아닌 △△동 지점의 인원 수 20명을 기준으로 응답

| 구분 | 내용 | | |
|---|---|---|---|
| (1) 일을 시작한 시기 | □□□□ 년 □□ 월 | | |
| (2) 근속년수 | □□ 년 □□ 개월 | | |
| (3) 종사상 지위 | ① 임금 근로자 | ② 비임금 근로자 | |
| (4) 고용형태 | ① 정규직<br>② 비정규직 | 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br>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br>③ 무급가족종사자 | |
| (5) 근로시간 유형 | ① 전일제 ② 시간제 | | |
| (6) 직업<br>(별첨자료 참조) | ① 관리자<br>④ 서비스 종사자<br>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br>⑩ 직업군인 |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br>⑤ 판매 종사자<br>⑧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br>⑪ 기타( ) | ③ 사무 종사자<br>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br>⑨ 단순노무 종사자 |
| (7) 직장 유형 | ①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br>③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기업<br>⑤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br>⑦ 기타 ( ) | ② 외국인회사<br>④ (재단, 사단)법인단체<br>⑥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 |
| (8) 종사자 수<br>(사업체* 기준) | ① 1-4인<br>④ 30-99인<br>⑦ 500인 이상 | ② 5-9인<br>⑤ 100-299인 | ③ 10-29인<br>⑥ 300-499인인 |
| (9) 현재 직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내용의 직무 수준은 | | | |
| (9-1) 나의 교육수준보다 | ① 낮다 | ② 유사하다 | ③ 높다 |
| (9-2) 나의 기술수준보다 | ① 낮다 | ② 유사하다 | ③ 높다 |
| **➡ (9-3)번은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분(문17 '① 있다' 응답)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9-3) 나의 전공분야와<br>(**대학진학 경험자) | ① 일치한다 | ② 불일치한다 | |
| (10) 귀하는 현재 일자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① 매우 싫어한다 ② 싫어한다 ③ 약간 싫어한다 ④ 보통이다 ⑤ 약간 좋아한다 ⑥ 좋아한다 ⑦ 매우 좋아한다 | | | |

문47) 현재(2022년 6월 1일 기준)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실제로 얻는 세후 기준 월 평균 소득과 귀하가 원하는 월 평균 소득, 실제로 일하는 노동시간, 귀하가 원하는 주 노동시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1) 현재 본인의 월 평균 소득 : 약 □□□□□ 만원

(2) 본인이 원하는 월 평균 소득 : 약 □□□□□ 만원

(3) 현재 본인의 주당 노동시간 : 약 □□ 시간

➡ **주당 35시간 미만일 경우 문 47-3-1로 이동, 35시간 이상일 경우 "(4)본인이 원하는 주당 노동시간"으로 이동**

문47-3-1) 귀하는 지난주(2022년 5월 25일~5월 31일)에 일이 더 주어졌거나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다른 일(직장)이 주어졌다면 할 수 있었습니까?

① 있었음 ② 없었음

문47-3-2) 귀하는 지난 4주(2022년 5월 4일~5월 31일) 동안 더 많은 시간 일하기 위해 현재 하는 일을 더 찾아보거나 다른 일(직장)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었음 ② 없었음

(4) 본인이 원하는 주당 노동시간 : 약 □□ 시간

문48) 직장(일자리)에서 본인의 조건에 맞는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
② 받고 있지 못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받고 있는 편이다
⑤ 충분히 받고 있다

문49) 현 직장(일자리)을 그만두고 이직할 의향이 있습니까? (창업 준비, 업종 변경 등도 이직 준비에 포함됩니다.)

① 있다 ② 없다 ➡ **임금근로자(문46-3의 ①)은 문50, 비임금근로자(문46-3의 ②)는 문59로 이동**

문49-1) 이직을 희망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
② 개인발전/승진
③ 더 나은 근무환경(직장상사, 동료, 식대, 출퇴근 시간/거리 등)
④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⑤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
⑥ 기술 또는 기능 수준이 맞지 않아서
⑦ 개인 사업을 위해서
⑧ 건강상의 이유로
⑨ 집안사정 때문에(육아, 가사부담 등 포함)
⑩ 기타(적을 것 : _____)

➡ **응답 후 임금근로자(문46-3의 ①)은 문50, 비임금근로자(문46-3의 ②)는 문59로 이동**

※ 다음(문50~문53)은 임금근로자의 현재 일자리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취업 상태인 임금근로자(문46-(3)의 ①)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50) 귀하는 현재 일자리를 찾기 위해 어떠한 구직 활동들을 하셨습니까?

☞ 구직활동이란 일자리를 찾기 위해 구인현황, 근로조건 등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하는 활동으로, 대면활동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이메일, SNS 등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활동을 모두 포함

| 문항 | 예 | 아니오 |
|---|---|---|
| (1) 고용주에 직접 연락(방문)하여 면접을 보았다 | ① | ② |
| (2) 정부 취업지원 기관에 연락(방문)하였다 | ① | ② |
| (3) 민간 취업지원 기관에 연락(방문)하였다 | ① | ② |
| (4) 친구, 선배 또는 친척에게 연락하였다 | ① | ② |
| (5)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취업지원 기관에 연락(방문)하였다 | ① | ② |
| (6) 대학교 또는 대학교 취업지원 기관에 연락(방문)하였다 | ① | ② |
| (7) 관심기업에 이력서 또는 지원서를 제출하였다 | ① | ② |
| (8) 기업정보 제공 기관을 통해 기업정보를 확인하였다 | ① | ② |
| (9) 구직 광고를 게시하였다 | ① | ② |
| (10) 구인 광고를 살펴보았다 | ① | ② |
| (11) 직업훈련 프로그램 과정에 참여하였다 | ① | ② |
| (12) 기타 (자세히 적을 것 : ) | ① | ② |

문50-1) 위의 항목에서 '예'로 응답한 구직 활동 중 일자리를 찾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활동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만 선택)

( ) 번

문51) 귀하는 현재 직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근로자의 존엄성이 침해되거나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 업무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 (9)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 (10)의 '위험한 근로환경', 이란, 기계 등의 진동, 심한 소음, 일하지 않을 때조차 땀을 흘릴 정도로 높은 온도, 실내/실외에 관계없이 낮은 온도, 연기, 먼지(목분진, 광물 분진 등) 등의 흡입, 신너 등 유기용제 증기 흡입, 화학제품/물질을 취급하거나 피부와 접촉, 다른 사람이 피는 담배연기, 폐기물, 체액, 실험물질 등 감염을 일으키는 물질을 취급하거나 직접 접촉하는 경우를 의미함.

| | 문 항 | 있다 | 없다 | 모르겠다 |
|---|---|---|---|---|
| 직장내 괴롭힘 | (1)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과도한 업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일을 떠넘겼다. | ① | ② | ⑨ |
| | (2)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나에게 소리치거나 화를 내거나 모욕적인 욕설을 하거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였다. | ① | ② | ⑨ |
| | (3) 고용주, 직장상사가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암묵적·직접적으로 강요하였다. | ① | ② | ⑨ |
| | (4)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였다. | ① | ② | ⑨ |
| | (5) 교육·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 대우 등에서 나를 다른 동료들보다 불합리하게 차별하였다 | ① | ② | ⑨ |
| | (6)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요구할 수 없도록 암묵적·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하거나 내 요구를 무시하였다(병가, 휴가, 휴직, 교육훈련 등) | ① | ② | ⑨ |
| | (7) 나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 또는 행동을 했다 (이메일, 메시지, 전화 포함/성적 농담, 성추행 등 포함) | ① | ② | ⑨ |
| | (8)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업무 외의 대화나 식사, 모임 등에서 나를 조직적으로 제외하였다. | ① | ② | ⑨ |
| 산업안전 | (9) 회사로부터 업무수행 중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인 및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혹은 교육을 받았다. | ① | ② | ⑨ |
| | (10) 나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근로환경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었다. | ① | ② | ⑨ |
| | (11) 업무수행 중 업무로 인하여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로 인해 다친 적이 있다. | ① | ② | ⑨ |
| | ➡ (11)번에 ①있다 로 응답한 경우 (12)번을 응답, ②없다, ⑨모르겠다로 응답한 경우 문52로 이동 | | | |
| | (12) 산업재해보험 급여(병원비,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보상금 등)를 받은 적이 있다. | ① | ② | ⑨ |

문52) 귀하의 현재 직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본인을 포함하여 사내에서 발생한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① 있었다 ➡ 문52-1로 이동
② 없었다 ➡ 문53으로 이동
③ 모르겠다 ➡ 문53으로 이동

문52-1) 귀하의 현재 직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던 경우, 상담 또는 고충 처리 절차가 적절히 작동했습니까?

① 고충처리 부서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다
② 고충처리 부서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았지만,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다
③ 고충처리 부서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았지만,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④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직장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였다

문53) 귀하의 현재 직장에는 다음과 같은 조직 측은 제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노사협의회**란?
노동자 대표와 고용주 대표가 각각 동수로 구성된 기구로, 3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생산성 향상 및 성과배분, 근로자의 채용·배치, 교육훈련, 고충처리, 작업환경개선과 노동자의 건강증진, 인사 및 노무관리 개선,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작업및휴게시간의운용, 임금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등을 협의합니다.

☞ **업무 관련 제안제도**란?
업무혁신과 경영 효율화, 노동자 복리증진 등에 관련하여 직원이 의견을 개진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제출된 제안에 대해 절차를 거쳐 심사, 포상, 사내규정 재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 **조직적응 프로그램**이란?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 및 조직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 문 항 | 있다 | 없다 | 모른다 |
|---|---|---|---|
| (1) 노동조합 | ① | ② | ③ |
| | ➡ **①있다** 응답 시 **문53-(3)업무 관련 제안제도**로 이동 | ➡ **②없다, ③모른다** 응답 시 **문53-(2) 노사협의회**로 이동 | |
| (2) (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1)노동조합 문항에서 ②,③인 경우만 응답 ) | ① | ② | ③ |
| (3) 업무 관련 제안제도 | ① | ② | ③ |
| (4) 조직적응 프로그램 | ① | ② | ③ |

➡ **응답 후 문59로 이동**

※ 현재 구직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일을 하지 않은 경우 (문45에서 ③으로 응답) 응답해 주십시오.

문54) 귀하는 지난 4주(2022년 5월 4일~5월 31일) 내에 직장(일자리)을 구해 보았습니까? (창업준비도 포함됩니다.)

① 직장을 구해보았고,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 **문58로 이동**
② 직장을 구해보았지만,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 **문55로 이동**
③ 직장을 구해보지 않았다 ➡ **문56으로 이동**

문55) 귀하가 지난주(2022년 5월 25일~5월 31일)에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육아나 돌봄, 출산, 가사 활동으로 인해
②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③ 학교(정규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 **문59로 이동**
④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⑤ 진학 준비 중이어서
⑥ 취업 준비 중이어서
⑦ 기타(적을 것 : _____)

➡ **응답 후 문58로 이동**

문56) 다음의 각 항목이 지난주(2022년 5월 25일~5월 31일)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에 해당되는지 응답해 주세요.

| 구 분 | 예 | 아니오 |
|---|---|---|
| (1)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 ① | ② |
| (2)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 | ① | ② |
| (3) 여행이나 문화예술, 취미활동을 위해서 | ① | ② |
| (4) 시간적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 ① | ② |
| (5) 육아나 돌봄, 가사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야 해서 | ① | ② |
| (6) 질병이나 지병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 ① | ② |
| (7) 학교(정규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 ① | ② |
| (8) 입시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 ① | ② |
| (9) 학원에 다니지 않고 진학준비 중이어서 | ① | ② |
| (10)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통학 중이어서 | ① | ② |
| (11)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고 취업준비 중이어서 | ① | ② |
| (12) 군 입대 대기 중이어서 | ① | ② |
| (13) 학교와 학원 입학 측은 직업훈련기관 통학 대기 중이어서 | ① | ② |
| (14) 계속 취업에 실패해서 | ① | ② |
| (15)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 ① | ② |
| (16)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 ① | ② |
| (17) 기타(적을 것 : _____) | ① | ② |

문56-1) 위의 항목에서 '예'로 응답한 항목 중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하나만 선택)

( ) 번 ➡ **문56-(7)에 '①예'를 선택한 경우 문59로 이동, 그 외 번호는 문57로 이동**

문57) 귀하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하는 항목 한 가지만 선택 후, 응답해 주십시오)

| 선택(V) | 비교육 및 미취업 기간 |
|---|---|
| (1) 1개월 미만 ( ) | ( )일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5일) |
| (2) 1개월 이상 ( ) |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3개월) |
| (3) 1년 - 2년 미만 ( ) | ( )년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년 6개월) |
| (4) 2년 이상 ( ) | ( )년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2년 6개월) |

➡ **응답 후 문59로 이동**

문58) 귀하가 구직활동을 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가장 최근 구직활동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하는 항목 한 가지만 선택 후, 응답해 주십시오)

| 선택(V) | 구직활동 기간 |
|---|---|
| (1) 1개월 미만 ( ) | ( )일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5일) |
| (2) 1개월 이상 ( ) |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3개월) |
| (3) 1년 - 2년 미만 ( ) | ( )년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년 6개월) |
| (4) 2년 이상 ( ) | ( )년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2년 6개월) |

➡ **응답 후 문59로 이동**

※ 다음(문59~문62)은 이전 일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대상자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59) 귀하는 취업 후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② 해고를 당한 적이 있다' 로 응답 해 주세요.

① 스스로 그만둔 적이 있다
② 해고를 당한 적이 있다
③ 둘 다 경험한 적이 있다
➡ **문60으로 이동**

④ 둘 다 경험한 적이 없다 ➡ **하단 이동 로직에 따라 이동**

**④ 둘 다 경험한 적이 없다 로 응답한 경우**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이었던 경우(문45=①, ②) ➡ **문62-1-1로 이동**
지난주에 일을 하지 않은 경우 (문45=③) ➡ **주거영역(문64)로 이동**

문60) 직장을 그만두었을 당시, 실업급여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① 예 ➡ **문61로 이동**
② 아니오 ➡ **하단 이동 로직에 따라 이동**

**② 아니오 로 응답한 경우**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이었던 경우(문45=①, ②) ➡ **문62-1-1로 이동**
지난주에 일을 하지 않은 경우 (문45=③) ➡ **문62-1-2로 이동**

문61) 귀하는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하단 이동 로직에 따라 이동** ② 아니오

문61-1)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실업급여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②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③ 절차가 복잡해서, 요구사항이 많아서 ④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혜택이 크지 않아서
⑤ 신청 도중에 취업이 되어서 ⑥ 기타(적을 것 : _____)
➡ **하단 이동 로직에 따라 이동**

**문61=① 예로 응답** 또는 문61-1 응답 후,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이었던 경우(문45=①, ②) ➡ **문62-1-1로 이동**
지난주에 일을 하지 않은 경우 (문45=③) ➡ **문62-1-2로 이동**

※ 문62-1-1~문63은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 관련 문항입니다.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란
- **최종 학교 졸업 후**(예: 대학교 재학 중이면 고등학교 졸업 기준)
-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거나 가족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주 18시간 이상 일**을 한 **일자리 중 첫 번째 일자리**를 의미 합니다.

학교 **입학 전, 재학 중에 해당 일자리를 시작**했더라도 **졸업 후까지 계속 일했다면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에 해당**됩니다.

문62-1-1) 귀하의 현재 일자리가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와 일치합니까?

① 예 ➡ **추가영역(문64)으로 이동**

② 아니오 ➡ **문62-1-2로 이동**

문62-1-2) 귀하의 이전 일자리 경험 가운데, '졸업 후 첫 일자리' 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있습니까?

① 예 ➡ **문63으로 이동**

② 아니오 ➡ **추가영역(문64)으로 이동**

문63) 귀하의 **최종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에 관해서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 최종 학교 졸업 후 처음으로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거나 가족사업체에서 무급으로 18시간 이상 일을 했던 경우, 해당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 최종 학교 졸업 전에 시작하였지만 졸업 후에도 계속 이어진 경우 졸업 후 첫 일자리에 해당됩니다.
- 사업체란 기업체보다 작은 단위의 개념으로 조사대상자가 직접 일하고 있는 직장을 의미함. 예) ○○은행 △△동 지점에 근무하는 경우, 기업체인 ○○은행 전 사원 수 15,000명 기준이 아닌 △△동 지점의 인원 수 20명을 기준으로 응답

| 구분 | 내용 | | |
|---|---|---|---|
| (1) 일을 시작한 시기 | □□□□ 년 □□ 월 | | |
| (2) 근속년수 | □□ 년 □□ 개월 | | |
| (3) 종사상 지위 | ① 임금 근로자 | ② 비임금 근로자 | |
| (4) 고용형태 | ① 정규직<br>② 비정규직 | 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br>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br>③ 무급가족종사자 | |
| (5) 근로시간 유형 | ① 전일제 ② 시간제 | | |
| (6) 직업<br>(별첨자료 참조) | ① 관리자 |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③ 사무 종사자 |
| | ④ 서비스 종사자 | ⑤ 판매 종사자 |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⑧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⑨ 단순노무 종사자 |
| | ⑩ 직업군인 | ⑪ 기타(　　) | |
| (7) 직장 유형 | ①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 ② 외국인회사 | |
| | ③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기업 | ④ (재단, 사단)법인단체 | |
| | ⑤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 ⑥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 |
| | ⑦ 기타 (＿＿＿＿＿＿) | | |
| (8) 종사자 수<br>(사업체* 기준) | ① 1-4인 | ② 5-9인 | ③ 10-29인 |
| | ④ 30-99인 | ⑤ 100-299인 | ⑥ 300-499인인 |
| | ⑦ 500인 이상 | | |
| (9) 최종학교 졸업 후 첫 직장/일자리에서 수행한 업무 내용의 직무 수준은 | | | |
| (9-1) 나의 교육수준보다 | ① 낮았다 | ② 유사했다 | ③ 높았다 |
| (9-2) 나의 기술수준보다 | ① 낮았다 | ② 유사했다 | ③ 높았다 |
| **➡ (9-3)번은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분(문17 '① 있다' 응답)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9-3) 나의 전공분야와<br>(**대학진학 경험자) | ① 일치했다 | ② 불일치했다 | |
| (10) 주당 근로시간 | 약 □□ 시간 | | |
| (11) 월 소득 | 약 □□□□□ 만원 | | |
| (12) 귀하는 졸업 후 첫 일자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① 매우 싫어한다 ② 싫어한다 ③ 약간 싫어한다 ④ 보통이다 ⑤ 약간 좋아한다 ⑥ 좋아한다 ⑦ 매우 좋아한다 | | | |

## Ⅳ. 다음은 「주거」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64) 귀하는 본인 명의의 집을 언제쯤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① 이미 소유하고 있다
② 향후 1년 이내
③ 향후 1년 이상 3년 미만
④ 향후 3년 이상 5년 미만
⑤ 향후 5년 이상 7년 미만
⑥ 향후 7년 이상 10년 미만
⑦ 향후 10년 이상 20년 미만
⑧ 향후 20년 이후
⑨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

☞ 문65~문69는 평소 집에 대해 귀하께서 갖고 계신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65)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 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문65-1로 이동
② 그렇지 않다 ➡ 문65-1로 이동
③ 보통이다 ➡ 문66으로 이동
④ 그렇다 ➡ 문65-2로 이동
⑤ 매우 그렇다 ➡ 문65-2로 이동

문65-1) '내 명의의 집이 있어야 한다' 는 의견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그렇지 않다' 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주십시오)

① 높은 집값 때문에
② 자가마련을 위해 현재의 삶을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
③ 자산 증식 및 보전 수단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④ 이사를 자주 해야 할 상황이라서
⑤ 자가 보유 여부보다는 거주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⑥ 기타(적을 것 : _____)

➡ 응답 후 문66으로 이동

문65-2) '내 명의의 집이 있어야 한다' 는 의견에 대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 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주십시오)

①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② 이사하지 않고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어서
③ 자산 증식 및 보전을 위해서
④ 자가가 있어야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⑤ 집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66)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67)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68) 귀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집의 의미는 무엇입니까?(우선순위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① 안전하게 보호받는 공간
② 휴식의 공간
③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
④ 나만의 사적인 공간
⑤ 생리위생 및 세탁, 식사를 위한 공간
⑥ 자산 증식을 위한 중요한 수단
⑦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주는 공간
⑧ 기타(적을 것 : _____)

문69) 향후 주거 마련에 있어서 다음 항목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우선순위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① 주거비용(매매가격, 전월세가격 등)
② 주택유형(아파트, 다세대/빌라, 원룸(다가구), 오피스텔 등)
③ 주택상태(주택규모, 노후도, 방의 개수, 인테리어 등)
④ 주택위치(직장/학교와의 거리, 부모님과의 거리)
⑤ 주거환경(의료/문화/상업시설/도시공원 및 녹지 접근성, 교통, 교육환경 등)
⑥ 향후 주택 가격 변화(미래 자산가치 상승 기대)
⑦ 기타(적을 것 : _____)

문70) 귀하는 공동주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공동주거(Share house)란 가족이 아닌 다수가 한 집에 살면서 방은 따로 쓰고 거실과 욕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를 의미함(고시원 및 하숙 거주 경험은 포함하지 않음)

① 예 ② 아니오

문71) 귀하는 공동주거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72) 귀하는 정부 및 지자체가 청년들을 위해 제공하는 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습니까? (중복 혜택을 받은 경우 가장 최근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 해 주십시오)

☞
* 청년 행복주택: 19세~39세 미혼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19세~39세 미혼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전용85m2 이하 주택 및 오피스텔에 대해 LH 및 지방공사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 청년 공공지원주택: 19~39세 무주택자 청년층을 대상으로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지원을 통해 민간임대사업자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① 현재 거주하고 있거나 입주 예정이다 ┐
② 입주한 적이 있다 (입주년도: 년) ┘ ➡ **문72-1로 이동**
③ 입주한 적이 없다 ➡ **문72-3으로 이동**

문72-1) (문72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청년 주택공급 사업은 귀하의 주거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 ┐ ➡ **문72-2로 이동**
② 별로 도움 되지 않았다 ┘
③ 보통이다 ┐
④ 조금 도움이 되었다 ┘ ➡ **문73로 이동**
⑤ 많은 도움이 되었다

문72-2) (문72-1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이유 모두 선택)

① 지원이 체감되지 않아서
② 지원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③ 지원받는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서
④ 지원기관 또는 담당자의 지원이 적절하지 못해서
⑤ 지원받기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되어서
⑥ 기타(적을 것 : _____)

➡ **응답 후 문73로 이동**

문72-3) (문72에서 ③으로 응답한 경우) 귀하는 주택공급 사업을 알고 계시고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참여할 의향은 있었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참여할 수 없었던 경우는 '②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 로 응답해 주세요.

① 알고 있고 참여할 의향이 있다
②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
③ 모른다

문73) 귀하는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 주거비지원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 * 청년 전·월세지원: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을 위하여 전세대출 및 월세대출 조건을 완화하여 저소득 청년의 주거 자금 대출한도 상향하는 사업

① 참여하고 있다 ➡ **문73-1로 이동**
② 참여한 적이 있다 (참여년도: 년) ➡ **문73-1로 이동**
③ 참여한 적이 없다 ➡ **문73-3으로 이동**

문73-1) (문73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청년 주거비지원 사업은 주거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 ➡ **문73-2로 이동**
② 별로 도움 되지 않았다 ➡ **문73-2로 이동**
③ 보통이다 ➡ **문74로 이동**
④ 조금 도움이 되었다 ➡ **문74로 이동**
⑤ 많은 도움이 되었다 ➡ **문74로 이동**

문73-2) (문73-1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이유 모두 선택)

① 지원이 체감되지 않아서
② 지원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③ 지원받는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서
④ 지원기관 또는 담당자의 지원이 적절하지 못해서
⑤ 지원받기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되어서
⑥ 기타(적을 것 : _____)

➡ **응답 후 문74로 이동**

문73-3) (문73에서 ③으로 응답한 경우) 귀하는 청년 주거비지원 사업을 알고 계시고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참여할 의향은 있었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참여할 수 없었던 경우는 '②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 로 응답해 주세요.

① 알고 있고 참여할 의향이 있다
②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
③ 모른다

문74) 귀하는 다음의 청년 주거 정책 중 무엇을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청년 주택공급 정책(청년 행복주택,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청년 공공지원주택 등)
②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청년 전·월세지원)
③ 청년 주거환경 개선 정책(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등)
④ 대학기숙사 공급 및 기숙사비 지원 정책(기숙사형 청년주택, 행복기숙사 등)
⑤ 기타(적을 것 : _____)

문75)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① [동거] 현재 같이 살고 있다 ➡ 건강영역(문80)으로 이동
② [비동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학업, 군복무, 직장 등의 이유로 떨어져 지내는 경우)
③ [독립]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독립한 상태이다(결혼, 장성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문75-1) (문75에서 ②,③ 응답자만) 귀하는 현재 미혼으로 혼자 거주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76) 귀하의 현재 주거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원룸(다가구) : 전체 집이 1인 개인 명의로 된 집으로 방 하나가 침실, 거실, 부엌을 겸하도록 설계된 집
② 아파트
③ 다세대/빌라 : 공동주택의 일종, 개별 방마다 소유주가 다른 경우
④ 오피스텔 : 세탁기, TV, 냉장고 등이 비치되어 있으며 관리인이 있는 경우
⑤ 하숙
⑥ 기숙사
⑦ 고시원
⑧ 단독주택
⑨ 기타 : 일반주택의 방 하나만 임대, 지역운영학사 등

문77) 귀하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점유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금이 있는 월세
④ 보증금이 없는 월세
⑤ 사글세, 연세, 일세 등
⑥ 무상

문78) 주거비용 마련은 누가 하셨습니까?

| | |
|---|---|
| ☞ | 주거비용은 자가인 경우 구입 비용, 전세인 경우 전세금, 보증금 있는 월세의 경우 보증금 및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의 경우 월세 등을 의미함 |
| ☞ | 금융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출을 누가 갚느냐를 기준으로 응답함 |

① 전부 본인 스스로
② 본인이 대부분 마련하고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일부 도움
③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대부분 마련해주시고 본인이 일부 도움
④ 전부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마련해 주심 ➡ 건강영역(문80)으로 이동
⑤ 기타(적을 것 : _____)

문79) 주거비용 마련을 위해 본인 명의로 금융대출을 받으셨습니까?

① 대출을 받았음　　② 대출을 받지 않았음 ➡ **건강영역(문80)으로 이동**

문79-1) (문79에서 ① 응답자만) 주거비용 중 본인 명의로 받은 금융대출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① 10% 미만
② 10% 이상 30% 미만
③ 30% 이상 50% 미만
④ 50% 이상 70% 미만
⑤ 70% 이상 90% 미만
⑥ 90% 이상
⑦ 모름

## V. 다음은 「건강」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80) 귀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81) 귀하는 현재 본인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마른 편이다
② 약간 마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비만이다
⑤ 매우 비만이다

문82) 귀하는 **지난 1년간(2021년 6월-2022년 5월)** 건강검진(종합건강검진 혹은 일반건강검진 모두 해당)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83) 귀하는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① 병원 진찰 후 치료 받음 ➡ **문84로 이동**
②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
③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 ➡ **문83-1로 이동**
④ 기타(적을 것 : _____)

문83-1) (문83에서 ②,③,④ 응답자만) 귀하가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②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③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④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⑤ 기타(적을 것 :　　)

문84) 귀하는 지난 2주 간 일상생활을 보내면서 다음 각 문항들에 대해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 문 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때때로 그렇다 |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 대부분 그렇다 | 항상 그렇다 |
|---|---|---|---|---|---|---|
| (1)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임을 느낀다 |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85) 귀하는 지난 1주 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 문 항 | 극히 드물다 (일주일에 1일 미만) | 가끔 있었다 (일주일에 1-2일간) | 종종 있었다 (일주일에 3-4일간) |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에 5일 이상) |
|---|---|---|---|---|
| (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 ⓪ | ① | ② | ③ |
| (2) 비교적 잘 지냈다 | ⓪ | ① | ② | ③ |
| (3) 상당히 우울했다 | ⓪ | ① | ② | ③ |
|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 ⓪ | ① | ② | ③ |
| (5)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 ⓪ | ① | ② | ③ |
| (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 ⓪ | ① | ② | ③ |
| (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 ⓪ | ① | ② | ③ |
| (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 ⓪ | ① | ② | ③ |
| (9) 마음이 슬펐다 | ⓪ | ① | ② | ③ |
|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 ⓪ | ① | ② | ③ |
| (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 ⓪ | ① | ② | ③ |

문86)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 **문87로 이동**

문86-1)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① 일주일에 1번 ② 일주일에 2번
③ 일주일에 3번 ④ 일주일에 4번
⑤ 일주일에 5번 ⑥ 일주일에 6번
⑦ 매일

문87) 귀하는 다음 삶의 영역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을 듣는 즉시 떠오르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 항목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 | | | | | | | | ▶ 매우 만족한다 | |
|---|---|---|---|---|---|---|---|---|---|---|---|
| (1) 생활수준 |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2) 건강 |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3) 삶에서 성취한 것 |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4) 가족 관계 |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5) 친구 관계 |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6) 일반적 대인 관계 (학교, 직장, 동네에서의 인간 관계) |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7) 삶 전반에서의 안전 |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8) 미래 안정성 |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9) 시간적 여유 |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10) 내가 살고 있는 동네환경 |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11) 전반적인 나의 인생 | ⓪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Ⅵ. 다음은 「가치관」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88) 다음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양 쪽의 표현을 보고, 귀하가 더 선호하는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 항 목 | ← 선호 정도 → | | | | | | | 항 목 |
|---|---|---|---|---|---|---|---|---|
| (1) 일 중시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여가 중시 |
| (2) 현실 중시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이상 중시 |
| (3) 결과 중시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과정 중시 |
| (4) 개인 중시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집단 중시 |
| (5) 타인의 이목 중시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자신의 주관 중시 |

문89)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재산 · 경제력
② 화목한 가정
③ 자아성취
④ 건강
⑤ 감사 · 긍정적 태도
⑥ 종교생활
⑦ 직업 · 직장
⑧ 연인(이성관계 등)
⑨ 친구 · 대인관계
⑩ 꿈 · 목표의식
⑪ 기타(적을 것 : _____)

문90)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91) 귀하는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 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소득이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 (2)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정규직이 아닌 시간제, 비정규직 일도 선택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 나는 내가 원하는 일에서 성공하기 위해 결혼 또는 출산도 포기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문92) 귀하는 성인으로서 자신이 얼마나 독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여기서 독립적이란 부모나 타인에게 의존적이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① 전혀 독립적이지 않음

② 약간 독립적임

③ 상당히 독립적임

④ 완전히 독립적임

문93) 귀하는 얼마나 자주 스스로 성인이 되었다고 느끼십니까?

① 전혀 느끼지 못함

② 거의 느끼지 못함

③ 가끔 느낌

④ 자주 느낌

⑤ 항상 느낌

문94)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귀하에게 현재의 삶은 어떤 의미를 지닌 시기입니까?

| 현재의 삶은 나에게...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거의 동의하지 않음 | 약간 동의함 | 매우 동의함 |
|---|---|---|---|---|
| (1) 가능성이 많은 시기 | ① | ② | ③ | ④ |
| (2) 탐색하고 탐험하는 시기 | ① | ② | ③ | ④ |
| (3)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 | ① | ② | ③ | ④ |
| (4) 압박을 많이 받는 시기 | ① | ② | ③ | ④ |
| (5) 나를 정의하고 규정하는 시기 | ① | ② | ③ | ④ |
| (6)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결정하는 시기 | ① | ② | ③ | ④ |
| (7) 한편으로는 성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시기 | ① | ② | ③ | ④ |
| (8) 조금씩 성인이 되어가는 시기 | ① | ② | ③ | ④ |

문95) 귀하는 성인이 되는 이정표로서, 다음의 사항들이 각각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귀하께서는 해당 사항을 얼마나 성취하셨습니까?

| 항목 | 중요도 | | | | 성취수준 | | | |
|---|---|---|---|---|---|---|---|---|
| | 전혀 중요하지 않음 | 별로 중요하지 않음 | 약간 중요함 | 매우 중요함 | 전혀 성취하지 못함 | 거의 성취하지 못함 | 어느 정도 성취함 | 완벽히 성취함 |
| (1) 부모(양육자)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하게 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2)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게 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3) 부모님(양육자) 집에서 살지 않게 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4) 부모님(양육자)으로부터 떨어져 적정한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5) 다른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6) 사람들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7) 부모와 성인으로서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8)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 (9)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게 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① | ② | ③ | ④ |

문96) 귀하는 성인이 되는 이정표로서, 다음의 사항들이 각각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항목 | 중요도 | | | |
|---|---|---|---|---|
| | 전혀 중요하지 않음 | 별로 중요하지 않음 | 약간 중요함 | 매우 중요함 |
| (1) 교육을 끝마치는 것(학교졸업 등) | ① | ② | ③ | ④ |
| (2) 결혼을 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 (3) 한 명 이상의 자녀를 갖는 것 | ① | ② | ③ | ④ |
| (4)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직업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서는 것 | ① | ② | ③ | ④ |
| (5) 술에 만취하는 것을 자제할 수 있게 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 (6) 불법적 약물사용(마약 등)을 하지 않는 것 | ① | ② | ③ | ④ |
| (7) 성관계 시 피임을 하는 것 (일부러 자녀를 가지려 하지 않을 경우) | ① | ② | ③ | ④ |
| (8) 오랜 기간 연인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 (9)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능력을 갖추는 것 | ① | ② | ③ | ④ |
| (10)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 ① | ② | ③ | ④ |
| (11) 정규 일자리를 갖는 것 (전일제 혹은 풀타임 근로) | ① | ② | ③ | ④ |
| (12)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 | ① | ② | ③ | ④ |
| (13) 스스로의 감정에 대해 언제나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 | ① | ② | ③ | ④ |
| (14) 자기중심적 사고를 덜 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키우는 것 | ① | ② | ③ | ④ |
| (15) 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 ① | ② | ③ | ④ |

## Ⅶ. 다음은 「관계 및 참여」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97) 귀하는 평소 얼마나 외출하십니까?

☞ ▪ 직장, 학교가 아니더라도 학원, 독서실 등을 매일 다닌다면 ①에 해당 됩니다.
▪ 평소에는 직장 출퇴근, 학교 통학으로 외출을 하나 일시적으로 재택근무나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외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소 기준에 맞게 외출(① 또는 ②)에 해당 됩니다.

①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
②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③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④ 사람을 만나기 위해 자주 외출한다

➡ **문98으로 이동**

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⑥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⑦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⑧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 **문97-1로 이동**

문97-1) (문97에서 ⑤,⑥,⑦,⑧ 응답자만) 현재의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③ 1년 이상 ~ 3년 미만 ④ 3년 이상 ~ 5년 미만
⑤ 5년 이상 ~ 7년 미만 ⑥ 7년 이상

문97-2) (문97에서 ⑤,⑥,⑦,⑧ 응답자만) 현재의 상태가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① 학업중단이나 대학진학 실패로 ②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
③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 ④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⑤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⑥ 기타( )

문98)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이 있으십니까?

| 문 항 | 없다 | 있다 |
|---|---|---|
| (1) 취업이나 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 ① | ② |
| (2)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 ① | ② |
| (3)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 ① | ② |
| (4)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 ① | ② |
| (5)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큰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 ① | ② |
| (6)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 ① | ② |
| (7) 내가 갑자기 연락 두절되었을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 ① | ② |

문99-1) 귀하는 다음의 각 집단의 사람들과 직접 만나는 대면 형태로 평소 얼마나 자주 교류하십니까?

☞ 교류란 다른 사람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의사소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같은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든 일주일에 매일 같이 사람들과 만난다면 '거의 매일' 로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 문 항 | 전혀 없다 | 1년에 한두 번 | 3개월에 한두 번 | 한 달에 한두 번 | 일주일에 한두 번 | 거의 매일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
|---|---|---|---|---|---|---|
| (1) 가족들과의 대면 교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2) 친인척들과의 대면 교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3)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 교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4) 이외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대면 교류 (업무 상 교류 제외)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5) 온라인 커뮤니티, SNS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대면 교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문99-2) 귀하는 다음의 각 집단의 사람들과 인터넷(SNS), 전화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평소 얼마나 자주 교류하십니까?

☞ 교류란 다른 사람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의사소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같은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든 일주일에 매일 같이 온라인으로 연락한다면 '거의 매일' 로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 문 항 | 전혀 없다 | 1년에 한두 번 | 3개월에 한두 번 | 한 달에 한두 번 | 일주일에 한두 번 | 거의 매일 (일주일에 서너번 이상) |
|---|---|---|---|---|---|---|
| (1) 가족들과의 비대면 교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2) 친인척들과의 비대면 교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3)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비대면 교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4) 이외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비대면 교류 (업무 상 교류 제외)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5) 온라인 커뮤니티, SNS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비대면 교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문100) 다음 문항을 읽고 얼마나 자주 이러한 감정을 느끼시는지 응답해주십시오

| 문 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드물게 그렇다 | 가끔 그렇다 | 항상 그렇다 |
|---|---|---|---|---|
| (1) 나는 친구관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 (2)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 (3)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 (4)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 **문100-(4)에 ②, ③, ④를 선택한 경우 문101로 이동, 그 외는 문102로 이동**

문101) (100-(4)번의 ②, ③, ④인 경우만 응답)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라는 감정을 느끼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내 1년 미만
③ 1년 이상 2년 미만
④ 2년 이상 3년 미만
⑤ 3년 이상

문102)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본인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령, 성별 등에 상관없이 가족 및 친지, 지인,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이 포함됩니다)

① 없다 ② 있다 (□□명)

문103) 귀하께서는 성인이 되기 전 시기(아동청소년기)에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문 항 | 없다 | 있다 |
|---|---|---|
| (1) 가정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경험 | ① | ② |
| (2) 양육자로부터 과도한 체벌 또는 정서적 공격을 당한 경험 | ① | ② |
| (3)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가족구성원이 있었던 경험 | ① | ② |
| (4)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 | ① | ② |
| (5)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 한 경험 | ① | ② |
| (6) 학교나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 ① | ② |

문104) 귀하께서는 성인이 된 이후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문 항 | 없다 | 있다 |
|---|---|---|
| (1)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교를 휴학하거나 그만두어야 했던 경험 | ① | ② |
| (2)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취업 압박을 받거나 진로 변경을 강요받은 경험 | ① | ② |
| (3) 내가 원했던 시기에 대학입학을 못했던 경험 | ① | ② |
| (4) 내가 원했던 시기에 취업을 못했던 경험 | ① | ② |
| (5)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한 경험 | ① | ② |

문105) 귀하는 현재 가족, 학교, 직장, 이웃, 지역사회,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① 아니다 ➡ **문106으로 이동**　　② 그렇다

문105-1) (문105에서 ② 그렇다 응답자만) 다음 중 귀하는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십니까? 소속감을 느끼시는 집단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① 나의 가족
② 출신 학교나 동창 모임
③ 출신 지역이나 지역 모임
④ 여가활동 및 사회활동 모임 (환경활동, 구호활동, 정치활동 모임 등)
⑤ 소속 직장이나 직업 모임 (직업 기반 협회 또는 조합 등)
⑥ 온라인 커뮤니티(포털 사이트의 커뮤니티, 온라인 카페, 인터넷 사이트 등)
⑦ 기타(적을 것: _____)

문106) 귀하는 살아오면서 현재까지 6개월 이상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은 상태로 방이나 집에서 주로 활동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거의 맺지 않은 채 생활한 경험(은둔 경험)이 있습니까?

☞ 학업, 업무, 건강, 출산 등 특정한 목적 또는 사유로 인해 방 또는 집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① 없다 ➡ **문107로 이동**
② 과거에는 은둔 생활을 한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 ➡ **문106-1로 이동**
③ 현재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 ➡ **문106-1로 이동**

문106-1) (문106에서 ②, ③ 응답자만) 과거 혹은 현재의 은둔 생활을 지속한 기간은 총 얼마입니까?

① 6개월 이상 ~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3년 미만
③ 3년 이상 ~ 5년 미만　④ 5년 이상 ~ 7년 미만
⑤ 7년 이상

문107) 다음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세대는 40대, 50대 / 노인은 70세 이상을 의미합니다)

| 문 항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기성세대 (40,50대) | (1)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2)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3)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노인 (70세 이상) | (4)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5)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6)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7)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108) 사회 · 정치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항목에 대해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 문 항 | 참여한 적 없음 | 1년에 1~2회 | 한 달에 1~2회 | 일주일에 1~2회 | 거의 매일 |
|---|---|---|---|---|---|
| (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온 · 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항의 전화하기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109)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 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110) 다음의 청년 대상 정책 서비스 중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서비스를 모두 선택 해 주십시오.

| 문항 | 필요하다 | 필요하지 않다 |
|---|---|---|
| (1) 심리 ·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 (인간관계 고민 등) | ① | ② |
| (2) 복지 · 생활 관련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생계급여, 청년수당 등) | ① | ② |
| (3) 대인관계, 사회성 증진 서비스 (인간관계 개선 훈련 등) | ① | ② |
| (4) 취업 · 진로 상담 서비스 (취업준비, 일자리 알선 등) | ① | ② |
| (5) 청년 공동체 교류지원 서비스 (동아리 및 소모임 구성 등) | ① | ② |
| (6) 직업 · 훈련 교육 서비스 (기술교육, 직업교육 등) | ① | ② |
| (7) 건강검진 서비스 (신체건강검진, 정신건강검진 등) | ① | ② |
| (8) 주거지원 서비스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독립된 공간 제공) | ① | ② |
| (9) 문화 · 취미 지원 서비스 (독서, 영화, 취미 지원) | ① | ② |
| (10) 기타 (자세히 적을 것 : ) | ① | ② |

➡ **문110에서 (1)(2)(3)(4) 항목 중 1가지 상담이라도 ①필요하다 응답 시 문110-1로 이동, 아닌 경우는 문111로 이동**

문110-1) 상담 서비스가 제공될 때 상담사를 만나는 방법으로 다음 중 어느 방법을 가장 선호하십니까?

① 내가 담당 센터에 찾아가는 방법(센터 방문)
②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방법(온라인 화상회의 등)
③ 상담사(담당자)가 내 집으로 찾아오는 방법(가정 방문)
④ 상담사(담당자)가 내 집 근처의 장소로 찾아오는 방법(카페, 공용 회의실 등)

문111) 귀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2년 동안 일과 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문111-1)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 경험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 문 항 | 문111) 변화 경험 여부 | 문111-1) 스트레스 수준 | | | | |
|---|---|---|---|---|---|---|
| | | 매우 적었다 | 적었다 | 보통이다 | 많았다 | 매우 많았다 |
| (1) 내 수입(소득)이 줄었다 | ①경험한 적이 있다 ➡<br>②경험한 적이 없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일자리를 잃거나, 구하기 어려웠다 | ①경험한 적이 있다 ➡<br>②경험한 적이 없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 일이 줄었다 | ①경험한 적이 있다 ➡<br>②경험한 적이 없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 ①경험한 적이 있다 ➡<br>②경험한 적이 없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생활 리듬이 깨졌다 (수면, 일상생활 등 시간관리가 어려웠다) | ①경험한 적이 있다 ➡<br>②경험한 적이 없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게임 등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었다 | ①경험한 적이 있다 ➡<br>②경험한 적이 없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술이나 담배의 사용 빈도나 양이 늘었다 | ①경험한 적이 있다 ➡<br>②경험한 적이 없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신체활동량(운동량)이 줄었다 | ①경험한 적이 있다 ➡<br>②경험한 적이 없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코로나19에 감염될까봐 두려웠다 | ①경험한 적이 있다 ➡<br>②경험한 적이 없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 ①경험한 적이 있다 ➡<br>②경험한 적이 없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경문항 1) [성별]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③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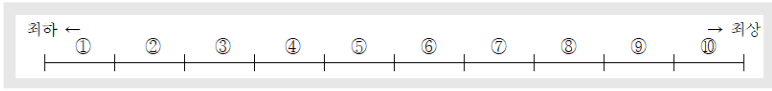
배경문항 2) [만성질환] 귀하는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을 앓고 계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음(응답거부)

배경문항 3) [장애] 귀하는 장애를 가지고 계십니까?
(장애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 등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 응답해주세요)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음(응답거부)

배경문항 4) [가족배경] 귀하의 부모님 소득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배경문항 5) [가족배경] 귀하와 귀하의 부모님 중 외국출신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인원을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적과 관계 없이 출생지를 기준으로 응답 해 주십시오)

① 없다 ② 본인 ③ 아버지 ④ 어머니

배경문항 6) [교육] 귀하와 귀하의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 이 아닙니다)

| 구분 | 학교 안 다님 | 초등학교 졸업 | 중학교 졸업 | 고등학교 졸업 | 2-3년제 대학 졸업 | 4년제 대학 졸업 |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 잘 모르겠음 |
|---|---|---|---|---|---|---|---|---|
| (1) 본인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 (2) 아버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 (3) 어머니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별첨. 직업분류표

| 구분 | 직업분류 예시 |
|---|---|
| **1 관리자** | |
| | **공공 기관 및 기업 고위직(11)** |
| 1110 |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원 |
| 1120 | 기업 고위 임원 |
| | **행정·경영 지원 및 마케팅 관리직(12)** |
| 1211 | 정부행정 관리자 |
| 1212 | 경영지원 관리자 |
| 1220 | 마케팅 및 광고·홍보 관리자 |
| 1212 | 경영 지원 관리자 |
| 1220 | 마케팅 및 광고·홍보 관리자 |
| | **전문 서비스 관리직(13)** |
| 1311 | 연구 관리자 |
| 1312 | 교육 관리자 |
| 1313 | 법률·경찰·소방 및 교도 관리자 |
| 1320 | 보험 및 금융 관리자 |
| 1331 | 보건 의료 관련 관리자 |
| 1332 |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
| 1340 | 문화·예술 관련 관리자 |
| 1350 | 정보 통신 관련 관리자 |
| 1390 | 기타 전문 서비스 관리자 |
| |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14)** |
| 1411 |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 |
| 1412 | 전기·가스 및 수도 관련 관리자 |
| 1413 | 제품 생산 관련 관리자 |
| 1490 | 기타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
| |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15)** |
| 1511 |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 |
| 1512 | 운송 관련 관리자 |
| 1521 |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 |
| 1522 | 음식 서비스 관련 관리자 |
| 1530 |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
| 1590 | 기타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자 |
|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
| |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21)** |
| 2111 | 생명과학 연구원 |
| 2112 | 자연과학 연구원 |
| 2121 | 인문과학 연구원 |
| 2122 | 사회과학 연구원 |
| 2131 | 생명과학 시험원 |
| 2132 | 농림어업 관련 시험원 |
| 2133 | 자연과학 시험원 |
| 2371 |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 2373 | 환경공학 시험원 |
| |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22)** |
| 2211 |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및 연구원 |
| 2212 |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 구분 | 직업분류 예시 |
|---|---|
| 2221 | 컴퓨터 시스템 전문가 |
| 2222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
| 2223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
| 2224 | 웹 개발자 |
| 2229 | 기타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
| 2231 | 데이터 전문가 |
| 2232 |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
| 2233 | 정보 보안 전문가 |
| 2239 | 기타 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 |
| 2241 | 정보 시스템 운영자 |
| 2242 | 웹 운영자 |
| 2250 | 통신 및 방송 송출 장비 기사 |
| |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23)** |
| 2311 | 건축가 |
| 2312 | 건축공학 기술자 |
| 2313 | 토목공학 기술자 |
| 2314 | 조경 기술자 |
| 2315 | 도시 및 교통 관련 전문가 |
| 2316 | 측량 및 지리정보 전문가 |
| 2317 | 건설자재 시험원 |
| 2321 |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 2322 | 화학공학 시험원 |
| 2331 | 금속·재료 공학 연구원 및 기술자 |
| 2332 | 금속·재료 공학 시험원 |
| 2341 | 전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 2342 | 전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 2343 | 전기 및 전자공학 시험원 |
| 2351 |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 2352 | 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 2353 | 기계 및 로봇공학 시험원 |
| 2361 | 방재 기술자 및 연구원 |
| 2362 | 소방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 2363 | 소방공학 시험원 |
| 2364 | 산업 안전 및 위험 관리원 |
| 2365 | 보건 위생 및 환경 검사원 |
| 2366 | 비파괴 검사원 |
| 2371 |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 2372 | 가스·에너지 기술자 및 연구원 |
| 2373 | 환경공학 시험원 |
| 2374 | 가스 및 에너지 시험원 |
| 2381 | 항공기 조종사 |
| 2382 | 선장·항해사 및 도선사 |
| 2383 | 관제사 |
| 2391 |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 2392 | 섬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 2393 | 식품공학 시험원 |

| 구분 | 직업분류 예시 |
|---|---|
| 2394 | 섬유공학 시험원 |
| 2395 | 제도사 |
| 2399 | 기타 공학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
| |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24)** |
| 2411 | 전문 의사 |
| 2412 | 일반 의사 |
| 2413 | 한의사 |
| 2414 | 치과 의사 |
| 2415 | 수의사 |
| 2420 | 약사 및 한약사 |
| 2430 | 간호사 |
| 2440 | 영양사 |
| 2451 | 임상병리사 |
| 2452 | 방사선사 |
| 2453 | 치과기공사 |
| 2454 | 치과위생사 |
| 2455 | 재활공학 기사 |
| 2455 | 재활공학 기사 |
| 2456 | 물리 및 작업 치료사 |
| 2457 | 임상심리사 |
| 2459 | 기타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 |
| 2461 | 응급 구조사 |
| 2462 | 위생사 |
| 2463 | 안경사 |
| 2464 | 의무 기록사 |
| 2465 | 간호조무사 |
| 2466 | 안마사 |
| 2471 | 사회복지사 |
| 2472 | 보육교사 |
| 2473 | 직업상담사 |
| 2474 | 상담 전문가 |
| 2475 | 청소년 지도사 |
| 2476 | 시민 단체 활동가 |
| 2479 | 기타 사회복지 관련 종사원 |
| 2481 | 성직자 |
| 2489 |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
| |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25)** |
| 2511 | 대학교수 |
| 2512 | 대학 시간강사 |
| 2521 | 중·고등학교 교사 |
| 2522 | 초등학교 교사 |
| 2523 | 특수교육 교사 |
| 2530 | 유치원 교사 |
| 2541 | 문리 및 어학 강사 |
| 2542 | 컴퓨터 강사 |
| 2543 | 기술 및 기능계 강사 |

| 구분 | 직업분류 예시 |
|---|---|
| 2544 | 예능 강사 |
| 2545 |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 |
| 2549 | 기타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
| 2591 | 장학관·연구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
| 2592 | 대학 교육 조교 |
| 2599 | 기타 교사 |
| | **법률 및 행정 전문직(26)** |
| 2611 | 판사 및 검사 |
| 2612 | 변호사 |
| 2613 | 법무사 및 집행관 |
| 2614 | 변리사 |
| 2619 | 기타 법률 전문가 |
| 2619 | 기타 법률 전문가 |
| 2620 | 정부 및 공공 행정 전문가 |
| |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27)** |
| 2711 | 인사 및 노사 관련 전문가 |
| 2712 | 회계사 |
| 2713 | 세무사 |
| 2714 | 관세사 |
| 2715 | 경영 및 진단 전문가 |
| 2721 | 투자 및 신용 분석가 |
| 2722 | 자산 운용가 |
| 2723 | 보험 및 금융 상품 개발자 |
| 2724 | 증권 및 외환 딜러 |
| 2725 | 손해 사정사 |
| 2729 | 기타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
| 2731 | 상품 기획 전문가 |
| 2732 | 여행 상품 개발자 |
| 2733 | 광고 및 홍보 전문가 |
| 2734 | 조사 전문가 |
| 2735 | 행사 기획자 |
| 2741 | 감정 관련 전문가 |
| 2742 | 해외 영업원 |
| 2743 | 기술 영업원 |
| 2744 | 상품 중개인 및 경매사 |
| 2745 |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사 |
| 2749 | 기타 기술 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원 |
| |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28)** |
| 2811 | 작가 |
| 2812 | 출판물 전문가 |
| 2813 | 기자 및 언론 관련 전문가 |
| 2814 | 번역가 및 통역가 |
| 2821 | 학예사 및 문화재 보존원 |
| 2822 | 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 |
| 2831 | 감독 및 기술 감독 |
| 2832 | 배우 및 모델 |

| 구분 | 직업분류 예시 |
|---|---|
| 2833 | 아나운서 및 리포터 |
| 2834 | 촬영기사 |
| 2835 | 음향 및 녹음 기사 |
| 2836 | 영상·녹화 및 편집 기사 |
| 2837 | 조명기사 및 영사기사 |
| 2839 | 기타 연극·영화 및 영상 관련 종사원 |
| 2841 | 화가 및 조각가 |
| 2842 | 사진가자 및 사진가 |
| 2843 | 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 |
| 2844 | 국악 및 전통 예능인 |
| 2845 | 지휘자·작곡가 및 연주가 |
| 2846 | 가수 및 성악가 |
| 2847 | 무용가 및 안무가 |
| 2849 | 기타 시각 및 공연 예술가 |
| 2851 | 제품 디자이너 |
| 2852 | 패션 디자이너 |
| 2853 | 실내장식 디자이너 |
| 2854 | 시각 디자이너 |
| 2855 | 미디어 콘텐츠 디자이너 |
| 2861 | 스포츠 감독 및 코치 |
| 2862 | 직업 운동선수 |
| 2863 | 경기 심판 및 경기 기록원 |
| 2869 | 기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
| 2870 | 주방장 및 요리 연구가 |
| 2881 | 공연 영화 및 음반 기획자 |
| 2882 | 연예인 및 스포츠 매니저 |
| **3 사무 종사자** | |
| |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31)** |
| 3111 | 조세행정 사무원 |
| 3112 | 관세행정 사무원 |
| 3113 | 병무행정 사무원 |
| 3114 | 국가 및 지방 행정 사무원 |
| 3115 | 공공행정 사무원 |
| 3121 | 기획 및 마케팅 사무원 |
| 3122 | 인사 및 교육·훈련 사무원 |
| 3123 | 자재 관리 사무원 |
| 3124 | 생산 및 품질 관리 사무원 |
| 3125 | 무역 사무원 |
| 3126 | 운송 사무원 |
| 3127 | 총무 사무원 및 대학 행정조교 |
| 3131 | 회계 사무원 |
| 3132 | 경리 사무원 |
| 3141 | 비서 |
| 3142 | 전산 자료 입력원 및 사무 보조원 |
| | **금융 사무직(32)** |
| 3201 | 출납 창구 사무원 |

| 구분 | 직업분류 예시 |
|---|---|
| 3202 |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 |
| 3203 | 은행 사무원 |
| 3204 | 증권 사무원 |
| 3205 | 수금원 및 신용 추심원 |
| 3209 | 기타 금융 사무원 |
| | **법률 및 감사 사무직(33)** |
| 3301 | 법률 관련 사무원 |
| 3302 | 감사 사무원 |
| |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39)** |
| 3910 | 통계 관련 사무원 |
| 3921 | 여행 사무원 |
| 3922 | 안내·접수원 및 전화교환원 |
| 3991 | 고객 상담 및 모니터 요원 |
| 3999 | 기타 사무원 |
| **4 서비스 종사자** | |
| |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41)** |
| 4111 | 경찰관 및 수사관 |
| 4112 | 소방관 |
| 4113 | 소년원 학교 교사 및 교도관 |
| 4121 | 경호원 |
| 4122 | 청원경찰 |
| 4123 | 시설 및 특수 경비원 |
| 4129 | 기타 경호 및 보안 관련 종사원 |
| |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42)** |
| 4211 | 돌봄 서비스 종사원 |
| 4212 | 보육 및 교사 보조 서비스 종사원 |
| 4219 | 기타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원 |
| 4221 | 이용사 |
| 4222 | 미용사 |
| 4223 | 피부 및 체형 관리사 |
| 4224 | 메이크업 아티스트 및 분장사 |
| 4229 |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원 |
| 4231 |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
| 4232 | 혼례 종사원 |
| 4233 | 장례 상담원 및 장례 지도사 |
| 4291 | 브라이덜룸 미용 및 관리 종사원 |
| 4292 | 점술가 및 민속신앙 종사원 |
| 4299 | 개인 생활 서비스 종사원 |
| |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43)** |
| 4311 | 항공기 객실 승무원 |
| 4312 | 선박 및 열차 객실 승무원 |
| 4321 |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원 |
| 4322 |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 |
| 4323 | 오락시설 서비스 종사원 |
| 4329 | 기타 여가 서비스 종사원 |
| |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44)** |

## 별첨. 직업분류표

| 구분 | 직업분류 예시 |
|---|---|
| 4411 | 한식 조리사 |
| 4412 | 중식 조리사 |
| 4413 | 양식 조리사 |
| 4414 | 일식 조리사 |
| 4415 | 음료 조리사 |
| 4419 | 기타 조리사 |
| 4421 | 바텐더 |
| 4422 | 웨이터 |
| 4429 | 기타 음식 서비스 종사원 |
| **5** | **판매 종사자** |
| | **영업직(51)** |
| 5101 | 자동차 영업원 |
| 5102 | 제품 및 광고 영업원 |
| 5103 | 보험 모집인 및 투자 권유 대행인 |
| 5104 | 대출 및 신용카드 모집인 |
| |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52)** |
| 5211 |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원 |
| 5212 | 상점 판매원 |
| 5213 | 매표원 및 복권 판매원 |
| 5214 | 매장 계산원 및 요금 정산원 |
| 5220 | 상품 대여원 |
| |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53)** |
| 5311 | 단말기 및 통신 서비스 판매원 |
| 5312 | 온라인 쇼핑 판매원 |
| 5313 | 텔레마케터 |
| 5321 | 방문 판매원 |
| 5322 | 노점 및 이동 판매원 |
| 5323 | 홍보 도우미 및 판촉원 |
| **6**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 | **농·축산 숙련직(61)** |
| 6111 | 곡식작물 재배원 |
| 6112 | 채소 및 특용작물 재배원 |
| 6113 | 과수작물 재배원 |
| 6121 | 원예작물 재배원 |
| 6122 | 조경원 |
| 6131 | 낙농업 관련 종사원 |
| 6132 | 가축 사육 종사원 |
| 6139 | 기타 사육 관련 종사원 |
| | **임업 숙련직(62)** |
| 6201 | 조림·산림경영인 및 벌목원 |
| 6209 | 임산물 채취 및 기타 임업 관련 종사원 |
| | **어업 숙련직(63)** |
| 6301 | 양식원 |
| 6302 | 어부 및 해녀 |
| **7**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 |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71)** |
| 7101 | 제빵사 및 제과원 |
| 7102 | 떡 제조원 |
| 7103 | 정육가공원 및 도축원 |
| 7104 | 식품 및 담배 등급원 |
| 7105 | 김치 및 밀반찬 제조 종사원 |
| 7109 | 기타 식품가공 관련 종사원 |
| |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72)** |
| 7211 | 패턴사 |
| 7212 | 재단사 |
| 7213 | 재봉사 |
| 7214 | 제화원 |
| 7219 | 기타 섬유 및 가죽 관련 기능 종사원 |
| 7221 | 한복 제조원 |
| 7222 | 양장 및 양복 제조원 |
| 7223 | 모피 및 가죽 의복 제조원 |
| 7224 | 의복가죽 및 모피 수선원 |
| 7229 | 기타 의복 제조 관련 기능 종사원 |
| |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73)** |
| 7301 | 목제품 제조 관련 종사원 |
| 7302 | 가구 제조 및 수리원 |
| 7303 | 악기 제조 및 조율사 |
| 7304 | 간판 제작 및 설치원 |
| |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74)** |
| 7411 | 금형원 |
| 7412 | 주조원 |
| 7413 | 단조원 |
| 7421 | 제관원 |
| 7422 | 판금원 |
| 7430 | 용접원 |
| |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75)** |
| 7510 | 자동차 정비원 |
| 7521 | 항공기 정비원 |
| 7522 | 선박 정비원 |
| 7523 | 철도 기관차 및 전동차 정비원 |
| 7529 | 기타 운송장비 정비원 |
| 7531 | 공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
| 7532 | 승강기 설치 및 정비원 |
| 7533 | 물품 이동 장비 설치 및 정비원 |
| 7534 | 냉동냉장 공조기기 설치 및 정비원 |
| 7535 | 보일러 설치 및 정비원 |
| 7536 | 건설광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
| 7539 | 농업용기타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
| |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76)** |
| 7611 | 사무용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
| 7612 |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
| 7619 | 기타 전기·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
| 7621 | 산업 전기공 |
| 7622 | 내선 전기공 |
| 7623 | 외선 전기공 |
| |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77)** |
| 7711 | 컴퓨터 설치 및 수리원 |
| 7712 | 이동전화기 수리원 |
| 7719 | 기타 정보 통신기기 설치 및 수리원 |
| 7721 | 방송 관련 장비 설치 및 수리원 |
| 7722 | 통신 관련 장비 설치 및 수리원 |
| 7723 | 통신 방송 인터넷케이블 설치 및 수리원 |
| 7222 | 양장 및 양복 제조원 |
| 7223 | 모피 및 가죽 의복 제조원 |
| |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78)** |
| 7811 | 강구조물 가공원 및 건립원 |
| 7812 | 경량 철골공 |
| 7821 | 철근공 |
| 7822 | 콘크리트공 |
| 7823 | 건축 석공 |
| 7824 | 건축 목공 |
| 7825 | 조적공 및 석재 부설원 |
| 7829 | 기타 건설 관련 기능 종사원 |
| 7831 | 미장공 |
| 7832 | 방수공 |
| 7833 | 단열공 |
| 7834 | 비닉재 시공원 |
| 7835 | 도배공 및 유리 부착원 |
| 7836 | 건축 도장공 |
| 7837 | 새시 조립 및 설치원 |
| 7839 | 기타 건축 마감 관련 기능 종사원 |
| 7841 | 광원 채석원 및 석재 절단원 |
| 7842 | 철로 설치 및 보수원 |
| 7849 | 기타 채굴 및 토목 관련 종사원 |
| | **기타 기능 관련직(79)** |
| 7911 | 공예원 |
| 7912 | 귀금속 및 보석 세공원 |
| 7921 | 건설 배관공 |
| 7922 | 공업 배관공 |
| 7929 | 기타 배관공 |
| 7991 | 배관 세정원 및 보역원 |
| 7999 | 기타 기능 관련 종사원 |
| **8**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 | **식품 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81)** |
| 8111 | 제분 및 도정 관련 기계 조작원 |
| 8112 | 곡물가공 제품 기계 조작원 |
| 8113 | 육류 어패류 및 낙농품 가공 기계 조작원 |
| 8114 | 과실 및 채소 가공 관련 기계 조작원 |
| 8120 | 음료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
| 8190 | 기타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원 |
| |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82)** |
| 8211 | 섬유 제조 기계 조작원 |
| 8212 | 표백 및 염색 관련 기계 조작원 |
| 8221 | 직조기 및 편직기 조작원 |
| 8222 | 신발 제조기 조작원 및 조립원 |
| 8229 | 기타 직물 신발 관련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
| 8230 | 세탁 관련 기계 조작원 |
| |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83)** |
| 8311 | 석유 및 천연가스 제조 관련 제어 장치 조작원 |
| 8312 | 화학물 가공 장치 조작원 |
| 8319 | 기타 석유 및 화학물 가공 장치 조작원 |
| 8321 | 화학제품 생산기 조작원 |
| 8322 | 타이어 및 고무제품 생산기 조작원 |
| 8323 | 플라스틱제품 생산기 조작원 |
| 8324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조립원 |
| |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84)** |
| 8411 | 주조기 조작원 |
| 8412 | 단조기 조작원 |
| 8413 | 용접기 조작원 |
| 8414 | 금속가공 관련 제어 장치 조작원 |
| 8415 | 금속가공 기계 조작원 |
| 8416 | 제관기 조작원 |
| 8417 | 판금기 조작원 |
| 8421 | 도장기 조작원 |
| 8422 | 도금 및 금속 분무기 조작원 |
| 8431 | 유리 제조 및 가공기 조작원 |
| 8432 | 점토제품 생산기 조작원 |
| 8433 | 시멘트 및 광물제품 제조기 조작원 |
| 8434 | 광석 및 석제품 가공기 조작원 |
| 8439 | 기타 비금속제품 관련 생산기 조작원 |
| |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85)** |
| 8510 | 금속 공작 기계 조작원 |
| 8520 |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
| 8530 | 자동 조립라인 및 산업용로봇 조작원 |
| 8541 | 자동차 조립원 |
| 8542 | 자동차 부품 조립원 |
| 8543 | 운송장비 조립원 |
| 8544 | 일반기계 조립원 |
| 8550 | 금속기계 부품 조립원 |
| |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86)** |
| 8610 |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
| 8620 |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
| 8631 | 전기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
| 8632 | 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
| 8640 |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
| | **운전 및 운송 관련직(87)** |
| 8710 | 철도 및 전동차 기관사 |
| 8720 | 철도운송 관련 종사원 |
| 8731 | 택시 운전원 |
| 8732 | 버스 운전원 |
| 8733 |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 |
| 8739 | 기타 자동차 운전원 |
| 8740 | 물품 이동 장비 조작원 |
| 8750 |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
| 8760 | 선박 승무원 및 관련 종사원 |
| |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88)** |
| 8810 | 상하수도 처리 장치 조작원 |
| 8820 | 재활용 처리 및 소각로 조작원 |
| |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89)** |
| 8911 | 목재가공 관련 기계 조작원 |
| 8912 | 기구 조립원 |
| 8913 | 펄프 및 종이 제조 장치 조작원 |
| 8914 | 종이제품 생산기 조작원 |
| 8919 | 기타 목재 및 종이 관련 기계 조작원 |
| 8921 | 인쇄기 조작원 |
| 8922 | 사진 인화 및 현상기 조작원 |
| 8990 | 기타 기계 조작원 |
| **9** | **단순노무 종사자** |
| |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91)** |
| 9100 |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 |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92)** |
| 9210 |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
| 9221 | 우편집배원 |
| 9222 | 택배원 |
| 9223 | 음식 배달원 |
| 9229 | 기타 배달원 |
| |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93)** |
| 9300 |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
| |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94)** |
| 9411 | 청소원 |
| 9412 |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
| 9421 | 건물 관리원 |
| 9422 | 검표원 |
| |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95)** |
| 9511 | 가사 도우미 |
| 9512 | 육아 도우미 |
| 9521 | 패스트푸드 준비원 |
| 9522 | 주방 보조원 |
| 9531 | 주유원 |
| 9539 | 기타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

| 구분 | 직업분류 예시 |
|---|---|
| |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99)** |
| 9910 | 농림 어업 관련 단순 종사원 |
| 9921 |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
| 9923 |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 |
| 9991 | 구두 미화원 |
| 9992 | 세탁원 및 다림질원 |
| 9999 |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
| **10** | **군인** |
| | **군인(A0)** |
| A011 | 영관급 이상 장교 |
| A012 | 위관급 장교 |
| A020 | 부사관 |
| A090 | 기타 군인 |

A b s t r a c t

##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自立, independence)의 개념을 정리하고, 양적·질적 연구를 통해 청년기 자립 정책의 틀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문헌연구, 양적연구, 질적연구, 국내 법제도 분석 및 민간사례 분석, 해외사례 분석 등을 시행하였다. 이 연구는 정책을 설계하는 정책연구로서 청년정책이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대 선진 사회에서 청년들은 과거와 달리 성인으로서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새롭게 나타난 이 시기(emerging adulthood)에 청년들이 경험하는 문제와 격차들이 보고되고 있어 사회정책적인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청년정책들이 발전하고 있지만 자립 지원으로 나아가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정책이 청년들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이란 무엇이며 청년정책에서 보편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둘째, 청년들의 성인 이행기 자립 상황은 어떠하며, 자립 상태의 격차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셋째, 청년들의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위한 지원은 누구에게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이행기의 자립은 아직 학술적, 정책적으로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특별히 자립이 어려운 대상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들도 부족하다. 따라서 청년의 자립은 더 보편적인 사회정책의 목표로서 많은 청년들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고

개인의 사회적 권리 혹은 사회권으로서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청년들은 민법상 성인 연령이 지난 이후에도 완전히 성인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혼란은 청년이 나이 들어가며 스스로 성인이 되었고 자립했다는 인식으로 변화되는 것, 즉 성인기로의 전환되는 것이 나타났다. 다만 과반 이상의 성인 이행기 청년들은 자립을 스스로의 힘으로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가정의 경제적 배경에 의한 격차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했다. 셋째,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정 배경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식을 고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성인 이행기 법제도적 기반 마련, 경제적 지원과 주거지원, 관계망 형성 지원, 기초자립 역량 지원 등 큰 틀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청년들의 사회 첫출발이 가능하도록 보편적 지원과 함께 특별한 자립 욕구에 대한 지원도 함께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관련한 6대 영역, 24개 과제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모든 청년이 권리로 누리는 자립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로서 인식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지원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여러 자립 관련 제도들이 청년들의 삶과 밀접해질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해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향유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청년정책이 발전하여야 한다.

**키워드: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청년 자립 지원, 청년 사례관리, 새로운 청년기, 신흥성인기, 성인도래기, 성인발현기, Emerging adulthood**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rganize the concept of independence of young people in the transitional stage of adulthood, and to present a framework and concrete measures for youth independence policy throug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ed literature study, quantitative study, qualitative study, domestic legal system analysis, private case analysis, and overseas case analysis. As a policy study for designing policies, this study suggested policy measures that can systematically support youth independence through youth policies.

In today's advanced society, young people are spending more time than in the past to accomplish their tasks as adults. In this newly emerging adulthood, problems and gaps experienced by young people are being reported, raising the need for social policy support. As a result, youth policies are developing, but there is a limit to progress toward independence support.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derive a plan to effectively support the independence of young people through government policies in such a situation. This study set three research questions for systematic study. First, what is the independence of youth in the transitional period and what are the goals that youth policy should aim for universally? Second, what is the independence situation of young people in the

transition period to adulthood, and how does the difference in independence appear? Third, to whom and in what form should support for the smooth transition of young people to adulthood be provide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dependence in the adult transition period has not yet been agreed upon academically and politically, but it is used only for those who have difficulty in becoming independent, and policies that can provide systematic support are lacking. Therefore, the independence of young people should be able to encompass many young people as a goal of a more universal social policy and should be guaranteed as social rights and civil rights. Second, it is common for young people to not feel fully grown up even after they reach the age of adulthood under the civil law. This confusion appeared to change as the young people grew older and became aware that they were self-reliant, that is, the transition to adulthood. However, more than half of the adolescents in the transitional stage thought it was difficult to achieve independence on their own, and said that there was a gap due to the economic background of their families.

Third, in order to support the independence of young people, it is necessary to devise a way to reduce the gap between these family backgrounds. To this end, a broad-based approach is required, such as preparing the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for transitioning adults, economic support and housing support, support for network formation, and support for basic independence capabilit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support for special needs for independence as well as universal support so that all young people can have a first start in society. This study suggested 24 tasks in 6 areas related to it.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independence for all young people as a right’. The independence of young people in the transition period should be recognized as a right that people should be guaranteed universally and systematically. In particular, youth policies should be developed in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a system that can support independence so that various independence-related systems can be closely related to the lives of young people, and providing mid-to-long-term support.

**Keywords: Youth independence, youth independence support, youth case management, emerging adulthood**

# 202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연구보고22-기본01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황여정·임희진·오승근

연구보고22-기본02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의 전환 / 최인재·오해섭·김민·정건희

연구보고22-기본03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 최정원·이지연·김현수·박지숙

연구보고22-기본04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정책 혁신모델 구축방안 연구 / 최용환·좌동훈·박윤수

연구보고22-기본05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연구: 재정 및 인프라를 중심으로 / 김영한·이유진

연구보고22-기본06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추진방안 / 황세영·강경균·김남수

연구보고22-기본07 북한 청소년정책 분석 연구 / 김경준·모상현·전영선·차승주

연구보고22-기본08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지원 방식 재편 / 임지연·김정주·한지형

연구보고22-기본09 10대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김지경·김윤희·송현주

연구보고22-일반01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김영지·최홍일·유성렬·이은주

연구보고22-일반01-01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화분서보고서: 학교인권환경이 학업중단 의사에 미치는 영향 -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 김신영

연구보고22-일반01-0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서보고서 / 김영지·최홍일

연구보고22-일반02 202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 / 황진구·전현정·이용해

연구보고22-일반02-01 202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전현정·김나영·이용해

연구보고22-일반03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양계민·이정민·정윤미·엄진섭·장윤선·전경숙

연구보고22-일반03-01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패널) / 양계민·이정민·정윤미

##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6-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4)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Ⅴ: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서고운·조혜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6-02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4-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Ⅴ: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 보고서 / 김희진·서고운·조혜영·민윤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5)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이창호·이경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2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5-01) 후기청소년(19-24세)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미디어 정책에 대한 인식 연구 / 강진숙·권오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3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5-02)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Ⅲ-후기청소년-기초분석보고서 / 이창호·이경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8-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6)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Ⅱ / 김형주·장근영·박미선·정세정·변금선·배정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9-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7)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 유민상·신동훈·신영규·박미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 청년종합연구Ⅰ: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 김지연·백혜정·김미향·김성아·정소연·이우태·이상정·박광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2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1) 2022년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 / 김지연·백혜정·김미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3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2)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이우태·조정아·이규창·이지순·최규빈·김정원·장인숙·박환보·최종학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4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3)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이상정·류정희·변수정·하태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5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4)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박광옥·이기연·이복실·안예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1-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9)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Ⅰ / 성윤숙·문호영·천정웅·이희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1-02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9-01) 통계자료를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취약성 진단과 지원정책 평가 / 홍성효·장수명

## 수 시 과 제

연구보고22-수시01 202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사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 유민상·신동훈

연구보고22-수시02 COVID-19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실태 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 김경준·권일남

연구보고22-수시03 소년법정 재판기록 데이터 구축 및 분석 연구 / 김윤희·서정아

연구보고22-수시04 학생의 참정권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모델과 방향 연구 / 김윤희·남화성

연구보고22-수시05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및 요구에 관한 연구 / 문호영

연구보고22-수시06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방안연구 / 이유진·박찬걸

## 수 탁 과 제

**〈 일 반 〉**

연구보고22-수탁01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 선거교육 활성화: 메타버스 설계구축 및 운영 / 임지연

연구보고22-수탁02 위험과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구축 / 서정아·황진구

연구보고22-수탁03 경기도형 청소년 정책참여 추진체계 개발 연구 / 이윤주

연구보고22-수탁04 2022년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성과평가 / 최용환·송헌재·장혜윤

연구보고22-수탁05 경기 안산시흥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양계민

연구보고22-수탁06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컨설팅 및 평가 / 좌동훈·황진구

연구보고22-수탁07 학생의 참정권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연구 / 장근영·김윤희

연구보고22-수탁08 다양한 가족과 수용자자녀에 대한 메타버스 상담, 활동, 교육 플랫폼 설계구축 및 효과성 연구 / 임지연·최려나·문세진

연구보고22-수탁09 2022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모상현

연구보고22-수탁10 발달장애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자립지원 연구 / 김지연·김미향·조윤경·박광옥·오욱찬·조양진

연구보고22-수탁11 정책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하형석·박지수·이인영

연구보고22-수탁12 2022년 청소년 매채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김지경·정윤미·송현주·김균희

연구보고22-수탁13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황여정·임희진·좌동훈·오승근

연구보고22-수탁14 2022년 인성교육 확산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5 2022년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6 인성교육의 추진에 관한 평가·분석 / 성윤숙·문호영·김현수

연구보고22-수탁17 2022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8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9 출발! 함께해요 인성교육(초등학교용)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20 인성교육으로 자유학기에 날개 달기(중학교용)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21 2022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 김영지·김지연·서고운·전현정·김미향·최홍일

연구보고22-수탁22 2022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 연구 / 황세영·이경상·유민상·최홍일

연구보고22-수탁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사전연구 / 김희진·임희진·서고운·유성렬

연구보고22-수탁24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정윤미

연구보고22-수탁24-01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부록: 기초통계결과표)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정윤미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2-학폭01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중학교용-한문)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2-학폭02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중학교용-진로와 직업) / 성윤숙·강경균

연구보고22-학폭03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고등학교용-한문)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2-학폭04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고등학교용-진로와 직업) / 성윤숙·강경균

연구보고22-학폭05 2021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성윤숙

연구보고22-학폭06 2021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이경상·김현수

연구보고22-학폭07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 안내서 / 성윤숙

연구보고22-학폭08 2021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결과 분석 연구 / 성윤숙

**〈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2-대안01 대안학교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 이호준·윤홍주·김훈호·송원일

연구보고22-대안02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의 교육요구조사 및 지원 방안 / 김영지·유민선·박하나·김현수

연구보고22-대안03 2022년 대안교육기관 등록 현황 및 실태 조사 / 황세영·오해섭·김세훈·이지혜

연구보고22-대안04 민·관협력형 대안교육 운영 선도모델 개발연구 / 조창호·김세광·한숙희

# 자 료 집

**〈 세 미 나 〉**

세미나22-01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성과보고회 (22.1.27.)
세미나22-02 2022 미디어 교육 주간자료집 (22.1.19.)
세미나22-03 청소년 기후환경 정책연대 세미나: 기후위기 시대 청소년 활동과 정책참여의 방향 (22.12.21.)
세미나22-04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22.12.23.)

**〈 워 크 숍 〉**

워크숍22-01 학교폭력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 연수 (22.2.8.)
워크숍22-02 2022 상반기 학교민주시민교육 배움 공유회 자료집 (22.4.22.)
워크숍22-03 2022년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22.1.25.)
워크숍22-04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 자료집 (22.1.26.)
워크숍22-05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워크숍 (22.4.29.)
워크숍22-06 2022년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담당자 워크숍 (22.7.12.~13.)
워크숍22-07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및 워크숍 (22.12.15.)
워크숍22-08 어울림 프로그램 재구조화 워크숍 참고 자료 (22.7.22.)
워크숍22-09 202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대면 워크숍 (22.8.4., 22.8.12.)
워크숍22-10 2022년 인성교육 우수전문교사 워크숍 (22.8.17.)

**〈 포 럼 〉**

포럼22-01 제43회 청소년정책포럼: 기후위기, 청소년의 다가올 미래에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가? (22.4.26.)
포럼22-02 2022년 제1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 활동 패러다임의 전환 (22.4.20.)
포럼22-03 제44회 청소년정책포럼: 지표를 통해 본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과제 (22.5.11.)
포럼22-04 2022년 제2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활동 정책의 대전환, 현장의 목소리 (22.5.17.)
포럼22-05 2022년 제3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참여 정책의 재구조화 (22.6.24.)
포럼22-06 2022년 제4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 현황과 과제 (22.7.12.)
포럼22-07 제1회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포럼: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22.8.11.)
포럼22-08 제2회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포럼: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청소년으로 살아가기 (22.8.12.)
포럼22-09 제46회 청소년정책포럼: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개념 정립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 (22.9.2.)
포럼22-10 제47차 청소년정책포럼: 지방정부의 교육경비 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22.9.21.)

포럼22-11 인구소멸위기지역 청소년정책 전환 방안「현장 사례를 말하다」 포럼 (22.10.14.)

포럼22-12 2022년 제5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정책 전달 및 추진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22.10.13.)

포럼22-13 제15차 청년정책포럼: 정책소외계층 유형별 실태와 정책과제 (22.11.15.)

포럼22-14 2022년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22.12.2.)

**〈 콜 로 키 움 〉**

콜로키움22-01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 1차 콜로키움: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Vietnam (22.6.8.)

콜로키움22-02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 2차 콜로키움: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Ethiopia (22.6.14.)

콜로키움22-03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커뮤니티 저널리즘의 역할과 과제 (22.9.6.)

**〈 기 타 자 료 집 〉**

자료22-01 2021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자료22-02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자료22-03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가이드

자료22-04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전문 컨설팅 매뉴얼

자료22-05 2021 양성평등한 캠퍼스 조성 우수사례집

자료22-06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자료22-07-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관리자)

자료22-07-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관리자)

자료22-08-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교원)

자료22-08-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교원)

자료22-09-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교행)

자료22-09-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교행)

자료22-10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연수 자료집

자료22-11 2022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자료집

자료22-12 제11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22-13 2022년 대안교육기관 교원 연수

##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1호(통권 제10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2호(통권 제105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3호(통권 제10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4호(통권 제107호)

##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137호 코로나시대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의 삶과 희망: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을 중심으로

138호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139호 지역사회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방안

140호 「메타버스 선거랜드」 구축과 선거교육 효과성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분석

141호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142호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143호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

144호 10대시기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NYPI Bluenote 통계 〉**

64호 후기청소년 건강권 실태

65호 장애청소년의 청소년시설 이용 현황과 여건

66호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

67호 미래지향적 청소년시설 및 공간 혁신 방안 연구

68호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일자리

69호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

70호 디지털 성범죄

71호 아동 · 청소년의 놀이 실태 분석

72호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학업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73호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4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및 데이터 분석 · 활용

협동연구총서 22-79-01
연구보고22-일반07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인 쇄 2022년 12월 23일
발 행 2022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379-4 93330

연구보고 22-일반07

#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

: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93330
9 791156 543794
ISBN 979-11-5654-379-4